議政白書

(1991~1995)



忠清南道錦山郡議會

議政白書

(1991~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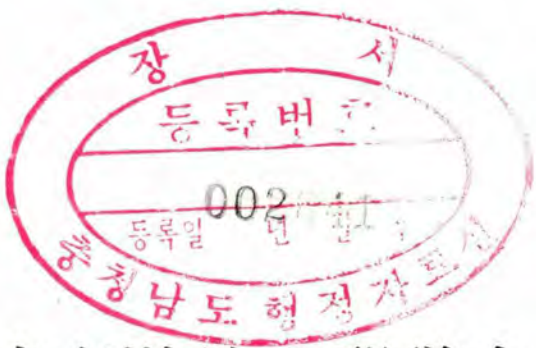

忠淸南道錦山郡議會



發　刊　辭



존경하는 錦山郡民 여러분!

오랜 住民의 바램이었던 地方自治制가 實施되어 錦山郡議會가 開院된지도 어언 4년이란 歲月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의 地方自治는 自治環境의 未成熟으로 지난 30년동안 中斷되어 오다가 地域發展을 통하여 삶의 質을 向上시켜야 된다는 時代的 召命이 要請되어 다시 復活하게 되었습니다.

初代 錦山郡議會에서는 이러한 使命을 마음속 깊이 認識하여 地方自治制가 確固히 定着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自治空白으로 인한 經驗不足과 自治力量의 未熟 그리고 制度上의 제약 等으로 住民의 다양한 欲求를 만족시키기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錦山郡議會는 그간의 經驗과 住民의 參與를 바탕으로 地域發展과 住民福祉를 위하여 渾身의 努力을 경주함과 동시에 地方化 時代에 副應하는 住民과 함께하는 議政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議政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議定白書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서가 史料로서의 가치 뿐만아니라 郡民들에게는 정당한 評價를 받고 의원 스스로가 자기 省察의 계기를 마련하여 잘된 점은 더욱 승화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항상 연구 발전하는 錦山郡議會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錦山郡議會가 참다운 民意의 殿堂이 되어질 수 있도록 郡民여러분의 지속적인 聲援을 바라오며 여러분 모두에 幸運이 充滿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1995年 6月

錦山郡議會議長　羅　相　奎

금 산 군 민 헌 장

우리는 자랑스런 금산군민입니다.

진악산 영봉아래 우람하게 자리잡은 우리 금산은 칠백의사의 드높은 충절과 인삼향기 그윽한 정취와 더불어 날로 번영해 가고 있는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모든 군민의 가슴마다에 애향심을 간직하며 뜻과 슬기를 모아 보람찬 내 고장을 힘차게 건설합시다.

1. 우리는 순박한 마음씨를 주고 받으며 두터운 이웃사랑으로 화목하게 살아갑시다.
2. 우리는 칠백의사의 숭고한 얼을 오늘에 이어받아 나라사랑 정신을 기릅시다.
3. 우리는 옛 것을 밝히고 새로움을 익히면서 아름다운 전통을 가꾸어 나갑시다.
4.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내고장 발전에 솔선 참여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드높힙시다.
5. 우리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여 알차고 복된 내고장을 이룩합시다.

금산의 표상



군 새(까치)



군 나무(은행나무)



군 꽃(목백일홍)

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

우리 금산군의회는 주민 자치권 보호와 참된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새기면서 명예스러운 지방의회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스스로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갖추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군정의 균형발전과 자치능력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데 초석이 된다.

3. 우리는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이권개입이나 비리와 야합하지 아니하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정활동상 상호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법질서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한다.

5.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사간에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 언제나 분명한 책임을 지며, 주민과 행정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구심적 역할을 한다.

금산군의회개원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금산군 의회 첫 걸음



'91. 4. 15.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제1회 임시회(개원식) 개회사를 하고있는 라상규 의장



개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류응상 전임 군수



금산군의회 개원 축하연



의장 · 부의장 선거
초대 금산군의회를 이끌어갈 임기 2년의 의장단을 선출하는 모습



금산군의회개원 기념식수를 하고있는 의원들
—금산군의회가 튼튼하게 뿌리내려 건실한 열매가 맺기를 군민모두가 기원

의회 개원 기념식수 광경



개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관내 기관장과 의원들



금산군의회 출범을 알리는 의회 현판식 모습

회 의 운 영

본회의 개최현황

군의회의 연간회기는 60일(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이며, 본회의는 전 의원으로 구성되어 의회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92년 정기회 본회의 개최모습

■ 회의 운영상황('91~'93.2)

집 회 내 역				안 건 처 리					
회수	회기	본회의	임시회	계	조례	군정질문	예산·결산	건의안	기타
18回	123일	60일	63일	142件	64	6	8	4	60



제17회 정기회에서 군정연설을 하고 있는 김학현 군수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목 차

제1장 일반현황 11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13
제2절 기본현황 15
1. 위치 및 지형지세 15
2. 면적 및 인구 16
3. 재정규모 17
제3절 의회의 구성과 사무기구 18
1. 의회구성 18
2. 의회 사무기구 18
3. 의원 현황 19

제2장 의원선거 21

제1절 선거일정 23
제2절 선거구 및 의원정수 23
제3절 후보자 등록 24
제4절 투표결과 26
1. 투표 현황 26
2. 개표 현황 29
3. 당선자 현황 33

제3장 제1대 금산군의회 개원 35

제1절 개원준비 37

1. 자치법규 정비 ····· 37
2. 의회시설 확보 ····· 38
3. 의회개원 필수요원 교육 ····· 39
4. 속기제도 운영 ····· 39
5. 의원 당선자 세미나 참석 ····· 39

제2절 의원등록 ····· 40
1. 근거 ····· 40
2. 등록 안내문 송부 ····· 40
3. 등록접수 ····· 40

제3절 개원 ····· 42
1. 최초 임시회 소집공고 ····· 42
2. 개원 준비 ····· 42
3. 원구성 ····· 43
4. 개원식 ····· 44
5. 기타행사 ····· 45

제4장 의회운영 ····· 53

제1절 제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59
1. 제1차 본회의 ····· 59
2. 제2차 본회의 ····· 60
제2절 제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63
1. 제1차 본회의 ····· 63
2. 제2차 본회의 ····· 66

제3절 제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67

1. 제1차 본회의 ····· 67
2. 제2차 본회의 ····· 68
3. 제3차 본회의 ····· 71

제4절 제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78
1. 제1차 본회의 ····· 78
2. 제2차 본회의 ····· 80

제5절 제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84
1. 제1차 본회의 ····· 84
2.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 86
3. 제2차 본회의 ····· 90

제6절 제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91
1. 제1차 본회의 ····· 91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92
3. 제2차 본회의 ····· 95

제7절 제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96
1. 제1차 본회의 ····· 96
2. 제2차 본회의 ····· 98
3. 제3차 본회의 ····· 98

제8절 제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100
1. 제1차 본회의 ····· 100
2.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 102
3. 제2차 본회의 ····· 108

제9절 제9회 금산군의회(정기회) ····· 109

1. 제 1차 본회의 ····· 109
2. 제 2차 본회의 ····· 113
3. 제 3차 본회의 ····· 113
4. 제 4차 본회의 ····· 124
5. 제 5차 본회의 ····· 130
6. 제 6차 본회의 ····· 131
7. 제 7차 본회의 ····· 131
8. 제 8차 본회의 ····· 132
9. 제 9차 본회의 ····· 132
10. 제10차 본회의 ····· 135
1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135
1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154

제10절 제1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164
1. 제1차 본회의 ····· 164

제11절 제1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166
1. 제1차 본회의 ····· 166
2.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 168

제12절 제1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188
1. 제1차 본회의 ····· 188

제13절 제1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191
1. 제1차 본회의 ····· 191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195
3. 제2차 본회의 ····· 199

제14절 제1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201

1. 제1차 본회의 ····· 201
2. 제2차 본회의 ····· 208
3. 제3차 본회의 ····· 213
4. 제4차 본회의 ····· 217

제15절 제1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221
1. 제1차 본회의 ····· 221
2. 제2차 본회의 ····· 222
3. 제3차 본회의 ····· 222
4. 제4차 본회의 ····· 223

제16절 제1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224
1. 제1차 본회의 ····· 224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226
3. 제2차 본회의 ····· 230

제17절 제17회 금산군의회(정기회) ····· 231
1. 제1차 본회의 ····· 231
2. 제2차 본회의 ····· 234
3. 제3차 본회의 ····· 243
4. 제4차 본회의 ····· 245
5. 제5차 본회의 ····· 246
6. 제6차 본회의 ····· 248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249
8.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263

제18절 제1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270
1. 제1차 본회의 ····· 270
2. 제2차 본회의 ····· 271
3. 제3차 본회의 ····· 271

제19절 제19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273
1. 제1차 본회의 ····· 273

제20절 제2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275
1. 제1차 본회의 ····· 275

제21절 제2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277
1. 제1차 본회의 ····· 277
2. 제2차 본회의 ····· 280

제22절 제2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283
1. 제1차 본회의 ····· 283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285
3. 제2차 본회의 ····· 287

제23절 제2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289
1. 제1차 본회의 ····· 289

제24절 제2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290
1. 제1차 본회의 ····· 290

제25절 제2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292
1. 제1차 본회의 ····· 292

제26절 제2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293
1. 제1차 본회의 ····· 293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 296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297
4. 제2차 본회의 ····· 302

제27절 제27회 금산군의회(정기회) ····· 304

1. 제1차 본회의 ····· 304
2. 제2차 본회의 ····· 306
3. 제3차 본회의 ····· 310
4. 제4차 본회의 ····· 312
5. 제5차 본회의 ····· 316
6. 제6차 본회의 ····· 323
7. 제7차 본회의 ····· 324
8. 제8차 본회의 ····· 325
9. 제9차 본회의 ····· 326
10. 제10차 본회의 ····· 327
1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328
1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331

제28절 제2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337
1. 제1차 본회의 ····· 337
2. 제2차 본회의 ····· 337

제29절 제2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338
1. 제1차 본회의 ····· 338
2. 제2차 본회의 ····· 339

제30절 제3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341
1. 제1차 본회의 ····· 341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342
3. 제2차 본회의 ····· 345

제31절 제3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346
1. 제1차 본회의 ····· 346
2. 제2차 본회의 ····· 349
3. 제3차 본회의 ····· 349

4. 제4차 본회의 ····· 350
5. 제5차 본회의 ····· 350

제32절 제3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351
1. 제1차 본회의 ····· 351
2. 제2차 본회의 ····· 352
3. 제3차 본회의 ····· 355
4. 제4차 본회의 ····· 359
5. 제5차 본회의 ····· 361
6. 제6차 본회의 ····· 363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365
8. 제7차 본회의 ····· 372

제33절 제3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373
1. 제1차 본회의 ····· 373
2.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 375
3.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 377
4. 제2차 본회의 ····· 380

제34절 제34회 금산군의회(정기회) ····· 383
1. 제1차 본회의 ····· 383
2. 제2차 본회의 ····· 385
3. 제3차 본회의 ····· 388
4. 제4차 본회의 ····· 388
5. 제5차 본회의 ····· 388
6. 제6차 본회의 ····· 388
7. 제7차 본회의 ····· 389
8. 제8차 본회의 ····· 389
9. 제9차 본회의 ····· 390
10.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391
1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399

제35절 제3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407
1. 제1차 본회의 ····· 407
2. 제2차 본회의 ····· 409
3. 제3차 본회의 ····· 409
4. 제4차 본회의 ····· 409
5. 제5차 본회의 ····· 410
6. 제6차 본회의 ····· 410

제36절 제3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411
1. 제1차 본회의 ····· 411
2. 제2차 본회의 ····· 416

제37절 제3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 417
1. 제1차 본회의 ····· 417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418
3. 제2차 본회의 ····· 426

□ 부 록 ····· 429

제1절 의회 주요일지 ····· 431
제2절 년도별 의정활동 모습 ····· 507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錦山郡의 지금 행정구역은 삼국시대의 百濟의 영토로서 進乃郡(진내을 군)과 珍同縣(珍洞縣), 豆尸伊縣(富尸伊縣)을 폐합한 것으로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 百濟의 熊津시대 즉 文周王 원년부터 聖王 16년(475~538)에는 진내을군이라 하였다.

○ 百濟의 사비시대 즉 聖王 16년부터 義慈王 20년까지(538~660)는 進乃郡이라 개칭하고 百濟의 5방령중 得安城(지금 恩津)에 귀속 시켰다.

○ 新羅의 武烈王이 百濟을 통합한 후 豆尸伊縣(지금 富利面과 全北 茂朱郡 富南面과 濟原面의 일부)을 폐합하여 進禮縣이라 칭하고 德安都督府(지금 恩津)에 영속시켰다.

○ 新羅 景德王 16년(757) 進禮郡으로 승격시키고, 伊城縣(지금 富利面, 茂朱郡, 富南面 및 濟原面의 일부) 清渠縣(지금 全北, 鎭安郡, 龍潭面, 朱川面, 顔川面, 程川面, 銅鄕面)과 丹川縣(지금 茂朱郡 일원)의 3현을 귀속시켜 完山州(지금 全州)관할로 하였다.

○ 高麗 太祖23년(940)에 茂禮縣(지금의 茂朱郡 일원)과 珍同縣(지금 珍山面, 福壽面, 秋富面)을 폐합하여 進禮郡에 귀속 시켰다.

○ 高麗 成宗 14년(995)에 進禮縣으로 降縣하여 江南道의 관할로 하였다.

○ 高麗 顯宗 3년(1012)에 昇郡 개칭하여 進禮縣을 錦溪郡이라 고치고 동왕9년에 관할을 江南道에서 全羅道로 이속 시켰다.

○ 高麗 明宗 3년(1173)에 錦溪郡을 분할하여 珍同縣, 富利縣, 茂豊縣을 置縣하였다.

○ 高麗 忠烈王 31년(1305)에 富利縣, 珍同縣, 清渠縣, 朱溪縣, 丹川縣을 폐합하여 錦州郡이라 개칭 승격시켰다.

○ 高麗 恭愍王 3년(1354)에 清渠縣, 珍同縣, 朱溪縣, 丹川縣은 다시 분할 置縣하였다.

○ 朝鮮 太宗13년(1413)에 錦州郡을 錦山郡으로 개칭하였다.

○ 朝鮮 仁祖 14년(1646)에 湖西의 大賊 柳濯의 출생지가 錦山郡이라하여 강현하였다가 孝宗6年(1655)에 다시 승군하여 錦山郡이라 하였다.

○ 朝鮮 高宗 33년(1896)에 忠淸南道 公州府의 錦山, 珍山郡을 全羅北道의 관할로 하였다.

○ 1914년에 珍山郡을 병합하여 錦山郡이라 칭하고 錦山郡 영속 14개면중 富南面을 茂朱郡에 넘겨주고, 珍山郡 영속 7개면을 폐합하여, 錦山面, 錦城面, 濟原面, 富利面, 郡北面, 南一面, 南二面, 珍山面, 福壽面, 秋富面으로 하였다가 1940년 10월 1일 錦山面이 錦山邑으로 승격되어 현재의 1읍 9면이 되었다.

○ 1963년 1월 1일(법률 제1172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全羅北道에서 忠淸南道로 환원되었다.

○ 1953년 12월 郡北面의회 의결에 의하여 內釜里에 있는 郡北면사무소를 현재의 위치인 杜斗里로 신축 이전하였다.

○ 1962년 5월 27일 군조례 제28호에 의거 郡北面에 內釜출장소를 설치 하였다.

○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따라 福壽面 龍池里가 秋富面으로 편입되었다.

제2절 기 본 현 황

1. 위치 및 지형 지세

○ 위　　치

소재지 : 충남 금산군

동　　경			북　　위			비고
방위	지　　명	경　　도	방위	지　　명	경　　도	
극동	부리면　방우리	127° 38′ 38″	극남	남일면　신동리	35° 58′ 32″	
극서	진산면　행정리	127° 19′ 19″	극북	복수면　지량리	36° 16′ 06″	

○ 지형 및 지세

노령산맥이 뻗어내려 그 지맥이 본군의 중앙부를 통과하고 있으며 소백산맥이 본군의 동남쪽을 지나가고 있어 양대산맥의 가운데에 하나의 큰 분지를 이루고 있다.

본군의 둘레에는 400~900m의 높은 산이 둘러 있고 평균고도 250m의 고원지대로 이룩된 산악군으로 논과 밭의 면적이 비슷한 고장이다.

전라북도 장수, 진안, 무주군에서 발원한 금강 본류가 본군의 부리면과 제원면을 흘러 영동군으로 빠져 나가고 있으며 금강의 지류인 봉황천, 기사천, 금산천, 조정천이 이에 합류되고 있어 이 하천의 유역에 좀 넓은 분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진산면과 복수면을 관류하는 유등천과 추부면의 중심부를 흐르는 추풍천의 유역에도 분지가 형성되어 본군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2. 면적 및 인구

○ 면　　적

계	경지				대지	임야	기타
	소계	전	답	과수원			
㎢ 575.24 (100%)	117.80 (20.5)	53.93 (45.8)	62.93 (53.4)	0.94 (0.8)	7.99 (1.4)	412.84 (71.6)	37.61 (6.5)

※ 충남의 6.9%　　전국의 0.6%

○ 행정구역

읍면			법정리	행정리	자연부락	반
계	읍	면				
10	1	9	106	247	405	1,089

○ 세대 및 인구

세대		인구						세대당 인구	인구밀도
	전년비 %	계	전년비 %	남	%	여	%		
19,731	△0.3	69,726	△4.1	35,318	50.7	34,408	49.3	3.5	121

세　대 : 충남(524,727)의 3.8%　　전국(13,483,755)의 0.15%

인　구 － 충남(1,857,911)의 3.9%　　－ 전국(45,077,487)의 0.16%

－ 남 (932,962)　　－ 남 (22,645,265)

－ 여 (924,949)　　－ 여 (22,432,22)

3. 재정규모

○ 총　괄 : 59,095백만원

　— 일반회계　:　52,666백만원

　— 특별회계　:　6,429백만원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 지　방　세 : 5,905 (11.2%)	〈기 능 별〉
○ 세 외 수 입 : 2,628 (5.0%)	○ 의　회　비 : 545 (1.0%)
— 경 상 적 : 1,884 (3.6%)	○ 일반행정비 : 18,464 (35.1%)
— 임 시 적 : 744 (1.4%)	○ 사회복지비 : 8,020 (15.2%)
○ 지방교부세 : 24,305 (46.2%)	○ 산업경제비 : 13,438 (25.5%)
○ 지방양여금 : 7,264 (13.8%)	○ 지역개발비 : 9,824 (18.7%)
○ 보　조　금 : 11,715 (22.2%)	○ 문화체육비 : 675 (1.3%)
— 국　　고 : 6,715 (12.7%)	○ 민 방 위 비 : 272 (0.5%)
— 도　　비 : 5,000 (9.5%)	○ 지원및기타 : 1,428 (2.7%)
○ 지 정 재 원 : 849 (1.6%)	〈성질별〉
※ 재정자립도 : 16.2%	○ 인　건　비 : 10,890 (20.7%)
	○ 물　건　비 : 8,020 (15.2%)
	○ 이 전 경 비 : 6,701 (12.7%)
	○ 자 본 지 출 : 25,265 (48.0%)
	○ 보 전 재 원 : 271 (0.5%)
	○ 내 부 거 래 : 768 (1.5%)
	○ 예비비기타 : 751 (1.4%)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상　수　도 : 2,071	○ 새마을소득사업 : 231	○ 골 재 판 매 : 162
○ 주 택 관 리 : 168	○ 영세민생활안정 : 223	○ 주차장관리 : 130
○ 의료보호기금 : 2,200	○ 농 공 지 구 : 1,244	

제 3 절 의회의 구성과 사무기구

1. 의회구성

의회는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유지 및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과, 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을 두고, 위원회는 현행법상 재적의원 13인이상의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바, 금산군의회는 11인으로 상임위원회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중요조례안 심사, 징계 자격심사, 예산안과 결산심사, 행정 사무감사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의회사무기구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무과장과 각종 의안의 검토와 특별위원회 운영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계가 있다.

금산군의회사무과의 정원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고 있는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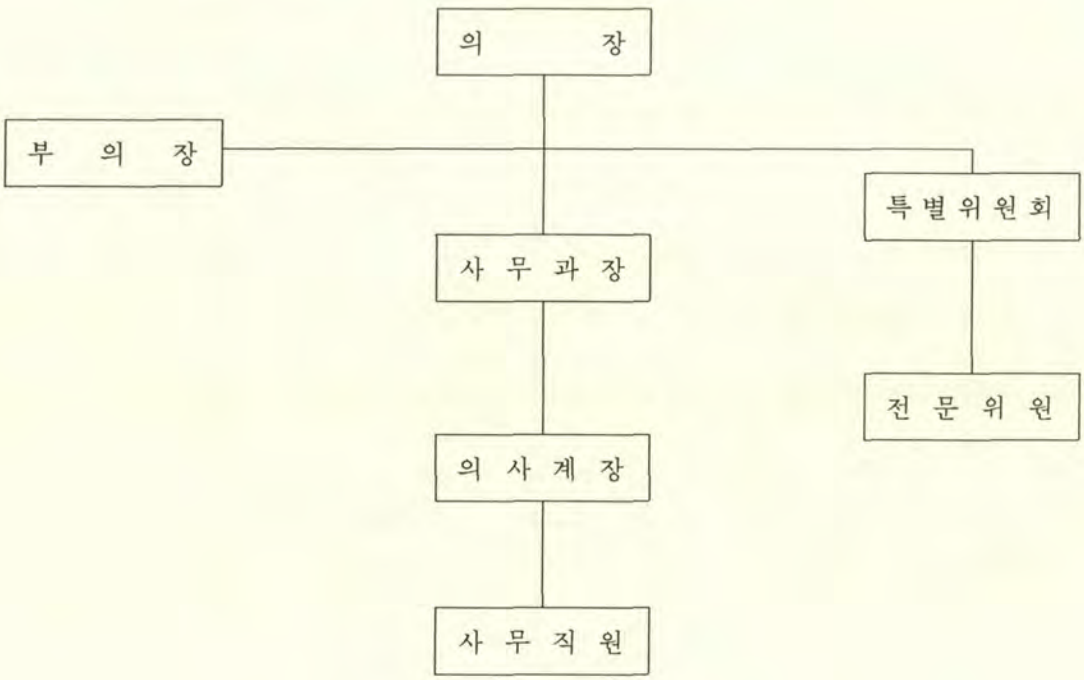

3. 의 원 현 황

선거구	성 명	사 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주요경력
금산읍	정 현 수 (鄭顯琇)		46. 3.19	하옥리 344-6	상 업	대학원 수 료	세계평화 연합금산 군지부장
금산읍	라 상 규 (羅相奎)		42.11. 9	중도리 225-22	금융업	대 졸	자유총연 맹금산군 지 부 장
금성면	한 규 용 (韓圭用)		46. 4.11	하류리 756	농 업	대학원 수 료	금 성 농업협동 조 합 장
제원면	허 병 문 (許炳文)		55. 8. 5	제원리 153-36	금융업	대학원 수 료	제 원 농업협동 조합감사
부리면	길 부 섭 (吉扶燮)		48. 6. 6	현내리 783-6	제조업	대졸	농어촌특 산단지중 앙회이사

선거구	성 명	사 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주요경력
군북면	박 찬 헌 (朴贊憲)		40. 4.28	두두리 361	제조업	대 졸	바르게살기군북면위원장
남일면	박 천 보 (朴天輔)		60. 1. 9	상동리 288	제조업	대학원 수 료	전국농어민후계자충남부회장
남이면	오 규 영 (吳圭英)		35. 2.27	역평리 349	농 업	대 졸	금산군의료보험조합감사
진산면	박 승 우 (朴勝友)		35. 2. 4	읍내리 204	농 업	대학원 수 료	대전보호관찰소보호위원
복수면	태 진 수 (太辰洙)		35.11.17	곡남리 147	농 업	대학원 수 료	금산군군정자문위원
추부면	이 흥 만 (李興滿)		44. 5. 5	마전리 414-21	약 사	대 졸	충남약사회이사

제 2 장　의원선거

제1절　선거일정

제2절　선거구 및 의원정수

제3절　후보자 등록

제4절　투표결과

1. 투표 현황
2. 개표 현황
3. 당선자 현황

제 3 절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간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어 금산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는 28인으로 평균 3 :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선거구별 최고 경합지역은 진산면, 복수면으로 의원정수 1인에 각4명의 후보가 등록을하여 4 : 1의 경쟁을 보였으며 최연소 후보로는 남일면 선거구의 박천보씨로 등록 당시 31세였고 최고령 입후보자는 남이면 선거구의 김병성씨로 등록 당시 64세 였다.

○ 입후보자 등록현황

선거구	입후보자	성별	년령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금산읍 (4)	천 동 수	남	48	상리 173	상업	중 앙 대 졸	금산읍의용소방대장
	라 상 규	〃	48	중도 225-22	농업	고 려 대 졸	금 산 신 협 이 사 장
	정 현 수	〃	45	하옥 344-6	상업	대학원수료	극 동 인 삼 사 대 표
	강 재 하	〃	60	중도 533-3	상업	제 원 국 졸	금산수삼센타대표이사
금성면 (2)	임 인 택	〃	45	화림 120	상업	대학원수료	새금산라이온스이사
	한 규 용	〃	44	하류 756	농업	행정대학원재	금산군군정자문위원
제원면 (2)	김 상 원	〃	56	명곡 138	농업	금산농고졸	금산라이온스클럽회장
	허 병 문	〃	35	제원 153-36	농업	금산농고졸	금산군4H연합회부회장
부리면 (2)	송 경 섭	〃	60	양곡 459	농업	대학원수료	금산군군정자문위원
	길 부 섭	〃	42	현내783-6	농업	대전농전졸	백 산 식 품 대 표
군북면 (2)	박 찬 헌	〃	50	두두 361	제조	중 앙 대 졸	군 북 단 위 농 협 감 사
	김 관 식	〃	59	동편 224	농업	군 북 국 졸	금산인삼협동조합이사
남일면 (2)	박 천 보	〃	31	상동 288	회사	방 통 대 재	주식회사전농대표이사
	김 길 천	〃	38	음대 192	농업	금 일 국 졸	민통협의회운영위원

선거구	입후보자	성별	년령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남이면 (3)	오 규 영	남	56	역평 349	농업	전 북 대 졸	금산군산림조합이사
	김 병 성	〃	64	매곡 435	농업	남 이 국 졸	금산인삼협동조합이사
	황 해 수	〃	52	석동 699	농업	금산동중졸	승공연합남이면지부장
진산면 (4)	박 승 우	〃	56	읍내 204	농업	대 학 원 재	민자당중앙상무위원
	송 석 호	〃	60	지방 202	농업	대전공고졸	경우신보금산지사장
	오 래 근	〃	56	읍내 600-5	농업	금 산 고 졸	진 산 단 위 농 협 이 사
	하 선 국	〃	51	읍내 554-3	상업	대전상고졸	진산중학교육성회장
복수면 (4)	김 갑 수	〃	56	용진 53	농업	대전공고졸	금산군군정자문위원
	유 태 식	〃	43	곡남 153	건설	대학원수료	남주건설대표이사
	최 우 영	〃	55	신대 541	농업	충남대중퇴	복 수 단 위 농 협 이 사
	태 진 수	〃	55	곡남 147	농업	독 학	금산군 군정자문위원
추부면 (3)	한 태 희	〃	60	마전 435	농업	대전중4년수료	추 부 면 번 영 회 장
	김 제 창	〃	48	장대 287	중개업	대전공고졸	영 · 수 학 원 장
	이 홍 만	〃	46	마전 414-21	약사	중 앙 대 졸	금산군약사회부회장

제4절 투 표 결 과

1. 투표현황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됨에 따라, 제1대 錦山郡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오전7시부터 관내 43개 투표장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6시까지 총 유권자 53,553명중 부재자 1,951명을 포함하여 37,282명이 투표를 하므로써 69.6%의 투표율을 보여, 이는 전국 투표율 55%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 투표현황

투표구별		유권자			투표자 (부재자)	주표율 (%)	기권자 (부재자)	비고
		계	투표자	부재자				
계		53,553	51,518	2,035	37,282 (1,951)	69.6	16,271	
금산읍	소 계	16,542	15,980	562	10,319 (533)	62.4	6,223 (29)	
	제 1 투	1,882	1,834	48	1,167	62.0	667	
	제 2 투	3,008	2,905	103	1,833	60.9	1,072	
	제 3 투	3,590	3,476	114	2,065	57.5	1,411	
	제 4 투	2,444	2,368	76	1,516	62.0	852	
	제 5 투	1,110	1,063	47	630	56.7	433	
	제 6 투	3,117	2,996	121	1,779	57.0	1,217	
	제 7 투	1,391	1,338	53	796	57.2	542	
금성면	소 계	4,776	4,636	140	3,465 (137)	72.6	1,311 (3)	
	제 1 투	956	923	33	665	69.5	258	
	제 2 투	845	823	22	621	73.4	202	
	제 3 투	983	964	19	691	70.2	273	
	제 4 투	1,269	1,223	46	878	69.1	345	
	제 5 투	723	703	20	473	65.4	230	

○ 투 표 현 황

투표현황		유권자			투표자 (부재자)	투표율 (%)	기권자 (부재자)	비고
		계	투표자	부재자				
제원면	소 계	4,023	3,859	164	3,080 (156)	76.6	943 (8)	
	제 1 투	974	933	41	728	74.7	205	
	제 2 투	433	417	16	304	70.2	113	
	제 3 투	1,039	994	45	720	69.2	274	
	제 4 투	709	673	36	529	74.6	144	
	제 5 투	868	842	26	643	74.0	199	
부리면	소 계	4,529	4,304	225	3,505 (215)	77.4	1,024 (10)	
	제 1 투	1,805	1,700	105	1,350	74.7	350	
	제 2 투	987	937	50	716	72.5	221	
	제 3 투	1,093	1,053	40	757	69.2	296	
	제 4 투	644	614	30	467	72.5	147	
군북면	소 계	3,274	3,136	138	2,216 (134)	67.7	1,058 (4)	
	제 1 투	1,574	1,503	71	899	57.1	604	
	제 2 투	1,080	1,037	43	762	70.5	275	
	제 3 투	620	596	24	421	67.9	175	
남일면	소 계	3,684	3,525	159	2,685 (154)	72.9	999 (5)	
	제 1 투	961	932	29	641	66.7	291	
	제 2 투	1,281	1,217	64	867	67.6	350	
	제 3 투	442	1,376	66	1,023	70.9	353	

○ 투 표 현 황

투표현황		유권자			투표자 (부재자)	투표율 (%)	기권자 (부재자)	비고
		계	투표자	부재자				
남이면	소 계	3,083	2,962	121	2,120 (115)	68.8	963 (6)	
	제 1 투	617	580	37	392	63.5	188	
	제 2 투	203	199	4	137	67.4	62	
	제 3 투	919	894	25	607	66.0	287	
	제 4 투	631	616	15	425	67.3	191	
	제 5 투	713	673	40	444	62.2	229	
진산면	소 계	4,109	3,931	178	2,982 (173)	72.6	1,127 (5)	
	제 1 투	1,011	961	50	707	69.9	254	
	제 2 투	1,391	1,343	48	986	70.8	357	
	제 3 투	1,106	1,053	53	732	66.1	321	
	제 4 투	601	574	27	384	63.8	190	
복수면	소 계	3,796	3,656	140	2,833 (134)	74.6	963 (6)	
	제 1 투	978	948	30	692	70.7	256	
	제 2 투	1,495	1,432	63	1,053	70.4	379	
	제 3 투	1,323	1,276	47	954	72.1	322	
추부면	소 계	5,737	5,529	208	4,077 (200)	71.1	1,660 (8)	
	제 1 투	2,628	2,547	81	1,791	68.1	756	
	제 2 투	1,104	1,061	43	736	66.6	325	
	제 3 투	1,282	1,225	57	831	64.8	394	
	제 4 투	723	696	27	519	71.7	177	

2. 개표현황

錦山邑에서는 총 유효투표 9,574표중 鄭顯琇 후보가 3,342표 羅相奎후보가 2,657표를 錦城面에서는 총 유효투표 3,364표중 韓圭用후보가 2,095표, 濟原面에서는 2,981표중 許炳文후보가 1,698표를, 富利面에서는 3,421표중 吉扶燮후보가 1,873표를 득표하였고 郡北面에서는 2,146표중 朴贊憲후보가 1,087표를, 南一面에서는 朴天輔후보가 2,612표중 1,373표를, 南二面에서는 총 유효투표 2,063표중 吳圭英후보가 865표를 득표하였으며, 珍山面에서는 2,986표중 朴勝友후보가 839표를 득표하였고, 福壽面에서는 총 유효투표 2,776표중 太辰洙후보가 1,045표를 득표하였으며, 秋富面에서는 총 유효투표 3,978표중 李興滿후보가 2,051표를 득표하여 각각 당선 되었다.

○ 득 표 현 황

(금 산 읍)

투표구	유권자	투표자	후보자별득표현황 (유효)					무효표	기 권
			계	천동수	라상규	정현수	강재하		
계	16,542	10,319	9,574	2,576	2,657	3,342	999	745	6,233
제 1 투	1,882	1167	1,154	442	199	315	198	13	667
제 2 투	3,008	1,833	1,794	354	394	852	194	39	1,072
제 3 투	3,590	2,065	2,029	552	679	635	163	36	1,411
제 4 투	2,444	1,516	920	278	208	341	93	596	852
제 5 투	1,110	630	622	164	129	282	47	8	433
제 6 투	3,117	1,779	1,756	391	647	540	178	23	1,217
제 7 투	1,391	796	776	263	206	252	55	20	542
부재자		533	523	132	195	125	71	10	84

(금 성 면)

투표구	유권자	투표자	후보자별득표현황 (유효)					무효표	기 권
			계	임인택	한규용				
계	4,776	3,465	3,364	1,269	2,095			101	1,311
제 1 투	956	665	647	359	288			18	258
제 2 투	845	621	612	130	482			9	202
제 3 투	983	691	674	268	406			17	273
제 4 투	1,269	878	860	307	553			18	345
제 5 투	723	473	461	154	307			12	230
부재자		137	110	51	59			27	3

(제 원 면)

투표구	유권자	투표자	후보자별득표현황 (유효)					무효표	기 권
			계	김상원	허병문				
계	4,023	3,080	2,981	1,283	1,698			99	943
제 1 투	974	728	711	192	519			17	205
제 2 투	433	304	294	103	191			10	113
제 3 투	1,039	720	698	322	376			22	274
제 4 투	709	529	520	275	245			9	144
제 5 투	868	643	626	330	296			17	199
부재자		156	132	61	71			24	8

(부 리 면)

투표구	유권자	투표자	후보자별득표현황 (유효)					무효표	기 권
			계	송경섭	길부섭				
계	4,529	3,505	3,421	1,548	1,873			84	1,024
제 1 투	1,805	1,350	1,310	511	799			40	350
제 2 투	987	716	700	303	397			16	221
제 3 투	1,093	757	741	438	303			16	296
제 4 투	644	467	459	233	226			8	147
부재자		215	211	63	148			4	10

(군 북 면)

투표구	유권자	투표자	후보자별득표현황 (유효)					무효표	기 권
			계	박찬헌	김관식				
계	3,274	2,216	2,146	1,087	1,059			70	1,058
제 1 투	1,574	899	877	411	466			21	604
제 2 투	1,080	762	739	349	390			23	275
제 3 투	620	421	409	241	168			12	175
부재자		134	121	86	35			14	4

(남 일 면)

투표구	유권자	투표자	후보자별득표현황 (유효)					무효표	기 권
			계	박천보	김길천				
계	3,684	2,685	2,612	1,373	1,239			73	999
제 1 투	961	641	626	537	89			15	291
제 2 투	1,281	867	846	523	323			21	350
제 3 투	1,442	1,023	997	255	742			26	353
부재자		154	143	58	85			11	5

(남 이 면)

투표구	유권자	투표자	후보자별득표현황 (유효)					무효표	기 권
			계	오규영	김병성	황해수			
계	3,083	2,120	2,063	865	722	476		57	963
제 1 투	617	392	385	237	96	52		7	188
제 2 투	203	137	131	67	36	28		6	62
제 3 투	919	607	597	83	259	255		10	287
제 4 투	631	425	407	290	84	33		18	191
제 5 투	713	444	436	155	204	77		8	229
부재자		115	107	33	43	31		8	6

(진 산 면)

투표구	유권자	투표자	후보자별득표현황 (유효)					무효표	기 권
			계	박승우	송석호	오래근	하선국		
계	4,109	2,982	2,982	839	750	630	677	86	1,127
제 1 투	1,011	707	691	160	43	381	107	16	254
제 2 투	1,391	986	956	443	160	95	258	30	357
제 3 투	1,106	732	717	84	483	63	87	15	321
제 4 투	601	384	378	127	28	63	160	6	190
부재자		173	154	25	36	28	65	19	5

(복 수 면)

투표구	유권자	투표자	후보자별득표현황 (유효)					무효표	기 권
			계	김갑수	유태식	최우영	태진수		
계	3,796	2,833	2,776	501	715	515	1,045	57	963
제 1 투	978	692	675	306	138	22	209	17	256
제 2 투	1,495	1,053	1,035	83	396	77	479	18	379
제 3 투	1,323	954	943	88	147	385	323	11	322
부재자	0	134	123	24	34	31	34	11	6

(추 부 면)

투표구	유권자	투표자	후보자별득표현황 (유효)					무효표	기 권
			계	한태희	김제창	이홍만			
계	5,737	4,077	3,978	1,628	299	2,051		99	1,660
제 1 투	2,628	1,791	1,752	720	64	968		39	756
제 2 투	1,104	736	727	279	26	422		9	325
제 3 투	1,282	831	808	339	57	412		23	394
제 4 투	723	519	517	241	122	154		2	177
부재자		200	174	49	30	95		26	8

3. 당선자 현황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계	11 명					
금산읍	정현수	46. 3.19	하옥 344-6	상 업	대학원수료	개발위원회부위원장
	라상규	42.11. 9	중도 225-22	금융업	대 졸	충청남도민방위강사
금성면	한규용	46. 4.11	하류 756	농 업	대학원수료	금성농업협동조합장
제원면	허병문	55. 8. 5	제원 153-36	금융업	고 졸	제원농업협동조합감사
부리면	길부섭	48. 6. 6	현내 783-6	제조업	대 졸	농어촌특산단지중앙회 이 사
군북면	박찬헌	40. 4.28	두두 361	제조업	대 졸	바르게살기 군북면위원장
남일면	박천보	60. 1. 9	상동 288	제조업	고 졸	전국농어민후계자 충남부회장
남이면	오규영	35. 2.27	역평 349	농 업	대 졸	금산군의료보험조합감사
진산면	박승우	35. 2. 4	읍내 204	농 업	대학원수료	대전보호관찰소보호위원
복수면	태진수	35.11.17	곡남 147	농 업	중·고과정 독학	금산군군정자문위원
추부면	이홍만	44. 5. 5	마전 414-21	약 사	대 졸	충남약사회이사

제1절 개 원 준 비

1. 자치법규 정비

의회운영에 기본이 되는 관련 자치법규 9종에 대하여 기초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하여 제정한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 번	자 치 법 규 명	공 포 일	비 고
1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91. 4.12	
2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91. 4.12	
3	금산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91. 4.12	
4	금산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91. 4.12	
5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1. 4.12	
6	금산군의회 공인 조례	'91. 4. 4	
7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91. 4.12	
8	금산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91. 4.12	
9	금산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91. 4. 4	

2. 의회시설 확보

가. 청사확보

의회청사는 군청내에 별관(3층)을 '90.7.21. 착공하여 총공사비 404,131천원으로 '91.4.27준공하였으며 1층은 군청에서 사용하고 2층 및 3층은 의회에서 사용하는 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청사현황

〈3 층〉

<table>
<tr><td rowspan="2">(방청석)
(기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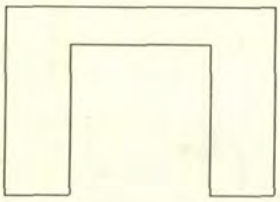
본 회 의 실
(39 평)</td><td>방 송 실</td><td>위원회회의실
(19평)</td><td>서 고
(10평)</td></tr>
<tr><td colspan="3"></td></tr>
<tr><td></td><td>화 장 실</td><td colspan="2">자 료 실
(14 평)</td></tr>
</table>

〈2 층〉

<table>
<tr><td colspan="2">의 원 사 무 실
(29 평)</td><td>부 속 실
(10평)</td><td>의 장 실
(19 평)</td></tr>
<tr><td rowspan="2">의 회 사 무 과
(20 평)</td><td colspan="3"></td></tr>
<tr><td>화 장 실</td><td colspan="2">부 의 장 실
(14평)</td></tr>
</table>

나. 내부시설

(단위 : 천원)

시 설 명	의회집기	사무집기	음향시설	통신시설	기 타	비 고
금 액	48,700	3,100	16,000	7,000	16,300	

3. 의회 개원 필수요원 교육

가. 준비요원 교육

시.군.구에 의회개원 준비요원으로 6급 1명을 '91.1.15~2.1까지 3주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한 지방의회과정 교육을 이수하여 의회 개원에 대비 하였다.

나. 사무직원 교육

시.도 공무원교육에서 준비요원 교육을 이수한 시.도 공무원교육원 교관이 중심이 되어 시.군.구 의회에 배치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반 과정 교육을 실시한 바 본군에서도 7급 1명, 8급 1명이 2주간에 걸쳐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개원 임시회에 대비 하였다.

다. 간사요원 교육

의장과 의원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사무기구를 통할 관리해야 할 간사요원에 대한 교육은 내무부 주관으로 '91.4.8~4.10까지 3일간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실시한 바 본군도 1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회의운영과 의회 행정업무 처리에 대처 하도록 하였다.

4. 속기제도 운영

의회 회의운영의 필수사항인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속기사의 확보문제가 검토되었으나 속기사 확보 곤란으로 채택한 것이 녹음제도로 녹음풀이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를 구입하여 회의록 편집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5. 의원 당선자 세미나 참가

충청남도에서는 의원당선자 세미나를 '91.4.10천안 복지농도원에서 실시 본군에서는 의원 당선자 11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 운영요령을 익히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집행기관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제2절 의 원 등 록

1. 근 거

금산군의회 의원등록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 간사에게(이후 사무과장으로 개정)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의원 당선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의회사무과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2. 등록 안내문 송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초대 금산군의회 의원 당선자에게 의원 당선증서를 '91.3.27교부함에 따라 당선의원에게 의원등록에 필요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송부하였다.

- ○ 의원 등록 신청서 ····· 1 통
- ○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서 ····· 1 통
- ○ 당선증서 사본 ····· 1 통
- ○ 이력서(한글 4통, 영문 1통) ····· 5 통
- ○ 호적 등본 ····· 2 통
- ○ 주민등록 등본 ····· 2 통
- ○ 증빙서류용 및 의원서명 인장등록 카드 ····· 1 통
- ○ 일비 수령용 의원서명 및 인장등록 카드 ····· 1 통
- ○ 의회수첩 수록 자료 ····· 1 통
- ○ 사진(등록안내문 참조) ····· 9 매

3. 등록접수

- ○ 등록기간 : '91.4.3~4.10
- ○ 접수장소 : 금산군의회사무과
- ○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외 9종
- ○ 등록접수 : 당선자 11명 전원 등록

의원등록 현황

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선거구	주소
번호	등록일자	한글	한자			
1	'91. 4. 3	이흥만	李興滿	440505-1447711	추부면	마전리 414-21
2	'91. 4. 4	태진수	太辰洙	351117-1408017	복수면	곡남리 147
3	'91. 4. 4	박찬헌	朴贊憲	400428-1447119	군북면	두두리 361
4	'91. 4. 4	라상규	羅相奎	421109-1446719	금산읍	중도리 225-22
5	'91. 4. 6	허병문	許炳文	550805-1446919	제원면	제원리 153-36
6	'91. 4. 7	오규영	吳圭英	350227-1447411	남이면	역평리 349
7	'91. 4. 8	한규용	韓圭用	460411-1446825	금성면	하류리 756
8	'91. 4. 8	박천보	朴天輔	600109-1447316	남일면	상동리 288
9	'91. 4. 8	길부섭	吉扶燮	480606-1447015	부리면	현내리 783-6
10	'91. 4. 9	박승우	朴勝友	350204-1447518	진산면	읍내리 204
11	'91. 4.10	정현수	鄭顯琇	460319-1446722	금산읍	하옥리 344-6

제3절 개 원

1. 최초 임시회 소집공고

총 선거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산군수가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 ○ 집회공고일 : 1991년 4월 9일
- ○ 집 회 일 시 : 1991년 4월 15일(월) 10 : 00
- ○ 집회요구자(공고자) : 금산군수 류응상
- ○ 집 회 장 소 : 금산군의회 본회의실

2. 개원준비

○ 준비일정

1991년 3월 26일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후 선거일로부터 개원전까지의 준비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개원 임시회를 위한 모든 시설, 비품, 용구 등을 철저히 점검 배치하였고 사전에 충분한 예행연습으로 개원에 차질없도록 준비하였다.

○ 개원 준비 일정표

일 정	준 비 내 용
'91. 3.25	· 금산군의회의원 당선자 명단통보 협조(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91. 3.26	·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
'91. 3.27	· 당선의원 파악 및 의원명단 작성
'91. 3.31	· 의원등록 안내문 발송
'91. 4. 2	· 제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좌석배치도 결정

일 정	준 비 내 용
'91. 4. 2	· 제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표소부착 의원명단 작성
	· 의회 현판 제작
'91. 4. 9	· 집회공고(공고자 : 금산군수 류응상)
'91. 4.10	· 회의자료용품 준비 : 사회순서, 투표방법 안내문, 투표호명명부 투표용지(인쇄), 기표용구
	· 개원행사 자료준비 : 의장개회사, 의원선거 안내문, 선서문
'91. 4.11	· 초청장 및 집회안내문 발송
	· 축하연 준비계획 수립, 방청권 인쇄
'91. 4.13	· 개원식 예행연습, 행사요원 협조
'91. 4.15	· 개원
	· 의장단 선출 회의후 의석결정 명패부착

○ 회의장 점검

회의에 필요한 각종집기의 정돈과 의장단선거에 필요한 비품, 용구의 배치는 물론, 녹음, 방송, 전기, 통신 시설을 일제히 점검하였다.

원구성 이후의 좌석배치는 의장석에서 좌측부터 지역구별 다수 득표순으로 배치하였다.

○ 개원전 예행연습

회의장을 일제히 점검하고 필요한 용품을 배치한 후 '91.4.13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의회 간사 주관으로 회의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협조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임시회 및 개원식 준비에 대한 예행연습을 가졌다.

3. 원 구 성

1991년 4월 15일 오전10시 제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장 의원인 박승우 의원의 사회로 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금산읍 라상규 의원이 6표, 금산읍 정현수 의원이 3표, 부리면 길부섭 의원이 2표를 각각 득표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금산읍의 라상규 의원이 당선되었다.
곧이어 당선된 라상규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는 복수면 태진수의원 4표, 금성면 한규용의원 3표, 남일면 박천보의원 2표, 진산면 박승우의원 1표, 추부면 이홍만의원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2차투표 결과 복수면 태진수의원 4표, 남일면 박천보의원 4표, 금성면 한규용후보 3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최고득표자간의 결선투표를 하였다. 투표결과 태진수의원 7표, 박천보의원 4표를 득표하여 다수 득표한 태진수 의원이 당선 되었다.
의회의 의결정족수에는 일반의결정족수와 특별의결 정족수가 있으며, 일반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의장단 선출은 일반의결 정족수로 의결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고 부의장은 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991년 4월 15일 11시 23분에 의장에 라상규의원, 부의장에 태진수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금산군의회 원구성을 마쳤다.

4. 개 원 식

원구성을 마친후 중식 및 휴식을 한 후 15 : 00시에 본회의장에서 유관기관 단체장 및 지역인사 100여명이 초청된 가운데 금산군의회 개원식이 성대히 거행됐다.

○ 개원식순
- · 개　　식
- · 국기에 대한 경례
- · 애국가 제창
- ·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
- · 의원선서
- · 개회사
- · 축　사
- · 폐　식

이날 개원식에서는 의원 선서를 라상규 의장이 선창하여 11명 전의원이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9만 군민 앞에 선서하였다.

또한 의장의 개회사에 앞서 노태우 대통령의 축하 멧세지를 의장이 대독하였으며 군수가 축사전에 안응모 내무부장관의 축하전문 및 한청수 충남도지사의 축하 전문을 소개하였고, 축사뒤에는 여러건의 축하 전문중 유근창 충남발전협의회장의 축하전문을 육순우 간사가 소개하였다.

5. 기타행사

개원식이 끝난후 15시 30분에 의장단,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지부장등 기관장이 현판식을 가졌으며 주위에는 의원들 및 내빈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냈으며 이어서 초대 금산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개원을 기념하는 기념식수가 의원11명의 정성어린 손길로 섬잣나무 1그루를 식수 하였으며 16시에는 금산군청 회의실에서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다과회를 가졌다.

노태우 태통령 축하 메세지

오늘 역사적인 금산군의회의 개원을 축하합니다.
30년만에 다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게된 것은 온국민의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에 의해 의원 여러분이 선출된 것은 여러분의 긍지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군.구부터 주민이 선출한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확고한 바탕을 마련 했습니다.
저는 시.군.구의회가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민주주의를 굳건히 뿌리내려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은 새로 출범하는 시.군.구의회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진정한 대의 기구가 되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져 민주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고장의 의회와 그 일꾼들이 많은 일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금산군의회의 훌륭한 활동으로 오늘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연날로 기록될 것을 확신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1년 4월 15일

대 통 령 노 태 우

안응모 내무부장관 축하전문

오늘 역사적인 지방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귀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1년 4월 15일

내무부장관 안 응 모

한청수 충남도지사 축하전문

오늘 금산군의회의 뜻깊은 개원을 2백만 도민과 함께 축하 드리오며 오늘을 계기로 금산군의 밝은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축원 합니다.

1991년 4월 15일

충청남도지사 한 청 수

유근창 충남발전협의회장 축하전문

오늘 금산군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충남발전협의회 전회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오늘 역사적인 개원을 계기로 밝고 희망된 미래가 창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1년 4월 15일

충남발전협의회장 유 근 창

개 회 사

존경하는 류응상 군수님, 조남석 경찰서장님, 장원용 금산교육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1대 금산군의회 개원을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자리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아래 실로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의 참뜻에 의해 구성된 금산군의회가 우리 금산군민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지방화 시대의 장을 여는 자리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 역사적인 제1대 금산군의회의 의장으로서 개회사를 하게 된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앞에 전개될 주민복지의 증진과 지역 이익의 수렴 정책반영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과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하게 된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를 이곳에 보내준 금산군민 앞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자리에 모였습니까? 모든 행정이 중앙집권적이었던 과거 행정에서 참다운 지방정치를 실현하라는 군민의 외침에 의해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이익이 대변되고 공평이 확보되며 평화가 보장되고 번영이 추구 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그것을 가능케하는 새로운 자치법제 관행을 창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라고 우리는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선발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후세의 우리 자손들이 제1대 금산군의회가 실질로 우리 금산군의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치기로 군민 앞에 겸허하게 서약 합시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이 의사당안에 수용하여 토의하고 해결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며 그 작업은 참으로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신성한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첫째, 보편성에 충실한 가치, 즉 우리가 상식으로 부르는 가치기준과 둘째, 충분한 토의를 거친 합의인 것입니다. 셋째로 합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이 세가지라고 본인은 삼가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로 주민을 위하여 진실로 품격높은 지방정치를 위해 의원과 의원 자치단체 사이에 천진스런 어린이처럼 머리를 맞대기로 합시다. 주민들은 누가 진실한 봉사자 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부족한 본인이 의장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고 없고는 오직 의원 여러분의 지지여부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우리금산 우리군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하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마침내는 분리될 수 없는 동지라는 사실을 본인은 확인 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우리 금산군민을 위해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4월 15일

금산군의회의장 **라 상 규**

축 사

존경하는 라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온군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지방화 시대의 새장을 여는 역사적인 제1대 금산군의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축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4년동안 본 의회 의사당에서 9만 군민을 위하여 일을 하시게 될 여러 의원님들께도 마음으로부터 6백여 산하 공직자를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 살아 보자는 온 국민적 바램과 하면 된다는 일화와 같은 의지 하나만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까지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그리하여 70년대의 우리는 근면과 성실로 일치 단결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 하였고 80년대의 우리는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태평양 시대를 여는 21세기의 나라라는 칭송과 함께 한국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그동안 닦아 놓은 민주역량을 한데 모아 참다운 지방화의 초석을 쌓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기둥을 세워야 하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일들을 중앙의 통제없이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 처리하는 정치행정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지방분산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복지를 확대 증진해 나가는 것을 뜻 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자율과 자치의 권한을 향유케 하는것 이상으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장구한 중앙집권적 전통을 청산하고 지방분권적 주민자치의 도도한 민주과정에서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고장 우리주민들이 잘살고 못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울고 넘던 보리 고개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보다더 중요한 것은 어제 보다는 오늘이며 오늘 보다는 내일 입니다. 보다 희망찬 미래를 가꾸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군정이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기와 지혜를 한데 모아 이 지역의 내일을 설계하는 동반자적 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 합니다.

바람직한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확실한 미래는 오로지 지방의회와 군정이 함께하는 건전한 토양 위에서만이 인삼의 고장 충절의 새금산이라는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태초에 하늘이 열리고 진악산 산신령이 인삼의 씨앗을 현몽하신 이후 이 고장을 가꾸고 지켜왔던 끈끈한 우리들의 저력을 다시한번 발휘하여 자랑스러운 고장 아름다운 금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새역사 창조의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산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4월 15일

금산군수 류 응 상

제 4 장 의회운영

제1절 제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제2절 제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제3절 제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3. 제3차 본회의

제4절 제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제5절 제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3. 제2차 본회의

제6절 제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 제2차 본회의

제7절 제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3. 제3차 본회의

제8절 제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3. 제2차 본회의

제9절 제9회 금산군의회(정기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3. 제3차 본회의
4. 제4차 본회의
5. 제5차 본회의
6. 제6차 본회의
7. 제7차 본회의
8. 제8차 본회의
9. 제9차 본회의
10. 제10차 본회의
1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절 제1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제11절 제1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제12절 제1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제13절 제1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 제2차 본회의

제14절 제1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3. 제3차 본회의
4. 제4차 본회의

제15절 제1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3. 제3차 본회의
4. 제4차 본회의

제16절 제1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 제2차 본회의

제17절 제17회 금산군의회(정기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3. 제3차 본회의
4. 제4차 본회의
5. 제5차 본회의
6. 제6차 본회의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8.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8절 제1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3. 제3차 본회의

제19절 제19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제20절 제2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제21절 제2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제22절 제2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 제2차 본회의

제23절 제2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제24절 제2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제25절 제2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제26절 제2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4. 제2차 본회의

제27절 제27회 금산군의회(정기회)

1. 제 1차 본회의
2. 제 2차 본회의
3. 제 3차 본회의
4. 제 4차 본회의
5. 제 5차 본회의
6. 제 6차 본회의
7. 제 7차 본회의
8. 제 8차 본회의
9. 제 9차 본회의
10. 제10차 본회의
1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8절 제2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제29절 제29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제30절 제3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 제2차 본회의

제31절 제3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3. 제3차 본회의
4. 제4차 본회의
5. 제5차 본회의

제32절 제3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3. 제3차 본회의
4. 제4차 본회의

5. 제5차 본회의
6. 제6차 본회의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8. 제7차 본회의

제33절 제3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3.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4. 제2차 본회의

제34절 제34회 금산군의회(정기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3. 제3차 본회의
4. 제4차 본회의
5. 제5차 본회의
6. 제6차 본회의
7. 제7차 본회의
8. 제8차 본회의
9. 제9차 본회의
10.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5절 제3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3. 제3차 본회의
4. 제4차 본회의
5. 제5차 본회의
6. 제6차 본회의

제36절 제3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제2차 본회의

제37절 제3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 제2차 본회의

제 1 절 제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91년3월26일 금산군의회 의원 총선거 실시로 11명의 의원이 당선 전원 등록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1년4월9일 금산군수가 소집공고를 하였다.

제1회 임시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1. 4. 15 (10 : 00)	1 차	1. 의장 부의장 선거 2. 회기 결정 3. 군정보고의 건	○ 집회보고 ○ 의장 부의장 당선 인사
(15 : 00)		개원식	○ 축사 ○ 현판식
'91. 4. 16 (14 : 00)	2 차	1. 군정 보고 2. 군정 질문	○ 간부 공무원 소개 ○ 기획실장 군정보고

1. 제1차 본회의

제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의원 11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에 육순우 간사로부터 집회보고를 들은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인 박승우 의원의 사회로 의장.부의장 선거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다. 선거에 앞서 선거구 순으로 의원소개와 사무직원 인사가 있었으며 곧이어 10시10분부터 20분간 진행된 의장 부의장 선거는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한바 라상규의원 6표, 정현수의원 3표, 길부섭의원 2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라상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라상규 의장의 사회로 곧바로 시작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태진수의원 4표 한규용의원 3표, 박천보의원 2표, 박승우의원 1표, 이홍만의원 1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어 20분간 정회 후 제2차 투표를 실시한바 총투표수 11표중 태진수의원 4표, 박천보의원 4표, 한규용의원 3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어 곧이어서 최고득표자인 태진수 의원과 박천보 의원이 결선투표결과 태진수의원 7표, 박천보의원 4표로 다수득표를 얻은 태진수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이날 회의는 제1대 금산군의회 의원 임기 4년중 전반기 2년 동안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을 선출한 후 회기결정과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후 산회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4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된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은 군정보고의 건으로 류응상 금산군수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었으며 기획실장으로부터 일반현황과 90년도 군정의 성과, 91년도 업무계획및 자체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의원들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해당 실과장들의 답변을 들은뒤 17시56분에 산회하였다.

○ 군정보고 질문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정 현 수 의 원	○ 금산 인삼 백화점 건설 계획	기획실장 강 병 순	○ 인삼 종주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국제인삼시장 주변에 인삼백화점을 건설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협의로 갈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겠음.
	○ 경로당 시설 확충 방안	사회과장 전 영 식	○ 경로당 현황은 12개소에 3,327명으로 예산지원은 연료비 연간 10만원 지급과 운영비로써 14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읍면에 1개소씩 전화가설과 목욕탕을 설치했으며 금년에도 계속 추진중
	○ 불우청소년 지원 및 향후 계획	〃	○ 소년소녀 가장은 12세대에 23명으로 300만3천원을 교통비, 피복비, 간식비, 학용품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학비는 전액 면제되고 생계비는 거택보호 대상으로 취급하여 생계비, 백미,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정 현 수 의 원	○ 직업훈련원과 참전 상이용사의 지원 계획	사회과장 전 영 식	○ 직업훈련원 훈련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와 의료부조자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이수 후 자격취득자에게 취업을 알선함 계속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임 ○ 참전 상이용사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보조금 지원
	○ 도로 포장율과 계획	건설과장 홍 석 중	○ 국도와 지방도 군도는 22개 노선에 221㎞로 지방도는 92년까지 100%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3년도에 완공이 가능하며 군도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92년까지는 80%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 주거지역 상업지역 변경 내용	도시과장 정 정 학	○ 금산군은 주거지역이 80.5% 상업지역 10.5% 준주거지역 4.5% 공업지역 4.5%로 상업지역의 용도변경은 도시계획법상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며 도시계획법상 상업의 평균비율을 검토하며 금산읍은 상업지역이 10.5%가 됨으로 평균 비율이 높아 변경이 안됨
박 천 보 의 원	○ 상수도 장기계획	도시과장 정 정 학	○ 금산읍 상수도는 급수비율이 86%로 아파트 건립 한국타이어 공장 건립 수몰이재민 금산읍 유입 등으로 상수도 확장율 증가로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 운용 및 단기적으로는 비상예비 탱크 설치, 군민의 절수운동과 제한급수로 해결, 광역상수도는 용담댐이 완공되면 연계하여 추경에 용역비 계상, 상수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 천 보 의 원	○ 한국타이어 입주로 인한 공해 여부	사회과장 전 영 식	○ 환경오염 평가를 실시하여 조치토록하며 제원면민과 담당공무원들이 신탄진과 인천공장을 현지 방문한 결과 별 공해가 없다고 판단됨
	○ U.R 대응책	산업과장 김 시 중	○ 농어민 후계자 육성으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업기계화 소득 증대를 꾀하겠음
	○ 면직원 사기진작과 유공직원 특전	내무과장 최 용 준	○ 승진 후보자는 1년에 두번 작성하며 농공단지관계 공이 많은 공무원을 계장으로 승진시켰으며 표창수여 등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겠음
	○ 금성농공단지 조성 추진 현황	기획실장 강 병 순	○ 금성면 하신리에 6만5천평의 규모로 조성되며 6월말까지 부지조성 계약을 완료하고 12월말까지 하천이나 도로에 따르는 사회간접시설을 병행하여 추진 92년 1월까지는 정상 가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음

제 2 절 제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는 원구성을 위한 최초 집회인 제1회 임시회 이후 45일만에 금산군수가 제출한 '90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1년 5월 22일소집공고를 하여 '91년 5월 30일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제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의원 11인이 출석한 가운데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육순우 간사로 부터 집회보고를 들은뒤 라상규 의장의 제의로 제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의 회기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제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수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1.5.30 (목요일) (14 : 00)		○ 개 회 식	
	1	1. 제2회 금산군 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금산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결의 안 3. '91 군도포장공사 채무부담 행위 의결에 관한 건 4.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장 제의 오규영 의원외 2인 발의 금산군수 제출 〃
'91.5.31 (금요일) (10 : 00)	2	1. '90 금산군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금산군수 제출

나. 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의 건

지방의회는 주민 자치권 보호와 참된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새기면서 명예스러운 지방의회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오규영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의원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錦山郡議會 議員 倫理綱領】

우리 錦山郡議會는 住民 自治權 保護와 참된 民主主義를 定立하는 莫重한 使命感을 새기면서 名譽스러운 地方議會 位相과 議員像을 定立하기 위하여 스스로 遵守할 倫理綱領을 定한다.

1. 우리는 郡民의 代表者로서 人格을 갖추고 禮節을 지킴으로써 議員의 品位를 維持하며 郡民의 意思를 代辯하는데 最善을 다한다.
2. 우리는 郡民을 위한 奉仕者로서 郡民의 福利增進을 위하여 公益 優先으로 誠實하게 職務를 遂行하며 郡政의 均衡 發展과 自治 能力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데 礎石이 된다.
3. 우리는 議員의 職務와 關聯하여 어떠한 不法과 不義와 妥協하지 아니하며 一切의 利權 介入이나 非理와 野合하지 아니하고 淸廉하고 儉素한 生活을 率先한다.
4. 우리는 議會의 構成員으로서 議定 活動上 相互 公正한 與件과 機會 均等을 保障하고 充分한 對話로써 모든 問題를 解決하며 法節次를 遵守하므로써 健全한 議會 風土를 造成한다.
5. 우리는 地方議會 議員으로서 公私間에 모든 行爲를 함에 있어 언제나 分明한 責任을 지며 住民과 行政의 共同體 意識을 키우는 求心的 役割을 다한다.

다. '91 군도포장공사 채무부담 행위 의결에 관한 건

'91년 5월 27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1 군도포장공사 채무부담 행위 의결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군의 군도는 총 12개 노선 27.7㎞를 포장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충남도의 계획에 의거 5개노선 14.8㎞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총사업비 3,808백만원중 2,532백만원 지방양여금 2,033백만원 군비 499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재정형편상 1,270백만원은 미확보 상태이며 따라서 채무부담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 사업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92년도에 일시상환코져 하는데 있다고 홍석중 건설과장은 제안이유를 설명하였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으며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주요골자

〈'91 군도포장 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노 선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기확보	채무부담행위액	
5개 노선	14.8 km	3,808	2,532	1,276	
금 산 ~ 남 이 (군 도 1 호)	6.5 km	1,570	294	1,276	
흑 암 ~ 신 천 (군 도 2 호)	1.5 km	500	500		
흑 암 ~ 역 평 (군 도 3 호)	1.5 km	510	510		
부 리 ~ 금 산 (군 도 7 호)	1.5 km	380	380		
남 이 ~ 진 산 (군 도 8 호)	3.4 km	848	848		

○ 심의의안

'91년도에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채무부담 1,276백만원 의결

나. 금산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본 조례안은 '91년5월27일 금산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김시중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개정이유는 금산군 실과규칙 및 직제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금산군 초지조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식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하고 각호 위원중 농산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지적과장 도시과장을 삽입하며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 5인이내를 2인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심의결과 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2. 2차 본회의

제2차 본회의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90금산군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91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되었다.

가. 90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90 결산심사위원은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원 1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중 2인을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의원들의 사전협의로 박찬헌 의원과 금산군수가 추천한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 황선동 계장, 축산업협동조합 김진명 대리가 의원투표로 선출되었다.

제 3 절 제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현수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1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렸으며 안건은 군정질문 및 조례안 2건을 상정 의결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여 '91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으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며 제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박찬헌의원, 박천보의원 두 의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제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1.7.3 (10 : 00)		○ 개 회 식	
	1	1. 제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제의 금산군수 제출 〃 정현수의원외 2인발의
'91.7.4 (14 : 00)	2	1. 군정에 관한 질문	
'91.7.5 (10 : 00)	3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나. 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개정이유는 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실상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불균일과세) 본문중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할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다.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통한 행정여건의 변동과 관련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조례정비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행정의 능동적 수용능력을 증대시킴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5조 제1항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을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한다.
제16조 제1항중 "별지 제3호 서식 제3항중"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한다.
제27조 제1항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제28조 "별지 제5호서식"을 별첨과 같이한다로 되어 있다.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다.

라.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 안건은 정현수의원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정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군정질문과 금산군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로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금산군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7월 4일 제2차, 7월 5일 제3차 본회의에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 제2차 본회의

제2차 본회의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에 수록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 질문.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정 현 수 의 원	○ 군의 재산으로 명의변경된 재산의 관리 상태	재무과장 김 진 해	○ 본군에 귀속됐다 하더라고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마을에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무상사용. 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정절차에 의해 귀속된 동답, 위토답은 재산의 환원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임.
	○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 설치계획 및 실시계획은?	도시과장 박 래 훈	○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도시계획수립 후 5년마다 도시기본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게 되며 불합리한 지역 지구 구역에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포장도로 건널목 설치	건설과장 홍 석 중	○ 도로교통법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으나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는 관할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정 현 수 의 원	○ 골재트럭 난폭운전 방지 대책	건설과장 홍 석 중	○ 제원면 명암리에서 현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바 수많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어 현장에 직원을 주재시키면서 적재량및 포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경찰과 협조하여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봉황천 일대 땅버들 제거 문제	건설과장 홍 석 중	○ 땅버들이 심어진 것은 홍수때 제방, 둑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권장도 하였지만 현재에 이르러는 제방등의 계수등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하천골재라든지 채취하는 구역내에는 하천정리를 우선하여 땅버들이나 토사등을 정리하여 하상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한 규 용 의 원	○ 군관내 각급 공사시 업자 선정 문제	재무과장 김 진 해	○ 10억원 이상은 전국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되고 10억원 미만은 지방업자 보호측면에서 대전과 충남도내 업자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일 때는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관내 재무부령 업자에게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길 부 섭 의 원	○ 평촌~도파, 신촌~어재간 도로의 군도 승격 용의 대책	건설과장 홍 석 중	○ 현재 농어촌 소득원 도로라든지 리간, 부락간 도로포장이 내년도 부터는 양여금이 각 시군에 배정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노선에 대하여는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군도승격이 되도록 추진하겠음
허 병 문 의 원	○ 골재채취로 인한 피해 대책	건설과장 홍 석 중	○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했고 앞으로 충분한 조사를 하여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사가 되는대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겠음
박 찬 헌 의 원	○ 새마을농로 진입로 개인소유 토지분 정리 촉구	새마을과장 최 윤 현	○ 작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하여 각 읍면별로 새마을 토지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각 읍면별로 미분할된 토지는 분할을 촉진하고 분할된 사유토지는 개별 설득을 꾸준히 추진해서 금산군수 명의로 등기이전을 추진중에 있음

3. 제3차 본회의

제3차 본회의는 군정질문 이틀째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에 수록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길 부 섭 의 원	○ 금산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계획	기획실장 강 병 순	○ 금산군 종합건설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대진고속도로의 개통과 용담댐 건설등 대전권 배후기지로서의 입지여건과 개발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인삼붐의 감퇴현상과 이농현상에 따르는 지역적인 개발효과를 최대한 수용하고 국가정책과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2000년대 군정의 방향을 제시해서 군민들에게 금산군의 발전에 비전을 줄수 있는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 전북여객 완행버스 중단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	지역경제과 장 김 희 철	○ 진안 군민의 일부와 금산군 주민 학생등의 교통불편과 금산시장.경제에 침체가 예상되며 중단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중단 즉시 한일교통으로 하여금 버스 2대 증차를 도에 신청토록 하여 교통부에 현재 제출되어 검토중에 있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회사로 하여금 교통부장관에게 재결신청을 받도록 촉구해서 주민교통의 편의와 시장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 천 보 의 원	○ 인사문제의 공정성	내무과장 최 용 준	○ 가능한 신규자를 발령할 때는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전보시는 연고지를 위주로하되 장기근속 자를 순환시키며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음
	○ 명예읍면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	내무과장 최 용 준	○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발전에 열의가 있는 출향인사들에게 각종 군정 홍보자료를 송부해 주고 봉사활동의 기회와 행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서 적극 참여가 되도록 유도하겠음
	○ 금산읍 도시계획 불균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없는지	도시과장 박 래 훈	○ 도시발전을 꾀하고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배분과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지도소 이전계획과 문화원을 구. 문화원으로 옮긴 이유는?	문화공보실 장 최 정 민	○ 금산문화원은 현 농촌지도소 건물에서 85년 7월까지 운영이 되었으나 그당시 시내 중심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었으며 불량청소년들의 건물파손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도소 이전 방안은 군민 여론 수렴과 금년도 하반기 92년도 재정 전망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 천 보 의 원	○ 퇴임 농촌지도사 육성계획	농촌지도소 장 허 일 범	○ 퇴직한 농촌지도사들을 조직화하여 협력체제가 갖추어진다면 현 농촌지도소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자문도 받고 농민의 여론과 지도소와의 교량역활도 해주며 새로운 시책구상도 제시하여 주는 등의 모임체로 유도해 나가도록 구상을 하겠음
태 진 수 의 원	○ 불법 건축물 선별 단속 내용	도시과장 박 래 훈	○ 군청 및 각 읍면에 상설 단속반 11개반에 83명을 편성하여 계속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0년도 18건 적발, 91년도 6월말 현재 9건을 적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음
한 규 용 의 원	○ 금산읍 쓰레기 처리문제	청소계장 한 상 대	○ 쓰레기 처리장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상 문제점이 있으나 차폐식수를 완벽하게 시설하여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시설. 위생처리 시설도 병행. 주민전염병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음
	○ 시내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 대책	지역경제과 장 김 희 철	○ 금산읍 일원 5개소 1,540평에 58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4개년 계획을 연초에 수립. 91년부터 94년까지 23개소에 1만2,200여평의 면적을 확보. 2,8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허 병 문 의 원	○ 한국타이어 알미늄 휠공장 건립 문제	지역경제 과 장 김 희 철	○ 도로부터 개발촉진 공업용지 지구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장건립 신고 수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91년 5월 22일 개발행위 신고를 수리하여 착공
박 천 보 의 원	○ 소방차 보급 현황	민 방 위 과 장 정 정 학	○ 금산읍에 대형 소방차 2대, 소형 소방차 2대, 농촌형 소방차 1대, 제원. 부리. 복수에 농촌형 소방차 각 1대, 추부. 진산면은 소형소방차 각 1대로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남이면에 보급할 소방차를 조달청에 요구중에 있음
	○ 소방공동시설세 90년도 징수실적	민 방 위 과 장 정 정 학	○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징수는 5,794만 7천원이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출예산 경비 반영은 세입 5,774 만7천원보다 266.5%가 증가한 1억5,393만 6천원으로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하고 있음
오 규 영 의 원	○ 보건지소의 노후화된 의료기기 대처 방안	보건소장 권 희 영	○ 89년에 이어 90년도에도 치과 소독기 방역소독기 등 20점 1,300만원 상당을 국비. 군비를 포함 공급했으며 보사부, 도, 군의 지원을 더 많이 얻도록 하여 양질의 의료기기를 지원받도록 전력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오 규 영 의 원	○ 보건지소 근무 치위생사 사기앙양 방안	보건소장 권 희 영	○ 보건소장 회의때나 보사부에 건의하여 정규직으로 양성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박 승 우 의 원	○ 농촌지역 분뇨처리 대책	청소계장	○ 농가에서 분뇨수거료 부담으로 미화반 기피현상, 폐기물 관리법 제45조에 의거 도로, 하천에 쓰레기 및 분뇨 무단 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칙을 부락 앰프방송 및 각 읍면계장 회의시 회보를 활용 적극적인 홍보와 수시 순회 단속토록 하겠음
태 진 수 의 원	○ 하절기 방역 대책	보건소장 권 희 영	○ 연막소독과 취약지 잔류소독 축사일제 소독을 구분실시하며 연막소독은 6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우천시 제외 매일 실시하며 90회의 목표로 실시하고, 관내 취약지인 쓰레기장, 공동변소, 하수구 등을 10월 10일까지 90회 실시. 축사는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격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공중보건의 근무 불성실 대처 방안	보건소장 권 희 영	○ 공중보건의 대부분이 사회경험이 없어 여러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되며 매년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에도 3일간 보사부에서 교육을 하였음. 주민에게 다소 불친절 하고 근무에 소홀함이 있는점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근무감독 정신 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친절 봉사가 되도록 전력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이 홍 만 의 원	○ 추부면 저수지 상류지역 축사허가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산업과장 김 시 중	○ 법의 규제 여부에 따라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으며 1억 5,600만원을 보조해서 시설개수를 하고 오폐수가 정화되도록 간이정화조 시설을 권장하고 지원하겠음
정 현 수 의 원	○ 금산시장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과장 김 희 철	○ 노점상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군과 읍 합동으로 단속을 하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직거래 방식에 의한 저렴한 값으로 질좋은 상품을 판매토록 하고 자유경쟁 방식의 시장으로서 운영을 하도록 시장측과 행정에서 협의하고 지원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하겠음
	○ 상리7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상.하수도 오염 문제	청소계장 한 상 대	○ 기존 쓰레기 매립장은 3,290평이며 위생처리시설은 미설치 되었으나 76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복토를 수시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추가로 매입한 3,230평에 대해서는 위생처리 시설을 하기위해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입지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설계중에 있음
	○ 보건지소 의약품 공급 현황	보건소장 권 희 영	○ 환자 1인당 수가 600원과 의료보험료 2,400원, 의료보호료 3,000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운영 지원금으로 매월 국비 10만원과 군비 10만원을 포함 20만원씩 월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막소독 실시 관계	〃	○ 금산읍의 경우 수남.수북지역으로 구분 격일제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은 차량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좁은골목 및 농촌지역은 읍에서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음

제 4 절 제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4회 임시회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 리장자녀 장학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민대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한규용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금산군민 대상 수정동의안, 박천보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금산지역 텔레비젼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의 의결을 비롯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태진수 의원외 2인 발의로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 선출을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제의로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며 제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순서에 의해서 오규영 의원과 박승우 의원 두 의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제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1.7.25 (10 : 00)		○ 개 회 식	
	1	1. 제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2. 금산군 리장자녀 장학금 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
		4. 금산군민 대상 조례안	〃
		5. 금산군민대상 수정 동의안	한규용의원외 2인발의
		6. 금산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1.7.26 (10 : 00)	2	1.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	태진수의원외 2인발의
		2. 군정에 관한 질문	
		3. 금산지역 텔레비젼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건의안	박천보의원외 10인 발의

나. 금산군 리장자녀 장학금 조례중 개정 조례안

1991년 7월 10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확대 지급하여 리장의 사기진작과 관련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조례정비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행정의 능동적 수용으로 리장장학금 확대 지급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리장자녀 장학생의 정원을 현 리장정수의 10% 이내에서 15%이내로 5%증가 개정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리장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보탬을 주고자 하였다.

이 개정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행정 체계(기능직 등)의 변동과 관련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조례 개정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행정의 능동적 수용 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2조 1호(지급범위)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임시직.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기능직.임시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하며 제3조(지급구분) 제1항 1호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동항 2호 및 6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라. 금산군민 대상 조례안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향토문화의 선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자를 시상함으로써 전 군민이 창발적인 연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는 총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공고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고일 현재 사망자로써 과거 3년이상 금산군에 거주한자중 우수한 연구와 창작및 지역 사회발전에 향토문화 선양에 기여한자로 수상부문은 교육문화와 체육진흥, 인삼및 지역개발, 사회봉사 분야마다 1인을 시상하되 선정결과 해당자가 없는 분야는 시상하지 아니하며 시상은 매년 인삼제행사시 시상하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은 한규용 의원외 2인 의원의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다.

마. 금산군민 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이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 제정의 근본취지는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농민이 6%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 현실을 감안해 볼때 수상부문에 대하여 농업 축산 분야를 삽입.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 경제에 활력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함에 있으며 수정 주요골자는 금산군민 대상 조례중 제3조 수상부문에 있어 제1항 제3호 다음에 농업 축산진흥 부문을 삽입코져 하는데 있다고 한규용 의원은 수정 동의안을 설명하였다.

이 수정 동의안은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에 붙혀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금산군민 대상 조례안은 한규용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수정 동의안은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바.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 안건은 '91년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음으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규용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가.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와 아울러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교육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였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후보자의 소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후보자에게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난 다음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 방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인쇄된 투표용지에 후보자로 선출할 1인의 후보자를 기표용구로 표시하였으며 투표결과 총투표수 11표중 최동환 후보 7표, 이금수 후부 4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최동환 후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되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이 금 수	35. 7.25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376	
성 영 호	47.11.13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98-5	사 퇴
최 동 환	40. 5.26	금산군 금산읍 상리 33-5	

나. 군정에 관한 질문

지난 제3회 임시회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을 대표한 금산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에 수록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 질문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정 현 수 의 원	○ 방견 분비물 처리 대책	산업과장 김 시 중	○ 반상회 회보나 리장, 앰프, 방송을 통해 방견을 하지 않도록 주민의식 개혁운동 전개
한 규 용 의 원	○ 공장폐수와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	사회과장 전 영 식	○ 공장폐수는 전체 수질오염의 극히 일부분이며 일상생활과 관련 배출하는 생활하수가 대부분이며 유독성 중금속을 배출하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없으며 오염방지를 위한 추진 사항으로는 입주 공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 및 환경성 검토실시와 생활하수에 대한 계도 및 지도 단속 철저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 찬 헌 의 원	○ 경노승차권 지급시 차등발행 가능 여하 ○ 승차권 지급제도 폐지, 현금 지급 여부	가정복지과 장 정 육 지	○ 분기별 지급금액 범위내에서 시내 승차권 170원권과 농촌 승차권인 210원권으로 증액 제작하여 본인의 요구에 따라 두 종류 배부 가능하나 210원권은 사용상 편리할 수 있으나 매수가 감소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현행과 다를 바 없음 ○ '90년 1월 1일 보사부 폐지, 경노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금지급은 보사부에서 일괄 시달전에는 불가함. 본군에서는 농촌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현재 개선책을 도에 건의중

나. 금산지역 텔레비젼 난시청 해소를 위한 건의안

박천보 의원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본 안건은 우리 금산지역이 텔레비젼 난시청 지역으로 인하여 가장 기초적인 문화생활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비젼 시청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텔레비젼 시청료와는 별도로 유선방송 시청료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으로 우리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한국방송공사측에 알려서 텔레비젼 시청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경제적 부담이 없이 T.V시청 만이라도 자유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 건의안은 이의없이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산지역 텔레비젼 난시청 해소를 위한 건의안

존경하는 서기원 한국방송공사 사장님!
방송문화의 전달과 국민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난 4월 15일 주민복지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속에 출발한 우리 충청남도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평소 지역방송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 사장님의 헌신적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금번 본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이 제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 의결한 이 건의안은 아직도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KBS 텔레비젼의 시청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금산군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 지역 공동체적 삶을 윤택하게 이끌어 가는, 선진 의회민주상을 정착하고자 하는 우리 금산군의회 의원들의 의지의 표현으로 채택한 건의안이오니 금후 방송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지역문화발전에 한층 더 관심을 갖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의 어려웠던 시대에 있어서 문화생활이란 필수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사치와 허영으로 치부되었고 조국근대화의 과정에서 등한시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망의 2,000년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업과 정보의 발달로 오히려 문화적 이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민족은 도태하고 열렬한 민족간의 경쟁에 있어서 뒤쳐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굳이 이러한 국제간의 현실을 인용치 않아도 지구촌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화적 소유욕구란 어떤 면에서 볼때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층 더 강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열의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경제기적을 이루어 냈고 전 세계인 축제라 할 수 있는 88올림픽을 치루어 낸 이제는 선진국에 진입하려 한다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문화생활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비젼 시청의 혜택마저 향유치 못하는 지역이 있다면 이 어찌 모순이라 아니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텔레비젼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않아서 그런것도 아닙니다. 우리 금산군 각 가정의 텔레비젼 보유대수는 총 2만9백여대로서 가구수 1만9천6백여 가구에 비해서도 많습니다. 비율로 볼때 가구수에 비해 107%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텔레비젼이 보급되고 있는 데도 방송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금산지역이 텔레비젼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근지역의 흑성산, 식장산등에 텔레비젼 송신탑이 있지만 만인산, 진악산등으로 둘러싸인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텔레비젼 시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비용을 들여서 공청안테나를 세우고 읍지역에서는 2만여원의 시설비와 매달 2천여원의 유선방송 시청료를 텔레비젼 시청료와는 별도로 지불하면서 어떤면으로 보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기원 사장님!

부디 이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금후 시책에 반영하여 금산지역의 텔레비젼 난시청 해소에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 방송문화 정보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장님과 한국방송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5 절 제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규영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1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렸으며 안건은 군정보고의 건과 금산군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 금산군 정수물품취득 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박천보 의원외 3인으로부터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및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여 91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며 제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태진수의원, 이홍만의원 두 의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제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91.8.22 (14 : 00)	1	1. 제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금산군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3. 금산군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의 건 4. 군정보고의 건 5.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휴회의 건	본 회 의
'91.8.23 (10 : 00)	2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조사계획서 보고의 건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91.8.27 (10 : 00)	3	1.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
'91.8.28 (10 : 00)	4	1.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의 건	본 회 의

나. 금산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사유는 금산군 도시계획 구역안의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며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있으며 도시지역내 녹지의 관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다. 금산군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의 건

1991년 8월 19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이 승인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무용품 및 각실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신청내역은 신규취득이 45건에 1억 5천790만원이 소요되며 대체취득은 3건에 821만원으로 합계 48건에 1억 6,611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본 안건은 심사결과 의원 전원 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

라. 군정보고의 건

제11회 금산인삼제 행사 기본계획에 대해서 최정민 문화공보실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었다.

91년 10월 1일과 2일에 개최되는 제11회 금산인삼제 행사의 목적은 인삼종주지 부각과 세계속의 금산인삼 선양, 향토문화 계승으로 문화의 고장 부각, 칠백의사의 숭고한 충의정신 계승, 살기좋은 풍요로운 인삼고을 건설에 있으며 행사추진 경과 및 계획, 각종 행사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다.

마.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본 안건은 박천보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박천보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적정성및 원상회복 상태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관계 서류 검토, 관계공무원의 증인, 심도있는 현장검증, 현지주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규명함으로써 주민의 의혹과 불안 민원을 해소하고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본 조사위원회의 구성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심의결과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박천보 의원외 6인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바. 휴회의 건

의장 제의로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1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코져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이의없이 원안 가결되었다.

2.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가. 제1차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1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 위원 상호간에 협의가 되어 위원장에 오규영 위원 간사에 박천보 위원이 선출되었다.

2) 골재채취 피해조사 보고의 건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골재채취 피해조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검토보고의 요지는 골재채취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을 의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대상지구는 8개소로 91년 허가되어 채취를 만료했거나 채취하는 지역으로 제원면 천내리 257번지 외 7개지역이며 조사의 범위는 골재채취 허가의 적법성과 적정성 허가기간 만료후 원상복구 상태, 허가에 따른 피해조사 정도, 지역발전 및 군재정 수입의 기여도, 사업장관리 상태이며 조사방법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증언 청취와 허가관련 서류조사 및 현장검증 또는 주민여론 청취를 하기로 하였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곧바로 현지조사 활동에 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91년 8월 27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토의하기로 한 후 10시40분에 산회되었다.

바. 제2차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1)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의장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위원들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골재채취 피해조사 결과 보고

□ 조 사 경 과

○ 조 사 기 간 : '91. 8. 23~'91. 8. 27(5일간)

○ 위 원 회 구 성 : '91. 8. 23 10 : 00

※ 본회의의결 : '91. 8. 22

○ 조 사 대 상

구분	위 치	허 가 현 황			비 고
		허 가 량	기 간	수허가자	
계	8개소	4,438,812㎡			
하천	소계(5개소)	231,874			
	제원천내257	200,000	'9'.4.17~5.4	군 직 영	
	〃		'91.8.19~	〃	채취중
	제원 명암		'91.5.11~7.29	〃	
	제원 용화	22,039	'91.3.22~	관 수	
	부리 수통	9,835	'91.2.18	〃	
산림	소계(3개소)	4,206,938			
	진산 막현	3,101,720	'89.9. 8~'91.9.7	윤 경 중	채취중
	복수 수영	1,083,858	'89.9.27~'95.1.2	조 인 숙	〃
	추부 성당	21,360	'89.5.13~'92.2.15	신 덕 균	〃

○ 조사 활동 현황

월 일	조 사 지 역	조 사 내 용	비 고
8.23 (금)	제원면(4개소)	· 현장 조사 · 주민여론 청취	· 건설과 현황보고 · 제원리 노인당등
8.24 (토)	남일.부리 진산.복수.추부	· 하천, 산림내 골재 채취 현장 조사 · 주민여론 청취	· 2개조 운영
8.25 (일)	제원면(4개소)	· 주민여론 수렴	

월 일	조 사 지 역	조 사 내 용	비 고
8.26 (월)	제원면(3개소)	· 원상복구 상태 현지 조사 ※ 수심 측정	· 구명 보트 · 잠수부 2명
8.27 (화)	〃	· 원상복구 상태 재확인	· 건설과장

□ 군재정 및 지역발전기여도

○ 하천 골재 채취

· 군 자체 수입 증대 : 235백만원

※ 자체수입의 4.6%(자체수입원 6위)

· 지역 건설 사업 기여

— 원활한 지역건설사업의 추진및 가격상승 요인 방지

· 하상정리 병행으로 재난방지 환경정화

○ 산림 골재 채취

· 사업주의 지역개발사업등 환원사업—765백만원

— 마을안길 포장, 마을회관 건립, 장학금, 마을공동기금 조성등

□ 주민여론및 실상(문제점)

(하천 골재 채취)

1. 제원면 제원리 지하 식수 및 제원리 뒷뜰의 농업용수 부족
   (제원면 노인회관 권무택 외 7명)
2. 제원 명암리 장승보 취수구쪽 하상이 낮아져 기사천 농업용수의 취수 곤란
3. 제원 천내리 금강변 "신들제방" 하단부 약 30m 유실
4. 제원 대산리 대산교 교각 기반 1기 노출로 교량 붕괴 우려
5. 제원면 제원리 "갯보" 아래쪽의 봉황천 하상이 낮아져 구조물(돌망태) 유실 우려
6. 봉황천 하상이 낮아져 제원교 교각 기반 노출로 붕괴 우려
7. 가시지역을 제외한 수중 하상 정리 부실로 인명 사고 위험성 내포

※ '91.8월 현재 익사 사고 발생 : 6명(경찰 자료)

(임야내 골재 채취)

1. 골재 차량의 난폭 운행 및 교통량 폭주로 주민들의 불안감및 교통사고 위험 가중

※ '91.8월 현재 골재 차량으로 인한 교통 사고 발생 현황 : 4건(버스1. 승용차1, 보행자2)

— 인명피해 : 17명(중상 8, 경상 9)

2. 추부 성당리 경남 광업

—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다수 발생

— 국도변에 위치하여 자연 경관 저해

— 폭파음으로 인근 가옥 및 가축 피해 발생

※ 개와장 파손, 송아지 유산(2두), 염소 폐사(1두)

□ 시 정 사 항

1. 하천 시설물 보호를 위한 구조물 설치

○ 제원교, 대산교 아래 지역에 교각 보호 구조물 설치로 식수및 농업용수 확보

○ 조정천에 구조물 설치로 제원 뒷뜰의 농업용수 공급 확보 도모

○ 제원 천내 1리 "신들 제방" 복구

2. 골재채취후 수중 하상 정리 철저

※ 제원 명암, 천내리 채취량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강구

3. 골재차량의 과적, 과속 및 난폭 운전의 철저한 단속으로 주민들의 공포감 해소

4. 토석채취는 자연보존 및 주민여론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

【종 합 의 견】

○ 금번 골재채취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산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최초로 구성되어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 의원이 관내 현장을 땀흘리며 열심히 뛰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으며,

○ 또한 비공식적인 통로의 여론 수렴 방법에서 벗어나 의회 권한 범주 내에서 공식적인 현장 활동으로 주민과 직접 접촉, 대화를 통하여 생생한 주민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주민들의 바램 불편사항등 주민의 핵심에 접근 할 수 있었고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원활한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한 교훈, 경험, 촉진제가 되었다고 생각함.

○ 그러나 본 위원회의 활동 수행에 있어서는 조사기간 전문성등의 제한으로 원활한 활동에 다소 제약 요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원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한 계기가 되었다.

○ 본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본 위원회는 골재채취사업이 민원 발생의 부정적 요소도 있었지만은 지방화 시대에 있어 자체재원 확충 민간 업자의 지역 개발 환원사업등 긍정적인 면도 새롭게 느꼈으며 특히 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이해와 관련된 민원으로 폭주하는 업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 이번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주민여론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서 겸허하게 자성하는 태도로 수용하여 완급을 판단,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 시정, 보완,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끝으로 본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 주민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본 조사 특별 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임

3. 제2차 본회의

가.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의 건

이 안건은 91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작성.채택한 골재채취 피해조사 결과보고서로 골재채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규영 의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 6 절 제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 의거 금산군수로부터 '91.9.1 집회요구가 있어 '91.9.16부터 9월19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열렸으며 안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제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여 '91년 9월 16일부터 9월19일까지 4일간으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며 제6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한규용의원 정현수의원 두 의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제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1.9.16 (월) (14 : 00)		○ 개 회 식	
	1	1. 제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건	본회의
'91.9.17 (화) (10 : 00)	1	1. 위원장 간사 선출의건 2.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1.9.18 (수) (17 : 00)	2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	〃
'91.9.19 (목) (10 : 00)	2	1. '9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계속)	본회의

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이 예산안은 91년 9월 5일 금산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강병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한정된 재원 아래에서 년초에 책정된 사업의 지속적인 재정을 뒷받침 하면서 날로 다양하게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데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7억 5,361만 2천원이 증가된 307억 9,443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 5,463만원이 증가된 74억 6,795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382억 6,238만 4천원이라고 밝혔다.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91년 9월 5일 금산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상정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결특위 구성은 오규영 의원외 4인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라. 휴회의건

의장 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열리게 되어 본회의가 쉬게 됨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연장자인 오규영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이 상정되었다. 위원상호간 사전협의로 위원장에 한규용위원 간사에 박천보 위원을 선임하였다.

2)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이 예산안은 '91년 9월 16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오늘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다. 심사순서는 먼저 김진해 재무과장으로 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과 강병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심의를 하였다.

예산총칙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 산 총 칙

제1조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1. 일 반 회 계	30,794,434	923,833
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12,954	27,388
3. 주택관리특별회계	281,829	8,454
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050,071	61,502
5.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13,876	416
6.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1,800	1,254
7.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8,625	4,158
8.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209,005	6,270
9. 농공지구특별회계	2,897,037	86,911
10. 공유임야특별회계	3,588	107
11.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919,165	27,574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1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1991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923,833천원으로 한다.
제5조 199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별첨 "명시 및 사고이월비조서"와 같다.
제6조 1991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0,328천원으로 한다.

예 산 규 모

(단위 : 천원)

구분 /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기정) 예산액	증(△)감	비고
합계	38,262,384	35,054,142	3,208,242	
일반회계	30,794,434	28,040,822	2,753,612	
특별회계	7,467,950	7,013,320	454,630	
상수도	912,954	813,240	99,714	
주택관리	281,829	276,230	5,599	
의료보호기금	2,050,071	1,846,758	203,313	

	새마을소득금고	13,876	13,876	0	
	구획정리	41,800	41,800	0	
	생활안정기금	138,625	140,022	△1,397	
	새마을소득특별지원	209,005	209,005	0	
	농공지구	2,897,037	2,751,136	145,901	
	공유임야	3,588	3,588	0	
	골재판매사업	919,165	917,665	1,500	

나.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의결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천보 간사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심사결과 요지는 9월 17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재정운용의 방향과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하여 1문1답식 질의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종합심사를 통하여 경직성 경비를 삭감하였고 이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인건비등 부족분을 충당하는 수정의 건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삭감개요는 다음과 같다.

삭 감 조 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사업명	금액	비고
장	관	항			
계				90,470	
의회비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수당	660	
소계				87,060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감사및법무관리	보상금	5,000	
			경상사업비	30,000	
		공보관리	특별판공비	2,000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	일용인부임	3,060	
			수용비및수수료	3,000	
			특별판공비	20,000	
			보상금	20,000	
	재무행정비	하계및재산관리	자산취득비	4,000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	자산취득비	250	
	소계			2,500	
문화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비	수용비및수수료	500	
			수용비및수수료	2,000	

3. 제2차 본회의

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91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용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심의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 7 절 제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0월 22일 금산군수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다.
접수된 안건은 금산군수로 부터 '92 회계 정수물품취득 승인 신청의 건,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92 군도포장공사 설계용역비 채무 부담 행위의결의 건, 금산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민 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5건과 허병문 의원외 2인으로 부터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관한 결의안 및 금산군민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으며 박천보 의원의 소개로 남일면 마장2리 박찬양외 3명으로 부터 남일면 마장2리 앞 봉황천 교량설치에 관한 청원서가 제출되어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기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모두 9건의 의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제7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의장제의로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허병문의원, 길부섭의원이 서명 날인하게 되었다.
제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1.10.29 (14 : 30)		○ 개 회 식	
	1	1. 제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관한 결의안 3. '92 하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의 건 4. 남일면 마장2리 앞 봉황천 교량 설치에 관한 청원	의장 제의 허병문 의원외 2인 발의 금산군수 제출
'91.10.30 (14 : 00)	2	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 건 2. 92군도포장공사설계 용역비 채무부담행위 의결의 건	금산군수 제출 〃
'91.10.31 (10 : 00)	3	1. 금산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금산군민 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금산군민 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금산군수 제출 〃 한규용 의원외 2인 제출

나.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관한 결의안

지난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담화에서도 주창되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내적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공동체적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동참하는 우리 금산군의회 의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허병문 의원외 2인의 발의와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으며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 질 서 새 생 활 실 천 결 의 문

결 의

우리 금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더불어사는 살기좋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한단계 더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호화. 사치. 낭비풍조를 배격하고 항시 근검. 절약하는 생활태도를 견지한다.
1.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도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 시민의식 함양에 수범을 보인다.
1. 우리는 「제자리. 제본분. 제역할」을 다함으로써 일하는 건강한 사회정착에 솔선한다.
1. 우리는 범죄와 폭력을 몰아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1991. 10. 29

금 산 군 의 회 의 원 일 동

다. '92 회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의 건

1991년 10월 22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이 승인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 수행상에 필요한 중요 정수물품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규취득 52건에 2억5,092만원이며 대체 취득은 10건에 7,78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본건은 심사결과 의원 전원 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

라. 남일면 마장2리 앞 봉황천 교량 설치에 관한 청원

남일면 지역구 출신 박천보 의원의 소개로 청원이 된 본건은 남일면 마장2리와 상동리를 연결하는 봉황천의 교량이 없어 이 지역을 중. 고학생의 통학시 4~5㎞를

우회하여 다니고 있어 면학에 불편이 많을 뿐아니라 우기시 익사사고 위험과 영농시 하천을 우회하여 경작케 됨으로써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본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써 양질의 수질보호 차원에서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청원이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들의 질문.토론이 있은후 의결을 거쳐 금산군에 이송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본 건의 제안이유는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146, 148~2번지내 1,948㎡를 91년 2월 취득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나 부지의 협소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인접지를 매입 남일면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처리에 원할을 기하고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다.

주요골자에서 매입 재산의 현황은 남일면 초현리 146~2번지 전 281㎡이며 매입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사항으로 변경 승인요청 내용은 남일면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처리에 원할을 기하고저 남일면 초현리 소재 1,943㎡를 기매입 남일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부지의 협소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본 토지를 매입하여 사용코저 함에 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원안 가결되었다.

나. '92 군도포장공사 설계 용역비 채무부담 행위 의결의 건

이 안건은 92년도 군도포장 설계용역사업으로 사업량은 20.6㎞에 용역비 1억4,800만원으로써 영농기 및 농작물 성장기에 공사가 추진하게 되므로 농작물의 피해와 이에 관련된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므로 실질적인 공사는 부득이 추수후에 가능하게 되어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되는바 명년도 사업을 금년 추수후 농한기에 조사측량. 설계하면 '92 사업확정후 편입용지 보상과 사업발주 과정을 거쳐 해빙기인 3.4월중에 공사 착수가 가능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고, 공사기간도 5.6개월 단축이 되며 용역업무 대부분이 년초에 집중 실시됨을 감안 용역 성과품의 조잡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설계용역비 1억4,8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채무부담행위의 건은 가결되었다.

3. 제3차 본회의

가. 금산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내지 제3항의 개정으로 행정여건의 변동과 관련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을 기하는데 있다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나. 금산군민 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민대상의 수상 대상과 수상부문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수상자 추천, 수상자의 결정, 시상, 시기 등이 현실과 불부합 되므로 군민대상 선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 조례안은 한규용 의원외 2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다. 금산군민 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 조례는 지난 7월 제정이 되었지만 시행을 해보지 못하고 개정을 하게 되었다. 당초 이 조례의 제정이나 심의시 집행기관과 의회가 좀더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까닭에 다시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수정안은 5개 조항으로 제2조 수상대상 4호, 제3조 수상부문, 제4조 위원회 부문, 제7조, 수상자 추천, 제9조 시상부문으로 이 수정안은 심의결과 한규용 의원외 2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문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 8 절 제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1월 13일 금산군수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1년 11월 19일 제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제8회 임시회는 조례안 4건과 군정보고, 기타 3건 등 8건의 의안을 심의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회기는 9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며 제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박찬헌 의원과 박천보 의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제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1.11.19 (화요일) (14 : 00)			○ 개 회 식	
	1	본회의	1. 제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보고의건(금산지방 기업공업단지조성 계획) 3. 금산군 지방세 가산금 징수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금산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금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 7.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8. 휴회의건	
'91.11.20 (수요일) (10 : 40)	1	조례안 심사특별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금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	
'91.11.21 (목요일) (14 : 20)	2	〃	1. 금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	
'91.11.22 (금요일)			심사보고서 작성	
'91.11.23 (토요일) (10 : 20)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1. 금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	
'91.11.24 (일요일)			휴 회	
'91.11.25 (월요일)	2	본회의	1. 금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	

나. 군정보고의 건

김회철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금산지방 기업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군정보고가 있었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3개업체의 기업이 집단화를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공단을 지정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해서 지난 10월 30일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건희, 주식회사 미강 합유식, 화성공업주식회사 김경태로 부터 기업공단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공단지정권자인 도지사의 진달에 앞서 의원들의 의견을 공단지정 신청에 반영하고자 보고가 있었다.

군정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제8회 임시회 회의록에 수록되어 있다.

다. 금산군 지방세 가산금 징수에 따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91년 11월 13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행정여건의 변동과 관련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2조 불균일과세 및 제3조 1항과 2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라. 금산군 지방세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1년 11월 13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금산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제3조 기능중 "지하철 운임"은 본군 현실과는 불부합되는 사항이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를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며 법령용어 순화 정비 자료에 제9조 중 "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소속 직원중에서"라고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마. 금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91년 11월 13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이 안건은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바.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

'91년 11월 13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이 안건은 금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는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오늘 상정된 금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였다.

조례안 특별위원회 구성은 한규용 의원외 4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아. 휴회의 건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열리게 되어 본회의가 쉬게 됨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2.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가. 제1차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각각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사전 의원 상호간에 협의가 되어 위원장에 박찬헌 위원 간사에 박천보 위원을 선출하였다.

2) 금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은 '91년 11월 1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었다. 심사순서는 먼저 강병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금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중 "별표"를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하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병역법,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은 제3조 제12. 14. 16호의 관계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 법령용어 순화정비 자료에 의거 제3조 제5호중 "이의신립"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제3조 제12호중 농지확대법 제4조에 의한 농지위원회"를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한 농지개발심의위원회"로 하며 제3조 제14호를 삭제하고 제3조 제16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의"를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3항의"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귀전 전문위원은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1972년 7월 20일 제정이후 11회나 개정된바 있으나 상위법령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병역법,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금산군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이 자문, 심의, 연구. 협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개정을 필요로 하는 조례안이라고 보고했다.

의안에 대한 심의는 제2차 조례특위에서 하기로 했다.

3)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

'91년 11월 19일 본 회의에서 상정된 이 조례안은 강병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제안이유는 행정형태의 다양화와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송내용 또한 복잡 다양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의 위촉기간 수당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행정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식이 이기적으로 팽배하여 내몫 찾기에 급급하여 과거의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행위 이의신청에 법령적용 해석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차후 행정수행에 자문을 받기 위한 고문 변호사를 위촉 활용하자는 목적으로 도 본청에서는 1975년 12월 31일부터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본건도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원활한 군민복지행정 수행과 법적인 보호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했다.
의안에 대한 심의는 제2차 조례특위에서 질문과 답변을 거쳐 제3차 조례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나. 제2차 조례특위

1) 금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차 조례특위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제2차 조례특위에서는 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박천보 위원과 한규용 위원으로 부터 질의가 있었으며 심의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었다.

2)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
이 조례는 제1차 조례특위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제2차 조례특위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박천보 위원과 한규용 위원으로 부터 질의가 있었으며 심의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었다.

다. 제3차 조례특위

제3차 조례특위에서는 금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박천보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았으며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 금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11월 13일 금산군수
나. 상 정 일 자 : 1991년 11월 19일(본회의)
다. 회 부 일 자 : 1991년 11월 20일(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강병순)

가. 제안이유

○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항중 "별표"(위촉위원선정기준표)를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병역법,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제3조, 제12.14.16호의 관련조항을 개정 보완하고

○ 법령용어 순화 정비자료에 의거 제3조 5항, 제5호중 "이의신립"을 "이의신청"으로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법령용어 순화 정비자료에 의거 "이의신립"을 "이의신청"으로 함. (제3조 제5호)

○ "농지확대법 제4조에 의한 농지개발심의위원회"를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한 농지개발심의위원회"로 함. (제3조 제12호)

○ "병역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병무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삭제 (제3조 제14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3항"으로 개정 (제3조 제16호)

○ 제2조 제2항중 "별표"(위촉위원 선정 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귀전)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금산군정의 기본계획 시책의 자문, 심의, 연구, 협의의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개정필요로 하며 면밀한 심의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천보 위원 · 지방원호청의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 위원 선정 기준표중 언론계. 금융계. 체육계. 예술계는 사회단체와 중복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 기획실장 강병순 · 지방원호청의 명칭이 지방보훈청으로 변경이 되었음. 이 부분은 개정안이 잘못 되었음 · 사회단체는 민간 각 단체의 대표성을 띠므로 구별되며 순수한 민간인의 포괄적 대표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존치 필요함
○ 한규용 위원 · 체육계. 예술계 등은 분류상 사회단체와 중복이 되며, 사회단체는 기타유지의 의미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람.	○ 기획실장 강병순 · 사회단체는 집단의 의미이며, 우리지역의 언론계는 집단모임이 없는 개인의 성격으로서 대표자가 없음 이와같은 면에서 구별이 되며 사회단체는 공인된 단체로서 일반적 통념적인 단체는 아니며, 기타유지는 개개인 즉, 자연인의 의미임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별표"의 위원선정 기준표중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의 정정 및 민간인측 위촉 대상자에 있어, 기타 유지를 기타 전문인사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 (제2조 제3항)

2) 수정 주요골자

가. 위원선정 기준표(별표) (제2조, 제3항)

○ 기관측란의 "지방원호청장"을 "지방보훈청장"으로 함.

○ 민간인측란의 "기타 유지"를 "기타 전문인사"로 함.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3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 표】

기 관 측	민 간 인 측
1. 교육장 2. 지방보훈청장 3. 주둔부대장 4. 국가안전기획부 및 보안관계 지역부대장 5. 경찰서장 6. 기타 특별지방행정 관서의장	1. 언론계 대표 2. 금융계 대표 3. 실업계 대표 4. 종교계 대표 5. 체육계 대표 6. 예술계 대표 7. 사회단체 대표 8. 기타 전문인사

신 구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제2조(구성)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③ .....
.....	.....
..... 별표	..... 별표
.....	.....

<table>
<tr><th colspan="2">개 정 안</th><th colspan="2">수 정 안</th></tr>
<tr><td colspan="2">(별표)</td><td colspan="2">(별표)</td></tr>
<tr><td>기 관 측</td><td>민 간 인 측</td><td>기 관 측</td><td>민 간 인 측</td></tr>
<tr><td>1. 교육장
2. 지방원호청장
3. 주둔부대장
4. 국가안전기획부 및 보안관계지역 부대장
5. 경찰서장
6. 기타특별지방 행정관서의장</td><td>1. 언론계 대표
2. 금융계 대표
3. 실업계 대표
4. 종교계 대표
5. 체육계 대표
6. 예술계 대표
7. 사회단체 대표
8. 기타유지</td><td>1. (개정안과 같음)
2. 지방보훈청장
3-6(개정안과 같음)</td><td>1-7(개정안과 같음)
8. 기타 전문인사</td></tr>
<tr><td colspan="2">제3조(조정사항)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5. 이의신청……
6. ~11. (현행과 같음)
12.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한 농지개발 심의위원회……
13. (현행과 같음)
14. (삭제)
15. (현행과 같음)
16.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3항의…
……
17. ~25. (현행과 같음)</td><td colspan="2">제3조 (조정사항) (개정안과 같음)
1. ~25. (개정안과 같음)</td></tr>
</table>

2. 금산군 고문 변호사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11월 13일 금산군수

나. 상 정 일 자 : 1991년 11월 19일(본회의)

다. 회 부 일 자 : 1991년 11월 20일(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강병순)

가. 제안이유

행정형태의 다양화와 국민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대되고 있으며, 소송내용 또한 복잡 다양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고문 변호사 위촉의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고문 변호사의 위촉 근거, 고문사항, 위촉기간, 수당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군 고문 변호사를 개업중인 변호사중 1인 위촉

○ 고문사항

·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 각종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실적 부진, 불성실 할 때에는 임기내에도 해촉

○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귀전)

본 사례는 행정행태의 복잡 다양화와 국민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행정청을 상대로한 소송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법령해석, 이의신청, 소송등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원활한 군민복지행정 수행 및 법적인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인

질 의	답 변
○ 한규용 의원 금산군의 최근 소송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 기획실장 강병순 최근 '89~'91까지 3년간 총 20건으로 '89년도 4건 '90년도 6건, '91년도 10건이며 내용별로는 토지소유관계가 15건으로 가장 많으며 부당 이득금 2건, 임야관계가 3건임 결과로는 승소 1건, 패소 9건, 취하 4건이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고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요구됨.
○ 박천보 의원 타 시군의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은 어떤지?	○ 기획실장 강병순 이미 위촉한 곳이 7개 시군, 검토중인 곳이 3개 군이며, '92 위촉계획이 1개군, 나머지 시군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규용 의원 ·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이 어떤지?	○ 기획실장 강병순 현 조례로도 시행이 가능하며, 차후 사유발생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위촉 인원 1인을 2인이로 정하여 향후 추가위촉 사유발생시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는 것이 어떤지?	○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수정안 요인

가. 수정이유

고문 변호사 위촉 인원을 2인 이내로 규정하여, 향후 행정수요의 증대등에 따른 추가위촉의 사유발생시 운영의 원활과 효율을 기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골자

○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제2조)

"1인의"를 "2인 이내로"로 함.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 대한 수정안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위촉)중 "1인의"를 "2인 이내로"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 ……2인 이내의……

3. 제2차 본회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열려 금산군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박찬헌 위원장으로 부터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으며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 9 절 제9회 금산군의회(정기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집회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9회 정기회를 12월 2일에 소집하고자 91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1991년 12월 2일 오후 2시에 제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한 결과 제9회 정기회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였다.
제9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9회 금산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1.12.2 (월요일) 14 : 00		○ 개회식	
	1	1. 제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2.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정 연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본 회 의
91.12.3 (화요일)	10 : 00 (1)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감사계획 작성 및 의결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4 : 00 (1)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결산 및 예산안심사 일정 확정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1.12.4 (수요일) 14 : 00	2	1. 행정 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본 회 의
91.12.5 (목요일) 10 : 00	3	1. 군정에 관한 질문	본 회 의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1.12.6 (금요일) 10 : 00	4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2. 휴회의 건	본 회 의
91.12.9 (월요일) 10 : 00	(2)	1. 행정 사무 감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1.12.10 (화요일) 10 : 00	(3)	1. 행정 사무 감사	〃
91.12.11 (수요일) 10 : 00	(4)	1. 행정 사무 감사	〃
91.12.12 (목요일) 16 : 00	(5)	1. 행정 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91.12.13 (금요일) 10 : 00	5	1.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의 건 2. 금산군 지방 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3. 92년도 금산군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4. 휴회의 건	본 회 의
91.12.14 (토요일) 10 : 00	(2)	1. '90년도 금산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90년도 금산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92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사의 건	예산결산특별 위 원 회
91.12.16 (월요일) 10 : 00	(3)	1. 92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
91.12.18 (수요일) 11 : 00	6	1. '9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 휴회의 건	본 회 의
91.12.23 (월요일) 14 : 00	(4)	1.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91.12.24 (화요일) 10 : 00	7	1. '90년도 금산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92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본 회 의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1.12.26 (목요일) 10 : 00	8	1. 92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2. 금산군 지방 공사등에 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안 3. 금산군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안	본 회 의
91.12.27 (금요일) 10 : 00	9	1. 금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금산군 새마을 공장등에 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금산군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금산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금산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분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금산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7. 금산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8. 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9. 금산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0. 금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11. 금산군 향교재산에 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12. 휴회의 건	본 회 의
91.12.31 (화요일) 10 : 00	10	1. 금산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본 회 의

나.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정연설

9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류응상 금산군수로부터 92년도 군정 방향에 대한 군정연설을 들었다. 군정 연설에서 '92년도는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다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복지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의 기조아래 편성하였으며 '92년도 예산편성은 375억 8,700만원의 규모로 일반회계 318억 3,600만원, 특별회계 57억 5,100만원으로 편성 하였다고 밝혔다.

다.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및 보건소, 지도소, 읍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길부섭 의원을 비롯하여 한규용의원, 허병문의원, 오규영의원, 박천보의원, 박찬헌의원, 이홍만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회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의결과 원안 가결 되었다.

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 예산결산 및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박승우의원을 비롯한 정현수의원, 한규용의원, 허병문의원, 길부섭의원, 박찬헌의원, 박천보의원, 오규영의원, 이홍만 의원 이상 9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는 것으로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마.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한규용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군정의 결산내용과 내년도 군정 방향을 확인하게 되는 정기회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그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 전원 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금산군수에게 이송하였다.

바. 휴회의 건

본 건은 12월 3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의장제의로 휴회할것을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가. 행정사무 감사 계획승인의 건

길부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행정 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동 계획서를 작성 채택한 결과를 보면 '91년 12월 3일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였으며 동 감사계획서 작성은 위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이 작성토록 하였으며 작성된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감사목적은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등을 통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감사 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의 실과 전체, 지도소, 보건소와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감사 위원장에 길부섭의원, 감사위원으로는 허병문, 한규용, 박찬헌, 박천보, 오규영, 이홍만의원으로 하였으며 감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등 사무직원 3명을 보조요원으로 지정하였다. 감사일정을 12월 9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12월 10일에는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12월 11일에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를 각각 감사를 하게되며 감사장소는 의회 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결과에 대한 감사 위원장의 보고가 끝난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3. 제3차 본회의

가. 군정에 관한 질문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서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뒤 실과사업소 직제 순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군정질문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 질문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이홍만 의원	○ 불법으로 농지를 이용하여 불법건축물이 많이 늘어나는데 투기성이 없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해서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산업과장 김시중	○ 88년 10월 31일 이전의 불법 전용한 근거가 확실한 농지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법령에 접촉이 안될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해 주도록 하겠음.
	○ 어린이 공원 및 휴식공간의 규모 확충과 시설 보완이 뒤따라야 하며, 금산읍 중도리 230번지 일대의 1,890㎡의 공원이 조성되지 않고 방치하게된 이유는	도시과장 박래훈	○ 공원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 보다는 더 시급한 요구사항이 많아 미흡하였음,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코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군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따르며 중도리 230번지 일대의 어린이공원 부지 인근은 사실상 인가가 적어 시설이 시급하지 않아 뒤로 미루어져 왔으며 내년도에는 어린이 공원시설을 위해 예산 요구중에 있음.
태진수 의원	○ 농촌형 소방차 성능 미비점에 대한 대책	민방위과장 정정학	○ 89년까지 생산한 소방차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90년부터 생산이 중단되고 92년도부터는 보통화물 소형 소방차로 대체하여 공급할 계획임.
	○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여 기술 보급을 해줄 수 있는 향후대책 및 그동안 추진한 특화작목 육성시책의 성과는	농촌지도소장 허일범	○ 인삼과 아울러 약초를 특화작목으로 412농가가 참여해서 이 농가를 주축으로 33종에 345ha를 추진하였고, 면마다 1면 1특화 작목단지 조성으로 기술적인 면을 중점지도 하겠음.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박 승 우 의 원	○ 농지전용 및 국토이용관리법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지역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완화 대책은	산업과장 김 시 중	○ 농지전용 허가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도지사와 군수가 허가를 해주고 각종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외소득을 위한 목적이면 최대한 허가를 해주도록 노력하겠음.
	○ 진산면 만악리 소라니재의 우량농지사업 내용 및 향후 계획	도시과장 박 래 훈	○ 하옥리 일대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양질의 흙을 받아서 우량한 농지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공장용지로 이용할 경우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혀 수익을 올려 경영수익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임.
	○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계획이 지금까지 방치되있는 이유는	도시과장 박 래 훈	○ 80년 5월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으며 83년 10월 13일 기본계획 수립 88.7.27 기본설계가 수립 89년부터 개발에 착수 2001년까지 개발 완료 할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1년도까지 2.5㎞의 등산로 개설 화장실 1동 안내판 13개소를 설치 하였으며 도비 50% 군비 50%로 군형편상 7억5천을 부담하기가 어려워 조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등산로와 안내판등을 우선 설치하고 있음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박천보 의원	○ 교통사고 다발지역 표지판 설치와 설해에 대비 장비와 제설 계획은	건설과장 최정우	○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도로 안전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군도, 확포장 구간은 포장공사시에 안전시설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동절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적사장을 534개소에 설치 하였으며 100㎡의 예비 모래와, 염화칼슘 400포를 확보 하였음
박찬헌 의원	○ 금산군의 소방검사 실시 시기 및 점검결과와 이에 대한 행정조치 및 화재예방 홍보 계획	민방위 과장 정정학	○ 91년도 소방 검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건축물 소방검사 334개소를 비롯해서 위험물 소방검사 71개소를 실시한 결과 정상이 365개 시정 보완 36개소로 소화기 교체, 비상구 표시 설치등을 11월 20일까지 현지시정 조치는 완료하였음.
	○ 금산군 10개읍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때 불균형 상태인바 그 원인과 앞으로 균형있는 공장유치 방안	지역경제 과장 김회철	○ 공장입지가 대도시에 인접한 곳에 입주하여야만 원자재 및 제품수송의 경비가 절감되고 근로자 확보가 용이하므로 대전 근거리로 공장이 유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군의대책은 제원면에 금산 기업공단이 유치되면 인근 면인 남일, 남이면에도 공장적지가 많으므로 공해가 없는 업체를 선별하여 남일, 남이면 지역으로 적극 유도를 하여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박찬헌 의원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시내버스 운행회수 증회와 연장운행, 신규노선 개설의 지연 사유	지역경제과장 김희철	○ 87년부터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구 감소와 자가용 증가로 인하여 감차 요인이 생기고 수송 수요가 적어 행정에서 증차는 명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계속해서 회사에 권유와 설득중에 있음.
	○ 전북여객 완행버스 운행 중단후 행정에서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		○ 긴급조치는 5월 15일 진산소재지로부터 진산 묵산리까지 하루에 6회 노선연장을 했으며 5월 16일 남이면 구석리에는 1회 증차, 5월15일 남일면 신정리에서 홍도리까지를 원동리까지 연장해서 운행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조치로는 전북방면인 용담, 안천, 진안등지를 한일교통 버스 연장운행 신청을 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북도청 진안군 무주군 충남도청, 금산군 관계 공무원 버스회사 대표자들이 상호협의를 한바 있음.
허병문 의원	○ 허가가난 개인택시는 총 몇대이며 차고지와 운행방법 및 운행현황	지역경제과장 김희철	○ 금산읍에 39대 면에 15대의 차고지가 있으며 현재 10개 읍면중에 제원과 부리에 차고지가 없어서 주민 교통불편문제 해결은 앞으로 54대 중 제원이나 부리에 연고가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허병문 의원			있는 기사에게 권유 설득해서 차고지를 옮기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음.
	○ 제지 공장의 허가배경과 허가 내용 환경영향 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장 김희철	○ 공장설립에 따른 관련 실과로 하여금 적법성 여부를 검토 하였으며 검토결과 도시계획 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고 환경성 검토는 환경보호과장의 답변과 같이 이상이 없고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 등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작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고 공장설립 신고를 수리 했음.
	○ 금산공업단지 설립에 따른 한국타이어 쓰레기 소각장등 열병합 보일러시설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의 대책	환경보호과장 김숭근	○ 한국타이어측에 알아본 결과 150톤급 열병합 보일러는 설치할 계획이 없으며 공장 자체에서 발생되는 페타이어는 자체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고 소각시에 발생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원심집진 시설과 여과집기시설, 이중연소 장치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연성은 1,800평의 쓰레기장에 매립토록 되어 있으며 계속적인 지도 단속에 임하겠음.
	○ 국제인삼시장, 우시장, 수삼센타 앞의 교통난과 도로상에서의 상거래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군의 방침	지역경제과 장 김희철	○ 군재정 형편상 부지확보가 어려워 하상 주차장시설에 대하여 검토를 했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청으로부터 하상의 정화사업비가 보조되어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 4월에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허병문의원			착공할 계획이며 하상정비 사업과 병행해서 주차장 시설도 검토를 해 나가겠음.
	○ 금산읍 중도리 우시장 아래쪽에서부터 자동차 운전학원까지의 도로변 하수구 부실로 인한 통행 불편과 인근 목재소의 지게차 운행으로 차량의 적체 현상 초래에 대한 대책	도시과장 박래훈	○ 우시장에서부터 자동차 학원까지는 이미 도로변에 측구가 되어 있어서 배수에 별지장이 없으며 신대2리 진입로에서 290m정도 구간은 배수에 문제가 있어왔음 이에 대책으로 내년도에 다소 예산을 들여 맨홀을 설치하고 PVC관을 묻어 처리 하겠으며 목재소 부근의 교통장애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 금산읍의 인분처리장과 금산읍에서 흘러 내려보내는 생활오수와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환경보호과장 김승근	○ 총 90개소를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점검실시하며 폐수대상업소는 수시에 불시점검을 하고 각 읍면에 명예환경 감시원을 임명 공해신고센타를 운영하며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주부들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음.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한규용의원	○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이유와 우리군의 향후대책과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인근 부락의 식수오염에 따른 수질검사 여부	환경보호과장 김승근	○ 재활용품을 확대 수거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와 다른 여타기관에 판매를 알선하며 경진대회를 실시 시상과 각 여성단체나 부녀회를 통한 홍보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매립장 인근주변의 식수오염에 따른 수질검사 관계는 간이급수 채취결과 적합 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대장균이 검출된 지역에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대책과 축산물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산업과장 김시중	○ 주요가축 전염병을 대상으로 년간 1만8천5백두를 예방주사 계획을 수립 공수의를 동원 예방주사를 완료 하였으며 소 10마리, 돼지 50마리 이상을 기르는 농가를 대상으로 90년도까지 개소당 200만원씩의 설치자금을 지원해서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26개소를 설치해 주었음.
	○ 인삼선양과 홍보내지 판매책과 기술지도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며 인삼경작인들에게 인삼계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산업과장 김시중	○ 그동안 홍보사항은 국내 홍보 13회 인삼아가씨를 통한 홍보, 각종 행사 참여를 통한 홍보, 라디오, TV, 신문, 전단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였고 인삼재배 기술지도면에 있어서 인삼연구팀과 제휴가 되어 새로운 재배기술 등을 KBS 금산중계소를 통한 인삼계 직원의 방송 읍면부락에 기술지도 등 인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인삼계 자체로 연구 노력을 하고 있음.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한규용 의원	○ 농어촌 정주권 개발에 대한 의의와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기준 및 방법 91년도에 진산면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산업과장 김시중	○ 90년도부터 2천년도까지 10년동안 농촌에 42조원을 투입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쾌적한 전원 농촌을 건설하며 '91년도 사업대상 선정 기준은 경지정리 사업 또는 농업용수등 생산기반의 정비실태와 도로정비, 농가소득 주민의 수요와 능력등 참여도를 고려해서 선정하였으며 '91소득원도로 정비사업계획등은 종합적으로 가중치 비율을 내어 진산면이 최우수면으로 선정되어 지정 하였음.
	○ 기계화 영농단 조성 현황과 금후 계획 및 본 사업의 실효성과 전망	산업과장 김시중	○ 192개 부락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10개 부락에 영농단을 조성할 계획이고 실효성과 전망은 공동이용을 해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이미보급된 기계 및 영농단을 활용해서 농기계의 이용율을 높이고 노력절감 및 영농비 절감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 하겠음.
	○ 농기계 순회 수리 센타 90.91년도 운영 횟수와 부품센타 설치 운영에 따른 연간 예산 및 공급현황	농촌지도소장 허일범	○ 금년도 1,750만원을 계상하여 전용수리차와 수리공구를 확보하고 부품구입비로 1천만원이 확보되어 504종의 1만2천개의 부품을 확보 했으며 순회 수리 실적은 주로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순회하여 95개 부락에 이앙기 66대 중형 대형 농기계 661대 수리 하였음.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한규용 의원	○ 1면 1특화 작목 육성 특수시책 추진 현황	농촌지도소장 허일범	○ 농촌지도소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가장 유망한 작목을 정해 그 지역을 주축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육성계획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시범단계에 있음.
정현수 의원	○ 임도개설 허가절차 내용과 임도 선정을 관광지 주변에 하게된 배경, 효과와 문제점	산림과장 이풍직	○ 모든 산림에는 임도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상지를 선정하면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현지 여건을 확인하여 확정시달을 함으로써 임도개설계획을 시작하며 임업경영의 효율화 방화선 역할의 효과가 있으며 조림사업을 많이 한지역 본군과 인접하여 불이 났을때 먼저 들어오는 지역 지속적으로 임업 생산을 하는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있음.
	○ 폐기물 수거료 부과에 있어서 일부 지역의 누락된 경위와 향후대책	재무과장 김진해	○ 금산읍과 추부면은 조례를 제정 특별청소 구역을 고시하여 폐기물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기타 8개면은 고시를 하지 않아 징수치 못하는바 12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이 시달되면 조례 공포를 하여 시군읍면 전 지역을 일부 폐기물 지역으로 광고를 하고 고시하여 폐기물 수거료를 징수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정현수의원	○ 외지에 거주하면서 주생활권이 금산에 있는 차량의 차고지 등록을 금산에 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방안은 없는지	재무과장 김진해	○ 세수증대 방안에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되나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이전하는데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 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음.

4. 제4차 본회의

○ 질문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이 홍 만 의 원	○ 담배 소비세에 대한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대책은	재무과장 김 진 해	○ 인구감소와 흡연인구의 감소에 원인이 있으며 계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음
	○ 한국타이어 공장 유치와 진산면의 골프장 유치로 군세의 기여도는 얼마인가?	〃	○ 한국타이어 공장유치시 계획서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매년 1억 7,500만원 정도이며 진산면 골프장의 경우 3억 9,800만원임.
	○ 73년도 이후 임야를 무허가로 개간 지목이 전으로 바뀐 뒤 임야상태로 환원되어 10여년이 지난 토지의 지목변경 가능 여부	지적과장 송 상 규	○ 지목변경은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준공이 된것에 한해서 가능 하며 방치되는 농지에 대해서 임야, 대지, 잡종지로의 지목변경 가능 여부는 농지 보존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내지 신고증을 받아야 가능함.
	○ 금년도 지목변경 건수와 지적 민원 발생의 현황	〃	○ 약 700여건에 1,500필지가 지목변경 처리 됐으며 유기한 민원 1,400여건, 즉결민원 64만8천 필지, 소유권 정리 1,600필지 임.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오규영 의원	○ 남이면 역평리와 건천리 경계 지점에 추진 중인 성지사업의 현재 공정과 예상되는 준공예정 일은	문화공보실 최정민	○ 전체 부지면적이 3,003평이며 추진상황은 부지조성공사 전승탑건립 조경공사 건립기 설치 파고라 및 안내판 설치 등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이미 완료 되었으며 경우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백고지 참전 공적비뒤에 새겨진 참전용사 명단 누락으로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준공식이 무기 연기 되었음. 보완 조치해서 준공토록 하며 내년 상반기중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보건지소에 행정직 공무원 미배치로 총무계 직원이 예산업무를 취급하여 폭주하는 업무량으로 실질적인 업무감독 및 내재확인이 어려운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은	내무과장 최용준	○ 업무량이 적은 소규모 기관에 행정직 공무원의 배치는 인건비라든가 예산상 낭비로 생각되며 보건지소장의 연령과 사회경험에 비춰볼때 퇴직공무원으로 지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근절 대책	사회과장 전영식	○ 새질서 새생활 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새마을운동 군지회,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및 여성단체등을 통해서 청소년탈선 방지 및 선도 캠페인을 전개 하였으며 청소년 탈선 및 범죄환경 조성의 우려가 되는 전자오락실등을 유관기관인 경찰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음.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박천보 의원	○ 제3회 10개년 군종합계획 추진 현황과 지연사유	기획실장 강병순	○ 상위계획인 국토종합 계획이 12월30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차 충청남도 종합건설계획이 91년 6월 10일 착수 11월 6일 완공계획이 12월 30일로 지연됨에 따라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재원확보에 대한 연계성을 찾기 위해 부득이 지연되었음.
허병문 의원	○ 용담댐 건설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와 대비책	기획실장 강병순	○ 갈수기에 초당 1.2톤의 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용담댐 건립 후에는 초당 5톤으로 늘어나 홍수가 없고 갈수피해가 없으며 환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서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알수 있음.
	○ 각부락의 위토답을 군에서 조례등을 바꾸어서라도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명의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무과장 김진해	○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것을 군조례로 조정을 해서 군자체적인 처리는 어려우며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보존 재산은 읍면리에서 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음.
한규용 의원	○ 공설운동장 위치 선정시 배경	새마을과장 최윤현	○ 금산읍 하옥리 산134번지 일원부지를 선정하게된 배경은 후보로 조사된 지구중 토지대금이 가장 저렴하고 부지면적중 국유임야와 공유지 및 동유림이 전체 면적의 85%로 토지사용 승인이 용이하며 별도 진입로 개설이 필요없고 교통이 편리한 점을 감안 가장적지로 내정 주민 여론 수렴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함.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박천보의원	○ 전보제한 해당자 인사발령 내용	내무과장 최용준	○ 전보제한 기간내 발령사항은 19명으로 그중 14명은 기구개편, 정원변경 등으로 이동을 하였고 나머지 4명은 사업추진상 기술직 공무원을 전보하였음.
박찬헌의원	○ 국공유 재산의 관리 현황과 은닉재산 발굴 현황 및 대부료 수입	재무과장 김진해	○ 국공유 재산은 1만 261필지의 83만 2,467평 이며 이중 군유재산 798만 7,161평이며 관리사항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버려진 국공유재산 찾기를 병행해서 추진 무단 점유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대부료 수입은 595필지에 10만 4,742평으로 956만 9천원임. 은익재산 발굴 추진은 현지답사를 하여 공부와 부합여부를 확인후 은익재산 발굴시 측량을 하고 대부 및 매각 절차를 이행하는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관급자재 수급현황	재무과장 김진해	○ 주택 2백만호건설 및 건설경기 과열과 쌍용양회의 단양공장 수해로 인해 공급 사정이 악화되어 우리 군에서도 각종 건설 현장에서 자재난을 겪고 있으며 각 사업과에서 레미콘측과 절충한 결과 큰 어려움이 없이 납품을 받고 있음.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정현수 의원	○ 금산군 노인복지 현황과 동절기 지원 계획, 노인복지회관 운영 내용 및 103세대의 모자가정 현황과 지원절차, 직업알선, 직업훈련 계획	가정복지과장 정육지	○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25개소이며 장소는 읍면의 마을회관과 종합복지회관, 사랑방등에 설치되어 있고 동절기에는 1개소에 1일 500원 기준으로 년간 200일분 10만원씩 지급하며 운영비로 월1만2천원씩 총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65세이상 관내 노인 4,800명에 대하여 승차권 지원 70세이상 영세노인 253명에게 월1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관내 모자가정은 총103세대로 저소득 모자가정은 88세대 이며 88전세대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지원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각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알선하며 자립기반 조성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박찬헌 의원	○ 토지등급 현실화율은 타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이며 현실화율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	재무과장 김진해	○ 금산군 토지등급 현실화율은 공시지가 대비 25%이며 충청남도는 평균 18.6%최고 높은 군이 청양군으로 25.9%, 최저는 천안시로 17%임. 앞으로 토지과표를 현실화해서 94년도까지는 공시지가율 60%까지 조정할 계획임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길부섭의원	○ 인삼홍보 전시관 설치에 대한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	문화공보실장 최정민	○ 도비 1억과 군비3천만원으로 도비가 지난 9월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이 지연 되었으며 11월 25일 발주하여 사업기간은 약 40일이 소요될것으로 판단 전시관 자료에 대해서는 읍면 유관기관 단체등에 협조공문 발송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임.
	○ 제11회 인삼제 행사시 소요된 예산현황과 내년도 행사는 군예산으로만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최정민	○ 91년도 예산내역은 군비보조 3,500만원 진흥기금 400만원, 성금1억 1,952만원 문화원기금 100만원, 기타 이자소득 2,600만원 총1억 5,934만 6천원이 모금되어 24개 종목에 1억 5,431만 1천원 집행 하였으며 인삼제 소요예산을 92년도 예산에 반영해 일부는 기금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토지세는 세법 194조 17호1항의 규정대로 부과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김진해	○ 공부에 관여 없이 사실대로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음.

나. 휴회의 건

본건은 12월 7일부터 12월12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의장제의로 휴회 할것을 가결 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가.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의 건

91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길부섭의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었다. 보고내용은 감사일정 및 주요실시 내용, 감사결과, 감사의견 등을 보고하였다.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나. 금산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 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 및 도예산 시군 지방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준칙에 의하여 지방자치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고 김진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금산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91년 12월 12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이 승인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정수 물품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신규취득이 3건에 19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라. 휴회의 건

본 휴회의건은 1차 본회의시 구성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제의로 가결되었다.

6. 제6차 본회의

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건

91년 12월 16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강병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0억 9,038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억 9,360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9,678만3천원으로 본군의 총예산 규모는 393억 5,277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16억 8,803만7천원, 특별회계는 76억 6,473만3천원으로 2.8%가 늘어나게 되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나. 휴회의 건

본 휴회의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계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제의로 가결 되었다.

7. 제7차 본회의

가. '90년도 금산군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90회계 결산과 예비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뒤 질의와 토론없이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예결 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상정한 것이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우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나. '92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6일 제2차 위원회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뒤 각 사업의 추진방향과 요지를 이해 납득하였으며 12월 23일 제4차 예결위에서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우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심의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8. 제8차 본회의

가. '9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신청내역은 토지 12건에 3억 3,715만원이며 건물 3건에 1억 6,812만 5천으로 본안건은 심의결과 한규용의원의 반대토론으로 표결을 통하여 찬성9, 반대1로 원안 가결 되었다.

나. 금산군 지방공사등에 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안

본 조례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제정 되었으나 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방공사 및 공단이 본군에는 존립하지 않으므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다.

다. 금산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안

본 조례는 도시정비 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작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거 재산세가 감면 되었으나 1992년 1월 1일부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다.

9. 제9차 본회의

가. 금산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91년 11월 30일자로 제정, 법률 제4410호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 제2조1항 제5호를 개정하고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에 있다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나. 금산군 새마을 공장등에 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분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의 폐지 신설등 적용시한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

치 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체계를 조정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 운영을 기하는데 있다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다. 금산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92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 운영에 있다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라. 금산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본 조례는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 운영에 있다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마. 금산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국가 지정 또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중 수익이 있는 문화재가 본군에 존립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 운영에 있다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바. 금산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의 제안 이유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 상이자를 지원키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이정도 상위 급수인 상지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사. 금산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체계를 조정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을 기하는데 있다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아. 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체계를 정비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을 기하는데 있다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자. 금산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9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제2조3항에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 시킴과 합리적인 세제 운영을 기하는데 있다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차. 금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 학생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므로서 건전한 학교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모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한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중 비행연습 기기의 조작 조립 운동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한다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카. 금산군 향교 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향교 기본재산의 유지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재산의 건실한 운영도모를 지원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규정의 세율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로, 과세하고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함을 제정하는 것으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타. 휴회의 건

본 휴회의건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위문 활동을 위하여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가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 제의로 가결 되었다.

10. 제10차 본회의

가. 금산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개원 처음 맞이한 정기회 마지막 회의로 금산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며 의장의 인사말씀을 끝으로 11시 45분에 산회 하였다.

이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군세 조례를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 및 세율을 조정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 운영을 기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금산군세 조례중 본문 119조 부칙 3항을 본문 64조 부칙3항으로 개정하고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제2절의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하고 제15조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중 법인의 대소에 따라 차등 과세표준을 정하였으며 제60조 제2항의 사업소세 과세 대상중 지방세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으로 중과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11.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가. 제1차 회의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간사, 각각1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 위원 상호간에 협의가 되어 위원장에 길부섭위원 간사에 허병문 위원이 선출되었다.

2) 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

금산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사전 의견 조정을 통하여 작성된 계획서에 대해서 박귀전 전문위원의 낭독이 있었으며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91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1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감사의 목적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나아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등을 통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감사시기 : '91.12.9~'91.12.11(3일간)

□ 감사 대상 기관

- ㅇ 금산군 (본청)
- ㅇ 보건소, 지도소
- ㅇ 읍.면

□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 (7명)

- ㅇ 위원장 : 길부섭, 간사 : 허병문
- ㅇ 위 원 : 한규용, 박찬헌, 박천보, 오규영, 이홍만

나. 사무 보조자 (4명)

- ㅇ 전 문 위 원 : 박 귀 전
- ㅇ 의 사 계 장 : 김 영 목
- ㅇ 사 무 직 원 : 길 영 식
- ㅇ 속 기 사 : 김 미 영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日 程	對 象 機 關	監 査 場 所	備 考
12. 9 (월) 10 : 00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 재무과, 읍면현지확인(필요시)	의 회 위 원 회 회 의 실	
12. 10 (화) 10 : 00	·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 산업과, 지역경제과, 읍면현지확인(필요시)	〃	
12. 11 (수) 10 : 00	·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 지도소, 읍면현지확인(필요시)	〃	

□ 감사요령

○ 보고청취

○ 질의답변

○ 필요시 현지확인

□ 소요경비

○ 420천원 (60,000원 × 7명)

□ 기타 필요사항

○ 현지확인 필요시 차량지원

○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의장경유 통보

출석대상자 명단

출석일	출석장소	출석대상공무원		비고
		직위	성명	
12. 9 (10 : 00)	위원회 회의실	기획실장	강병순	
		문화공보실장	최정민	
		내무과장	최용준	
		새마을과장	최윤현	
		재무과장	김진해	
12.10 (10 : 00)	위원회 회의실	지적과장	송상규	
		사회과장	전영식	
		환경보호과장	김승근	
		가정복지과장	정육지	
		산업과장	김시중	
		지역경제과장	김희철	
12.11 (10 : 00)	위원회 회의실	산림과장	이풍직	
		건설과장	최정우	
		도시과장	박래훈	
		민방위과장	정정학	
		보건소장	권희영	
		지도소장	허일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내역

순 번	자 료 명	비 고
계	59 종	
1	관리자 조서	
2	공무원정·현원현황	
3	'91년도 직원보충(승진포함)현황	
4	전출, 전입 현황	
5	민원처리 현황	
6	'91 주요사업 추진 현황	
7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8	민원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9	군 자치법규정비 현황	
10	문화재 현황	
11	'91 문화재 보수 현황	
12	금산인삼제 행사경비 내역	
13	'91 지방세 징수 현황	
14	'91 세외수입 징수 현황	
15	'91 기타수입 및 특별회계 수입현황	
16	세출현계표	
17	'91시설 공사집행 현황	
18	이월 사업 현황	
19	재산현황	
20	'91 재산매각 현황	
21	공유재산 매입 현황	
22	지적 민원 처리 현황	
23	지적 공부 현황	

순 번	자 료 명	비 고
24	생활 보호 대상자 책정 현황	
25	식품 제조업소 현황	
26	위생접객업소 현황	
27	배출업소 현황	
28	쓰레기장 확보 현황	
29	소년 가장 현황	
30	공설묘지 현황	
31	여성 단체현황	
32	농어민 관계자 육성 현황	
33	농어민 후계자 사업별 육성 현황	
34	식량 증산 실천	
35	전업 축산농가 현황	
36	인삼시장 거래 현황	
37	인삼 재배 현황	
38	자동차 및 운수업체 현황	
39	도로 현황	
40	경지 정리 현황	
41	관정 현황	
42	소류지 현황	
43	건축허가 및 준공 현황	
44	도시 계획 현황	
45	도시 지구 우회 도로 계획	
46	공원 조성 계획	
47	토지 거래 현황	
48	상수도 시설 현황	
49	소방 장비 현황	

순 번	자 료 명	비 고
50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	
51	'91 주요 지도 사업 현황	
52	기업체 현황	
53	공무원 포상 현황 (소속, 직급, 성명, 훈격, 공적개요)	
54	지목 변경 현황	
55	허가 및 신고업소 현황 (보건소 : 내역포함)	
56	유등천변 환경보호 시설물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화장실, 오물소각, 수집장 등)	
57	금산군 택시 조합 현황	
58	산림훼손 및 복구현황	
59	연립주택의 입주후 준공검사 소유권 이전이 안된곳의 현황과 문제점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내역

순 번	자 료 명	비 고
계	9 종	
1	지역신문 광고 현황 및 집행 현황	
2	'91 읍면 감사 지적 사항	
3	인삼위원회 회의록	
4	대둔산 골프장건설 사업에 따른 조치사항(군 해당사항)	
5	국유. 군유재산 매각 현황 (내역포함)	
6	지목변경에 따른 민원(진정, 청원, 건의등)처리 현황	
7	공업단지 농공단지조성 추진에 따른 민원 발생내용	
8	상수도 중. 단기 추진계획	
9	인삼연작장애 조사 및 시험결과	
	1) 연구 조사 내용	
	2) 시험결과(성과)	
	3) 예산집행 상황	
	4) 기타 추진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요구 내역

순 번	자 료 명	비 고
계	6 종	
1	육백고지 성역화 사업에 대한 전말	
2	대둔산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경과 및 허가 조건	
3	'91. 10월 이후 리장회의 개최현황 및 내용	
4	금산군 약초 특산물에 대한 활성화 대책	
5	UR에 대비한 금산군의 농업분야 대책과 추진상황	
6	인삼연작 장애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시험결과 향후계획	

나. 제2차 회의

이번 정기회 감사를 대비해서 그동안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수집해서 집행기관측에 일반자료 59종과 서류 9종 보고사항 6종을 요구하였으며 이번 감사는 이러한 요구자료들을 근거로 1문1답식 회의식으로 진행하였다. 감사첫날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순서로 감사를 하였으며 이날 회의는 22시 18분에 산회하였다.

다. 제3차 회의

감사 이틀째로 지적과를 비롯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의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고사항 및 서류감사, 기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다.

라. 제4차 회의

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산림과를 비롯한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순으로 진행 하였다. 농촌지도소 소관 인삼연작 장애에 대한 연구조사 및 시험결과 향후대책 및 UR에 대응한 금산군의 농업분야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촌지도 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며 6개과의 감사가 끝난후 위원장으로부터 본 감사기간 동안 진지한 열의와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감사 위원들과 감사에 적극 협조해준 곽영석 부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의회와 행정이 하나가 되어 올바르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수행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었다.

마. 제5차 회의

1)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1년 12월 9일부터 91년 12월 11일까지 3일간 행정 사무감사가 완료됨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소위원회를 열어 상호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허병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며 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대로 채택의결 되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 감사의 목적

- ○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
- ○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등을 통해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 확보

□ 감사 기간 : '91. 12. 9 ~ 12. 11(3일간)

□ 감사실시 대상기관

○ 금산군 본청 및 보건소, 지도소

□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7명

○ 위원장 : 길부섭, 간사 : 허병문

○ 위 원 : 한규용, 박찬헌, 박천보, 오규영, 이홍만

나. 감사일정 및 주요시책 내용

월 일	대상기관	장 소	방 법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12. 9 (월)	기획실	의회 위원회 회의실	질의답변	1. 의회업무 전담직원 미충원 문제 2. 군건설종합계획 수립 추진 경위 3. 집중관리 관서당경비 집행상황 4. 포괄사업비 집행상황 5.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6. 군 자치법규집 정비 현황	
	문화 공보실	〃	보고청취 질의답변	1. 육백고지 성역화 사업 전말 2. 문화재 관리 현황 3. 서울신문 홍보지 보급 문제 4. 지방신문 광고료 집행 현황 5. 서대산 개발 문제	
	내무과	〃	〃	1. 리장회의 개최 내용 2. 공무원 결원 보충 문제 3. 민원실 운영 현황 4. 구내식당 운영 지연 이유 5.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6. 새질서 새생활 추진 상황	
	새마을과	〃	〃	1. 대둔산 골프장 건설 사업 2. 새마을 농로 등기이전 문제 3. 새마을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4. 새마을 사업	

월 일	대상기관	장 소	방 법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고
12. 9 (월)	재 무 과	의 회 위 원 회 회 의 실	질의답변	1. 세외수입 확충 문제 2. 지방세 징수 현황 3. 공사계약 및 대금 지급 관계 4.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	
12.10 (화)	지 적 과	〃	〃	1. 지적민원 처리 2. 지목 변경 처리	
	사 회 과	〃	〃	1. 순국열사 추모제 현황 2.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관리현황 3. 위생검사 현황	
	환 경 보 호 과	〃	〃	1. 환경종합계획 추진 상황 2. 배출업소 관리 3. 환경영향 평가 4. 쓰레기장 관리 및 확보 5. 환경업소 지도 단속	
	가 정 복 지 과	〃	〃	1.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 실태 2. 모자가정 · 소년가장 관리 3. 알뜰시장 운영 현황	
	산 업 과	〃	보고청취 질의답변	1. 약초 특산물 활성화 대책 2. 상전조성 3. 축산폐수 관리	
	지 역 경 제 과	〃	질의답변	1. 주차장 시설 확충 대책 2. 자가용 불법 행위 3. 시외버스터미날 앞 주정차 해소 대책 4. 전북여객 완행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대책 추진 상황	

월 일	대상기관	장 소	방 법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고
12.11 (수)	산 림 과	의 회 위 원 회 회 의 실	질의답변	1. 산림조합 보조금의 사업효과 2. 산림훼손 및 복구 문제 3. 진산면 묵산리 중형휴게소 산림훼손허가 및 경위 4. 군유림 관리 및 활용 현황 5. 휴양림 개발 현황	
	건 설 과	〃	〃	1. 하천골재 채취 및 원상 복구 현황 2. 하천 도로 편입용지 보상 3. 군도 도로포장 사업 추진 현황 4.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 개발 사업 5. 익사사고 예방 대책	
	도 시 과	〃	〃	1. 상수도 시설 관리 2. 광역 상수도 추진계획 3.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민원 처리 4. 우량 농지 조성사업 경위	
	민방위과	〃	〃	1. 위험물 취급소(주유소)관리 현황 2. 소방장비 관리 현황 3. 민방위 대원 교육 현황 4.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대책 5. 면 소방공무원 근무제도 개선 대책	
	보 건 소	〃	〃	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대책 2. 모자보건센타 운영 실태 3. 앰브런스 운영실태 4. 독사 치료약 운용 상황 5. 방역소독 현황 6. 보건지소 약품 구입 현황	
	지 도 소	〃	보고청취 질의답변	1. 인삼연작 장애 연구 결과 2. UR에 대응한 군의 대책 추진상황 3. 특화작목 육성사업 결과 4. 어린모 보급 실태	

□ 감사결과

1. 시정 요구 사항

(기획실 소관)

(1) 집중관리 관서당 경비는 각 부서에 충분히 배려가 되도록 균형있는 집행을 할 것.

(2) 군 자치법규집은 금산군의 자치법규이므로, 전 공무원이 이에 기속되어 행정을 집행하고, 활용을 통해서 연찬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록을 발간할 것.

(3) 포괄사업비는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되, 읍면간 균형있게 집행할 것.

(문화공보실 소관)

(1) 육백고지 성역화 사업과 같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부터는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 조정하여 민원야기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2) 제원면 소재 도지정문화재인 신안사의 경우 경내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요사체 건물을 사찰주지 임의로 철거하고 복원(개축)이 되지 않고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경관을 흐려 놓고 있는바, 차후 관내 사찰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내무과 소관)

(1) 의회 업무가 내무과에서 기획실로 이관은 되었으나, 의회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은(행정7급) 현재 내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조속 기획실에 충원 조치할 것.

(2)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결원시에는 빠른 시일내에 결원 보충을 실시하여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할 것.

(3) 각종 지역방위 훈련시 군방위 지원본부에만 급양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읍면에도 최소한의 급량비를 지원할 것.

(4) 주민계도 및 행정시책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등 홍보물 설치는 필수적인 것만 설치토록할 것.

(5) 도시계획 확인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민원인의 불편이 많으니 민원실에 정규직공무원을 전담 배치 발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새마을과 소관)

(1) 읍면에서 광역권 사업 선정과정에 있어 주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시행할 것.

(2) 새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레미콘 수급의 차질로 공사가 지연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바, 향후에는 관급자재 수급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할 것.

(3)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및 사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철저히 실시하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 확인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재무과 소관)

(1)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하여 세수의 누락이 없도록할 것.

(3) 이자 수입이 최대화 되도록 군 금고 계약대상 금융기관을 전면 재검토할 것.

(4) 입찰잔액이 대부분 당해 사업에 추가 투자되고 있는바 효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

(5) 관내의 재무부령 건설업 면허를 가진 지방업자가 한도액 이내의 사업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 회계 공무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지적과 소관)

(1) 소속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실이 되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사회과 소관)

(1) 생활보호 대상자 실태조사 부실로 대상자의 누락 및 비해당자 책정으로 민원이

발생된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바,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

(2) 애국지사, 순국열사 추모제를 현충일에 합동으로 제향을 지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환경보호과 소관)

(1) 장기적인 측면에서 쓰레기 처리장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

(가정복지과 소관)

(1) 관내 공설묘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금산군 묘지사용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토록 대책을 검토할 것.

(2) 현행 금산군 묘지사용 조례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의 개정을 검토할 것.

(3) 군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장기적인 공설묘지 조성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4)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알뜰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산업과 소관)

(1)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농산물)만은 군수가 품질보증 제도를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지역경제과 소관)

(1) 민간자본을 유치한 유료 주차장 설치로 주차난 해소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것.

(산림과 소관)

(1) 군유림의 효율적인 활용의 일환으로 휴양림(군유림)을 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 금산읍 시가지에 유료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 및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것.

(건설과 소관)

(1) 금산군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직영 골재장 운영을 적극 검토 시행할 것.

(2) 골재채취후 빠른 시일내에 하상복구를 철저히할 것.

(3) 제원면 천내리, 명암리등 익사사고 위험지역의 위험 표지판이 조잡하고 임시 방편적인 바, 반영구적이고 실효성있는 경고판을 설치할 것.

(4) 실용성이 없는 소류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용도폐지등의 조치를 취하여 효율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경지정리 지구내 논 가운데에 있는 전신주를 이설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6) 경지정리 사업 시행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도시과 소관)

(1)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업무등 민원처리에 있어 안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여론이 있는 바, 법규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

(민방위과 소관)

(1) 면지역 소방공무원이 교대 근무자가 없어 1인 24시간 계속 근무로 가정생활의 지장 및 근무상 문제점이 많은바, 이의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 시행할 것.

(보건소 소관)

(1) 보건진료소의 운영이 극히 영세한 바, 최대한의 지원 대책을 강구,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앰브런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주민홍보등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 할 것.

(3) 읍면 보건지소의 약품을 지소 임의로 일시에 다량구입함으로써, 약품 전체 및 구입시 제약판매 업자와의 오해 소지도 발생되는 바, 군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 적기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지도소 소관)

(1) 군북면 천을리 특화작목 육성의 효과와 지도기법등을 적극 홍보, 지도 육성할 것.

2. 처리 요구 사항

(기획실 소관)

(1) 군 건설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것이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문화공보실 소관)

(1) 육백고지 성역화 사업은 경우회와 협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속 마무리할 것.

(내무과 소관)

(1) 민원인의 편리 도모와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의 차원에서 군청 구내식당을 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할 것.

(새마을과 소관)

(1)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를 조기에 실시하여 종토세등 주민이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할 것.

(지역경제과 소관)

(1) '91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차장 시설 사업을 년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진안선 전북여객 완행버스 운영중단에 따른 문제를 관련 군의회,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건의 사항

(내무과 소관)

(1) 민원실의 차량업무 담당을 읍면직원 2명을 차출 담당케 하고 있는 바, 도에 공무원 증원 요청을 건의할 것.
(2) 금산군의 공무원 정원이 타 시군에 비해 적은 바, 증원을 위한 타시군과의 대비표, 사유등 종합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와 의견을 도에 건의할 것.

(환경보호과 소관)

(1)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면적 150,000㎡이상시 환경처 장관이 지정한 전문용역업체에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이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이 용역업체와 밀착을 우려하여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불신의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용역비를 관할 감독 행정기관에 예치하고, 해당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 조치할 것.

□ 감사의견

○ '91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정기 감사로서 의원들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진지하고 열의가 있었으며, 또한 감사를 받는 간부공무원들의 수감자세도 매우 좋았고 성의가 있었으나, 일부 공무원의 수감자세는 지적이 된바 있었음.

○ 지방자치 역사의 일천 및 의원들의 전문지식, 감사기법 부족으로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감사실시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며, 현행 감사제도의 여러 제약 및 한계성으로 군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치 못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전문화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세와 부단한 연찬과 능력배양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며, 20%의 빈약한 재정자립도 위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의 촉진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으며, 중앙으로부터 세원의 재배분과 이양을 떠나, 우리 지역살림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의사에 의해서 처리 하려면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써, 앞으로 의회와 집행 기관은 지혜와 힘을 모아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 가치를 극대화 시킴으로써 경영수익 사업등을 구상, 발굴, 적극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군정 제1의 목표로 삼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군정에 대한 폭넓은 파악과 이해를 하는 큰 계기가 되었고, 서로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자아 반성의 계기와 발전적인 군정 수행을 위한 자극제가 되었음.

○ 또한 감사를 통해 느낀점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소신과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무원은 상부지시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행정인의 모습도 보았음. 앞으로 의회와 전 군 산하 공무원은 지방화 시대의 주역으로서 인식의 대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다짐과 출발이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지방자치 원년인 '91년도는 물폐기 농요의 발로로 국무총리 표창수상 및 42회 도민체전 상위권 입상, 72회 전국체전의 펜싱부 입상, 충남소방 선진기술 경연대회 입상등 괄목할 만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행.재정적 노력과 성의를 다한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영광스런 해로서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 격려를 보내는 바임.

1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제1차 회의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상호간에 협의가 되어 위원장에 박승우위원, 간사에 정현수 위원을 선임하였다.

2) 결산 및 예산안 심사일정 확정의 건

사전 여러 위원들간에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에 대하여 박귀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다. 보고내용은 90년도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 장소, 실과별 보고순서, 보고일정, 보고요령등을 설명하였다. 심사결과 결산 및 예산안 심사일정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나. 제2차 회의

1) 90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본 안건에 대해서 김진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세입세출 총괄 및 예비비지출 현황 내역은 다음과 같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내역

세입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			
		세 입 예 산	전년도이월액	세 입 총 액	수 납 액 (가)
합 계		36,458,512,000	2,381,873,000	38,840,385,000	35,428,091,407
일 반 회 계		25,558,934,000	2,316,565,000	27,875,499,000	27,899,636,322
특별회계	소 계	10,899,578,000	65,308,000	10,964,886,000	7,528,455,085
	상수도사업	639,811,000	0	639,811,000	694,846,530
	주택관리	274,520,000	0	274,520,000	224,061,421
	의료보험기금	1,602,047,000	0	1,602,047,000	1,596,693,002
	새마을 소득금고	21,742,000	0	21,742,000	19,991,378
	구획정리	32,253,000	0	32,253,000	35,106,074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8,859,000	0	38,859,000	44,018,105
	새마을 특별지원	446,198,000	0	446,198,000	445,221,135
	농공지구	7,031,516,000	65,308,000	7,097,824,000	3,717,851,390
	공유임야	1,132,000	0	1,132,000	1,421,130
	골재판매	756,500,000	0	750,500,000	740,044,860

합 계		세출				차인잔액 (가 - 나)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나)	
합 계		36,458,512,000	2,381,873,000	38,840,395,000	29,352,059,750	8,524,031,657
일반회계		25,558,934,000	2,316,565,000	27,875,499,000	22,675,252,370	5,224,383,952
특별회계	소 계	10,899,578,000	65,308,000	10,964,886,000	6,676,807,380	3,299,647,705
	상수도사업	639,811,000	0	639,811,000	608,483,410	86,363,120
	주택관리	274,520,000	0	274,520,000	197,664,340	26,997,081
	의료보호기금	1,602,047,000	0	1,602,047,000	1,495,518,750	99,174,252
	새마을 소득금고	21,742,000	0	21,742,000	19,054,550	936,828
	구획정리	32,253,000	0	32,253,000	28,376,540	6,729,534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8,859,000	0	38,859,000	38,500,000	5,518,105
	새마을 특별지원	446,198,000	0	446,198,000	329,000,000	126,221,135
	농공지구	7,031,510,000	65,308,000	7,097,624,000	3,226,228,550	2,939,622,840
	공유임야	1,132,000	0	1,132,000	0	1,421,130
	골재판매	756,500,000		756,500,000	733,981,240	6,663,620

합 계		이 월 액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사용잔액	잉 여 금
합 계		8,524,031,657	1,480,367,680	5,272,363,450	52,235,800	1,719,064,727
일반회계		5,224,383,952	1,480,367,680	2,788,654,570	52,235,800	903,125,902
특별회계	소 계	3,299,647,705	0	2,483,708,880	0	815,938,825
	상수도사업	86,363,120	0	0	0	80,363,120
	주택관리	26,997,081	0	0	0	26,997,081
	의료보호기금	99,174,252		0	0	99,174,252
	새마을 소득금고	936,828		0	0	936,828
	구획정리	6,729,534		0	0	6,729,534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518,165		0	0	5,518,165
	새마을 특별지원	126,221,135		0	0	126,221,135
	농공지구	2,939,622,840 (2,448백만원 미차입)	0	2,483,708,880	0	455,913,960
	공유임야	1,421,130		0	0	1,421,130
	골재판매	6,663,620		0	0	6,663,620

세 입 세 출 결 산 총 괄 표

구 분		예산액 (가)	징 수 결정액 (나)	수 납 액			미수납액 (나) -(마)	미수납액처리	
				수입총액 (다)	과 오 납 반환액(라)	실제수납액 (마)		결 손 처 분	이월액
합 계		36,458,512,000	35,599,289,215	35,430,398,337	2,306,930	35,428,091,407	171,197,808	12,495,350	158,702,458
일반회계	계	25,558,934,000	27,930,712,924	27,900,962,012	1,325,690	27,899,636,322	31,076,602	7,345,270	23,731,332
	지 방 세	3,103,600,000	3,222,523,030	3,197,863,700	534,420	3,197,329,280	25,193,750	6,580,210	18,613,540
	보통세	2,868,030,000	2,970,366,290	2,955,278,820	534,420	2,954,744,400	15,621,890		15,621,890
	목적세	233,270,000	240,935,430	239,543,010		239,543,010	1,392,420		1,392,420
	과년도 수 입	2,300,000	11,221,310	3,041,870		3,041,870	8,179,440	6,580,210	1,599,230
	세외수입	1,748,425,000	4,139,954,394	4,134,162,812	91,270	4,134,071,542	5,882,852	765,060	5,117,792
	경상적 수 입	706,373,000	759,976,192	757,010,172		757,010,172	2,966,020		2,966,020
	임시적 수 입	1,042,052,000	3,379,978,202	3,377,152,640	91,270	3,377,061,370	2,916,832	765,060	2,151,772
	지방교부세	11,641,002,000	11,641,000,000	11,641,000,000		11,641,000,000			0
	보 통 교부세	11,641,001,000	11,641,000,000	11,641,000,000		11,641,000,000			
	증 액 교부세	1,000							
	보 조 금	8,945,904,000	8,927,235,500	8,927,235,000	700,000	8,927,235,000			
	국 고 보 조	6,192,337,000	6,169,092,500	6,169,092,500		6,169,092,500			
	도 비 보 조	2,753,567,000	2,758,143,000	2,758,843,000	700,000	2,758,143,000			

구 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미수납액 (나)-(마)	미수납액처리	
				수입총액 (다)	과오납반환액(라)	실제수납액 (마)		결손처분	이월액
	지방채	120,003,000	0	0		0	0	0	0
특별회계	계	10,899,578,000	7,668,576,291	7,528,455,085	981,240	7,528,455,085	140,121,206	5,150,080	13,497,126
	상수도사업	693,811,000	694,846,530	694,846,530		694,846,530	0	0	0
	주택관리	274,520,000	290,392,779	224,661,421		224,661,421	65,731,358		65,731,358
	의료보호기금	1,602,047,000	168,682,382	15,946,693,002		15,946,693,002	13,989,380	5,150,080	8,839,300
	소득금고	21,742,000	20,991,378	19,991,378		19,991,378	1,000,000		1,000,000
	구획정리사업	32,253,000	74,120,742	3,516,074		3,516,074	39,014,668		39,014,668
	생활안정기금	38,859,000	49,777,545	44,081,165		44,081,165	5,759,380		5,167,160
	소득특별지원	446,198,000	463,388,295	455,221,135		455,221,135	8,167,160		8,167,160
	농공지구조성	7,032,516,000	3,723,954,250	3,717,851,390		3,717,851,390	6,102,860		6,102,860
	공유임야	1,132,000	1,77,530	1,421,130		1,421,130	356,400		356,400
	골재판매	756,500,000	740,644,860	740,626,100	981,240	740,644,860	0		0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

예비비 지출 현황

19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27,108,000원으로 추풍천 보수공사외 17건에 71,786,000원을 지출하고 300,322,000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행위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나-다	불용액 (가-나)	처리일자			지출사유
세항	사업명						결정일자	지출일자	승인일자	
합계		71,786,000	66,866,400	66,866,400	0	4,919,600				
5223-3 하천관리	추풍천보수공사	25,000,000	22,705,640	22,703,640	0	2,296,360	90. 8.28	90.11.20	90. 7. 5	90수해위험지역 응급조치
4113-1 식량증산	벼멸구공동방제용 농약지원	1,530,000	1,530,000	1,530,000	0	0	90. 9. 4	90. 9. 4	90. 8.24	고온다습으로 인한 벼멸구의 서식밀도가 확산되어 긴급공동 방제용 농약대 지원
4113-1 식량증산	벼멸구공동방제용 농약지원	1,020,000	1,202,000	1,020,000	0	0	90. 9.19	90. 9.21	90. 9.19	
2212-1 서무관리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및 환경감시원 제복	1,205,000	1,105,000	1,105,000	0	100,000	90.11.16	90.12.26	90.10.23	10.13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필수 경비 지원
2212-1 서무관리	새질서새생활 다짐대회 홍보물 유인	7,450,000	7,450,000	7,450,000	0	0	90.10.23	90.10.23	90.10.23	
3132-1 가정의례관리	새질서새생활 다짐대회 참석자 급식 및 퇴변태업소 신고자보상	800,000	272,740	272,740	0	527,260	90.11. 3	90.11. 5	90.10.23	
3222-1 분뇨처리	단속공무원용가스총외 2종 구입	2,210,000	240,000	240,000	0	1,970,000	90.11.23	90.11.30	90.10.23	
3222-1 분뇨처리	위생업소조명도측정기구입	330,000	330,000	330,000	0	0	90.11. 3	90.12.29	90.10.23	
3223-1 식품위생업소지도단속	퇴·변태업소 단속홍보 및 오염근절붐조성홍보물 유인	3,464,000	3,464,000	3,464,000	0	0	90.10.23	90.10.23	90.10.23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처리일자			지출사유
세항	사업명	(가)	(나)	(다)	나-다	(가-나)	결정일자	지출일자	승인일자	
4113-1 식량증산	경운기야광표시판제작	604,000	578,020	578,020	0	25,980	90.10.23	90.11. 7	90.10.23	10.13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필수경비 지원
4131 기관운영비	법질서확립추진상황판제작	232,000	232,000	232,000	0	0	90.12. 1	90.12. 7	90.10.23	
7132-1 지역안정	주·정차금지표지판제작	800,000	800,000	800,000	0	0	90.11.12	90.11.12	90.10.23	
7132-1 지역안정	차선도색·로상주차장설치및범죄예방컴퓨터부대시설	24,103,000	24,103,000	24,103,000	0	0	90.11.12	90.11.12	90.10.23	
4131 기관운영비	법질서확립입간판제작	1,385,000	1,385,000	1,385,000	0	0	90.11. 2	90.11.16	90.10.23	
4131 기관운영비	법질서확립주정차금지표지판	640,000	640,000	640,000	0	0	90.11. 3	90.11.13	90.10.23	
4131 기관운영비	법질서확립주정차금지전단유인	461,000	461,000	461,000	0	0	90.11. 3	90.12. 7	90.10.23	
4131 기관운영비	법질서확립과태료납부고지서인쇄	350,000	350,000	350,000	0	0	90.11.14	90.12. 7	90.10.23	
4131 기관운영비	법질서확립추진보존용필림구입	202,000	202,000	202,000	0	0	90.11.22	90.10.23	90.10.23	

2) 92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의의 건

본 안건은 강병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번에 상정된 '9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5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18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5,1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편성 방침은 정확한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92년도의 지방 재정 운용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계획 재정 운영을 확립하고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견지해 나가면서 절약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보고가 있었다.
본 안건은 제3차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고 산회하였다.

다. 제3차 회의

1) '92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사의 건

지난 2차 위원회시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준예산적 성격이며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 보조금이 확정되어 수정안으로 제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자립도가 17%밖에 안되는 영세한 재정으로서 대체로 계획예산이며 주민복지와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임을 보고 하였다. 이어서 각 실과 사업소, 부서별로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며 제4차 위원회에서 분담 위원별로 심의하기로 하고 산회하였다.

라. 제4차 회의

1) '92년도 금산군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그동안 '92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2월 21일 금산군측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 되었으며 강병순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홍만 간사로부터 금산군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마련한 '92예산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보고 내용은 91년 12월23일 금산군수로부터 '92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국고보조금 15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 16억 4,610만 2천원, 지방교부세 9억 1,500만원이 늘었으며 수정안은 주민을 위주로한 예산안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했다.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 되었으며 수정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정 발의 내용

삭감부분		증액부분	
분야	금액	분야	금액
	천원		천원
기획관리	34,000	의회운영	16,570
공보관리	30,230	노인복지	10,000
내무행정	31,000	부녀복지	6,000
회계관리	8,500	하천관리	13,800
새마을사업	6,000	지역개발	5,000
체육진흥	30,000	산업경제	4,000
보건관리	64,000	소방	2,000
		보건관리	5,280
		농촌진흥	35,000
		수입삭감(수수료)	63,500
		군비부담금	42,580
계	203,730천원	계	203,730천원

제 10 절 제1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1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부의안건 처리를 위하여 1992년 1월 22일 금산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2년 1월 24일 소집공고를 하였다. 제10회 임시회는 군정보고 및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의 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 하였고 회기는 1992년 1월 30일 1일간으로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며 제1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태진수의원과 이홍만의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제1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2. 1.30 (목요일) 10 : 00		○ 개 회 식	
	1	1. 제1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보고의 건 3.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금산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나. 군정보고의 건

먼저 류응상 금산군수의 인사가 있은 다음 기획실장의 92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군정의 성과, '92업무계획, 자체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하였으며 이중 91군정의 성과 보고 내용은

- 인삼 종주지 선양의 기반구축
- 새질서 새생활의 실천
- 농촌 소득의 증대
- 활력있는 지역개발 이며

'92년도 업무계획은

- 지방자치 행정의 기틀마련과 자치역량의 창달
-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
- 군세신장의 획기적인 능력 창출
- 삶의 보람을 느끼는 복지사회의 구현
- 빛나는 향토문화의 보전과 사회체육 진흥이며

자체시책 으로는

- 으뜸 백삼만들기 사업
- 충절의 얼 기리기 운동이며

현안 사업으로는

- 천주교 앞 소방도로 개설 등이 보고 되었다.

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은 군유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군유재산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다.

라. 금산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단체는 현행법상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이나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6호의 개정으로 비과세대상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되므로서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 11 절 제1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11회 임시회는 한규용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금산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및 금산군 체육회기 제작안등 3건의 조례안 심의와 오규영 의원외 6인이 제출한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였고 '92년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며 1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정현수의원, 한규용의원 두 의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제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92. 2. 19 (수요일) 10 : 00	1	1. 제11회 금산군 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금산군 체육회기 제작안 3. 금산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금산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5. 청원 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본 회 의
'92. 2. 20 (목요일) 10 : 00	(1)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청원 재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및 청원 소개의원 의견 진술 요구의 건 3. 현지조사 및 주민 여론 수렴의 건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92. 2. 21 (금요일) 11 : 30	(2)	1. 청원 재심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및 청원 소개의원 의견 진술 요구의 건	〃
'92. 2. 24 (월요일) 17 : 20	(3)	1. 청원 재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92. 2. 25 (화요일)	2	1. 금산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 회 의

나. 금산군 체육회기 제작안

본 체육회기 제작안은 우리 의회의 법규적인 심의 대상 안건은 아니나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금산군에서 제출한 것으로 금산군 체육회를 상징할 수 있는 금산군 체육회기를 제작하여 각종 체육행사에 활용함으로써 금산군 체육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금산군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최윤현 새마을과장의 제작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다. 금산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91년 12월 31일 법령 제4,464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사무기구와 간사를" 각각 "사무과와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강병순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심의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

라. 금산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92년 2월 11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저소득 주민 줄이기의 일환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앞으로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91년 12월 9일자로 도로부터 시.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도중에 한규용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들어왔으며 의안에 대한 수정이 있을 경우 의원 4분의 1이 의안에 대해서 연서하여 미리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기로 하였다.

마.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 건은 지난 '91년 10월 28일 박천보 의원의 소개로 남일면 마장2리 박찬양외 133명의 연명 날인으로 제출되어 '91년 10월 29일 제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서를 채택 금산군에 이송한 남일면 마장2리 앞 봉황천 교량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박천보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기립표결 결과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과반수 득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한규용의원외 6인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바. 휴회의 건

본 휴회의 건은 의장 제의로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 2월 20일부

터 2월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가. 제1차 회의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특위운영을 위한 사전 협의로 위원장에 한규용 위원 간사에 허병문 위원이 선임되었다.

2) 청원 재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및 소개의원 의견 진술 요구의 건

본건은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로 청원재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소개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2월 21일 제2차 청원 재심사 특별위원회에 새마을과장 최윤현, 기획실장 강병순, 의회 전문위원 박귀전, 청원 소개의원 박천보 의원 이상 4인을 출석요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3) 현지조사 및 주민 여론 수렴의 건

본건은 위원장 제의로 청원 재심사에 따른 해당 및 인근지역과 남일면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나. 제2차 회의

1) 청원 재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청원 소개의원 의견 진술의 건

본건은 지난 '91년 10월 28일 박천보 의원의 소개로 남일면 마장2리 박찬양외 133명의 연명 날인으로 제출된 남일면 마장2리 앞 봉황천 교량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91년 10월 29일 제7회 임시회에서 의견서를 채택 금산군에 이송하였으며 '92년 12월 24일 제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동 청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 5억2천만원을 의결하였는바 '92년 1월 13일 남일면 상동2리 박하전외 156명의 연명으로 제출된 진정서와 '92년 2월 28일 남일면 상동2리 박하전외 7명의 연명 날인으로 제출된 남일면 봉황천 교량 가설에 대한 진정서에 대하여 금산군측의 진정서 처리결과 통보로 인하여 '94년도 오지개발 사업계획으로 되어있는 대상지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으로 밝혀져 동 청원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 새마을과장 최윤현, 기획실장 강병순 건설과장 최정우, 의회 전문위원 박귀전, 청원 소개의원 박천보 의원을 출석시켜 의원들과의 1문1답식 질의를 통하여 남일면 마장2리 앞 봉황천 교량설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였다.

다. 제3차 회의

1) 청원 재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본건은 그동안 남일면 마장2리 앞 봉황천 교량설치에 관한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사전 의원들간에 협의가 되어 작성된 청원재심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허병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었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992. 2. 20 ~ 2. 24

1. 조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2년 2월 18일, 한규용 의원외 6인

나. 상정일자 : 1992년 2월 19일

다. 회부일자 : 1992년 2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의원 오규영)

가. 제안이유

지난 '91년 10월 28일 박천보 의원의 소개로 남일면 마장2리 박찬양외 133명의 연명날인으로 제출되어 '91년 10월 29일 제7회 금산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견서를 채택 금산군에 이송한 남일면 마장2리 앞 봉황천 교량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 청원을 재심사하기 위한 청원재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함.

1) 본회의 의원들은 동 청원 의결당시 소개의원의 취지대로 동 청원에 대한 사업을 '94년도 오지개발사업 대상지로 계획되어 있음을 믿고, 동 사업을 조기에 앞당겨 시행해 달라는 취지에서 건의서를 채택 금산군에 이송하였으며, '92년 12월 24일 제9회 금산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동 청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 5억 2천만원을 의결하였는바

2) '92년 1월 13일 남일면 상동2리 박하전외 156명의 연명으로 제출된 진정서와 '92년 2월 8일 남일면 상동2리 박하전외 7명의 연명날인으로 제출된 남일면 봉황천 교량가설에 대한 진정서에 대한 금산군측의 진정서 처리결과 통보로 인하여

3) 제7회 임시회시 건의서를 채택 의결한 청원사업대상지가 당초 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하게된 중요 근거가 된 '94년도 오지개발사업계획으로 되어있는 대상지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으로 밝혀지게 되었음.

상기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할때, 제7회 임시회에서 의견서를 채택 이송한 남일면 마장2리 앞 봉황천 교량설치에 관한 청원은 신중한 재심사가 요청되므로 청원재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는 바 임.

3.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 위원장 : 한규용　　○ 간사 : 허병문

○ 위 원 : 박찬헌, 오규영, 박승우, 태진수, 이홍만

4. 특별위원회 운영일정

월 일	내 용	비 고
2. 20 (목)	○ 제1차 청원재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2. 청원 재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및 청원소개의원 의견 진술 요구의 건 3. 현지조사및 주민 여론 수렴의 건 ※ 현지조사및 여론 수렴 ○ 조사 대상지 · 상동2리(박하전외 주민대표 10명) — 10 : 30~12 : 00(상동2리 마을회관) · 남일면 방문(면장 고정규) — 13 : 00~15 : 00 · 상동1리(박찬양외 주민대표 20명) — 15 : 30~16 : 40(상동1리 마을회관)	· 새마을과장 · 기획실장 · 전문위원
2. 21 (금) 11 : 00	○ 제2차 청원재심사특별위원회 1. 청원재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및 청원소개의원 의견 진술의 건	· 새마을과장 · 기획실장 · 건설과장 · 전문위원 · 의원 박천보
2. 22 (토)	○ 청원재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2. 23 (일)	○ 일요일	
2. 24 (월)	○ 청원재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5. 주민여론 수렴 결과

○ 상동2리

상동1리 교량가설 사실은 진악신문보도를 통하여 알았으며 당시에는 교량위치가 상동1리인지는 전혀 생각치 않았음.

또한, 상동1리에서 청원 당시 '91년 8월 20일, 21 : 30경 마장2리 박기우가

전화로 5개부락 협동권 사업으로 추진 계획이라며 황풍2, 마장1.2, 상동1.2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의했으나 상동1리에 교량가설이 될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거절했음.

청원 결정후 상동2리는 교량가설이 불가할 것이라 생각하여 의정보고회시 박천보 의원에게 질문을 했는데 박의원은 위치 문제는 본인의 결정사항이 아니며, 사업예산만 얻어왔다고 발언했으나 1월초에 상동1리 교량가설 사업비가 책정되었다기에 이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음.

금년에 상동2리에 추진위원 6명이 군 새마을과장을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94년도 계획을 설명하며 교량위치는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ㅡ이에 행정측의 답변을 문서화시키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임.

문제발생후 박천보 의원이 상동1리를 1차방문하여 주민들의 사전 연락없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당초에는 교량을 1개로 생각했었다며 본인이 '94년도에 시행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함.

또한, 박천보 의원이 2차로 방문하여 현재 상동1리에 가설하려는 교량을 상동2리에 가설을 하려 할 경우의 주민의견을 물어 최소한의 교량가설도 좋다고 동의했으며 상동리에 2개의 교량이 가설될 것이라고는 믿고 있지는 않고 있음.

상동2리 다리골간의 교량가설은 대대손손의 숙원사업이나 그동안 과중한 예산소요로 인하여 무리라고 여겨왔으나 최근 경지정리실시와 영농기계화로 교량가설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상동2리

그동안 교량의 필요성을 수차 건의해 왔는데 이번에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청원을 제출하게 되어, 박천보 의원의 자문을 구하여 제출.

또한, 현재 문제가 되는 '94년도 오지개발사업 관계는 청원서에는 기재된 바가 없는 사실이며 '94년도 실시 사업이라면 2~3년을 기다리지 청원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것임.

의회에서 폐기할 경우 마을에서는 마을 전재산을 소모하더라도 의회와 투쟁하겠으며, 주민들은 오지개발사업등과는 관계없이 인명피해등을 우려로 청원할 것이므로 만일 금년에도 익사사고등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예산안 심의시 5억2천만원을 의원들이 의결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번복한다면 의회의 공신력과 위상이 문제되며 주민들은 누구를 믿겠는지.

○ 남일면(면장)

청원의 하자를 인지한 시기는 상동2리 주민들의 진정서 제출로 알게 되었으며 상동1리 교량가설은 박천보 의원이 통보, 협조 요청함.

교량가설은 오지개발사업으로 1개가 확정되어 있고, 청원으로 1개가 더 가설된다는

것을 알고는 지역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함.

상동1리 지역은 '88년도 수해시 상동1리와 마장리 주민 4명이 익사한 곳으로 교량가설의 필요성이 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 1 : 위원 허병문)

청원건이 오지개발사업과 별개의 사실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답변 1 : 새마을과장 최윤현)

청원요지에 대한 검토를 한 시기는 의결결과가 기획실을 통하여 새마을과에 통보된 11월 초순경이며 공람과정에서와 이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로 알게 되었음 또한 교량가설의 필요성은 그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실무자와 현지 출장결과 상동1리와 상동2리 교량가설의 필요성이 50 : 50이라고 느꼈음.

(질의 2 : 위원 허병문)

청원건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는지?

(답변 2 : 새마을과장 최윤현)

청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음.

(질의 3 : 위원 허병문)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청원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통보치 않았는지?

(답변 3 : 새마을과장 최윤현)

현재 새마을과와 의회간에 구두로 왕래할 수 있는 채널이 없음. 모든 의회간의 업무는 기획실을 경유 의회에 통보토록 되어 있음. 의회와의 창구가 없어서 못했음.

(질의 4 : 위원 허병문)

청원을 접수하기 전날 부군수, 기획실장, 박천보 의원등이 있을때 새마을과장이 의원들의 뜻이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94년도 오지개발사업을 앞당겨 실시한다는 뜻이 아닌지?

(답변 4 : 새마을과장 최윤현)

본 뜻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본다는 것이며, '92예산이 풍부하고 군수의 뜻이 있을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한 말임.

(질의 5 : 위원장 한규용)

청원사항이 '94년도 사업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획실로 통보했다는데 이 내용으로 청원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구분된다고 생각했는지?

(답변 5 : 새마을과장 최윤현)

그렇게 생각했음. 새마을과에서 기획실로 통보한 사업계획이 의회로 제대로 통보되었다면 의원들이 제대로 알았을 것임. 그러나 새마을과에서 통보한 사항중 ①~③항까지

는 의회로 전달이 되지 않고 ④항만 통보가 되었음.

(질의 6 : 위원장 한규용)

윗분들과 상의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 사실을 의회에 통보하라는 말은 없었는지?

(답변 6 : 새마을과장 최윤현)

없었음. 다만 가장 후회스러웠던 점은 통보시 도면을 첨부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질의 7 : 위원장 한규용)

현지확인 결과 청원내용과 오지개발사업의 위치가 다른줄 알았다면 서면으로 통보할 문제인데?

(답변 7 : 새마을과장 최윤현)

심증은 있으나 확신이 없었음. 행정과 의회와의 견해차가 있음. 54개 오지개발사업을 전부 당겨 달라고 청원이 오면 다 수용할 수 있을런지?

두 교량이 다르다는 것은 '92예산으로 책정되기 전에는 전혀 예측 못했음. 또한 상동2리 주민들이 진정하리라고도 생각치 않았음.

건설과장을 만나 예산배경을 물은 바 전혀 모르겠다는 답변이었으며, 상동1리 예산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기획실장도 상동1리 예산이라 하여 진정서 처리시 교량을 두개로 표시했음.

(질의 8 : 의원 허병문)

청원 문제로 박의원과는 만났는지?

(답변 8 : 새마을과장 최윤현)

만난적 없으며, 상동2리 사업비로 당기면 안되냐고 의장이 말하여 불가하다고 했으며, 당시 새마을과 실무자는 도청으로 발령이 난 상태이며, 사업계획서는 전문위원에게 보여주었음. 할 수 있을런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 의도적은 아니었음. 두개의 교량이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음.

(질의 9 : 의원 태진수)

새마을과장이 현지 확인결과 상동1리 다리임을 알고 기획실에 통보했다는데?

(답변 9 : 기획실장 강병순)

아는 사실 없음. 모르는 바 임.

(질의 10 : 의원 허병문)

1월 17일 새마을과장은 답변내용을 건설, 기획실장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교량가설의 예산 계상 근거는?

(답변 10 : 기획실장 강병순)

협의한바 없으며, 협의사항도 아님.

예산 계상은 민의수렴 기관이기에 계상. 양여금 사업과 농촌도로사업과 병행하여 건설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기술진에 의해 농촌정비기준에 의해 산출됨.

(질의 11 : 의원 허병문)

예산편성시 교량이 두개인지 알았는지?

(답변 11 : 기획실장 강병순)

몰랐음. 상동2리 주민의 진정으로 알게 되었음.

의회에 통보한 처리계획서의 "'94년도 계획"의 의미는 새마을과의 이송서로 그 의미는 모름.

(질의 12 : 위원장 한규용)

새마을과장이 윗분들과 상의해서 했다는데?

(답변 12 : 기획실장 강병순)

봉황천 교량가설 이야기를 나눈적이 없으며, 상의여부는 모름.

(질의 13 : 위원 이홍만)

수정예산 심의시 교량이 두개라는 것을 알았는지?

(답변 13 : 기획실장 강병순)

몰랐음.

(질의 14 : 위원 허병문)

예산이 8억7천이면 주민 870명 1인당 1백만원인데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했는지?

(답변 14 : 기획실장 강병순)

하지 않았음.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재원부족 때문임. 일반교부세가 당초 110%로 계상했는데 12월 19일에 130%로 되었음.

(질의 15 : 위원장 한규용)

그러한 사실을 왜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는지?

또한 새마을과장은 수정예산 편성시 실장과 협의했다는데?

그리고 발의의원에게 압력 받은 사실은 없는지?

(답변 15 : 기획실장 강병순)

수정예산 제안설명시 설명 드렸음. 앞으로 상의하겠으며, 새마을과장과는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발의의원에게 압력받은 사실은 절대 없으며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행정립을 인식하여 소신대로 한 일임.

지역개발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하며 심려를 끼쳐 죄송함.

(질의 19 : 위원 이홍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 상동2리 주민은 청원서에 날인치 않았는데도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아닌지?

또한 '94년도 시행지구이나 예산 허락 범위에서 조속 추진 촉구 의견표시는 어떤 뜻인지?

(답변 19 : 전문위원 박귀전)

청원서 현황에 보면 상동1.2리, 마장1.2리 현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했음.

청원서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에는 '94년도 실시예정이라는 문구는 없음.

당시 의장실에서 의장이 지역개발사업을 청원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며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소개의원이 '94년도 기왕의 책정사업이므로 앞당겨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부군수와 새마을과장의 입회하에 강조했으며 당시 새마을과장이 분명히 '94년도 사업이라고 답변했음.

또한 본 전문위원이 박천보의원에게 현지확인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 소신없는 공무원이라 질책했으며, 새마을과에 알아 보았더니 '94년도 사업이라고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답변(실무자), 즉 새마을과장, 소개의원과 실무자가 '94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검토보고서 작성.

(질의 20 : 위원장 한규용)

의견서에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촉구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답변 20 : 전문위원 박귀전)

오랜 숙원사업이며 '94년도 사업이고, 주민 숙원사업이므로 강조했음.

(질의 21 : 위원장 한규용)

좀더 신중히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답변 21 : 전문위원 박귀전)

현지를 다녀오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으며, 본인의 소견으로는 주민과의 마찰없이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사료됨.

(질의 22 : 위원 태진수)

전문위원이 청원처리에 시간을 두었으면 하고 말하자 박의원이 "소신 없다"고 했다는데 이는 공무원에 대한 위압이 아닌지?

(답변 22 : 의원 박천보)

여러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사업을 앞당기려는 심정에서 한 말이며, 예산심의가 12월이므로 그 이전에 심의하기 위해서 한 말로 위압을 준 것은 아님.

(질의 23 : 위원 허병문)

'91년 8월 20일 박기우씨가 상동2리 서문행씨에게 5개 마을 추진위 구성을 전화로 제의했으나 거절했고 청원 소개의견에서 5개 마을인데 청원 날인에는 상동2리와 다리골이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답변 23 : 의원 박천보)

청원소개서의 5개 마을은 인근 부락이라는 표현임.

너무나 시간이 짧아서 도장을 다 못받았음.

(질의 24 : 위원 허병문)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언제 알았는지?

(답변 24 : 의원 박천보)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으며, 의정보고시에도 교량이 1개라고 말했으며, 위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놓아야 한다고 했음.

(질의 25 : 위원 허병문)

박찬양씨에 의하면 청원전에 상동2리가 오지개발사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데 의원이 어떻게 몰랐는지?

(답변 25 : 의원 박천보)

몰랐음. 통계자료는 면에서 협조받았음.

(질의 26 : 위원 허병문)

상동2리에 가서 '92년도 예산으로는 상동2리에 놓고, '94오지 사업은 상동1리에 놓자고 제의했다는데, 그 저의는?

(답변 26 : 의원 박천보)

수회에 걸친 의원간의 간담회 결과 예산 삭감등의 의견이 있어 선거구민들에게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했으며, 교량을 놓는 것은 마을간 서로 화해하고 협의해야 할 일로 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소규모 교량이라도 놓아도 되냐고 하니 주민들이 동의했음.

즉, 절충안을 만들어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임.

(질의 27 : 위원 이홍만)

청원소개 의견서에는 봉황천에 중점을 두어 위치가 불분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94년도 오지개발사업임을 명시했으며, 박의원도 이에 동조한 바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94년도 오지개발사업이라 했을때 박의원은 질문을 안했는데?

(답변 27 : 의원 박천보)

여러 의원들에게 분명히 오지개발사업이 있다고 말했고, 의원들은 본인을 못 믿어 관계 과장을 불러서 확인하지 않았는가?

(질의 28 : 위원장 한규용)

상동2리에 가서 상동1.2리가 서로 다투면 예산이 삭감되니, 상동2리는 소규모 교량이라도 놓자는 제안을 했다는데?

(답변 28 : 의원 박천보)

상동2리만 놓으면 상동1리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의원들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 말임.

(질의 29 : 위원장 한규용)

박찬양(청원자 대표)씨는 청원 제출시 상동2리가 오지개발사업 대상지라고 알았는데 박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감

(답변 29 : 의원 박천보)

이야기로 알았고, 새마을과장도 말했으며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했음. 오지개발사업 지구인 것만 알았음.

(질의 30 : 위원장 한규용)

오지개발사업지구라는 표현은 교량이 놓여질 지구를 표현한 것이 아닌지

(답변 30 : 의원 박천보)

행정과 의회는 주민편의를 위해 존재함. 주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위치 선정은 안됨. 지금이라도 주민협의하에 1개 교량이라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함.

(질의 31 : 위원장 한규용)

모든 사실을 알고서 이제와서 주민들간에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답변 31 : 의원 박천보)

의정보고시에도 위치관계는 의원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 바 있으며, 그후 여러 사정으로 협의체를 구성치 못했음.

(질의 32 : 위원장 한규용)

청원 교량과 '94오지개발사업 교량이 다른 것은 언제 알았는지?

(답변 32 : 의원 박천보)

왜 그런 이야기를 안해주었는지 관계공무원에게 섭섭함.

(질의 33 : 위원장 한규용)

청원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2개소로 되었는데 이러한 잘못된 점을 의장이나 의원과 협의를 해야 했지 않는가?

(답변 33 : 의원 박천보)

시각의 차이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2.3.4개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영원히 1개만 놓는 것은 아님. 지역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함.

(질의 34 : 위원장 한규용)

2.3개 등의 필요성은 인정함.

청원시에 교량이 1개로 청원되었는데 이제 와서 2개가 된 점을 말하는 것임.

(답변 34 : 의원 박천보)

이러한 결과가 될줄 알았으면 청원을 안했음.

당초부터 5개 마을로 청원하려 했으며, 의정보고시에도 상동1.2리간에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했으며, 의원 간담회시에도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또한 예산 책정에 대하여 고맙다고 인사했음.

금년 사업비는 군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감한다면 영원히 놓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질의 35 : 위원장 한규용)

이런 결과가 올줄 알았으면 청원을 안했다고 했는데 오늘의 결과란?

(답변 35 : 의원 박천보)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은 같음. 교량은 1개임.

(질의 36 : 위원장 한규용)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아닌가?

(답변 36 : 의원 박천보)

절대 기만이 아님.

예산심의시 군비로 한다고 했을때 한규용 의원이 6m로 하자고 했지 않은가?

(질의 37 : 위원장 한규용)

청원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청원 내용이 마장2리에서 상동간인데 취지설명은 '94년도 사업으로 돼있어 내용이 불분명함.?

(답변 37 : 의원 박천보)

청원의 폐기는 엄청난 물의를 일으킬 것임.

청원자체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예산보류나 위치변경등이 타당함.

(질의 38 : 위원장 한규용)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하고 그후에 예산 범주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는 것임.

문제발생후 1개월여 동안 박의원이 잘 처리하리라 믿었는데 해결이 안되어 본회의에 상정한 것임.

심사특위를 구성한 일은 불미스러운 점임.

박의원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현명하게 처리되도록 노력바람.

(답변 38 : 의원 박천보)

의원 간담회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음.

상동2리에 가서 예산삭감이 되더라도 소규모로 놓고 상동1리에는 '94년도에 교량을 가설하는 방법으로 화해로 풀어가자고 노력했음.

청원을 폐지하지 말고 주민과 협조해서 풀어 나갔으면 감사하겠음

〈〈 새마을 과장에 대한 보충질의 〉〉

(질의 39 : 의원 이홍만)

교량이 두개라는 도면이 언제 작성이 되었는지?

(답변 39)

진정을 받은 후에 그렸음.

(질의 40 : 의원 이홍만)

건설과장이 현재의 건설계획을 알았을 때는 모르는 일인지?

(답변 40)

그 내용은 인지를 못하는 사실임.

(질의 41 : 위원장 한규용)

건설과장의 이야기로는 새마을과장이 현지를 갔다 와서 물었다는데?

(답변 41)

건설과장이 본인으로 인하여 교량 위치를 알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질의 42 : 위원 허병문)

교량위치를 표시할 때 정확히 청원교량이라 믿고 표시했는지?

(답변 42)

곡물건조장과 연결되는 곳이라 들었으며, 접속도로 예산까지 있는 것으로 들었음.

(질의 43 : 위원 허병문)

청원 장소가 불분명한데 어떠한 근거로 위치를 표기했는지?

(답변 43)

실무자에게 지시해서 알아보니 산업과에서 도로포장한 곡물건조장 앞으로 예산이 서 있다고 들어서 표기한 것임.

또한, 진정처리관계는 건설과장과 내무과장의 합의를 받은 사항임.

(질의 44 : 위원장 한규용)

사전에 교량이 2개라는 것을 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는지

(답변 44)

통보는 최종 결재권자의 재가를 받아 통보하는 것이지 자기의 주장을 통보하는 것은 어려움.

앞으로는 서로간의 교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책임은 인정하나 고의적인 것은 절대 아니며, 도면만 첨부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7. 남일면 마장2리 앞 봉황천 교량 설립에 관한 청원폐기안 제출

가. 제안일자및 제안자 : 1992년 2월 24일 허병문 의원외 6인 제출

나. 폐기이유

지난 1월 13일 남일면 상동2리 박하전외 156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성서에 의하면 '92년 10월 29일 제7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마장2리에서 상동리를 연결하는 봉황천 교량가설에 관한 청원의 의결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는 진정으로 내용은 한 마을이 서로 물건너에 두고 지척이 천리라 비만 오면 4~5㎞를 우회하여 농토를 관리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 '88년 9월 29일 정부에 도움을 받아볼 뜻으로 건의를 한 바, 정부의 재정상 어려움의 이유로 차기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사업의 계획수립에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어 행여나 하고 기대속에 기다렸으나 지금껏 이렇다할 묘책이 없어, 지방자치 개원과 동시에 접수한 청원만이 제1호라 하여 유일한 민원으로 계획에 반영, 처리하고 기왕에 접수된 미결 민원은 아랑곳 없이 백지화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처사에 격분, 어떻게 '94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을 믿을 수 있느냐의 내용이었음.

금산군의회에서 가결된 청원을 요약하면 오지개발사업으로 '94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상동리 지역의 교량을 단 1년이라도 앞당겨 실시해 준다면 고맙겠다는 그 지역 출신인 박천보 의원으로 부터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고, 진정으로 밖에 처리할 수 없는 내용에 박천보 의원의 소개의견이 있어 청원으로 처리, '94년도 오지개발사업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는 다리를 단 1년이라도 앞당겨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10명 의원이 합의, 제7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였으나, 부당함을 지적한 진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검토를 한 결과, 행정측의 진정에 대한 회시('92년 1월 17일)에는 청원의 처리가 오지개발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다리가 아닌 것으로 통보가 되었으며, 1월 20일 청원 소개의원을 불러 알아본바 청원한 교량이 오지개발 사업으로 예정된 교량이 아니라 다른 교량임이 밝혀져 청원 의결 자체가 잘못 처리되었음을 알게 되었음.

참고로 오지개발 사업을 요약하면 10개년 장기계획으로 '88년 12월 31일 제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2175호로 '89년 5월 29일 제정되어 1990년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금산은 5개면(부리, 제원, 군북, 남일, 남이)에 해당되며, 그중 남일면 상동2리에서 다리골간에 길이 130m 폭 6m로 5개마을 280가구 840명의 주민 교통 불편 해소및 숙원사업 해결 방안으로 '90년 3월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먼훗날을 위하여 바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원 모두의 합의하에 소개의원으로 하여금 소개가 잘못되어 1차로 의원들의

세심한 검토를 못하고 가결을 잘못한 점을 인정, 소개의원으로 하여금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으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소개의원과 청원 부락의 주민들이 자진 철회를 해줄 것을 요망하며 그 이후 1개월여의 기간을 기다려 왔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부득이 청원에 대한 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발의서가 제출되어 지난 19일 임시회에 상정되게 되었던 것임.

19일 이후 7일간 청원 재심사를 한 바에 의하면 1991년 10월 28일 4가지의 불편을 제시, 접수된 청원은 박천보의원으로 부터 마장2리에서 상동리 지역은 오지개발사업 지구로서 '94년도에 교량이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91년 10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가결처리가 된 바 있음.

'91년 11월 4일 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소개의원의 의견서와 전문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결재, 문서번호 01600－104호로 기획실에 보내졌으며, 아울러 마장2리 대표 박찬양씨 앞으로 본 지구는 오지개발사업으로 교량이 예정되어 있음을 밝혀 두고, 그러나 청원내용에 따라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재반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다는 내용으로 의회청원 의결결과 통보를 한 바 있으며, 박찬양씨로부터 접수한 바를 확인하였음.

'91년 11월 5일 기획실에서 문서번호 01600－776번으로 금산군의회 제7회 임시회 의결 결과 통보와 아울러, 처리 결과(청원서 및 의견서 첨부)를 11월 11일한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새마을과에 통보되었으며, 이 당시 새마을과장은 서류 내용에 불합리한 점을 발견, 현지답사후 청원으로 의결된 교량과 오지개발사업 대상 교량의 위치가 다른 것을 발견하였으나, 교량이 두곳에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지출장후 돌아와서 상급자와 협의, 의회청원 1호임을 감안하여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은 하였으나, 실무담당 과장의 입장에서 의회에 그 뜻을 알려야 하겠다는 내용으로 '91년 11월 11일 새마을 문서번호 01600－148호로 청원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청원 처리결과서를 기획실에 이송한 바 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로는 마장2리 앞 봉황천 교량과 오지개발사업 예정 교량이 다르다는 판단은 하기 어려웠음.

'91년 11월 18일 기획실로 부터 문서번호 01600－795호로 새마을과의 처리결과서를 첨부, 의회에 통보되었으며 11월 20일 청원처리계획이 2차로 마장리 박찬양씨 앞으로 '94년도 오지개발사업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되었고, 이는 박찬양씨로 부터 확인된 바 있음.

특별심사위원회 구성 이전의 경위를(1월 17～2월 19일) 요약하면 '92년 1월 20일 의원 전원이 모여 대화내용중 박천보 의원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교량을 앞당겨 달라고 했음을 인정했고, 그로 인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의원들이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되어 가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천보 의원으로 하여금 슬기롭게 부락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소개의원이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그후 진전이 없어 '92년 1월 30일 다시 의원 간담회를 가졌음.

내용을 간추리면 박천보 의원은 문서상으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의원들에게 '94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앞당겨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상동1~2리 지구에 있는 것으로 알았지,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는 몰랐으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알았다."라 했으며, 새마을과장은 의결 당시 의원 사무실에서 오지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알았다고 했으며,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었으며, 잘못된 내용으로는 청원 의결 결과가 의회로 부터 기획실을 거쳐 새마을과에 통보되었을 때에 살펴보니 박천보 의원의 청원 소개 의견서와 청원서에는 5개 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청원인의 날인을 받은 것은 3개 부락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현지 답사후 돌아와 상급자와 상의했더니 교량이 둘다 필요한 지역이고, 의회 청원임을 감안,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여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인의 판단과 의사가 일치,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오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리고 싶어 문서로 보냈으나, 그 뜻이 전달이 안되었으며, 그 당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못하고 물의가 일어나게 된 점을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음.

의원 모두의 의견은 여러가지 원인이 의원들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만들어서, 잘못 의결된 청원임으로 원인 무효의 청원폐기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데 집약되었으며, 8명 의원이 서명날인 행정에 그 뜻을 전달한 바도 있었음.

박천보 의원은 전적인 책임은 일단 본인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으며, 의원들 다수가 결정하는데 따를 수 밖에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는 뜻이 있었고, 책임을 지지 않을수는 없지만은 최선의 대안을 연구해 봄으로서 박의원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지금 이 결과에 와서 여러 의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에 따른 문제점이 논의가 되면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그후 행정측으로 부터도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수차례에 걸쳐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박천보 의원은 교량을 놓겠다는 미련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 오히려 의원들을 원망하고 의원들이 잘못이 있다는 쪽으로 오히려 반전하는 경향이 있었음.

따라서 '92년 2월 19일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2월 20일 1차로 상동리를 방문, 주민대표 서문선, 서문행 리장외 15명을 새마을 회관에서 면담하였는 바, 중요 내용으로는 '91년 여름, 상동1리 주민과 2리 주민이 같이 인삼을 채굴할시 상동1리 주민들로 부터 박천보 의원이 노력해서 적어도 '92년도에는 마을 앞의 봉황천에 교량을 놓는다고 자랑삼아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당시 상동2리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였던 바, '91년 8월 20일 마장2리 박기우로 부터 서문행 당시 리장에게 박천보 의원이 봉황천에 다리를 가설하기 위해 5개마을 협동권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상동2리도 같이 추진위원을 구성, 협조하자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협동권사업으로 하면 오지개발로 예정되어 있는 교량을 다른 곳에 건설하고자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거절하였고, 청원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할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유로 거절하였다고 함.

그후 11월 초순 진악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마장2리 앞 봉황천에 교량가설 청원이 의결되었다는 내용을 알았으며, '91년 11월 14일 남일면 의정보고 당시 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서문행씨가 교량에 대한 질문을 하였던 바 박천보 의원은 본인은 예산만 따 내어 면장에게 주면 면에서 추진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장소에 교량을 가설하면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함.

또한, '92년 12월 말경 의회에서 마장2리 앞 교량설치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까지도 오지개발사업을 앞당겨 해 달라는 청원의 내용은 모르고 봉황천에 교량이 하나 가설되면 '94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교량은 가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군청에 1차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진정을 하게 되었는바 답변 내용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옛날에 해 주겠다고 하던 행정의 약속은 저버리고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의회 의원이 있다해서 청원 1호로 처리하여 금년에 해 주어도 되느냐고 제2차 진정을 내게 되었다고 함. ('92년 1월 22일)

그후 박천보 의원이 1월 25~27일 사이에 동 부락을 방문하여 본인에게 사전 연락없이 진정을 낸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라 하며, 당초에는 교량가설을 1개라 생각하였다면서, 마장2리 청원으로 예산편성된 교량은 금년에 시행하고, 상동2리는 '94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으니, 마을 주민들이 조용히 있어 준다면 우리 지역에 교량이 두개가 가설된다고 설득하였다 하나, 그후 의회에서나 부락에서도 그 뜻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박천보의원이 두번째로 상동2리를 2월 13일에 방문하여 마을회관에서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교량을 상동2리에 가설해 주고, '94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마장2리에 가설해 준다면 조용히 해 주겠느냐고 하기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고 함.

상동2리에 이어 상동1리 새마을 회관을 방문하여 청원인 대표 박찬양과 리장 길광섭외 50~60명과 대담을 한 결과, 청원서 제출시 박천보의원의 자문을 구하여 진정이 아닌 청원으로 제출을 하게 되었으며, 청원서 제출시 상동2리 주민의 동의는 오지개발사업 지구로 예정되어 있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받지 않았으며, 박찬양씨는 상동2리에서 다리골간이 오지개발사업대상지로 계획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밝혀졌으며, 11월 4일 의회로 부터 전달된 청원의결 결과 통보를 받은바 있고, 11월 20일 청원처리결과가 제2차로 의회로 부터 박찬양씨 앞으로 다시 전달된 바 그 내용중 오지개발 예정지구로 그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청원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으나, 왜 그 당시 문제점을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는 특위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음.

그러나, 의회에서 폐기할 경우 마을 전재산을 소모하더라도 의회와 투쟁하겠으며, 또한 오지개발사업과 박천보 의원과는 우리(마장2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여, 특위위원들이 청원이란 진정서에 박천보의원, 즉 의원이 소개하여 오지개발 사업예정을 당겨 달라는 간청이 있었기 때문에 청원 성립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듣고자 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자세이기 보다는 억지를 부리는 행동으로 일관한 바 있으며, 예산안 심의시 5억2천만원을 의원들이 의결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번복한다면 의회의 공신력과 위상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며 무조건 예산 집행을 계획대로 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었음.

다음은 남일면장과의 대담내용으로 청원의 하자를 인지한 사실은 상동2리 주민들의 진정서 제출로 알게되었으며 상동1리 교량가설은 박천보의원이 통보,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었으며, 교량가설은 오지개발사업으로 1개가 확정되어 있고, 청원으로 1개가 더 가설된다는 것을 알고는 지역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고 했으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으로 검토보고 내용중 상동2리 주민은 날인치 않았는데도 5개 마을을 포함시키고, 오지개발 사업임을 강조, 군의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앞당겨 달라고 강조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그때의 상황으로는 의원들과 전문위원이 같은 판단이었다며 새마을과에 내용을 알아 보았더니 상동리 지역은 오지개발사업 지구로 '94년도에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강조하였다고 했으며,

다음은 기획실장과의 면담내용으로 새마을과에서 현지확인 결과 상동1리 교량임을 알고 기획실에 문서로 통보한 사실은, 아는 사실 없으며 보내진 문서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새마을과장은 기획실장과 상급자들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교량 가설의 예산 계상 근거를 협의한 바도 없으며 협의사항도 아니고 민의수렴

기관이기에 계상 양여금 사업과 농촌도로사업과 병행하여 건설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기술진에 의해 농촌정비 기준에 의해 산출하였다고 함.

예산 편성할 당시 교량이 2개인지 알았는가의 여부는 전연 모르고 있었으며, 상동2리 주민의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고 함.

수정예산안으로 기습적으로 사전 상의없이 올리게 된 이유는 또한 사전 박천보 의원과 협의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재원부족 때문이며 일반교부세가 당초 110%로 계상했는데 12월 19일에 130%로 되어 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으며 박천보 의원과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함.

지역개발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발언을 하였음.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으로 수정예산 통과전 기획실로부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확인, 기술진과 현장답사시 새마을과로부터 청원한 마장2리의 다리 위치를 알고 오지개발 예정다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함.

'91년 10월 28일 접수, 29일 의회에서 가결한 청원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청원 성립이 될 수 없으나, 소개의원으로부터 '94년도 오지개발사업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단 1년이라도 앞당겨 달라는 간절한 내용으로 청원이 성립되어 의원 모두는 기히 오지개발사업 예정으로 책정되었으며 단 1년이라도 주민의 불편을 생각해서 앞당겨 달라는 소개의원의 입장을 살려 청원 1호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음.

재심사 겸 조사해 본 결과 박천보 소개의원은 의원들을 기만한 사실이 되었고, 또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같은 내용으로 유도하였고 의원들이 의회에서 가결하도록 유도하여 결의된 내용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여 바로 잡지 않으면 훗날 주민들은 의회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 당연히 원인무효의 청원 폐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임.

'92년 1월 17일 상동2리 주민의 진정으로 인하여 청원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래도 박천보 의원이 자기 잘못을 인정, 의원의 신분으로 슬기롭게 해결하리라 의원 모두는 생각했으며 자기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지나친 마음에 한때의 잘못을 두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으나, 의원들과는 협의치 않고 오히려 군 당국이나 의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려 하고 상동2리에 나가 조용히만 해 준다면 우리 지역에 교량이 2개가 가설되며 본의원이 적극 노력하여 오지사업에 예정되어 있는 교량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설득이 잘 이루어 지지 않차 2차로 그 마을에 나가 금년도 교량은 이곳에 가설하고 '94년 오지개발사업은 마장2리에 가설할테니 협조해 달라는 등 자기마음대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또한 의원들에게 적반하장격으로 앞으로 의회에서 사사건건 이유를 달겠다, 1만명 서명운동 하겠다,

지역 주민들을 선동, 법으로 하겠다느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자기 잘못을 미화시키려는 태도와 자세로 행동을 일관해 왔으며

2월 19일 임시회에 청원재심사특별위원회 구성당시에도 자기가 잘못 소개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제안설명의원에게 질문할 내용이 아닌 것을 질문하였으며 2월 20일 상동1리에 방문하여 본 바, '91년 12월 24일 예산심의 결정 회의록까지 부락에 유포, 주민들이 반발을 하도록 하였음이 있었다고 보았으며, 2월 21일 소회의실 심사시 자기의 잘못과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주민의 편에 서서 그 뜻만을 의회에 전달하려 일괄하고 자기의 결백만을 주장하고 의원들이 잘못한다는 자세라 볼 수 밖에 없었으며 21일 저녁식사시 의원들에게 24일 의회에 나와서 자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일체 나타나지도 않고 2월 24일은 8명의 주민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오히려 청와대로 진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불평을 하며 돌아가는 사례가 있어 우리 의원들을 다시 한번 실망을 시켰음.

군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의원의 인격과 신분을 믿었던 의원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8만5천 군민의 같은 의원으로서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용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사료되는 바임.

현지를 돌아본 바, 우리 금산군의 예산에 한계가 있어 사업 기대 효과는 예산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척이 천리라고 불과 150㎙의 거리를 비만 오면 적어도 2~3㎞에서 4~5㎞를 우회하여 농토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주민의 불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음.

이후 이점은 우리 군 의회와 군 당국이 염두에 두고 그곳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허락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력을 하여야겠다는 의견을 첨언하면서 본 청원 내용인 마장2리에서 상동지역간 교량설치의 건은 일괄 폐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폐기안을 제출함.

8. 조사결과

가. 원안가결

· 남일면 마장2리 봉황천 교량 설립에 관한 청원폐기안
1991년 10월 29일 제7회 금산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남일면 마장2리 앞 봉황천 교량 설립에 관한 청원을 폐기한다.

의 견 서

1991년 10월 28일 박천보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91년 10월 29일 제7회 금산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남일면 마장2리 앞 봉황천 교량 설립에 관한 청원을 폐기키로 의결하였으니, 청원 관련서류 일절을 반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청원 폐기에 따른

예산 및 관련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차 본회의

가. 금산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 수정안은 지난 1차 본회의시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을 심의한 바 있었으나 의원들이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가 된 바 있었으며 2월 22일 한규용 의원외 3인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금산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확충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8조 1항중 "일반회계의 지원금에"를 "일반회계의 지원금 및 독지가의 성금에"로 하는 것이며 심의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나. 청원 재심과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

본건은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남일면 봉황천 교량가설에 따른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채택한 심사결과로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용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다.

보고서에 대한 박천보 의원의 반대토론과 허병문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기립표결을 통하여 표결결과 찬성 9분, 반대 1분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 12 절 제1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12회 임시회는 92년 4월 10일 허병문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4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였다.

제12회 임시회에서는 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가. 제1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회기는 4월 16일 하루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며 제1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허병문 의원과 길부섭 의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제12회 임시회 의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2.4.16 (목) 10 : 00		개 회 식	
	1	1. 제12회 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2. 금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박승우의원외 3인발의
		3. 금산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정현수의원외 3인발의
		4. 금산군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	박찬헌의원외 3인발의
		5. 금산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7. 금산군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8. 92년도 금산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
		9. 금산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나. 금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박승우의원외 3인발의로 제출되었으며 박승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91년 12월 31일 법률 4464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지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규정과 일치되도록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금산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은 정현수 의원외 3인 발의로 제출되었으며 정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91년 12월 31일 법률 4464호로 개정되면서 군의회의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92년 3월 10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회간사가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되어 금산군의회 공인조례중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라.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의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박찬헌의원외 3인 발의로 제출 되었으며 박찬헌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법률 4464호 및 대통령령 13586호로 개정됨에 따라 91년 4월 12일 제정 공포된 금산군의회의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제2조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며 제3조와 제46조1항, 그리고 제78조 1항중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마. 금산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이 조례안은 92년 4월 9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강병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금산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바.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본 조례안은 92년 3월 12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김진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92년 2월 27일 충청남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도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검사위원 3인중 1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2인은 지방의회에서 신임하되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일비 2만원을 3만원으로 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사.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 안은 92년 4월 6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 이유에서 신규취득으로 남이면사무소 청사부지 한쪽 모서리에 위치한 남이면 하금리 297-4번지내 부지 33평과 진산면 읍내리 557-3번지의 진산면 종합 복지회관 진입로 25평을 매입하며 진산면 구청사중 사무실과 회의실 및 창고는 현재 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건물 및 시설의 노후로 종합복지회관으로서는 활용가치가 희박하여 철거하고 종합복지회관을 새로 신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아. 92년도 금산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본건은 92년 4월 6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 신규취득은 1개 품목에 1점으로 200만원이 소요되며 대체취득은 3개품목에 5점으로 4,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본건은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자. 금산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은 92.4.11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가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지원과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체계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을 기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중 농가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은 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제 13 절 제1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13회 임시회는 박찬헌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2년 6월 16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92년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였다. 제13회 임시회에서는 금산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을 비롯하여 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회기는 92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며 제1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박찬헌의원과 박천보의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제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2.6.22 (월) 10 : 00		○ 개회식	
	1	1. 제1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91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금산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정수대상 소방관련 물품의 무상관리 전환 승인 신청안 7.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8. 금산군 복수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개정 조례안 9. 금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본 회 의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금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11. 금산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12. 금산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13. 휴회의 건	
92.6.23 (화) 10 : 00	(1)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건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92.6.25 (목) 10 : 30	(2)	1.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92.6.26 (금) 10 : 00	2	1. 9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2. 금산군 의회포상 규정안 3. 금산군 의회 사무의 위임 전결 규정안	본 회 의

나. '9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92년 6월 12일 금산군수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금산군수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곽영석 부군수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설명 내용은 지난해 정기회에서 심의 의결한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을 기조로 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고르게 받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군정 의지의 실천과 군세도약을 위한 사업의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념 하였으며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7억 8,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4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1천만원으로 본군의 총예산 규모는 459억 6천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31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128억 3,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가 증가된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밝혔다.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92년 6월 12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위 구성은 한규용 의원외 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다.

라. '91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금산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 의원들과의 협의로 의회 오규영의원과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 이형제 차장, 금산군 축산업협동조합, 이재봉 상무 3인을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토록 가결하였다.

마. 금산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92년 5월 25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장부가격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 매각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매각대금이 감정 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성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으며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중요물품과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정수물품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중요 물품이라도 정수물품이 아닌 경우 취득 처분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므로 통제 기능이 없으며 정수물품의 경우 중요 물품이 아니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총체적인 물품의 이동과 현황파악의 어려움등 물품관리 체계상 혼란이 있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예산의 낭비요인과 무절제한 물품의 과다보유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금산군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바. 정수대상 소방관련 물품의 무상관리 전환 승인 신청서

92년 5월 25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이 안건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소방행정 체계가 국가 소방체계에서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군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방관련 정수대상 물품을 충청남도에 무상관리

전환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관리케 함으로서 소방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으로 주요골자는 소방체제의 개편에 따라 소방물품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정수물품 쌍용대형수조부 펌프차외 13종 15건을 충청남도지사에게 무상관리전환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사.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2년 5월 30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이 안건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금산읍 중도리 및 하옥리 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중 제1지구 사업이 완료되어 투입된 사업비 충당 및 제2지구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충당 및 제2지구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1지구 내 체비지 및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아. 금산군 복수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개정 조례안

92년 6월 11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 이유는 87년 11월 4일 복수농공지구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산군 복수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91년 12월 27일부터 금성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금산군 관내 2개 농공단지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조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자. 금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2년 6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보건행정계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제안 이유는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소법이 법률 제4430호로 전문개정 공고됨에 따라 본조례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차. 금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2년 6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보건행정 계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 및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카. 금산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92년 6월 11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민방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 이유는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에서 관리 지도 감독하던 소방업무가 충청남도로 이관 광역소방업무로 변화됨에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92년 2월 10일자로 제2227호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개정 공포하게 되어 이에 대한 조치로서 금산군에서는 상급기관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로 금산군에서는 적용되므로 기존에 있는 금산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타. 금산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92년 6월 11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이조례안은 민방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소방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 되면서 소방체제가 도 업무로 이관되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92년 2월 10일 조례 제2224호로 제정 시행되어 본군의 의용소방대 자녀도 직접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지급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금산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불필요 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파. 휴회의 건

본 휴회의건은 의장제의로 예산결산 특별회원회의 심의 활동을 위해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 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 위원 상호간에 협의가 되어 위원장에 오규영위원 간사에 한규용위원이 선출되었다.

(2)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건

이 예산안은 92년 6월 12일 금산군수가 의회에 제출 하였으며 금산군 의회

의장은 92년 6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2년 6월 25일까지 심의요청이 있어 오늘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다.

심사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의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의 병가로 인하여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하였다. 부군수와 각 실과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먼저 김진해 재무과장은 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일반회계 세입 총액이 331억 2,443만 7천원으로써 일반회계 당초예산 296억 3,796만 4천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예산총칙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 산 총 칙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1. 일 반 회 계	33,124,437	993,733
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77,362	65,320
3. 주택관리특별회계	270,249	8,107
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005,808	60,174
5.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18,848	565
6.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6,130	1,083
7.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0,796	4,823
8.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15,784	3,473
9. 농공지구특별회계	1,479,076	44,372
10. 공유임야특별회계	2,394	71
11.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120,680	3,620
12.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6,449,068	193,472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320,000천원으로 한다.

제4조 1992년도 사고이월비는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1,793천원으로 한다.

예 산 규 모

(단위 : 천원)

구분 / 회계별	예 산 액	전 년 도 〈 기 정 〉 예 산 액	증 (△) 감	비 고
합 계	45,960,632	42,172,896	3,787,736	
일 반 회 계	33,124,437	29,637,964	3,486,473	
특 별 회 계	12,836,195	12,534,932	301,263	
상 수 도	2,177,362	2,191,896	△14,534	
주 택 관 리	270,249	256,130	14,119	
의료보호기금	2,005,808	2,004,215	1,593	
새 마 을 소 득 금 고	18,848	12,983	5,865	
구 획 정 리	36,130	36,050	80	
생활안전기금	160,796	133,992	26,804	
새 마 을 소 득 특 별 지 원	115,784	27,093	88,691	
농 공 지 구	1,479,076	1,322,524	156,552	
공 유 임 야	2,394	1,979	415	
골재판매사업	120,680	99,002	21,678	
지 방 양 여 금	6,449,068	6,449,068	0	

세입 · 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감
합 계			33,124,437	100	29,637,964	100	3,486,473
세입	지방세		3,916,000	12	3,886,000	13	30,000
	세외수입		3,995,953	12	1,484,723	5	2,511,230
		경상적세외수입	1,147,450	3	877,450	3	270,000
		임시적세외수입	2,848,503	9	607,273	2	2,241,230
	지방교부세		18,303,001	55	18,303,001	62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6,909,483	21	5,964,240	20	945,243
		국고보조금	3,421,121	10	3,339,405	11	81,716
		시·도비보조금	3,488,362	11	2,624,835	9	863,527
세출	기본적경비		12,709,406	38	12,519,907	42	189,499
		인건비	7,244,013	22	7,257,760	24	△13,747
		관서운영비	3,058,635	9	2,977,906	10	80,729
		기본경상비	2,406,758	7	2,284,241	8	122,517
	사업비		18,500,621	56	15,409,058	52	3,091,563
		경상사업비	4,741,957	14	4,061,644	14	680,313
		주요사업비	13,758,664	42	11,347,414	38	2,411,250
	기타경비		1,914,410	6	1,708,999	6	205,411

이어서 박귀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하여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재원은 37억 8,773만 6천원으로 본 예산액의 9%가 신장된 예산 규모이며 추경요인은 91년도 이월액 12억 2,543만 8천원과 국고보조금 8,171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 8억 6,352만 7천원의 증액으로 기인 됐으며 편성중점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보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체 부담금을 충당하였으며 본 예산에서 미확보된 경비 충당에 급급한 소규모의 추경예산안이며 빈약한 재원속에서도 생활민원 해결, 소규모사업과 소규모 숙원사업에 반영케 되었음은 바람직한 투자로 생각하되 대체적으로 건실한 재정 운영에 노력한 추경 예산안 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 항목 하나하나를 페이지별로 심도있게 질의 하였으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6시20분에 산회되었다.

나. 제2차 위원회

1)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보고서 채택에 앞서 6월 24일 금산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단일안이 마련 되었다. 의안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9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종대 예산계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보조내시 되었고 사업비를 추가 또는 조정하여야 될 사유가 발생되어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한규용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다. 보고내용은 당 위원에서 6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세입 타당성과 세출의 필수경비와 주요사업의 추진방향과 요지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거쳐 이해 납득을 하였으며 6월 23일 오후부터 6월 25일까지 6명 전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숙의를 거쳐 종합적인 단일안을 마련하므로써 위원간 합으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3. 제2차 본회의

가. 9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92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열려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다. 심사보고는 금산군의회 의회규칙 제58조 2항에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한규용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나. 금산군의회 포상규정안

본안은 이홍만의원외 2인 발의로 제출되었으며 이홍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정 및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의회 포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애로가 있는 바 이에 포상규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역량 제고 및 주민 선도에 앞장서는 의회상을 구현하며 주요골자로는 포상대상은 금산군의회 의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공무원으로하고 포상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며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구분 시행하며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하고 공적심사를 위해 공적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며 포상은 년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금산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안

본 안건은 오규영 의원외 2인 발의로 제출되었으며 오규영의원 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금산군의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과 전결 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으로 원활한 의정 수행을 도모코자 재정 내용은 의회업무를 총무, 의사등 40개 항목으로 구분 업무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 14 절 제1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14회 임시회는 정현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92년 9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2년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였다.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및 한규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리장처우 개선 방향 건의안, 외2건의 건의안과 군정질문을 위하여 박천보의원외 2인이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 결정의 건

의사 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회기 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 하였으며 회기는 92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으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며 제1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오규영 의원과 박승우 의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제14회 임시회 의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2.9.28		○ 개회식	
(월)	1	1. 제1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10 : 00		2.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천보의원외2인발의
		3. 리장 처우 개선 방향 건의안	한규용 〃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	허병문 〃
		5. 금산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길부섭 〃
		6. 금산군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 〃

의사일정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2.9.28 (월) 10 : 00	1	8. 금산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9.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92.9.29 (화) 10 : 00	2	1. 군정에 관한 질문	
92.9.30 (수) 10 : 00	3	1. 군정에 관한 질문 (계속)	
92.10.1 (목) 10 : 00	4	1. 군정에 관한 질문 (계속)	

나.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 안건은 92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박천보 의원외 2인이 발의 하였다. 박천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하여 주민 대표인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단순히 질문하는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에 대한 소신과 책임을 부담시켜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군정을 행할 수 있고 군민을 대표한 우리 금산군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지치법 제3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리장처우 개선 건의안

본안은 리장제도와 처우개선 방향에 대하여 국회의장과 내무부장관에게 드리는 건의안으로 한규용 의원외 2인이 발의 하였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건 의 서

— 통.리장 처우 개선방향에 대하여 —

존경하는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님

국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통.리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하부 행정기관입니다.(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1항, 군조례등) 현대 행정이 과거의 중앙 집권적 행정 체제하의 하향성과 획일적인 지시 행정에서 더 나아가 지방자치 시대의 발전적 민주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민의를 수렴하고 하의 상달로 정책 결정 및 집행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리장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리장의 업무량을 살펴보면, 주민의 종합 지도를 위시하여 국.도.군정 홍보와 행정지시 사항 전달, 반상회 운영, 새마을 사업,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독려 주민의 전출입과 민방위대원관리, 각종통계 조사, 선거사무 보조와 부락 민원처리와 또한 농협 업무, 산림업무를 겸직하는등 막대한 업무와 동시 민주화 시대에 있어 강력한 지도자적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어있어 그 사업량은 지방 공무원 못지않는 종합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관내 리장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 리수 106개리에 행정리 247개리에 247명이 있으며, 년령별로는 50대 이상이 109명으로 44.1%로 노령화 되었고 고졸 이상 고학력자가 84명으로 34%이며, 이중 전문대졸 이상이 6명이 포함되었고 생활정도는 중류 이하가 178명으로 72.1%로써 이중 생활보호 대상자가 4명이 포함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리장 근무 경력을 살펴보년 2년 미만이 88명에 35.6%로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슴을 알 수 있으며, 도시형 읍의 리장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20년 이상도 3명이나 포함되고 있습니다.

리장의 급료를 살펴보면 행정 기관에서 매월 8만원과 회의수당 1만원을 합하여 9만원과, 상여금으로 년중 2회 8만원을 지급하여, 농협에서 평균 31,700원이 지급되어 매월 131,700원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곡 제도는 일제때부터 관행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하곡은 1호당 평균 9,010원과, 추곡14,360원(정부수매가 환산)으로 부락의 대소에 따라 수입의 평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영세민이 많아서 80%도 모곡이 어렵고, 더구나 모곡제가 법적 뒷받침이 없어 모곡을 기피하는 주민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모곡제를 시행하고 있는 223개리는 90.3%이나 계수상으로 전주민이 협조된다고 볼때 월평균 리장 1인당 254,370원이 급료가 지급되어 지는바 실제로는 그 이하가 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리장 급료 때문에 이장직을 유능한 인사는 기피하는가 하면 희망하는 자가 없어 부락에 따라서는 윤번제로 리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만큼 리장의 사기가 최저로 하락, 위기에 봉착하여 좌시할 수가 없어 주민행정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방향책을 건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선 방향

첫째 : 리장 수당을 최소한 지방공무원 9급 상당으로 보장해 주어야 겠습니다. 타 시군도 같은 실정이겠으나 자체재원이 5,371백만원으로 18.1%로써 지방재원으로 불가하니 국고보조로 충당하고 호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또는 주민의 부담이 되겠지만 관행으로 실시하는 모곡제를 실시하는 법적인 뒷받침으로 특별 회계를 도입, 부락별 호수 대소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균일한 보수 체계가 이루어져 최저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해주는 방안입니다.

둘째 : 리장의 장기근속 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시에는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함과 아울러 리장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여 유능한 리장과 농촌 지도자로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선 행정에만 전념하여 이농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셋째 : 리장의 기동력 확보와 오지 부락 리장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륜차(오토바이)를 지급하여 리장 사기를 진작함은 물론 발전적이고 민주적 말단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지방행정의 주무부서인 내무부에서 많은 연구를 거듭해오고 있으시겠지만, 농촌 오지 주민들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의욕마저 잃어 농촌을 등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내일의 복지농촌 건설의 주역들을 안정육성하며 강력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확보하는 데에도 효과가 기대되어, 본 건의서를 우리 전 의원이 채택하여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2년 9월 28일

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

본안은 허병문 의원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허병문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다.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의 여론과 바램을 수렴하여 해결 하고자 하여도 지방의회의 권한 밖인 현행 법령과 제도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 금산군의회 의원과 주민의 뜻을 모아 입법기관인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주민의 바램을 충족시켜 려는 취지로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서

존경하는 국회의장. 내무부장관님

국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금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의회 회원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정수행 과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권한 밖의 사항인 현행 법령과 제도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여론과 바람을 수렴하여 해결하고자 하여도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문제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에 있어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1978.3.22~84.12.31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많은 편익을 준 바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시행됨으로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도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및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금산군의 경우만 해도, 지난 78.3.22~84.12.31까지 시행 되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토지 39,600 임야 2,284필지등 총 41,884필지가 처리 되었으나, 법의 취지를 모르거나, 무지로 인해 당시에 처리되지 못한 대상 부동산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개략적인 조사결과 현재 총 1만여 필지가 적용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

나 도로, 하천사업등 공공사업 실시시 많이 나타날 대상과 조사 누락분을 포함할 경우 앞으로 대상이 될 부동산은 실제로 20,000여 필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예전 처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민들의 한결같은 여론과 뜻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 제정을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리오니 깊이 헤아리시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원활과 부동산 전산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 국민 써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서, 국민생활에 많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소유이전권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건의 내용

1. 적용범위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2.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 지역의 전 토지

   ○ 시 지역(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의 농지 및 임야

3. 시행기간

   ○ 1993.1.1 ~ 1995.12.31(3년간)

존경하는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님

법은 사회의 규범인 동시에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국민들의 간편한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되거나, 등기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 시행 되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1992년 9월 28일

마. 금산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본안은 92년 9월 22일 길부섭의원외 2인 발의로 제출되었으며 길부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92년 3월 5일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금산군의회사무과의 공무원 정수가 11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본 안건의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금산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내용 중에서 "10명으로"를 "11명으로"한다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바.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92년 9월 14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이조례안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내 여비규정이 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개정됨에 따를 이를 현실과 부합 되도록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3개 지역으로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축소해서 갑지와 을지로 축소하여 92년 2월 29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단가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사. 금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92년 7월 24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비영리 종교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정지원 측면에서 지방세를 과세면제 하므로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세제 운영을 기하며 주요골자는 종교단체 즉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업 허가를 받아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 토지세, 토지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아. 금산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92년 8월 14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는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공공 도서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측면에서 지방세를 과세 면제하므로써 사회교육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세제 운영을 기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 정비하고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공공 도서관으로써 도서관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과세 면제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자.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은 92년 9월 16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요금업종의 단순 명료화로 주민의 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세분화된 요금업종의 통합 및 축소 조정으로 현행 10종을 7종 개정으로 업종별로 해당업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태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 제2차 본회의

가. 군정에 관한 질문

오늘 상정된 군정에 관한 질문은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지역현안문제, 주민숙원사업등 군정전반에 관하여 의원들의 질문과 관련 실과장들의 답변이 있었다.

질문에 앞서 김학현 금산군수로부터 주민의 공복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질높은 군민의 삶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군정질문에 보다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겠다는 인사말씀이 있었다. 이날 회의는 16시2분에 산회하였다. 질문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질문 ·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정현수의원	금성면 화림저수지 이용 맑은 금산천 보존 방안?	환경보호과장 김 승 근	금성면 화림 저수지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써 금산천을 맑게 하려며는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금산천으로 유입시킬경우 막대한 공사비로 현단계는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각 면소재지에 쓰레기통 및 휴지통 설치 여부?	〃	농가에서 구입이 가능한 플라스틱 및 마대등을 확보하여 유원지 공한지, 면소재지등에 설치하겠음.
한규용의원	읍면 행정실적 평가제도의 기준 및 2/4분기 실시내용?	기 획 실 장 강 병 순	단기별로 국.도시책의 실천과 역점사업의 추진내용 및 각종 건설사업 당면업무 추진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항목별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폐수처리장의 가동상황과 시설용량 문제점 및 보완대책?	환경보호과장 김 승 근	현재 100%가동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70톤으로 축산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일부축산농가에서 분뇨와 찌거기를 그대로 배출시켜 관로가 막힐 때가 있어 대책으로는 축사의 폐수 배출구에 망을 치고 하수구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고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수거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할 계획임.
허병문의원	주민들의 배타적인 문제로 쓰레기처리장 확보의 향후계획?	〃	매립장 확보는 적극 지원하겠으며 점차적으로 논놀박스를 구입 대체하여 운영 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허병문의원	쓰레기줄이기 일환책으로 한데솥걸기 운동추진 여부?	환경보호과장 김 승 근	금년 2월 10일자로 각읍면에 시달하였으며 반상회에 게재하여 현재 추진중이나 미진함. 93년도에는 시범지역을 운영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농촌도로 가꾸기 계획을 과감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건 설 과 장 최 정 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2대와 수로원 12명으로는 도로정비도 어려운 실정인바 내년에는 오지도로까지 정비할 수 있는 장비와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겠으며 시내버스 노선에도 사리부설을 실시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개선하겠음.
길부섭의원	도로 확포장으로 인한 공사장기화에 따른 문제점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 및 통행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건 설 과 장 최 정 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795선과 진안선은 도에서 발주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도에 건의하여 해결하겠으며,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군도6개노선과 농촌도로 3개노선으로 군도5개노선은 정상추진이 되어 금년중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작업이 부진한곳은 현장지도를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박천보의원	관내 수로원 현황과 처우개선 대책 및 문제점?	건 설 과 장 최 정 우	현재 수로원은 12명이며 보수는 월 평균 72만 1,200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상여금이 400%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신설되었음, 정규직으로 되어서 학비보조 수당이 지급 되도록 상부에 건의 하겠으며 인원이 부족한 형편으로 93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여 증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천보의원	상수도 보호구역 하상 미정리로 인한 식수오염 가능성 여부?	건설과장 최정우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실상 법으로 골재 채취 및 토사제거가 불가하고 맑은물 공급 및 재해예방 차원에서 땅버들 제거의 필요성이 시급한데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지연되어 왔음. 인건비가 약 300여만원이 소요되므로 추경에 요구 하겠음.
	금강 직강공사 추진 상황?	〃	용역회사인 서울남광 엔지니어링과 6월 12일 계약을 해서 10월 9일 납품예정으로 현재 기초조사도 마치고 과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음. 우리 군에서는 1월 2일 오후 2시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계획과 구상내용은 목표년도를 2001년으로 하고 현황 및 기초조사분석 직강공사의 적정성 여부, 부지의 활용방안과 적절한 토지이용에 사업비를 수정 판단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보고하겠음.
	도로안전 표시판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	관내 180개 위험개소 및 안전시설물을 개량하는데 31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군도포장 사업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1차 추경에서 예산된 사업으로 경보등 5개소 설치 사각지대에 반사경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공사구간에는 안전시설을 병행하여 도로의 노면개량과 위험개소를 개선토록 최선을 다 하겠음.
오규영의원	농가소득의 보호측면에서 전기사용료 부담으로 인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하향 조정할 의양은 없는지?	건설과장 최정우	현재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유관기관과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하향조정 되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승우의원	진산면 묵산리 이치대첩지 주변의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	환경보호과장 김 승 근	이치대첩지는 관리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공보실에 협의한 결과 공중변소 설치 계획이 있다고 함.
	도로변에 인도시설이 없어 통행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대책?	건설과장 최 정 우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주요시가지 및 도시계획도에는 차도와 보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타지역은 보행자의 통행이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 보행자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검토 하겠으며 현재 우리군에서는 도로변 양측 풀베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 보행자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음.
태진수의원	금산군 10개년 종합개발 계획의 지연사유?	기획실장 강 병 순	제1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이 91.6.10에 착수되어 11월 6일에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하였으나 그 계획이 보완되어서 91.12.31일로 연기가 되고 따라서 91.12.26과업정지로 건설종합계획이 92년도 이월됨에 따라 도 종합건설계획 순기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었음.
	군도 6호선 개발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	건설과장 최 정 우	군도는 12개 노선에 4개노선이 100%포장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노선은 점차적으로 추진중이며 군도6호선은 미개수 도로로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누락되어 왔음. 금년에 2.2㎞인데 우선 용역비를 확보토록 추경에 요구 하겠음.
이홍만의원	경영수익사업 내용과 진행상황?	기획실장 강 병 순	금산읍 중도리와 하옥리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진산면 만악리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토장에서 나온토량으로 메운 면적이 8,734평임.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이홍만의원	축산농가의 자체정화를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군의지원 방법과 대책?	환경보호과장 김 승 근	정화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없고 기술지원만을 하고 있음. 새로 짓는 규모가 큰 돈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톱밥발효 시설로 유도해서 폐수방류를 방지하겠음.
	추부면 쓰레기 매립장 이전 계획?	〃	쓰레기장 확보는 추부면과 협의해서 96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 복토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적지를 물색하여 93년도에 확보토록 군에서 지원하겠음.
	홍수시 추풍천 인근농지의 피해에 대한 대책?	건설과장 최 정 우	추풍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내년도 우기전에 하상 토적퇴사를 제거해서 수해예방을 하겠음.

3. 제3차 본회의

가. 군정에 관한 질문

○ 질문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이홍만의원	면지역의 산업개발계 직원의 업무분장 현황과 증원대책?	내무과장 최 용 준	인력을 보강토록 건의했으나 정부 및 정부산하단체 조직관리 강화와 국무총리 훈령 제259호에 의해서 순증을 억제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의 보완 대책으로는 읍면간의 정원 조정과 7급 수습행정원을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길부섭의원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	새마을과장 최 윤 현	작년 12월 28일 대전환경 기술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5월 8일 납품을 받아 도의 설계심의후 8월말경에 발주코져 함. 종합 설계도가 10월중순경에는 납품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품즉시 설계심의를 득한후 실시 설계와 동시에 11월말경 발주토록 강력히 추진하겠음.
박천보의원	제12회 인삼제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문화공보실장 최 정 민	내년부터 실시되는 인삼제는 예산에 계상되는 행사비를 상반기중에 인삼제 집행 위원회에 넘겨 1종목 1단체 책임하에 행사가 진행되 민간주도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각계각층으로부터 설문을 받아 미비점을 보완 하겠음.
	92년도 문화재자료 발굴실적과 추진상황?	〃	올해에 지정 추진한 문화재로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수상한 물페기 농요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아 제12회 금산인삼제에서 재연한 바 있으며, 향토유적지로 가치가 있는 유적, 남일면 마장리 숭모사, 진산면 부암리에 있는 장승, 제원면 제원리에 있는 어풍대, 제원면 제원리 세마지 복수면 백암리에 있는 백암 느티나무등 5개소를 조사 완료한바 있으며 10월초에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개최 문화재 보호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우리군의 전문직 및 기술직 공무원 부족 현상은 없는가?	내무과장 최 용 준	전문직에 한해서는 부족을 느끼지 않으며 현재 건축붐 향상이라든가 각종 공사가 늘어 남에따라 토목직과 건축직이 부족한 형편이며 훈령에 의해서 증원이 어렵고 계속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허병문의원	대선에 대비한 공직자 기강확립은 어떠한가?	내무과장 최용준	기강이 해이한자는 복무확인 및 불시 사전 활동을 통해서 시정토록하며 대선 분위기에 편승하기 쉬운 개발제한 구역 훼손, 산림훼손, 불법건축, 노점상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함으로써 공직자상 정립에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 하겠음.
	유사한 기능과 역활을 하는 사회단체 축소 정리 방안?	내무과장 최용준	국가 중요시책 홍보 및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참여하는 국민운동 지원 단체이므로 가급적 건전한 자생조직운영으로 군민화함과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으며 군민 자발적인 단체라기보다 중앙에서부터 계통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므로 군당국으로는 직접 축소할 수는 없는 입장임.
한규용의원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전개 내용?	〃	민원제도의 개선, 친절운동의전개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상반기 설문조사결과 친절도가 과거보다 87%에서 92%로 향상 되었다고 평가 되었으며 아직까지 군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되었으며 계속해서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 노력 하겠음.
	스승존경 운동 추진 내용?	〃	교직자 예우를 위해서 각종 행사시에는 교직자를 초청하도록 하였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특강에는 강사로 초빙 또는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은사근황 알아보기 은사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을 하였으며 교직자 중에서 수범사례가 있을시에는 반상회라든가 인삼골소식지에 게제를 해서 주민에게 귀감이 되도록 노력 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한규용의원	금성농공단지 업체 입주현황과 미입주 사유?	지역경제과장 김 희 철	6만 5,000평 부지에 28개 업체가 입주 계획이며 65억 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으며 공장 건축 현황은 28개 업체중에서 18개 업체가 건축을 착공해서 9개 업체가 완공이 되었고 9개 업체가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음. 현재 미입주한 10개 업체중 8개업체가 대전 서울 기타 도시등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해오는 이전 업체가 되겠음.
정현수의원	소도읍 가꾸기사업 진행 현황?	새마을과장 최 윤 현	금년도에는 수남지역 마지막 구간인 금산읍 상옥리 91년도 최종공사, 구간부터 제2상옥교까지 길이 345m 넓이 20m의 14억 8,000만원을 투입 현재 추진중으로 공정은 70%이며 준공 예정 기간이 11월 30일로 기간내 완공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음.
	교통관련 주민사업과 건의사항 처리 현황?	지역경제과장 김 희 철	'92년 3월 20일 군북면 보광리를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산안1리와 상곡2리까지 1일 3회 연장 운행 하였고 92년 8월14일 남일면 신정리까지 1일 5회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6회로 증차하고 첫차와 막차의 시간을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공했음.

4. 제4차 본회의

가. 군정에 관한 질문

○ 질문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정현수의원	금산인삼의 수출증대 방안?	산업과장 김시중	중국인삼 값이 한국인삼 값의 2분의 1내지 3분의 1가격으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부터 한국으로 백삼이 사실상 수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외공관이나 인삼아가씨를 비롯해서 홍보를 강화하며 수출 전략에 적극 대처하겠음.
	농촌지도소 이전계획에 따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지도소장 유성열	금산읍 인근지역으로 지하수가 풍부하며 일조시간과 토질이 양호한 지역으로 시험포장을 포함하여 만평내외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건물은 사무실 각종실험 연구실, 농기계 격납고 등 750평을 건립하며 비닐하수스 저온저장고, 가축진료소, 농민교육시설을 별도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0억내지 25억으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청소년 오락실과 노래방의 단속실태와 성과?	사회과장 전영식	군과 경찰, 교육청이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첫주 토요일 학교 주변환경 정화의 날로 정해서 홍보 및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매주2회 내지 3회씩 년91회에 1,910명이 단속을 실시하여 50%인 9개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하였으며 청소년 유기장은 위반업소가 없었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찬헌의원	노인회관 및 복지회관의 월동대책과 운영상황?	가정복지과장 정 육 지	현재 관내 경로당 139개소를 1개소당 연간 월동비를 10만원씩 총 1,39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으로는 국비가 80%, 군비 20%로 되어 있으며 93년도 예산은 국비 지원에 따라 상향조정토록 하겠음.
	군북면 내부출장소 확장 이전 계획?	재 무 과 장 김 진 해	현재 사용중인 숙직실을 개조해서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숙직실을 별도 신축하는 방안과 약25평의 사무실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신축할 경우 약2,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민원의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전문제는 출장소 관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처리 하겠음.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의 불균형?	환경보호과장 김 승 근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에 제외구역이 확정 지정되고 금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의 수수료를 받는 지역의 전가구를 대상으로 징수할 계획임.
	경로 승차권의 지역별 차등 배분 방안 및 계획?	가정복지과장 정 육 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관계로 금산군만 별도로 지급할수는 없으며 구간별 요금제도 폐지 또는 차등지급등을 상부기관에 건의한바 있으며, 보사부에서 농촌형 노인 승차권을 새로 만들어 지급할 계획임.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길부섭의원	충절로 관내 각 도로변 정화사업으로 인하여 일선공무원 개입에 의한 행정력 손실과 정화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	산림과장 이풍직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농촌 인력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인력난으로 인하여 면직원이 직접 하는 실정임. 앞으로는 인건비를 계상해서 라도 공무원이 직접 사역에 임하는 것을 막도록 조치하겠음.
박천보의원	금산읍 신대리 가축시장의 교통 혼잡에 따른 이전계획과 대책?	산업과장 김시중	가축시장 이전 문제는 축협중앙회와 농림수산부가 합동으로 전지역을 조사한결과 현 금산가축시장은 금산읍 외곽지에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94년까지는 이전 계획이 없음.
	알뜰시장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계획?	가정복지과장 정육지	재활용 운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호응도는 낮지만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자원의 재활용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쓰레기와 폐품을 최소화 하자는 정신계도 차원에서 적극 참여 유도와 농축산 직거래와 재생공사의 폐품매각 중개역활등 확대 운영 하겠음.
	산림사업중 불필요한 주민동의서 쟁취에 대한 시정대책?	산림과장 이풍직	사실상 산림법상에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동의를 받고 업무를 시행 했으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보니 주민과 업자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채석허가, 광산, 축사 기도원, 기타 공해가 인정되는 공장등은 계속 동의서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오규영의원	공동묘지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군유 공원묘지 조성 추진용의?	가정복지과장 정 육 지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공동묘지를 정리한 후 최적지를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관리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는 한 군공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장의업소 현행고시가 이행여부 단속과 개선방안?	〃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메스컴 및 교육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주지시켜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박승우의원	임도개설 이유와 임도개설시 광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산림과장 이 풍 직	영구시설을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임도에 한해서는 받지 않을 계획이며 산림법 시행규칙 제91조 1항4호에도 임도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처리 하도록 되어 있음.

제 15 절 제15회 금산군 의회(임시회)

제15회 임시회는 박승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2년 10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회기는 '92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으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며 제1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태진수 의원과 이홍만 의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5회 금산군 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2.10.26 (월) 14 : 00		○ 개 회 식	
	1	1. 제1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금산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안	의장 제의 태진수의원외 2인 발의 금산군수제출 〃
'92.10.27 (화) 10 : 00	2	1, 군정보고의 건	금산군수제출
'92.10.28 (수) 10 : 00	3	1. 군정보고의 건(계속)	금산군수제출
'92.10.29 (목) 10 : 00	4	1. 군정보고의 건 2. '92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 3. 휴회의 건	금산군수제출 의장 제의 〃

나. 금산군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92년 10월 20일 태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제출한 이 조례안은 태진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관련한 별표 5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서 금산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여행지 구분을 3구분에서 2구분으로 변경하고 금액을 평균 10%정도 상향조정하고 의회 소재지내 및 12㎞ 미만 거리의 출장시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92년 10월 22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이 '92년 10월 1일자로 제13734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도록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 수당지급 대상자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대상자중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을 삭제하고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금액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라.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안

'92년 10월 23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이 승인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정수물품으로 신규취득은 8개품목에 25점으로 4,240만원이 소요되며 대체취득은 1개품목에 1점으로 3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본건은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 제2차 본회의

가. 군정보고의 건

'92년도 3/4분기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종합상황과 기획실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93년도 군정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다음 직제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다.

3. 제3차 본회의

가. 군정보고의 건

군정업무보고 이틀째로 '92년도 실과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재무, 지적, 환경보호, 가정복지, 민방위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각 실과마다 의원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답변이 있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45분에 산회되었다.

4. 제4차 본회의

가. 군정보고의 건

군정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지역경제, 산업, 산림, 건설, 보건소, 지도소의 순으로 보고가 있었으며 각 실과별 의원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들었다.

나. '92 주요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

본건은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사업 및 주요시설물 현장 시찰을 통해서 사업현황, 진도, 성과를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제시는 물론 군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9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으로 시찰대상지는 26개소로 주요지역개발사업장 및 소득단지, 민간 기업체 등이며 전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휴회의 건

의장제의로 '92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을 위하여 '9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제 16 절 제16회 금산군 의회(임시회)

제16회 임시회는 박천보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2년 11월 11일 오후 3시에 개의하였다.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 초지조성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 신청안을 심의 의결하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회기는 '9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며 제1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정현수 의원과 한규용 의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제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6회 금산군 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2.11.11 (수) 15 : 00		○ 개 회 식	
	1	1. 제1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안 5. 금산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휴회의 건	본 회 의
'92.11.12 (목) 10 : 00	(1)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92.11.13 (금) 14 : 40	(2)	1.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92.11.14 (토) 10 : 00	2	1. '9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본 회 의

나. '9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금산군수로부터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금산군수의 군정연설을 들었다.

군정연설 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목표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주재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의존재원중 국고보조금및 도비보조금의 일부변경과 금산읍 중도리 소방도로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확.포장등 신규 지원 사업의 세입증가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함에 그 배경을 두고 있으며 이번 추경의 세출은 새로운 시책보다 전임군수가 년초에 계획하고 군민과 더불어 약속했던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인건비, 공공요금, 연금부담금, 중도리 소방도로 사유토지 사용료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보상금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했다.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 건은 '92년 11월 10일 금산군수로 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위 구성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라. '93년도 정수물품 승인 신청안

'92년 11월 10일 금산군수로 부터 제출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김진해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정수물품으로 신규취득이 12개 품목에 수량이 145점으로 2억 7,731만원이며 대체취득은 7개 품목에 수량이 25점으로 6,03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이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마. 금산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92년 11월 7일 금산군수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김시중 산업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개정이유는 금산군 실과규칙중 금산군 직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금산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위원중 "사회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바. 휴회의 건

의장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 까지 열리게 되어 본회의가 쉬게됨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제1차 예결위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협의에 따라 위원장에 허병문 위원, 간사에 박천보 위원이 선출되었다.

2)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이 예산안은 '92년 11월 10일 금산군수가 제출하였으며 금산군의회 의장은 '92년 11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 회부하여 '92년 11월 13일까지 심사 요청이 있어 오늘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다.

심사순서는 먼저 강병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각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하였다.

부군수와 실과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강병순 기획실장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하여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1억 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억 400만원으로 본 군의 총 예산규모는 482억 6,700만원이 되며 그 중 일반회계는 348억 2,700만원, 특별회계는 134억 4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6%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예산총칙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 산 총 칙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 계	48,267,409	1,448,017
1. 일 반 회 계	34,827,664	1,044,830
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58,335	64,750
3. 주택관리특별회계	270,249	8,107

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557,372	76,721
5.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18,848	565
6.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6,130	1,083
7.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0,796	4,823
8.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15,784	3,473
9. 농공지구특별회계	1,446,618	43,398
10. 공유임야특별회계	1,490	44
11.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135,055	4,051
12.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6,539,068	196,172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199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290,000천원으로 한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6,147천원으로 한다.

예 산 규 모

(단위 : 천원)

구분 /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기정) 예산액	증(△)감	비고
합계	48,267,409	46,160,632	2,106,777	
일반회계	34,827,664	33,324,437	1,503,227	
특별회계	13,439,745	12,836,195	603,550	
상수도	2,158,335	2,177,362	△ 19,027	
주택관리	270,249	270,249	0	
의료보호기금	2,557,372	2,005,808	551,564	
새마을소득금고	18,848	18,848	0	
구획정리	36,130	36,130	0	
생활안정기금	160,796	160,796	0	
새마을소득특별지원	115,784	115,784	0	
농공지구	1,446,618	1,479,076	△ 32,458	
공유임야	1,490	2,394	△ 904	
골재판매	135,055	120,680	14,375	
지방양여금관리	6,539,068	6,449,068	90,000	

이어서 박귀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하여 예산액 21억 677만 7천원의 적은 재원으로 계획재정, 복지재정과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었고 년말사업 마무리에 투자된 예산편성이며 특기할 만한 특별교부세는 효과적사업에 투자된 예산편성안이라고 보고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 항목 하나 하나를 페이지별로 심도있게 질의하였으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4시 46분에 산회되었다.

나. 제2차 예결위

1)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채택에 앞서 11월 13일 금산군수로 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서 검토 및 협의를 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으며 의안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위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천보 간사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심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9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 제출자 : '92년 11월 10일 금산군수 김학현

나. 회부일자 : '92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92년 11월 12일

라. 특위운영 : 제16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 허병문, 간사 : 박천보, 위원 : 7인)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강병순)

○ 일반회계 15억 322만 7천원과 특별회계 6억 355만원 계 21억 677만 7천원이 늘어, 총예산 규모는 4.6%가 신장된 482억 6,740만 9천원이 되었고

○ 세출예산 편성은 군정의지의 실천과 군세 도약을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주력 편성하였고

○ 추경규모는 21억 677만 7천원중, 경상사업비와 중요 사업비가 20억 7,453만 8천원으로 97.7%를 투자하였다는 요지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귀전)

○ 추경 예산액 21억 677만 7천원의 적은 재원으로 「계획 재정」 「복지 재정」

「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었고 년말 사업마무리에 투자된 예산편성 안이며 특별교부세는 매우 효과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등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다는 요지입니다.

4. 질의및 답변요지

실과 사업소별로 1문1답식으로 진행하였음.

5. 심사 요지

○ 첫째 : 세입 예산안이 지방세법과 금산군세 조례에 의한 세입 증감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 둘째 : 세출 예산안은 적은 재원인데도 관서 운영비와 기본 경상비의 적정한 배분과 중요 사업비는 주민복지와 균형개발에 효과적인 투자가 되었는지에 역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음.

6. 수정안 요지(수정발의, 수정제출(안) : 별첨)

○ 92년 11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서 9명 전원이 참석하여 추경 예산액 21억 677만 7천원중 지방의회 운영비, 수수료, 수용비 1,574만 1천원을 삭감 300만원을 조정하고 550만원을 의정활동 참여 유공자 보상금으로 수정발의 하였고

○ 92년 11월 13일 금산군수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1,798만 1천원이 경상사업비및 중요사업비로 수정을 심도있게 협의하였음.

○ 이상 수정 발의안은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어 편성되었음.

7. 심사 결과

○ 재적위원 9인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

8.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별 첨】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의원 수정발의(안)

(단위 : 천원)

삭 감 부 분		증 액 부 분	
분 야	금 액	분 야	금 액
총 계	15,740	총 계	8,500
일 반 회 계	15,740	일 반 회 계	8,500
○ 지방의회운영 (1211-3,221)	15,740	지방의회운영 (1211-3,221)	3,000
		지방의회운영 (1211-4,311)	5,500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군수 수정제출(안)

(단위 : 천원)

삭감부분		증액부분	
분야	금액	분야	금액
총계	17,981	총계	17,981
일반회계	17,981	일반회계	17,981
예비비	17,981	일반행정비 (2321-2,265)	981
		산업경제비 (4153-4,229)	12,000
		지역개발비 (5321-5,412)	5,000

3. 제2차 본회의

가. '9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92년 11월 12일 부터 11월 13일까지 2일간 열려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병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심의결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 17 절 제17회 금산군 의회(정기회)

제17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11월 18일 금산군 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92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회기는 92년 11월 25일부터 92년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허병문의원, 길부섭 의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제17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7회 금산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92.11.25 (수) 10 : 00	1	제 1 차 본회의	1. 제17회 금산군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2. 93 금산군 예산안에 대한 군정 연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92.11.26 (목) 10 : 30		제 1 차 감사특위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	
		제 1 차 예결특위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예산및 예산안 심사일정 확정의 건	
'92.11.27 (금) 10 : 00	2	제 2 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군정에 관한 질문	
'92.11.28 (토) 10 : 00	3	제 3 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2. 휴회의 건	
'92.12. 1 (화) 10 : 00		감사특위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	
'92.12. 2 (수) 10 : 00		〃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	
'92.12. 3 (목) 10 : 00		〃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3.12. 4 (금) 14 : 00		제 2 차 예결특위	1. 91년도 금산군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의 건 2. 91년도 금산군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 3. 91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4. 91년도 금산군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92.1.2 7 (월) 13 : 00		재 2 차 감사특위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 00	4	제 4 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 '9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휴회의 건	
'92.12. 8 (화) 10 : 00		제 3 차 예결특위	1. '93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사의 건	
'92.12. 9 (수) 10 : 00		제 4 차 예결특위	1. '93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사의 건	
'92.12.15 (화) 11 : 00		제 5 차 예결특위	1.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92.12.16 (수) 14 : 00		제 6 차 예결특위	1.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92.12.21 (월) 10 : 00		제 7 차 예결특위	1. '9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93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1 : 00	5	제 5 차 본회의	1. '91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9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5. '93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 6. 쌀 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 7. 휴회의 건	
'92.12.24 (목) 10 : 00	6	제 6 차 본회의	1.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2. 금산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금산군 화재 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	

나. '93금산군 예산안에 대한 군정연설

93년도 금산군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학현 금산군수의 군정연설이 있었다. '93년도 군정은 충절의 새고장 인삼골 면모 쇄신의 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시책은 군민총화로 지역안정, 사회복지 증진과 환경보존 격조높은 지역균형개발 활력있는 농촌건설, 새마을정신 재점화로 군민 응집력제고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체육진흥 경영사업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따르는 신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전례 답습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일몰 예산개념에 근접노력하여 생활행정의 획기적인 개선과 사회공익 시설의 계획적인 확보와 환경보호 복지증진등 새로운 수요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국도정과 연계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뒷받침에 목표를 두었으며 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2년도 당초예산보다 32.2%가 신장된 557억7천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0.7%가 신장된 446억7천만원으로 구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5%가 감소된 111억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2년 11월2일 정현수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현수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및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현수의원을 비롯한 한규용의원, 허병문의원, 길부섭의원, 오규영의원, 박천보의원, 박찬헌의원, 박승우 의원, 이홍만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2년 11월 2일 박천보 의원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천보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예산결산 및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박천보 의원을 비롯한 정현수 의원, 한규용 의원, 허병문 의원, 길부섭 의원, 박찬헌 의원, 오규영 의원, 박승우 의원, 이홍만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마.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2년 11월 2일 박승우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승우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 건은 군정질문과 금산군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우리 금산군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17인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바. 휴회의 건

의장제의로 휴회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92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가결되었다.

2. 제2차 본회의

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수 의원으로 부터 제1차 위원회에서 채택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내용은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통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의 실과 전체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정현수 의원, 간사에 박천보 의원, 감사위원으로는 한규용, 허병문, 길부섭, 박찬헌, 오규영, 박승우, 이홍만 의원으로 하였으며 감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등 사무직원 3명을 보조요원으로 지정하였다. 감사일정은 12월 1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12월 2일에는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12월 3일에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각각 감사를 하게되며 감사요령은 보고청취, 질의답변, 필요시 현지확인을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보고가 끝난후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의결하였다.

나. 군정에 관한 질문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서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뒤 실과사업소 직제순대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군정 질문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 질문.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오규영의원	자동차세 체납사유의 원인과 효율적인 징수 방법은?	재 무 과 장 김 진 해	자동차는 유동적인 부동산으로 소재파악이 어렵고 자동차 매매시 제때에 소유권 이전이 안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시에 자동차세가 미납된 경우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음. 앞으로의 대책은 세무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추적해서 징수하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부를 압류하고 소유권 이전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첨부시키는 규정을 상부에 건의하겠음.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 내용은?	〃	차적 옮기기 운동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도 목표 210대중 167대를 실시했음.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단속 실태와 향후계획	사 회 과 장 전 영 식	군자체단속 주2회 시.군합동단속 분기1회, 전국 일제단속 월2회, 군간 교체단속 1회등 년 109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결과 위반업소등 17개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아울러 업주들의 건전영업 의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관서의 철저한 단속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한규용의원	인삼제 행사시 개삼터 제사의 중복과정을 현시대에 맞게 개선할 용의	문화공보실장 오 정 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개선해 나가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한규용의원	인삼제 행사 가장행렬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자세 결여 보완	문화공보실장 오 정 환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지도교사를 통하여 진지하게 참여토록 유도하겠음.
	인삼제 불꽃놀이 행사시 남산과 비호산 동시실시 여부	〃	집행위원회와 협의 예산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음.
	종합시상제의 지나친 경쟁이 되고 있는바 군민화합 차원에서의 개선대책	〃	군민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상금을 조정하여 차등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겠음.
	각종 인삼제 행사시 심사위원 선발이 90%가 금산읍에서 선발되고 있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바 이의 개선책은?	〃	각 종목별로 지역별 골고루 선정되도록 검토하겠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최대한 초청 보완하겠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육성 계획과 문제점, 개선책은	새마을과장 최 윤 현	지원대상 마을과 지원대상 종목 선정은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의 자문을 받고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정하되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하여 농촌소득 작목을 중점 지원 육성해 나가겠으며 본 자금은 정치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자산증식 한계의 아쉬움이 있으나 특별히 발견된 문제점은 없음.
	공동묘지 운영 실태	가정복지과장 정 육 지	군 관내 공동묘지는 총 161필지에 약 23만 2,000평으로 현재 묘지면적이 농경지나 타용도로 잠식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93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묘지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한규용의원	알뜰시장 운영 실태?	가정복지과장 정 육 지	금년 5월 27일부터 상설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소는 금산신협 협동조합 별관에 설치되어 있고 상근자 1명과 여성단체 회원이 1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가구 의류등 7종에 총 3만 3,600여점으로 1만 5,520점을 향후 여성회관 또는 가정복지회관 건립시 기금조성 목적으로 적립하고 있음.
	농촌생활개선 종합시범 마을 육성 현황과 추진 내용	사회지도과장 김 영 선	농촌여성의 역활수행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농촌여성문화 강좌를 10회에 걸쳐 648명을 실시하였고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호당 140만원씩 65회 9,100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부엌과 목욕탕을 설치하도록 지도하였음.
	일면 일특화사업 추진 내용	기술보급과장 양 근 수	UR 대응 대책으로 90년대부터 3개년간 추진해 왔으며 예산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자금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음.
허병문의원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행정중앙부처에 시정요구 및 건의한 내용	기 획 실 장 강 병 순	중앙부처 건의 내용은 3건으로 인삼제도 자금지원 제도개선, 인삼제품류 허가제도 개선, 인삼의 재해보상기준 개선이며 충청남도에 건의한 내용은 17건이며 이중 지역현안 건의내용이 총 9건임.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허병문의원	관변단체를 행정에서 자체 정리할 의향은 없는가?	기획실장 강병순	군수입장에서 정확히 정비할 수 있다, 없다는 답변이 불가능하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스스로 행정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에 앞장서서 기능별로 민간주도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를 생각할 때 오히려 이를 육성 발전시키고 조직과 권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사업비 책정시 소규모 영세업자 지원 대책	재무과장 김진해	읍면에 있는 영세업자 재무부령 업자들의 보호측면에서 계속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UR대비 전문지도사의 육성과 유기농업 시범사업 추진 계획	기술보급과장 양근수	유통여건은 생산비 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자생력을 얻기까지는 막대한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임. 유기농업 전문지도사로서는 현 토양비료 담당자가 겸임할 수 있으며 예산이 허락된다면 자생력 확보가 최단시일내에 될 수 있는 지역을 골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음.
박찬헌의원	금산 좌도농악의 보존과 발전 방향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산농업고등학교를 민속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산농고 졸업생과 지역농악 동호인으로 현재 금산농악회를 90년 2월에 금산문화원 산하에 조직 운영하고 있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찬헌의원	금산인삼제전시 제관들의 제복과 제모를 역사적 고증을 받아 개선할 용의	문화공보실장 오 정 환	금산인삼제 집행위원과 협의하고 사학계의 역사적 고증을 의뢰 복장과 제례의식 등을 개선해 나가겠음.
	자립재정 능력의 확충과 앞으로의 계획	재 무 과 장 김 진 해	세수증대를 위해서 철저한 세정동향 파악을 해서 세원발굴을 조기에 포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해서 체납세를 예방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수하겠음.
	인삼후작지 절화재배사업 기술보급 현황및 문제점과 개선 방향	기술보급과장 양 근 수	절화재배 시범포는 군북 동편리에 6농가에 1,050평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1,232만원으로 평당 1만1천 730원을 올린바 있으며 꽃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서울 소비시장에 금산 꽃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소득사업 자체개발 방안	〃	소득사업자체 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며 따라서 금산군 농촌지도소는 소규모 사업으로 93년도에는 인삼연작장애 극복처럼 인삼쌀 제조시험 식품가공 시험등을 계획하고 있음.
박천보의원	농민상담소의 효율적인 방법	사회지도과장 김 영 선	읍.면 농민의집 운영과 내년도 금산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읍.면단위 농기계부품센타 사업과 연계해서 읍.면농민상담소 보조요원을 일용직으로 확보해서 농민 불편을 해소하고 농민을 위해 봉사하는 농민상담소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천보의원	순환보직과 읍면교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방할 용의는?	내무과장 최용준	인사제도는 합리성과 공정성, 능률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행 군 전입시험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선발하고 있으며 근무년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는 전입기회를 확대 부여하고 있음. 앞으로 근무년한 제한규정 제도는 시정토록 노력하겠음.
	지역신문의 왜곡보도로 인한 피해여부와 대책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공보행정 실무자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언론사 유대강화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추후 편파 왜곡 과장 보도로 인한 피해발생시에는 언론중재 신청등 모든 방법을 동원 과감하게 대응토록 하겠음.
	농로분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방안?	새마을과장 최윤현	토지소유자의 대다수가 비록 지목은 도로로 분할됐다 하더라도 등기이전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음. 앞으로 전행정력을 동원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설득 등기이전토록 지적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음.
태진수의원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일부 공무원의 시정 대책	내무과장 최용준	모든 공직자에게 특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봉사자세 확립과 민원공무원에 대한 일과전후 교육실시 강화와 우수업체 등을 견학하여 친절행정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권위적인 민원공무원이 있을시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하는 동시 사안에 따라서 엄중문책 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이홍만의원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방안	기 획 실 장 강 병 순	93년도에는 확대하여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조성, 만악리 잔디포 조성, 노상주차장 유료화, 하상정리 경영사업조사 용역설계, 버려진 국.공유재산 찾기,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등을 적극 확대 발전시켜 자연적으로 경영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주민등록상 인구감소 방지 대책	〃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주민등록을 타지역에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하며 각급 학교의 수학 여건및 질 개선으로 교육문제로 인한 전출을 억제하는 등 관계기관의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겠음.
	92년도 예산확보 사업중 미발주 사업 건수와 이유	〃	중요사업 목표는 108건으로 그중 100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으며 미진한 사유는 설계 변경과 승인의 지연이며 보조금 결정이 늦어지거나 분담금 납부지연,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하여 지연되었음.
정현수의원	현재 소송건수와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건에 대한 대책	〃	92년 소송 현황은 총 9건으로 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수가 5, 국가대상 4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4건으로 법률상 재산권을 보존하는 사항이나 쟁송의 소지가 있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주요문서심사 이행을 확행하겠으며 매매계약서 보상서류 등 권리의무의 변동에 관련되는 증빙서류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정현수의원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운동 효과	내무과장 최용준	공직자 차량 10부제 운행을 92년 2월 1일 부터 실시하여 관용차 50대, 자가용 131대등 총 181대가 자진 참여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 사무실에 전등 개별스위치 409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운동을 전개하여 1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음.
	기능직 공무원 보직변경 용의	〃	기능직은 당초 발령시 그 부서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발령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는 이를 검토해서 특별전문성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하겠음.
	92년도 민원서류 접수및 처리 현황	〃	10월 31일 까지 총 민원처리 건수는 10만건이며 유기한 민원처리가 5,700, 직결민원이 8만 3,000건으로 1일 평균 338건으로 작년보다 130%가 증가했으며 자동차등록 업무가 91년 7월 1일자로 충청남도에서 인수인계가 되어 자동차 업무로 25건을 처리하고 있음.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현황, 세외수입 현황및 확충 방안	재무과장 김진해	등기압류 12건, 등록압류 25건으로 총 37건에 금액은 2억 6,522만 3천원이며 세입수입은 연간목표가 39억 9,595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확충 방안으로는 국.공유재산 찾기로 신규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정현수의원	국. 공유재산 찾기 추진 성과및 관리 현황	재 무 과 장 김 진 해	1990년부터 금산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184필지에 1만 9,733평의 실적을 거수했음. 이의 관리를 위해서 현황측량 실시와 등기추진 및 재산대장 등을 정리해서 전 필지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음.

3. 제3차 본회의

가. 군정에 관한 질문

○ 질문.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승우의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및 금성면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 처리능력과 기한	환경보호과장 김 승 근	금성면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은 금년도 부지 1만 679㎡를 확보해서 총 사업비 4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 15일에 준공을 했으며 향후 4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허병문의원	제원면 수당선과 길곡선의 군도 승격 용의	건 설 과 장 최 정 우	진산 엄정리에서 금성면의 엄정선, 금산읍에서 군북면을 통과하는 수당선, 남일면 6개노선을 군도 승격 요구를 했음.
	용담댐 건설로 인한 우리군의 예상 피해 상황과 대응책	〃	확정적인 것은 아니나 사견으로는 갈수, 평수시에 통과하는 영향밖에 없으며 홍수시에는 충분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고 환경처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생태계에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길부섭의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건 설 과 장 최 정 우	필지별로 용배수로 연결되어 자유로이 전답으로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로폭이나 기반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겠고 지방도 군도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를 고려해서 농기계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박천보의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양은	산 림 과 장 이 풍 직	도비보조를 요청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공원 조성을 위해 2천만원을 책정했으며 그중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았음. 꽃길조성도 8,500만원 중 2,500만원을 지원받았음.
	폐천이나 폐도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대책	건 설 과 장 최 정 우	신규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철저히 정비하겠으며 무단점. 사유토지를 사용허가토록 하고 용도폐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정밀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음.
	군 발주 사업의 주민 홍보 대책	〃	편입용지 및 지장물을 감정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감정사가 현지 주민하고도 대화를 하도록 하겠으며 착공과 동시에 리장,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현장 소장과 공무원이 입회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음.
한규용의원	의약품 공급 현황	보 건 소 장 길 승 환	일반진료 약품이 69종 내지 74종 치과진료 약품이 67종 내지 71종이 사용되며 약품확보는 금년예산으로 2억 9,097만 5천원을 승인하여 보건소에서 일괄구입 2회에 걸쳐 약품이 배정확보 되었으며 주민진료에 차질이 없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태진수의원	군도 6호선 개발 지연 사유	건설과장 최정우	군도 6호선 부암.곡남선의 경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미개통 도로로 지연되어 왔으나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설계도가 확정되는 대로 구간내의 구조물이나 일부 토공을 보수해서 시행하겠음

나. 휴회의 건

본 휴회의 건은 의장제의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2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4. 제4차 본회의

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92년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정현수의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었다. 보고내용은 감사일정 및 주요실시 내용, 감사결과, 감사의견 등을 보고하였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나. 9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92년 12월 5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이 계획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해 금산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부지 매입과 내방 농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U.R대응 시험실, 연구실 확보를 위한 농촌지도소 부지 매입과 군청청사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부지 매입 및 금성면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 부지 확보와 일단의 주택지 1.2지구 및 지방공업단지 편입예정부지, 추부면 구청사,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코저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취득이 총 20건에 4만 6,861㎡로써 취득가액은 23억 2,700만원이며 처분은 총 156필지에 9만 5,498㎡로써 가액은 5억 7,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심의결과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휴회의 건

본 휴회의 건은 의장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5. 제5차 본회의

가. 91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2년도 11월 25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홍만의원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고,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 되었다.

나.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홍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다.
보고내용은 92년 12월 14일 금산군수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5일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12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된 사항으로서 예산안 심사 4억 600만원이 감 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심사결과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심의결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9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안은 92년 12월 5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를 두고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도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처분이 1건에 건물 82.4㎡로 군북면사무소 구 창고가 노후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용년수 30년 경과로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창고를 신축코져 하며 취득은 1건에 165㎡로 가액은 9,000만원이 소요되며 내용은 군북면사무소 창고 및 소방차고 1동 50평을 신축하여 소방차의 안전관리 및 행정업무 수행에 원활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93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라. 93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

이홍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다.
보고내용은 92년 11월25일 금산군수로부터 본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결특위로 회부되었으며 92년 12월 8일 제3차 예결특위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중요사업보고를 하였으며 92년 12월 9일 제4차 예결특위에서 중요사업보고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92년 12월 16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수정안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하였고 92년 12월 21일 제7차 예결특위에서 의결을 하였다. 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21억 326만 4천원, 특별회계 121억 326만 4천원으로 총규모 582억 4,826만 4천원으로 재적위원 9인이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심의결과 93년도 금산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마.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

92년 12월 19일 허병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허병문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수입개방 협상이 급진전 되면서 언론 등 국내 일각에서는 U.R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쌀 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시급히 불식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를 좌시할 수 없어서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심의결과 가결되어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된 결의문을 농수산부장관, 농협중앙회장에게 송부하였다.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의 생산액, 재배 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금산군 의회는 제17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과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금산군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금산군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1일

바. 휴회의 건

본 휴회의 건은 의장제의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한 불우이웃을 돌아보기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6. 제6차 본회의

가. 금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2년도 12월 21일 금산군수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현재 금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징수토록 되어 있는 것을 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416호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새로 제정 공포됨으로서 동법 제19조 제2항에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농어촌도로 점용료에 대하여도 현행도로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규정과 병행 운용될 수 있도록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나. 금산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92년 12월 16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와 사업연관이 깊은 농기계 부품센타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주민에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순회수리반이 무료 수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향 조정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 농기계 부품센타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료수리금액을 현행 1,000원 미만에서 3,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금산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

92년 11월 24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민방위과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라호성 훈련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금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의 제안이유는 92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체제가 광역화되므로 본 업무를 도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서 92년 10월 23일 충청남도 조례 제2270호로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금산군 화재예방 조례는 불필요하게 되어 조례를 폐지코저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가. 제1차 회의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 위원들간의 협의가 되어 위원장에 정현수 위원, 간사에 박천보 위원을 선임하였다.

2) 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

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사전 의견 조정을 통하여 작성된 계획서에 대해서 박귀전 전문위원의 낭독이 있었으며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92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2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서

1. 감사의 목적

군정 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안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등을 통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94. 12. 1～12. 3(3일간)

3. 감사 대상기관

- ㅇ 금산군(군청)
- ㅇ 보건소, 농촌지도소
- ㅇ 읍, 면

4. 조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9인)

· 위원장 : 허병문 간사 : 한규용

· 위 원 : 정현수, 길부섭, 박찬헌, 박천보, 오규영, 박승우, 태진수

나. 사무보조자(4인)

· 전문위원 : 박귀전

· 의사계장 : 김영목

· 사무직원 : 김필식

· 속 기 사 : 오광택

5.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일 정	대 상 기 관 (부 서)	조사 장소
12. 1 (화) 10 : 00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읍.면 현지 확인(필요시)	위원회회의실
12. 2 (수) 10 : 00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읍.면 현지 확인(필요시)	〃
12. 3 (목) 10 : 00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 현지 확인(필요시)	〃

6. 조사요령

○ 보고 청취

○ 질의 답변

○ 필요시 현지 확인

7. 기타 필요사항

○ 현지확인 요구서 차량 지원

○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발언,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의장경유 통보

출 석 대 상 자 명 단

출석일	출 석 장 소	출 석 대 상 공 무 원		비 고
		직 위	성 명	
12. 1 (화) 10 : 00	위 원 회 회 의 실	기 획 실 장	강 병 순	
		문 화 공 보 실 장	오 정 환	
		내 무 과 장	최 용 준	
		새 마 을 과 장	최 윤 현	
		재 무 과 장	김 진 해	
12. 2 (수) 10 : 00	〃	지 적 과 장	송 상 규	
		사 회 과 장	전 영 식	
		환 경 보 호 과 장	김 승 근	
		가 정 복 지 과 장	정 육 지	
		산 업 과 장	김 시 중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희 철	
12. 3 (목) 10 : 00	〃	산 림 과 장	이 풍 직	
		건 설 과 장	최 정 우	
		도 시 과 장	박 래 훈	
		민 방 위 과 장	정 정 학	
		보 건 소 장	길 승 환	
		지 도 소 사 회 지 도 과 장	김 영 선	
		지도소사회기술보급과장	양 근 수	

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내역

연번	자 료 명	비 고
1	관리자 조사	
2	공무원 정.현원 현황	
3	직원결원 보충현황	
4	전.출입 직원현황	
5	읍면 종합감사 조치결과	
6	민원 처리현황	
7	표창자 현황	
8	주요시책 추진현황	
9	주요사업 추진현황	
10	채무 현황	
11	포괄 사업비 집행현황	
12	민간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연번	자 료 명	비 고
13	군 자치법규 정비현황	
14	문화재 현황	
15	'92 문화재 보수현황	
16	금산 인삼제 행사 경비내역	
17	대둔산 골프장사업 추진현황	
18	공설 운동장 건설현황	
19	도민 체전 출전현황	
20	지방세 징수현황	
21	세외수입 징수현황	
22	기타수입및 특별회계 수입현황	
23	세출 현계표	
24	시설공사 집행현황	
25	이월사업 현황	
26	재산 현황	
27	공유재산 매입현황	
28	공유재산 매각현황	
29	버려진 국.공유재산 찾기 현황	
30	지적 민원 처리현황	
31	지적공부 현황	
32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현황	
33	식품제조 업소현황	
34	위생 접객업소 현황	
35	장애자 등록현황	
36	노동조합 현황	
37	사회단체 현황	
38	쓰레기장 확보 현황	
39	공해 배출업소 현황	
40	청소인력 장비 현황	

연번	자 료 명	비 고
41	소년가장 현황	
42	여성단체 현황	
43	경로당 등록현황	
44	공. 사설 묘지현황	
45	식량 증산현황	
46	농어민 후계자 육성현황	
47	농어민 후계자 사업별 육성현황	
48	전업 축산농가 현황	
49	인삼재배 현황	
50	인삼시장 거래현황	
51	농기계 보육현황	
52	농지전용 허가현황	
53	기업체 현황	
54	운수업체 현황	
55	자동차 현황	
56	시장 현황	
57	산림훼손 허가현황	
58	도로 현황	
59	경지정리 현황	
60	관정 현황	
61	소류지 현황	
62	건축허가및 준공현황	
63	도시 계획 현황	
64	도시지구 우회도로 현황	
65	공원조성 계획	
66	토지거래 현황	
67	상수도 시설현황	
68	민방위 장비 현황	

연번	자 료 명	비 고
69	의약품 허가및 신고업소 현황	
70	보건지소 진료소 현황	
71	주요 지도사업 현황	
72	경영수익사업 현황	
73	군정 주민반응 설문조사 추진내용(군북면 조사분)	
74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 파악	
75	하위직 장기근속 공무원 승진현황(6급미만)	
76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 설립운영 현황	
77	기한민원 처리현황및 민원처리에 따른 자체월별 검열결과	
78	새마을 농로, 진입로 편입토지 조사현황및 처리실태	
79	분할 측량비 총예산및 집행내역	
80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현황	
81	세입금 예치내역(원본 사본 첨부)	
82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내역('90~91)	
83	농촌 간이급수 시설현황(165개소)	
84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입찰내역	
85	복지분야 환경위생 관리사업 추진현황	
86	여성단체별 육성 추진현황	
87	지역농업 종합개발 시범사업장 현황	
88	농어촌 가로등 읍면배정 현황	
89	농어민 후계자 정비현황	
90	축사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91	물가 한자리수 지키기 중점관리품목, 지도단속, 조치결과현황	
92	금성농공단지 입주업체현황(일정별)및 미입주업체 대책	
93	개인택시 면허증 발급현황(관련법규. 지침 사본)	
94	산림훼손허가. 무육간벌. 치수가꾸기사업 지구와 실적('90~92)	
	(사업별 지침및 관련법규 사본)	
95	농촌지구(도로.구거.불법건축물) 조사및 처리현황(관련법규및 지침)	

연번	자 료 명	비 고
96	농촌도로 포장현황및 '93년도계획및 포장비율	
97	근로자 아파트 허가현황및 분양내역	
98	도시계획재정비사업 예산액및 집행내역(이월예상액및 사유)	
99	읍면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현황	
100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별.회수.내용.소요경비.일비수당)	
101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및 보상금 집행내역(실과사업소)	
102	포괄사업비 집행현황및 pool예산 집행내역	
103	청소년 체육시설 현황및 보수실적	
104	대선관련 이장.반장 사직서 접수현황및 처리내역	
105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 운영현황및 지침	
106	광역권 사업 집행내역및 지침	
계	106	

나. 제2차 회의

이번 정기회 감사를 대비해서 그동안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수집해서 집행기관측에 요구한 총 104건의 자료를 토대로 1문1답식 회의식으로 진행하였다. 감사 첫날인 12월 2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순서로 감사를 하였으며 12월 2일에는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12월 3일에는 산림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감사에 대한 강평은 12월 7일 감사보고서 채택시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 제3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2년 12월 1일부터 92년 12월 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됨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소위원회를 열어 상호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허병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며 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대로 채택의결되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2 행 정 사 무 감 사 결 과

1. 감사의 목적

○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

○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등을 통해 복지군정수행의 효율성 확보

2. 감사기간 : '92. 12. 1～12. 3(3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금산군 본청 및 보건소, 지도소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9명

· 위원장 : 정현수, 간사 : 박천보

· 위 원 : 한규용, 허병문, 길부섭, 박찬헌, 오규영, 박승우, 이홍만

나. 감사일정및 주요감사내용

월일	대상부서	장소	방법	주요감사내용
12.1 (화)	기획실	의회 위원회 회의실	질의. 답변	1.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2.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3. 경영수익사업 추진 4. 주요시책 추진상황 5. 집중관리예산 집행상황
	문화공보실	〃	〃	1. 인삼골 소식지 발간 2. 문화재 관리 3. 인삼제 행사경비 집행 4.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무과	〃	〃	1.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운영 2. 공무원 인사 －장기근속 공무원 순환보직 －하위직 공무원 승진 임용 －결원 보충 3. 민원 처리 상황 4. 읍면 종합검사 결과
12.2 (수) 12.3 (목)	새마을과	〃 금산읍, 상6음지1, 금성파초리, 부리, 창평3리	〃 현장 확인	1.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2. 민간단체 보조금 3. 공설운동장 건설 4. 도민체전 출전상황 5. 직장 체육팀 육성 6. 대둔산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7.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상황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마을안길 및 진입로 도로포장 사업장(시멘트)

월 일	대상부서	장 소	방 법	주 요 감 사 내 용
12.1 (화)	재 무 과	의 회 위 원 회 회 의 실	질의.답변	1. 체납세 징수 2. 세외 수입 3. 시설공사 집행 4. 국공유 재산관리 5. 버려진 국공유재산찾기 추진 6. 세입금 예치
12.2 (수)	지 적 과	〃	〃	1. 지적민원 처리 2. 토지 이동지 조사 3. 농로 되찾기 사업
	사 회 과	〃	〃	1.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관리 2.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 3.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 4. 간이급수 시설 5. 장애자 관리
	환경보호과	〃	〃	1. 쓰레기 수거 및 처리 2. 공해 배출업소 관리 3. 분뇨 처리장 시설 운영
	가정복지과	〃	〃	1. 소년 소녀가장 보호 2. 경로당 지원 3. 공동묘지 관리 4. 여성단체 활동상황
	산 업 과	〃	〃	1. 농어민 후계자 육성 2. 농업진흥지역 지정 3. 농기계 보급 4. 농지전용
	지역경제과	〃	〃	1. 금산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 2. 개인택시 면허 3. 주차장 시설 4. 시내버스 운행
12.3 (목)	산 림 과	〃 진산면만악리	〃 현 장 확 인	1. 산림훼손 허가 2. 치수 가꾸기 사업 3. 무육 간벌 사업 4. 가로수 관리 ○ 금동광산 훼손지 복구현황
	건 설 과	진산 엄정리 금산읍음지리 추부 추정리	〃	○ 정주권 개발사업 — 도로포장 사업장 ○ 금산~남이간 군도 도로포장 사업장 ○ 농촌 도로 사업
	도 시 과	의 회 위 원 회 회 의 실	질의.답변	1. 도시계획 사업실시 상황 2. 토지거래 민원처리 3. 공시지가 조사 4. 건축 설계 5. 하수도 관리

월 일	대상부서	장 소	방 법	주 요 감 사 내 용
12.3 (목)	민방위과	의 회 위 원 회 회 의 실	질의답변	1.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 2.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3. 민방위 장비 관리 4. 재해 출동 태세
	보 건 소	〃	〃	1. 보건 진료소 운영 2. 의약품 구입상황 3. 보건 진료원 근무상황 4. 야간 공휴일 근무 대책
	농촌지도소	〃	〃	1. 농촌지도자 지원, 사후관리 2.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 3. 농기계 수리 4. 4H활동 후원상황

'92 행 정 사 무 감 사 현 황

실 과 별	계	시정및 처리요구	건의요구	기 타
계	42	31	11	
기 획 실	6	6		
문화공보실	2	2		
내 무 과	5	4	1	
재 무 과	4	1	3	
지 적 과	2	1	1	
사 회 과	5	3	2	
환경보호과	2	2		
가정복지과	2	2		
산 업 과	2	2		
지역경제과	2	2		
산 림 과	3	2	1	
도 시 과	5	3	2	
보 건 소	1	1		
지 도 소	1		1	
* 새마을과, 건설과, 민방위과 : 지적사항 없음.				

□ 조사 결과

가. 시정및 처리요구 사항(31건)

대상부서	시 정 .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기 획 실	1. 군정조정 위원회 운영에 있어 앞으로 분야별 위촉위원 (민간)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군정의 주요시책및 기본적인 계획 조정에 원활을 기하기 바람.	
	2. 군정시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다수의 주민들이 알고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	
	3. 급식비 성격의 보상금 예산편성은 계층간 대상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4.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대상단체의 활동성과를 분석한후 이에따라 지급토록 개선하고 보조금집행 적정 여부의 사후 확인을 철저히 하기 바람.	
	5. 구체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포괄 사업비는 균형에만 치우친 형식위주의 집행을 지양 하고 타당성을 고려 불요불급한 부문에 투자 되도록 하기 바람.	
문화공보실	1. 매월 발행하는 인삼골 소식지의 내용을 군민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채롭게 편집하고, 전 가구에 빠짐없이 배부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인삼제 행사 개최후 자금 집행결과 정산을 조기에 실시 토록 개선하기 바람.	
내 무 과	1. 씀씀이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이면지(폐휴지) 활용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대상부서	시 정 .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내 무 과	2. 일정 부서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순환을 시킴으로써 행정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3. 결원 발생시에는 빠른 시일내에 충원을 실시하여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기 바람.	
	4.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 설치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재 무 과	1. 시설공사 발주시 입찰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지 적 과	1. 주민이 지적측량 신청시 조기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지적공사와 원활한 협조및 촉구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사 회 과	1. 의료보험 대불금 징수실적이 부족한바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농촌지역 간이급수 시설은 자연 유하식을 지양하고 지하수 시설로 실시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예산을 증액하여 사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3.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은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자활능력을 갖출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환 경 보 호 과	1.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을 보수하여 연장 사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따른 행정력및 예산의 낭비를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 시행하기 바람	
	2. 금성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장 시설공사의 경우 일부 업체가 입주된후 착공이 되었는바, 향후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기 바람.	
가 정 복 지 과	1. 가정의례및 장의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및 단속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용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대상부서	시 정 .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가 정 복 지 과	2. 방치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군 재정 수입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기 바람.	
산 업 과	1. 농촌의 여성 노동인력 증가 추세에 대처하여 여성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도 주력하기 바람.	
	2. 명목상의 농어민 후계자는 과감히 정리하고 후계자 양성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 역 경 제 과	1. 관내에 공장 유치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 약초, 농산물등의 원자재를 활용하여 가공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금성농공단지의 업체입주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미입주 업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산 림 과	1. 치수 가꾸기및 무육간벌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시행시 철저한 지도및 감독을 실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시혜가 되도록 사업량을 배분하기 바람.	
	2. 산림훼손 허가지역, 허가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사고예방에 주력하기 바람.	
도 시 과	1. 도시계획 사업으로 실시하는 국제 인삼시장 도로개설 사업을 조기에 매듭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공시지가 조사및 결정과정에서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공람을 통해 주민의 불만요인이 없도록 하기 바람.	
	3. 전화선 케이블이 하수도 아래로 매설되어 통과함으로써 이용자의 민원이 있는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고 향후 각종 선로의 지하 매설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보 건 소	1. 공중 보건의의 근무상황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민의 의료시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나. 건의 요구 사항(11건)

대상부서	시 정 . 처 리 요 구 사 항	비 고
내 무 과	1. 리장 임명의 년령제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리장임명 규칙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지 적 과	1. 전.답간 경작 실태에 따른 토지 이동지 정리에 있어 일시적인 영농으로 인한 지목변경으로 농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연구 개선하기 바람.	
재 무 과	1. 자동차세 체납시 법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등을 중앙에 건의토록 연구 요망	
	2. 운전원 공무원의 자동차 자체보험 가입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정신적.물질적 부담 해소방안 강구 요망	
	3. 세입금 예치는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제2금융권 포함)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및 연구검토 요망	
사 회 과	1.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양곡, 부식비 등을 직접 전달한 대민봉사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격려및 포상 요망	
	2. "정심회"에서 자체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하엽서 판매에 군산하 전공무원및 다수의 군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산 림 과	1. 산림훼손 허가처리에 있어서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완화하여 농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 요망.	
도 시 과	1. 영농을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한 농민의 경우 토지 소재지 내에서 6개월 미만 거주하였더라도 농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선 건의방안 강구 요망.	
	2. 관내 건축설계 사무소의 설계비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높아 주민 부담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바 관계규정과 실태를 파악한후 건축설계사와 협의 개선 요망.	
지 도 소	1. 농기계 수리보조원을 정규직원으로 정원조정 건의 요망	

□ 감사 의견

○ 금산군 의회 개원이후 두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의 파악과 이해, 잘못된 부분의 시정이라는 감사의 목적에 가까이 접근하였으며, 피감사 기관인 집행 기관의 수감 자세 또한 매우 성의가 있어 군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의의와 성과가 있었음.

○ 다만 현행 감사제도및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보다 심도있는 감사실시에 제약이 있었던 점과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내용이 담긴 감사자료의 뒷받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점은 현실의 여건 아래서 의회와 행정기관이 상호 열린 마음으로 협조의 관행속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함.

○ 특히 지방화 시대에 있어 날로 증가하는 주민 욕구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에서 행정의 양과 질이 크게 확대되어 이에 따라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인의 자세 또한 빠르게 흐르는 급류처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을 실감하였음.

더우기 이해가 직결되는 부분의 행정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일수만은 없는 현실로써 행정이 공권력의 주체로서만이 아닌 동등한 수평관계에서 주민을 이해. 설득하고 지지를 얻는 다각적인 행정기법의 연구와 강구도 크게 요구되고 있음.

○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군정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났으며, 공무원들 또한 과거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행정형태에서 벗어나 지방화 시대의 일꾼으로서 정진하고 있는 역력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던 반면에 일부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례 답습적이고 중앙의 지시에 의존하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행정의 일면도 있어 흠이 되기도 하였음.

○ 결과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 바람직한 지방행정의 방향과 지방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는 위가 아닌 주민을 보는 행정,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민의를 적극 애용. 반영하는 쇄신적이고 발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재정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군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음.

○ '92년 한해동안 600여 공무원의 군정수행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보냄과 동시에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시정및 처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8만 군민의 의견임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 시정. 보완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군정수행의 기틀이 더욱 확고하게 다져져야 할 것임.

8.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제1차 회의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금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위원 상호간에

협의가 되어 위원장에 이홍만 위원, 간사에 허병문 위원을 선임하였다.

2) 결산및 예산안 심사일정 확정의 건

사전 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결산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에 대하여 박귀전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었다.

보고내용은 '91년도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 장소, 실과별 보고순서, 보고일정, 보고요령등을 설명하였다.

심사결과 결산 및 예산안 심사일정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나. 제2차 회의

1) 91년도 금산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2년 11월 25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세입.세출총괄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 입 결 산 총 괄 표

구 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미수납액 (나)~(마)	미수납액처리	
				수입총액 (다)	과오납반환액 (라)	실제수납액 (마)		결손처분	이월액
합 계		39,352,770,000	44,999,711,823	44,418,859,804	43,245,440	44,375,614,364	624,097,459	12,357,920	611,739,539
일반회계	계	31,688,037,000	36,296,893,938	35,811,392,411	20,368,990	35,791,023,421	505,870,517	12,357,920	493,512,597
	지방세	3,544,000,000	3,697,483,180	3,647,094,793	743,020	3,646,351,773	51,131,407	11,857,640	39,273,767
	보통세	3,280,000,000	3,407,178,080	3,372,118,443	743,020	3,371,375,423	35,802,657	3,221,810	32,590,847
	목적세	253,000,000	271,654,250	266,595,800		266,595,800	5,058,450	577,360	4,481,090
	과년도수입	11,000,000	18,650,850	8,380,550		8,380,550	10,270,300	8,068,420	2,201,830
	세외수입	3,063,102,000	7,561,229,150	7,126,116,018	19,625,970	7,106,490,048	454,739,110	500,280	454,238,830
	경상적수입	931,176,000	1,154,739,901	1,150,761,141	163,800	1,150,597,341	4,142,560	250,160	3,892,400
	임시적수입	2,131,926,000	6,406,489,257	5,975,354,877	19,462,170	5,955,892,707	450,596,550	250,120	450,346,430
	지방교부세	15,466,002,000	15,466,000,000	15,466,000,000		15,466,000,000	0		
	보통교부세	15,466,000,000	15,466,000,000	15,466,000,000		15,466,000,000	0		
	특별교부세	1,000							
	증액교부세	1,000							
	지방양여금	2,347,705,000	2,347,705,000	2,347,705,000		2,347,705,000	0		
	보조금	7,267,226,000	7,224,476,600	7,224,476,600		7,224,476,600	0		
	국고보조	4,079,784,000	4,053,233,600	4,053,233,600		4,053,233,600	0		
	도비보조	3,187,444,000	3,171,243,000	3,171,243,000		3,171,243,000	0		
	지방채	0	0	0		0	0		

구 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미수납액 (나)~(마)	미수납액처리	
				수입총액 (다)	과오납반환액 (라)	실제수납액 (마)		결손처분	이월액
특별회계	계	7,664,733,000	8,702,817,8857	8,607,467	22,867,450	8,584,590,943	118,226,942		118,226,940
	상수도사업	924,938,000	911,635,910	911,353,409		911,357,409	278,501		278,501
	주택관리	281,829,000	309,906,469	260,964,831		260,964,831	48,941,638		48,941,638
	의료보호기금	2,050,071,000	1,990,612,215	1,983,926,010		1,983,926,010	6,686,205		6,686,205
	소득금고	13,846,000	14,807,734	13,866,204		13,866,204	941,530		941,530
	구획정리사업	41,800,000	46,352,125	7,337,457		7,337,453	39,014,668		39,014,668
	생활안정기금	138,625,000	150,574,345	140,805,695		140,805,695	9,768,650		9,368,650
	새마을소득	209,005,000	230,125,437	225,693,247		225,693,247	4,432,190		4,432,190
	농공지구조성	3,051,136,000	4,173,471,740	4,165,664,580		4,165,664,580	7,807,160		7,807,160
	공유임야	3,588,000	3,283,180	2,926,780		2,926,780	356,400		356,400
	골재판매	949,865,000	872,048,730	894,925,180	22,876,550	872,048,730	0		0

세 출 결 산 총 괄 표

구 분		예산액 (가)	예산성립후 증감액 (나)	예산현액 (다) 가+나	지출원인행위액 (라)	지출액 (마)	익년도이월액 (바)	불용액 (다-마-바)
합계		39,352,770,000	6,810,480,000	46,163,250,000	37,746,850,792	37,476,595,082	4,728,423,940	3,958,230,978
일반회계	계	31,688,037,000	4,326,772,000	36,014,809,000	29,857,410,860	29,610,211,150	4,405,372,940	1,999,224,910
	의회비	392,377,000	19,837,000	412,214,000	340,715,290	340,715,290	0	71,498,710
	일반행정비	9,917,210,000	53,038,000	9,970,254,000	8,627,918,620	8,627,918,620	748,890,740	593,444,640
	사회복지비	5,192,041,000	781,545,000	5,973,586,000	4,712,977,665	4,678,114,025	1,016,444,640	279,027,335
	산업경제비	4,602,182,000	167,101,000	4,769,283,000	4,202,194,175	4,100,520,105	526,128,070	142,634,825
	지역개발비	9,094,894,000	2,960,518,000	12,055,412,000	10,401,750,920	10,401,750,920	1,296,901,490	356,759,590
	문화및체육비	1,410,177,000	291,273,000	1,701,450,000	965,847,090	855,179,090	756,365,000	89,925,910
	민방위비	506,229	53,460,000	559,689,000	432,485,070	432,485,070	60,643,000	66,392,970
	지원및기타경비	579,921,000	0	579,921,000	173,528,030	173,528,030	0	399,392,970
특별회계	계	7,664,733,000	2,483,708,000	1,148,441,000	7,889,433,932	7,866,383,932	323,051,000	1,959,006,068
	상수도사업	924,938,000		924,938,000	829,214,640	829,214,640		95,723,360
	주택관리	281,829,000		281,829,000	228,851,070	228,851,070		52,977,930
	의료보호기금	2,050,071,000		2,050,071,000	1,982,333,942	1,982,333,942		67,737,058
	새마을소득금고	13,876,000		13,876,000	8,000,000	8,000,000		5,876,000
	구획정리	41,800,000		41,800,000	7,255,790	7,255,790		34,544,210
	영세민생활안정	138,625,000		138,625,000	114,000,000	114,000,000		24,625,000
	새마을특별지원	209,005,000		209,005,000	147,000,000	147,000,000		62,005,000
	농공지구	3,051,136,000	2,483,708,000	5,534,844,000	3,709,109,910	3,686,059,910	323,051,000	1,525,733,090
	공유임야	3,588,000		3,588,000	2,510,000,000	2,510,000		1,078,000
	골재판매	949,865,000		949,865,000	861,158,580	861,158,580		88,786,420

예 비 비 지 출 현 황

19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98,239,000원으로 지방의회 선거경비외 4건에 57,750,040원을 지출하고 3,960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액은 다음과 같고 예비비 사용잔액 340,488,96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분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행위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나-다	불용액 가-나	처리일자			지출사유
세항	사업명						결정일자	지출일자	승인일자	
합계		57,750,040	57,750,040	57,750,040	0	3,960				
1111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	19,837,000	19,837,000	19,837,000	0	0	91. 3. 7	91. 3. 7	91. 3. 7	91.3.26일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중 부족액 지원
2212 서무관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390,000	9,390,000	9,390,000	0	0	91. 4.18	91. 4.26	91. 4.18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경비중 부족액 지원
3213 보건기관 운영	여름철전염병예방 인부임및유류대	19,976,800	19,976,800	19,976,800	0	200	91. 7.11	91. 8. 1	91. 7.11	여름철 일본뇌염등 전염병예방을 위한 경비중 연막소득 인부임및 유류대 지원
4113 농산관리	벼멸구공동 방제용농약대	6,046,240	6,046,240	6,046,240	0	3,760	91. 8.17	91. 8.17	91. 8.17	관내 벼멸구 예찰 결과 취약지에 대한 긴급공동 방제용 농약대 지원
2212 서무관리	순직지도관 영결식경비	2,500,000	2,500,000	2,500,000	0	0	91.10.29	91.11. 5	91.10.29	순직 지도관 고 강경식 과장 영결식 경비 지원

2) 91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허병문 위원으로 부터 심사보고가 있었다.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제3차 회의

1) 93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사의 건

본 예산안은 92년 11월 25일 금산군수가 제출하였으며 92년 12월 8일 오전 10시 부군수와 실과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하였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로 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실과별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중요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16시 32분에 산회하였다.

라. 제4차 회의

1) 93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사의 건

92년 12월 9일 개의된 제4차 예결위에서는 어제에 이어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중요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보고는 산업과, 건설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11시 3분에 산회하였다.

마. 제5차 회의

1)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본 추경예산안은 92년 12월 14일 금산군수가 제출하였으며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의 조정으로 2억 4,9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가 4억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예산총칙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 산 총 칙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 계	48,018,485	1,440,555
1. 일 반 회 계	34,421,840	1,032,655
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65,235	49,957
3. 주택관리특별회계	270,249	49,957
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207,372	96,221
5.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18,848	565
6.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6,130	1,084
7.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0,796	4,824
8.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15,784	3,474
9. 농공지구특별회계	1,446,618	43,399
10. 공유임야특별회계	1,490	45
11.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135,055	4,052
12.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6,539,068	196,172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199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890,000천원으로 한다.
제5조 1992년도 명시 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285천원으로 한다.

예 산 규 모

(단위천원)

구분 /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기정) 예산액	증(△)감	비고
합계	48,018,485	48,267,485	△ 248,924	
일반회계	34,421,840	34,827,840	△ 405,824	
특별회계	13,596,645	13,439,645	156,900	
상수도	1,665,235	2,153,335	△ 493,100	
주택관리	270,249	270,249	0	
의료보호기금	3,207,372	3,207,372	650,000	
새마을소득금고	18,848	18,848	0	
구획정리	36,130	36,130	0	
생활안정기금	160,796	160,796	0	
새마을소득특별지원	115,784	115,784	0	
농공지구	1,446,618	1,446,618	0	
공유임야	1,490	1,490	0	
골재판매	135,055	135,055	0	
지방양여금관리	6,539,068	6,539,068	0	

세 입 세 출 총 괄 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감
합계	34,421,840	100	34,827,664	100	△ 405,824
지방세	4,027,146	12	4,027,146	12	0
세외수입	3,742,244	11	4,486,196	13	△ 743,952
경상적세외수입	1,456,392	4	1,456,392	4	0
임시적세외수입	2,285,852	7	3,029,804	9	△ 743,952
지방교부세	19,075,001	55	18,803,011	54	272,000
지방양여금					
보조금	7,577,449	22	7,511,321		66,128
국고보조금	3,399,951	10	3,568,599		△ 168,648
시.도비보조금	4,177,498	12	3,942,722		234,776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세출	기 본 적 경 비		12,721,725	37	12,734,324	37	△ 12,599
		인 건 비	7,044,810	20	7,064,213	20	△ 19,403
		관 서 운 영 비	3,065,935	9	3,059,396	9	6,539
		기 타 경 상 비	2,610,980	8	2,610,715	8	265
	사 업 비		19,891,936	58	20,215,040	58	△ 323,104
		경 상 사 업 비	4,933,308	14	5,033,296	14	△ 99,988
		주 요 사 업 비	14,958,628	44	15,181,744	44	△ 223,116
	기 타 경 비		1,808,179	5	1,878,300	5	△ 70,121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1문1답식 질의가 있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2일간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산회하였다.

바. 제6차 회의

1) 93년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 심의의건

9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92년 12월 15일 금산군수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으며 강병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93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신규지원을 사업비 조정 지방세 목표액의 확정 내시등 수정하여야 할 이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24억 7,8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가 14억 7,50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사전 수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충분한 심의로 검토보고와 질의없이 12월 19일까지 계수조정 및 심사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산회하였다.

사. 제7차 회의

1)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허병문 위원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채택 하기로 의결하였다.

2) 93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12월 15일 금산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와 협의를 마친후에 단일 수정안을 작성하였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허병문 위원으로부터 9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제 18 절 제1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1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2월 12일 이홍만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3년 2월 18일 제1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제18회 임시회는 조례안 5건의 의안심의와 '93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회기는 '93년 2월 18일 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명의원은 박찬헌 의원과 박천보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18회 임시회 의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3. 2. 18 (목) 10 : 00			○ 개 회 식	
	1	본회의	1. 제1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3 군정보고	의장제의
'93. 2. 19 (금) 10 : 00	2	본회의	1. '93 군정보고	
'93. 2. 20 (토) 10 : 00	3	본회의	1. 금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금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금산군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 4.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5. 금산군 건축 조례안	금산군수 제출 〃 〃 〃 〃

2. 2차 본회의

'93년 군정에 관한 보고는 1차.2차 본회의에서 각 실.과장들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순서는 각 실.과별 일반현황, 군정의 성과, 업무계획, 자체특수시책 현안사업을 보고했으며 보고가 끝난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다.

전반적인 보고 내용은 전년도의 미비사업을 더 보강해 년내에 마무리 짓겠으며 행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공무원들의 각오가 있었고 질의 내용은 미착수사업의 문제제기와 앞으로의 현안사업을 중점 질의하였다.

3. 3차 본회의

가. 금산군 보건소 설치중 개정 조례안

본 조례안은 강병순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보완하기 위함이며, 대통령령 13786호로 해서 '92년도 12월 26일에 개정 공포된 령에 의해서 금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

나. 금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본 조례안은 김진해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농촌 유휴 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촌 소득개발 촉진 및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행정의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을 함에 있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이 조례안은 이의없이 원안 가결되었다.

다. 금산군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

본 조례안은 김희철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이 '91년 12월 14일 개정되었고 동 시행령이 '92년 6월 30일 개정되었으며 동 시행 규칙이 '92년 9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개정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금산군 주차장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었다.

심의결과 금산군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라.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본 조례안은 김희철 지역경제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었다.

주요골자는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수입금과 법 제19조 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주차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금을 수입으로 하고 노외(路外)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징수금으로 하고 지방자치의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일정률의 금액이 된다. 또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금 등을 세입으로 정하였고 세출의 용도는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부분에 세출을 정하였다.

준용사항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마. 금산군 건축 조례안

본 조례안은 박래훈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91년 5월 31일 건축법 전면 개정과 '92년 5월 30일 동법시행령 전면 개정 및 '92년 6월 1일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금산군 건축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었다. 본 안건은 '93년 2월 3일 제출되어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와 충남건축사회 금산소장과의 협의 등 수차례의 분석과 심의를 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졌다.

금산군 건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제 19 절 제19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4월 8일 박승우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3년 4월 14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제19회 임시회에서는 3건의 의안심사와 1건의 건의서 채택 및 후반기 의장선출이 있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1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회기는 '93년 4월 14일 하루동안이었고 서명의원은 오규영 의원, 박승우의원이 선출되었다.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개의일수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3. 4. 14 (수) 10 : 00	1		○ 개회식	
		본회의	1. 제19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3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93 금산군 공유재산의 기부체납 승인안 4. 금산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5. 농지구입자금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 6.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제의 금산군수 〃 〃 허병문 의원외 2인 발의

나. '93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다. '93 금산군 공유재산의 기부체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3항으로 일괄 상정하였으며 김진해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로 금산운동장 조성부지 및 추부면 마전리 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도모에 있으며 계속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로 내부출장소 부지 기부체납 승인으로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에 있었다.

심의결과 2건 모두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라.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최용준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복무조례 제23조 7항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마. 농지구입 자금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허병문 의원외 2인이 발의하였다.
그 내용은 농지의 평당가격이 2만5천원을 초과하는 농지의 실제 거래가격의 제외규정 완화와 평당가격이 2만5천원을 초과하는 농지의 초과액에 대하여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의결과 허병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바. 의장.부의장 선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개원의회 상반기의 의장단 임기가 '93년 4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였다.
감표위원은 정현수 의원, 박찬헌 의원이 선출 되었고 투표결과 의장 선거는 1인이 기권을 하여 10인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총 투표수 10표중에서 라상규 의원 7표, 박승우 의원 3표로 본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라상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고 부의장 선거에서는 총 투표소 11표 중에 1표가 기권해 투표수 10표중 이홍만 의원 6표, 길부섭 의원 4표로 이홍만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이 되었다.

제 20 절 제2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5월 11일 오규영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5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3년 5월 18일 제20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

제20회 임시회는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건의서가 제출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2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회기는 '93년 5월 18일 하루 동안이었고 서명의원은 태진수 의원, 이홍만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2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수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 개회식	
'93. 5. 8 (화) 10 : 00	1	본회의	1. 제2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금산군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3. '93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4. 군귀속리동유 재산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 5. 종합유선방송 구역의 지정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 6. 인삼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 7. 목적세 신설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	의장제의 금산군수 제출 금산군수 제출 정현수 의원외 2인 발의 허병문 의원외 2인 발의 정현수 의원외 2인 발의 태진수 의원외 2인 발의

나. 금산군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본 조례안은 최용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본안은 업무량이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주민 편익도모를 위해 공인부착인증기를 사용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본 조례안은 김진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본안은 군유 잡종재산중 소규모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와 공유재산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었다.

본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라. 군귀속 리동유 재산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

정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군에 귀속된 107필지 39,594평을 기증한 독지가의 뜻에 따라 부락에 재산권을 돌려 주어야 한다라는 요지임.

본건은 정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마. 종합유선방송 구역의 지정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

허병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지리적 여건 등을 참작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구역 분할안으로 금산군의 생활권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전구역으로 연계지정 요망하는 내용이었다.

본 건은 허병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바. 인삼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

정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현행의 인삼사업법을 폐지하고 인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인삼산업진흥법의 제정 시행을 요망한 내용이었다.

본 안은 정현수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사. 목적세 신설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

태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금산군의 경우 목적세가 신설되면 지방세가 감소되어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함으로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를 요구한 내용이었다.

본 안은 태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제 21 절 제2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2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5월 26일 태진수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6월 2일 제2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제21회 임시회는 2건의 의안심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회기 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회기는 '93년 6월 2일에서 6월 3일까지 이틀간이며 서명의원으로는 정현수 의원, 한규용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2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93. 6. 2 (수) 10 : 00	1	본회의	1. 제2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93년도 제1회 추경 정수물품취득 승인 요청안 4. 의원해외 연수 및 견학실시계획 안 5.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제의 박찬헌 의원외 2인 발의 금산군수 제출 정현수 의원외 2인 발의
'93. 6. 3 (목) 10 : 00	2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나.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자 본회의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다.
본 안은 박찬헌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93년도 제1회 추경 정수물품취득 승인 요청안

김진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취득 신청의 내용이었다.

본 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라. 의원 해외연수 및 견학실시계획 안

정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발전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정활동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었다. 기간은 '93년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공무원을 포함해 10인이 이탈리아, 이집트, 스위스, 영국, 프랑스 5개국을 견학하였다. 박천보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표결 결과 반대 2인, 찬성 8인으로 가결되었다.

마. 군정에 관한 질문

오늘 상정된 군정에 관한 질문은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등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 답변이 있었다.

군정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찬헌의원	· 군북면 일월이재 임도추진 현황	산림과장 이풍직	· 농로개설 후 임도 가능
태진수의원	· 읍.면장의 정년 연장문제	내무과장 최용준	· 읍.면 동장 임용등에 관한 제11조에 의거 근무상황 기간을 5년으로 다만, 1회에 한해 2년 범위내에서 연장
	· 정부 사정으로 인한 군 공무원의 실태와 사기진작 책은?		· 표창확대 및 친목 대회 활성화
	· 군 발주사업의 추진현황과 재해 위험 지구의 공사 추진현황	기획실장 강병순	· 상반기 발주사업은 거의 추진 완료됨 장마철에 대비 공사 촉구
	· 하절기 방안대책	보건소장 길승환	· 예방홍보 및 전염병 계몽활동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음.
박천보의원	· 군 발주사업의 조기 착공시 주민과 협의 부족으로 인한 대책?	기획실장 강병순	·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 예산 절감 대책?		· 관행적인 격려금, 사례금, 선물등 규모와 개최수 축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천보의원	· 민원실 환경 개선 계획?	내무과장 최용준	· 복사기, 안내원, 청원경찰 등을 배치해 민원인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음.
	· 행려 환자 발생 처리 대책?	사회계장 변삼량	·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 입원조치및 연고자를 찾아 신병인계를 하고 사망자 발생시는 읍.면에 가매장후 경비 일부 지원
	· 호화 분묘 방지 대책?	가정복지과장 정육지	· 지속적인 수시단속과 매스컴 홍보 계도로 위화감 조성 억제
한규용의원	· 군의 기구 축소와 읍.면기구 확대 용의?	내무과장 최용준	· 중앙의 지침에 의해 차후 실시하겠으며 내무부의 승인이 없으면 처리 불가
	· 공설묘지 추진 상황?	가정복지과장 정육지	· 경계측량 실시 후 공설묘지 조성
이홍만의원	· 경영수익사업 상황 현황은?	기획실장 강병순	·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하옥리 1.2지구 택지조성사업, 기사천 하상정비사업, 노상주차장 유료화사업, 잔디포 조성 사업
정현수의원	· 복권발행 시책 추진 용의?	기획실장 강병순	· 아직까지 실시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실시 불가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실시후 문제점 및 대책?	지적과장 송상규	· 미등기 토지에 대한 등기를 확실히 하겠으며, 토지 전산화를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
허병문의원	·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기획실장 강병순	· '93년도 오지개발 노선과 인접하는 교량 또는 도로로써 약 4억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국.도비 확보 또는 중앙지원 확보에 총력하겠음.

2. 제2차 본회의

가. 군정에 관한 질문

전날에 이어 계속 군정에 관한 현안사항, 주민숙원사업등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길부섭의원	· 용담댐건설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예상과 대책?	건 설 과 장 최 정 우	· 유지관리는 완공후 수자원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안개일수, 기상변화, 생태계 등의 조사는 현재 없으며 군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재평가 되면 수시로 보고 하겠음
	·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상황?	산 업 과 장 김 시 중	· 위탁영농회사 추진과 농기계 전업농가 육성으로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음
	· 내수면 소류지 활용방안?	기술보급과장 양 근 수	· 아직은 아무런 방안도 없음
박찬헌의원	· 금산읍 신대리 태신공업사 부근의 사고차량 방치 이유?	지역경제과장 김 희 철	· 통행인의 미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겠며 발견 즉시 견인 조치하겠음
박천보의원	· 군청사 개축문제 현황은?	재 무 과 장 김 진 해	· 재산매각에 따른 세입 예산의 확보 불투명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 증축 여부 결정
	· 축사 양성화및 농지전용 문제는?	산 업 과 장 김 시 중	· 읍.면장에게 신고.처리하는 농지전용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지침을 만들어 농번기 이후에 읍.면 담당공무원 교육을 농지전용과 병행해 조속 양성화 되도록 조치
	· '93년 경지정리와 도로표지판 파손 문제?	건 설 과 장 최 정 우	· 사업지구는 일반지구 3개소 149ha와 관외지구 5개소 36ha로 토공은 완료되었고 공정은 98%선이며 지방도, 국도의 표지판 점검을 실시해 정비 필요시 해당 관리청에 건의해 조치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태진수의원	· 공설운동장 추진 현황은?	새마을과장 최 윤 현	· 토지매입과 추가입지 승인을 최단시일내에 완료를 하고 설계용역비가 확정되면 용역회사로 하여금 부지조성 공사발주를 하반기에 시행 계획
이홍만의원	· 관내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 문제점? · 추풍천 정비사업이 장마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건 설 과 장 최 정 우	· 지장물 및 토지보상문제인데 주민과 대화로 해결하겠음 · 하천의 병목현상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1억3천만원을 투자해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겠음
정현수의원	· 공해배출업소의 정기점검 결과와 문제점?	환경보호과장 김 승 근	· 11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20개소를 행정 조치하였으며 단속시 별 문제점은 없음
	·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교량수와 예방대책?	건 설 과 장 최 정 우	· 관내에 69개소 2,413m의 교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도는 논산국도 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상이 있는 교량은 조치를 취하겠음
	· 국제인삼시장 신축 문제점?	도 시 과 장 전 영 식	· 사업지구내의 일부 토지소유자와의 미협의로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않아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인삼시장측에서 소유토지 일부를 매각하여 미해결 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조만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약초시장 활성화 방안?	산 업 과 장 김 시 중	· 우리 농산물 사먹기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유통거리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정현수의원	· 관내 담배자판기수와 규정?	지역경제과장 김 희 철	· 관내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설치를 할 수 있고 또,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서 제한할 수 있음
정현수의원	· 택지조성사업의 마무리가 안되고 있으며 세수결함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	재 무 과 장 김 진 해	·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제1지구는 매각에 대한 시가감정을 완료하였고 제2지구는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미착공되어 주민과 협의 보상을 추진해 세입 결함이 없도록 사전 조정해 나가겠음
허병문의원	· 신안사 보수 계획?	문화공보실장 오 정 환	· 문화체육부와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과 장마철에 대비해 7층 석탑과 광장 측구사업을 복원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금산 제1공단 지연 이유 및 대책?	지역경제과장 김 희 철	· 지연이유는 지급하고 있는 가격의 3배내지 4배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책은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6월말까지 미매입자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관계법에 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음
	· 금산천 정화사업의 추진 대책 현황?	환경보호과장 김 승 근	· 현재까지 추진 공정을 판단할때 완공 예정일까지는 계획된 사업이 모두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시공자는 당초 일신건설에서 낙찰을 하고 조흥건설에 하도급을 받은후 시공자가 바뀐 일은 없음

제 22 절 제2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3규정에 의하여 '93년 6월 21일 한규용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6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3년 6월 28일 제2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회기는 '93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서명의원으로서는 허병문의원과 길부섭의원이 선출되었다.

제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2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수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 개회식	
'93. 6. 28 (월) 10 : 00	1 차	본회의	1. 제2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3년도 제1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안 3. '93년도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금산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금산군수 제출 금산군수 제출 의장 제의 금산군수 제출 금산군수 제출 의장 제의
'93. 6. 29 (화) 10 : 00	1 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금산군수 제출
'93. 6. 30 (수) 10 : 00	2 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출
'93. 7. 1 (목) 10 : 00	2 차	본회의	1. '93년도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 세출예산안 2. '9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금산군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안 4. 의원해외연수 및 견학실시 결과 보고의 건	금산군수 제출 의장 제의 금산군수 제출 정현수의원외 2인 발의

나. '93년도 제1회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안

김진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정수물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본 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93년도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강병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새 정부의 신경제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93 당초 편성된 예산을 근검절약의 재정운용 기조위에서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관행적인 집행행태를 탈피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농기계 반값구입비, 의료보호진료비 부담 등 당면한 역점시책추진으로 편성이 되도록 하였다. 본 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였다.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되어있는데 위원은 정현수의원, 한규용의원, 허병문의원, 길부섭의원, 박찬헌의원, 박천보의원, 오규영의원, 박승우의원, 태진수의원 등 9명이 선임이 되었다.

마. '9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본안은 김진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두 건이 일괄상정이 되었다. 먼저 '9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취득 및 기부채납에 따라 효율적이고 완벽한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었다. 또 금산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상이등급 2급 이상자중 현행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관련법에 맞게 재조정하는데 있었다.
심의결과 2건 모두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바. 휴회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3년 6월 29일 부터 6월 30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였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제1차 예결위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찬헌 위원, 간사에 박천보 위원이 선임되었다.

2)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심의순서는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김진해 재무과장의 세입분야 설명과 강병순 기획실장의 세출분야 설명이 있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8천6백49만9천원이 증가된 485억3천149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3천229만8천원이 증가된 126억3천556만2천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611억6천7백6만1천원이라고 밝혔다.
또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강병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예산규모 및 수정안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9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예 산 총 칙

제1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 계	61,167,061	1,835,005
1. 일 반 회 계	48,531,499	1,455,944
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01,221	57,036
3. 주택관리특별회계	279,289	8,378
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060,659	61,819
5.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53,808	1,614
6.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6,815	1,404
7.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67,798	5,033
8.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112,218	3,366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9. 농공지구특별회계	1,424,324	42,729
10. 공유임야특별회계	2,648	79
11.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293,472	8,804
12.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6,200,302	186,009
13.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3,008	2,79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3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199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200,000천원으로 한다. (일반 4,300,000, 특별 900,000)
제5조 1993년도 사고이월비는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3,598천원으로 한다.

'9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예 산 총 칙

제1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 계	61,167,061	1,835,005
일반회계	48,531,499	1,455,944
특별회계	12,635,562	379,06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01,221	57,036
주택관리특별회계	279,289	8,37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060,659	61,819
새마을소득기금특별회계	53,808	1,614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6,815	1,404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7,798	5,033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12,218	3,366
농공지구특별회계	1,424,324	42,729
공유임야특별회계	2,648	79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293,472	8,804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6,200,302	186,009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3,008	2,79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200,000천원으로 한다. (일반 4,300,000 특별 900,000)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0,744천원으로 한다.

나. 제2차 예결특위

1)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허병문 위원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경과는 '93년 6월 22일 이명수 금산군수로부터 본안이 제출되었고, 회부일자는 '93년 6월 28일이며 상정 및 심의일자를 말씀드리면 상정은 제22회 본회의 '93년 6월 28일에 제안설명을 들었고 심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위 '93년 6월 29일 검토보고및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93년 6월 30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심사및 심사보고서 의결을 하였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서 강병순 기획실장은 수정발의안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3. 제2차 본회의

가. '9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찬헌 의원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집행기관의 의견에서 강병순 기획실장은 증액부분 1,800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나. '9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금산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본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에서 태진수 의원, 농협군지부 이형제 연구위원, 축협 이재봉 상무가 선임되었다.

다. 금산군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안

최윤현 새마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하천, 계곡 등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관리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 보건향상과 청결유지 등에 기여코저 함이었다. 표결은 기립으로 했는데 박천보 의원은 기권을 하였다.

표결 결과 찬성 9, 반대 0, 기권 1표로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라. 의원해외연수 및 견학실시결과 보고의 건

정현수 의원외 2인이 발의를 하였는데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방문국 의회와 협력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지방화시대에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보고후 박천보 의원은 예산에는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천682만8천원을 사용한 근거와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이에대해 정현수 의원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번역물이 도착하는대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제 23 절 제2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23회 금산군의회(임시회)는 지방차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7월 30일 허병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8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3년 8월 6일 제2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회기 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회기는 '93년 8월 6일 1일간의 회기로 가결이 되었다.

제2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2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개의일수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3. 8. 6 (금) 10 : 00	1		○ 개회식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재활용품 수집.처리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	의장 제의 금산군수 제출 오규영 의원외 2인 발의

나. 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최용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법률 4566호로 1993년 6월 11일에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7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및 제21조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금산군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함에 있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다. 재활용품 수집.처리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

오규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건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및 재활용품 수집.처리에 따른 현행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환경처 장관에 건의한 내용이었다.

본 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제 24 절 제2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2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8월 31일 길부섭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3년 9월 7일 제2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2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 하였으며 회기는 '93년 9월 7일 하루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서명의원으로는 오규영 의원, 태진수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날 박승우 의원은 가사형편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결석계가 제출되었다.

제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2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 개회식	
'93. 9. 7 (화) 14 : 30	1	본회의	1. 제24회 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93년도 제2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 요청안 5. 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의 장 제 의 금산군수제출 금산군수제출 금산군수제출 의 장 제 의

나.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최용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공무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지내 출장여비등을 실제소요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93년도 제2회 추경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 요청안

본안은 일괄하여 상정되었으며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위법인 국유재산법과 상이하며, 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일하게 조정함에 있고, '93년도 제2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요청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정수물품취득 처분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심의결과 2건 모두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라. 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이 안건은 제2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1인을 본의회 의원중에서 추천하여 달라는 집행기관의 요구가 있어 정현수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임이 되었다.

제 25 절 제2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0월 5일 길부섭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10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3년 10월12일 제2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회기결정의건은 의장이 제의 하였으며 회기는 '93년 10월 12일부터 10월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서명의원은 박승우의원, 이홍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2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 개회식	
93. 10. 12 (화) 10 : 00	1	본회의	1. 제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주요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 3. 휴회의 건	의 장 제 의 박천보의원외 2 인 발 의 의 장 제 의

나. 주요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박천보의원외 2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사업 및 시설물과 소득재배 단지의 현장시찰을 통해서 사업의 현황과 성과등을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 군정 전반의 폭넓은 이해를 도모코져 함에 있었다. 주요내용은 주요지역개발 사업장 및 선도농업 소득재배단지 46개소의 점검이 있었다. 본 발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다. 휴회의 건

주요사업장 시찰을 위해 '93년 10월 13일부터 10월19일까지 7일간 휴회하였다.

제 26 절 제2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0월 27일 박천보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3년 11월2일 제2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회기는 '93년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서명의원은 정현수의원과 한규용의원이 선출되었다.

제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2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수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 개회식	
'93. 11. 2 (화) 10 : 00	1	본회의	1. 제26회 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 장 제 의
			2. 금산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타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폐지 조례안	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 조례안	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금산군수제출
			8.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장 제 의
			9. '93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금산군수제출
			1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장 제 의
			11. 휴회의 건	의 장 제 의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3. 11. 3 (수) 10 : 00	1	제 1 차 조례위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금산군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임시위원장제의 금산군수제출 금산군수제출
'93. 11. 4 (목) 14 : 00	2	제 2 차 조례위	1. 금산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제출 위원장제출
'93. 11. 5 (금) 11 : 00	1	제 1 차 예결위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의건	임시위원장제의 금산군수제출
'93. 11. 8 (월) 10 : 45	2	제 2 차 예결위	1. '93 제2회 추경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의의건	금산군수제출
'93. 11. 9 (화) 14 : 00	3	제 3 차 예결위	1. '93 제2회 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의의건 2. '93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 채택의건	금산군수제출 위원장제출
'93. 11. 10 (월) 10 : 00	2	제 2 차 본회의	1. '93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 금산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4. '9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수제출 〃 〃 〃

나. 금산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육순우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93년 10월2일 충청남도에서 시. 군출장소에 시달된 조례준칙을 토대로 작성이 되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함에 있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위로 이송하여 심의를 하였다.

다.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증지구입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처리시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라. 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김형수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반이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 부품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농민에게 공급하는 부품중 하락한 부품은 현 시가로 공급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이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마. 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

최용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금산군 명예읍.면장 조례가 1982년 9월15일 조례 제759호로 제정시행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근무실적이 양호했으나 시대여건변화와 생업지장, 행정기관의 관심소홀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바. 금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폐지 조례안

길승환 보건소장의 설명으로 최근 국내 의사배출이 많아 공중보건 장학의사가 의무를 이행할 대상기관이 없으며 현행 조례상 장학금 반납규정이 의사면허 취소등의 사유 발생시에만 가능토록 제한이 되어 있고, 공중보건 장학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의무를 이행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없으며 군비에서 보수가 지급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사. 금산군 인삼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안

본안건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심의를 위해 조례 특별위원회로 넘겨 심의를 하도록 하였다.

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추천위원은 정현수의원, 길부섭의원, 태진수의원, 박찬헌의원, 박천보의원이 선출되었다.

자. '93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김희철 기획실장의 설명으로 불투명한 세입예산 정리와 여건 변동에 따른 불용예산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필수 경상비는 당면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본안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하였다.

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9항 '93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추천 위원은 이홍만의원, 허병문의원, 오규영의원, 한규용의원, 박승우의원 이상 5인이 선출되었다.

카. 휴회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93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가.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본의회의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1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에 정현수위원, 간사에 길부섭위원이 선출되었다.

2) 금산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던중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

여 충분한 심의를 가진후에 의결하자는 의원들의 뜻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진 안건이다. 1문1답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본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의를 한 후 심사를 하고자 해서 2차 조례특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3)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심의의건

이홍용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금산군 지역경제의 주력산업인 인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하였다.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후 1문1답식의 질의 답변이 있었다.
본 안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신중한 심의를 위해서 2차 조례 특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나.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 금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상정이 되었으며 박찬헌 위원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2건의 심사보고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본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토록 되어있어 위원장에 오규영위원, 간사에 한규용위원이 선임되었다.

2)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건

본안건에 대하여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세입, 세출분야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였다.
'93년도 예산규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예 산 총 칙

제1조 19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계		59,176,271	1,775,281
일반회계		46,445,040	1,393,351
특별회계		12,731,231	381,9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14,018	57,420
	주택관리특별회계	279,289	8,37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214,126	66,423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53,808	1,614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6,815	1,404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7,798	5,033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12,218	3,366
	농공지구특별회계	1,424,896	42,746
	공유임야특별회계	2,648	79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390,972	11,729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6,027,524	180,825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7,119	2,913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900,000천원으로 한다.
(일반 4,000,000 특별 900,000)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4,365천원으로 한다.

나. 제2차 예결위

1) '93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심의의건

김희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재산매각 수입에 따른 수입원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93년도 수정예산안 규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 산 총 칙

제1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 계	59,286,492	1,778,587
일 반 회 계	46,555,261	1,396,657
특 별 회 계	12,731,231	381,9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14,018	57,420
주택관리특별회계	279,289	8,37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214,126	66,423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53,808	1,614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6,815	1,404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7,798	5,033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12,218	3,366
농공지구특별회계	1,424,896	42,746
공유임야특별회계	2,648	79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390,972	11,729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6,027,524	180,825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7,119	2,913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900,000천원으로 한다.

(일반 4,000,000 특별900,000)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4,365천원으로 한다.

다 제3차 예결위

1) '93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차수정안 심의의건

김희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하옥리 택지조성 사업지구에 대한 해당주민의 이주에 따른 보상문제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이 늦게 시달되어 수정안이 제출되어졌다.

'93년도 수정 예산안 규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 산 총 칙

제1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 계	58,335,917	1,750,070
일 반 회 계	45,604,686	1,368,140
특 별 회 계	12,731,231	381,9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14,018	57,420
주택관리특별회계	279,289	8,37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214,126	66,423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53,808	1,614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6,815	1,404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7,798	5,033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12,218	3,366
농공지구특별회계	1,424,896	42,746
공유임야특별회계	2,648	79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390,972	11,729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6,027,524	180,825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7,119	2,913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900,000천원으로 한다.

(일반 4,000,000 특별900,000)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4,365천원으로 한다.

나. '93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수정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함께 심사를 하여 심사보고가 작성되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93年度 第2回 追加更正 豫算(案)
審 査 報 告

□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및 提出者 : '93年 11月 1日 錦山郡守

나. 回　附　日　字 : '93年 11月 2日

다. 上程 및 審議 日字

· 上　　程 : 第26回　本會議　'93. 11. 2 : 提案說明

· 審　　査 : 第1次　豫決特案　'93. 11. 5 : 檢討報告,　質疑答辯

· 第2次　豫算特委　'93. 11. 8 : 檢討報告,　質疑答辯

· 第3次　〃　'93. 11. 9 : 條正案提出,　報告書採擇

□ 第2回豫算(案)規模

단위 : 천원

회계별 / 구분	2回追更案	既定豫算	豫算規模	備考
합계	△2,831,144	61,167,061	58,335,917	
일반회계	△2,926,813	48,531,499	45,604,686	
특별회계	95,669	12,635,562	12,731,231	
상수도	12,797	1,901,221	1,914,018	
주택관리	0	279,289	279,289	
의료보호기금	153,467	2,060,659	2,214,126	
새마을소득금고	0	53,808	53,808	
구획정리	0	46,815	46,815	
생활안정기금	0	167,798	167,798	
새마을소득특별지원	0	112,218	112,218	
농공지구	572	1,424,324	1,424,896	
공유임야	0	2,648	2,648	
골재판매	97,500	293,472	390,972	
지방양여금관리	△172,778	6,200,302	6,027,524	
주차장관리	4,111	93,008	97,119	

□ 提案說明　要旨(提案說明者 : 企劃室長　金禧喆)

○ 今年度　目標했던　稅外收入　中　財産賣却　收入이　金融實名制에　따른　不動産　景氣沈滯로　買收　希望者가　없어　年內　不透明한　歲入豫算을　削減하고

○ 依存財源中　國.道費　補助金의　變更　또는　新規　支援으로　事業費의　調整이　不可避할　뿐만　아니라

○ 特定財源인 特別交付稅를 支援받아 錦山邑 消防道路開設事業 推進에 迫車를 加할 수 있게 되었으며

○ 地方債의 調整에 따라 歲出豫算中 與件의 變動에 따른 不要不急한 事業費와 不用豫想額과 執行殘額을 削減 調整하였으며

○ 當面한 力點施策 推進에 따른 必要 經常事業費와 法的 義務經費를 最小限으로 編成 하였음.

□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專門委員 朴貴雋)

○ '93年度 本豫算(案) 審議當時 念慮한 바와 같이 不動産 景氣가 不透明한데 財産賣却代의 過多收入을 策定하였으며 무리한 開發計劃으로 많은 地方債를 短期間 內에 收入을 잡아 膨脹豫算을 編成한 結果로 歲入豫算의 削減調整이 不可避 하였고

○ 國.道費 補助事業費와 特別交付稅의 支援은 特記할 만하며 不要不急한 事業費와 不用豫算額을 削減 調整하여 住民宿願事業에 再投資한 效率的 豫算編成이라 思料된다 하였음.

□ 審 査 結 果

○ 錦山郡守가 提出한 2回 追更豫算案과 2차의 條正案까지 要求한 原案대로 在席委員 滿場一致로 採擇하였음(在籍委員 5人)

□ 少數意見 : 없음

□ 其他事項 : 없음

4. 제2차 본회의

가. '93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규영의원이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고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 특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나. 금산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본안건은 일괄 상정이 되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현수 의원이 심사결과 보고를 하였다. 심의결과 금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또.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다. '94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계획변경안을 상정하였다. 이유는 기 설치되어 있는 금산읍과 마전 상수도 시설부지의 취득에 따라서 상수도의 안전급수를 보장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완벽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다. 심의결과 '94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 27 절 제27회 금산군의회(정기회)

제27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93년 11월 25일 정기회를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개회하도록 되어 있다.

제27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27회 금산군의회(정기회) 의사 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3.11.25(목)			○ 개 회 식	
	1	본 회 의	1. 제27회 금산군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2. '94년도 금산군예산안에 대한 군정 연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금산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의장제의 의장제의 의장제의 허병문의원외 2인발의 의장제의
'93.11.26(금)	1	감사특위	1. 위원장, 간사선출의 건 2. 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93.11.26(금)	1	예결특위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결산및 예산안 심사 일정확정의 건	
'93.11.27(토)	2	본 회 의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군정에 관한 질문	
'93.11.29(월)	3	본 회 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93.11.30(화)	4	본 회 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93.12. 1(수)	5	본 회 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93.,12. 2(목)	1	감사특위	'93년도 행정 사무감사	
'93.12. 3(금)	2	감사특위	'93년도 행정 사무감사	
'93.12. 4(토)	3	감사특위	'93년도 행정 사무감사	
'93.12. 8(수)	2	예결특위	1. '92년도 금산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3.12. 9(목)	3	예결특위	1. '92년도 금산군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 '92년도 금산군 예비비지출승인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개의일수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3. 12. 11 (토)	6	본회의	1.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건 2.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금산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5. 휴회의건	박천보의원외 8인제출 금산군수제출 〃 〃 〃
'93. 12. 13 (월)	4	예결특위	1. '94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사의 건	
'93. 12. 14 (화)	5	예결특위	1. '94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사의 건	금산군수제출
'93. 12. 17 (금)	6	예결특위	1.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2.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금산군수제출 〃
'93. 12. 18 (토)	7	예결특위	1.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94년도 금산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93. 12. 20 (월)	7	본회의	1. '92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4. '9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5. '94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 6. 금산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7. 금산군 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수제출 〃 〃 〃 〃 〃 〃
'93. 12. 21 (화)	8	본회의	1. 금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 2. 금산군 장애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금산군 노인복지기금조성및 운용설치조례안	금산군수제출 〃 〃
'93. 12. 22 (수)	9	본회의	1. 금산군 농악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안 2. 금산군 체육진흥기금조성및 운용 조례안 3.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조성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휴회의건	금산군수제출 〃 〃 〃
'93. 12. 24 (금)	10	본회의	1. 금산군 군민대상조례중 개정 조례안 2. 금산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용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수제출 〃

나. '94년도 금산군 예산안에 대한 군정 연설

이명수 금산군수의 설명으로 '94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으로 신한국 창조의 변화와 개혁의지를 기초로하여 합리재정, 절약재정, 계획재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21세기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본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및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전협의에 따라 정현수의원, 한규용의원, 허병문의원, 길부섭의원, 박찬헌의원, 박천보의원, 오규영의원, 박승우의원, 태진수의원 등 9명이 선출되었다.

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의 예산결산및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이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정현수의원, 한규용의원, 허병문의원, 길부섭의원, 박찬헌의원, 박천보의원, 오규영의원, 박승우의원, 태진수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마. 금산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및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수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본 건은 허병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바. 휴회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위및 예산결산 특위의 운영을 위해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었다.

2. 제2차 본회의

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정하게 되는 계획서 승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천보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였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93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 감사의 목적

군정 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등을 통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감사 기간 : '93. 12. 2～'93. 12. 4 (3일간)

□ 감사 대상기관

○ 금산군(본청)
○ 보건소, 농촌지도소
○ 읍, 면(필요시)

□ 감사반 편성

가. 감사 위원(9인)

— 위원장 : 박천보, 간사 : 박찬헌
— 위 원 : 정현수, 한규용, 허병문, 길부섭, 오규영, 박승우, 태진수

나. 사무 보조자(4명)

— 사무위원 : 박귀전
— 의사계장 : 노상영
— 사무직원 : 김필식
— 속 기 사 : 인창식

□ 감사일정및 감사장소

일 정	대 상 기 관 (부 서)	감 사 장 소
12. 2 (목) 10 : 00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읍.면 현지확인(필요시)	위 원 회 회 의 실
12. 3 (금) 10 : 00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도소, 읍.면 현지확인(필요시)	〃
12. 4 (토) 10 : 00	산림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읍.면 현지확인(필요시)	〃

□ 감사 요령

○ 보고 청취

○ 질의 답변

○ 필요시 현지확인

□ 기타 필요사항

○ 현지확인 요구시 차량 지원

○ 보고,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지방자치 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발언, 의견진술 요구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의장경유 통보

출 석 대 상 자 명 단

출석일	출석장소	출석대상 공무원		비 고
		직 위	성 명	
12. 2 (목) 10 : 00	위원회회의실	기획실장	김희철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내무과장	최용준	
		사회진흥과장	최윤현	
		재무과장	강병순	
		지적과장	김홍규	
12. 3 (금) 10 : 00	〃	사회과장	정정학	
		환경보호과장	김종인	
		가정복지과장	정육지	
		산업과장	이홍용	
		지역경제과장	육순우	
		건설과장	최정우	
		지도소장	유성열	
12. 4 (토) 10 : 00	〃	산림과장	정지석	
		도시과장	전영식	
		민방위과장	박래훈	
		보건소장	길승환	

나. 군정에 관한 질문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에 대한 군정업무 추진실적 등을 알아보고 지역현안문제, 주민숙원사업 등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답변 하는 것이었다.

군정질문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천보의원	충남 종합계발계획에 금산이 누락된 이유?	기 획 실 장 김 희 철	백제권 개발계획을 연계하고, 수질보존과 오염을 고려해 계획입안에서 제외되었음.
	상설알뜰시장 예산 삭감문제?	〃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 이외는 정액보조지원을 억제해야 하는데 정액보조 대상이 아닌 알뜰시장의 상설운영 인건비 보조금을 편성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
태진수의원	2급 구호대상자인 영세민 선정에 형평성 문제	사 회 과 장 정 정 학	소득조사를 철저히 하여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탈락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정현수의원	'93년도 본군에서 국유림및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재 무 과 장 강 병 순	국유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91년 12월부터 공주 영림서로 재산관리가 이관됨에 따라 현재 공주 영림서 부여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본군의 경우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매각 대상 중에서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없으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으며, 국유재산 총 58필지에 37필지 매각.
	행려자 처리 건수	사 회 과 장 정 정 학	금산읍 4명, 부리면 1명, 남일면 1명, 복수면 1명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한규용의원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현황과 취업후 생활안정 문제?	〃	'91년도 66명, '92년도 56명이 취업이 되었는데 훈련생 대부분이 학생, 입영대상자로 수료후 군입대, 나머지 학업이수 등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되며 앞으로 취업률 향상에 노력하겠음.
	'93년도 군 역점시책 사업 내역?	기 획 실 장 김 희 철	7개분야 106개 사업으로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86건이며 잘된 사업은 11건, 이월예상사업은 20건임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허병문의원	포장지구 강도시험 측정기구 구입 용의?	기 획 실 장 김 희 철	사업부서로 부터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을 요구받아 예산에 반영해 장비를 구입 모든 포장공사의 준공처리에 완벽을 기하겠음.
	각종 보조사업추진시 거택구호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행정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번거로운 증빙사진 대신 간편한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없는지?		날인만하고 사진 첨부는 준공검사시 1회에 한하도록 하며 사진첨부도 검사시 공무원이 촬영해 첨부토록 개선
박찬헌의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지 적 과 장 김 홍 규	특조법을 악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인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읍.면 및 마을게시판에 공고문 게시와 소유권 이전 사실 확인통지서를 전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불법 이전을 방지.

3. 제3차 본회의

가. 군정에 관한 질문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오규영의원	면지역 복지계 신설용의는?	내 무 과 장 최 용 준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신규부서증설 및 공무원 증원 억제 지시로 현재로서는 신설이 어렵지 않은가 사료됨.
	일용직 공무원 현황문제?	〃	업무의 중요성, 책임성을 요하는 업무는 정규 공무원에게 업무분담하고 있으며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조역할을 시키고 있음.
태진수의원	노인 복지 시설 문제는?	가정복지과장 정 육 지	의원들의 예산배려가 있으면 노인복지증진에 한층 더 노력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한규용의원	사업추진계획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고 있다 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건설과장 최정우	년 4회 직원에 대한 분기교육과 분임 보안담당관인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산림과장 정지석	군유림을 개발해 군세입 증대와 군 자립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1차년도에 5억을 들여 기반시설을, 2차년도에 3억 4,200만원을 3차년도에 2억5,500만원을 연차적으로 추진.
허병문의원	임도개설 문제?	〃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 6㎞로 남이면 건천리로 조성이 계획되어 있음.
박천보의원	민원실에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전출시 우대 계획은?	내무과장 최용준	평정시 가점평점으로써 2.5점의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승진에 있어서 우선 반영을 하고 희망부서가 있을 때에는 전보를 실시하고 있음.
정현수의원	청내 잡상인 통제 계획은?	〃	수위실 근무 청경으로 하여금 잡상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토록 하겠으며 직원들에게 불매운동을 고취시켜 나가겠음.
	자동차 폐차 처리 현황은?	〃	자동차 폐차업자 지정관계이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

4. 제4차 본회의

가. 군정에 관한 질문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승우의원	우량농지 조성사업 현황?	기 획 실 장 김 희 철	금산읍에 택지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사토처리장과 우량농지조성 두가지 사업 목적으로 진산면 만악리에 부지를 선정해 '91년 5월에 1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170평의 농지를 매입했음.
이홍만의원	'93년도 경영수익사업 현황?	〃	노상유료주차장, 하천 하상정리에 따른 부산물 판매, 택지개발사업, 집단시설지구 조성, 잔디포 조성, 도축장운영 등 6개 사업임.
정현수의원	공설운동장 공사 현황?	사회진흥과장 최 윤 현	'91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금산읍 하옥리 산 134번지 일원에 두 차례에 걸쳐 부지 4만1,663평을 매입하고 건설부장관의 입지승인을 받아서 용역설계후 11월 6일 입찰에 부하여 미림건설 주식회사에 낙찰,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시행중.
	국토대청결운동의 추진 상황?	〃	매주 토요일을 자연정화의 날로 지정해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한규용의원	새마을소득자금 지원사업 문제점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과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는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을 지원해 자금운영의 유사성에 비추어서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운영함이 바림직하다고 판단.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한규용의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선도사업은?	사회진흥과장 최 윤 현	청소년 체험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상 청소년 12명을 선발해 38만8천원을 지원한 바 있고 여가선용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산농고 농악팀 한국청소년마을 생활체조팀, 금산문화원의 문예활동팀 등 3개 단체를 선발해 16만원씩 192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
허병문의원	오지개발 포장사업의 보상금 지급 지연 이유?	〃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용역의뢰를 해 정확한 분할면적이 사전에 나오면 사전에 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음.
박천보의원	펜싱팀 육성에 관한 장기 구상책은?	〃	펜싱선수는 8명으로 금산여고출신 우수선수를 영입할 계획에 있으며 체육기금 정립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음.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현황은?	〃	관내 도계마을은 9개 부락이 있으며 내년에는 남일면 신정리, 부리면 현내리, 진산면 묵산리등 3개 부락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계표석 설치를 비롯한 각종 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
길부섭의원	각 마을의 쓰레기 적환장 문제와 각 면의 쓰레기 매립장 제반 문제점은?	환경보호과장 김 종 인	롤온박스 등으로 대체토록 하겠으며, 쓰레기매립장이나 차수막 등을 설치해야 하나 면단위 매립장은 소규모 매립장으로 예산이 미흡한 실정으로 복토 등을 철저히 하여 인근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겠음.
	농약 공병 및 폐비닐 오염 방지 대책?	〃	자원재상공사와 군보유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활용, 마을을 순회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정현수의원	농협창고에 보관중인 정부양곡의 관리상 문제점은?	산 업 과 장 이 홍 용	안전관리 대책으로 창고 훈증소득을 년 1회이상 실시하고 있고 농검과 군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년 16회, 여름철은 월 2회정도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고 있으나 수매시 여석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우리밀 재배 농가 현황은?	〃	'93년도에 8호농가에 1.5ha, 수확량이 3,680㎏을 생산하였으며, 재배지역은 금성면 마수리 일대로 금년도 재배는 6호에 예상량은 4천㎏을 예상하고 있음.
허병문의원	농산물 유통사업의 자원현황및 문제점은?	산 업 과 장 이 홍 용	사업비의 과다로 중앙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따라 사업량 지원이 농가신청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대책은 중앙지원에만 급급하지 말고 군비의 적극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박천보의원	금산읍 축사 양성화 방안?	〃	10월 30일 현재 한우 38호, 우사 1호, 돈사 4호, 기타 1호로 총 44호가 대상이며 현재 1호밖에 실적이 없음. 부진 이유는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기타 읍.면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지만 금산읍은 도시계획 구역내로 해서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관련 관계법에 의해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음.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사업 선정기준?	〃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관광지와 연계해서 되어있는 초식 가축 집단사육마을로 선정했음.
오규영의원	가전제품, 폐농기계 처리 대책은?		도 시책사업으로 '94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농기계 수집소라 해서 운영주체는 농협.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이홍만의원	무등록 공장업체는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육 순 우	관내에 7개가 있으며 무등록 공장 구제대책은 '93년 11월 1일 상공부 고시 제93호의 규정에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가동중인 공장면적 200㎡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등록 신청하면 양성화 가능.
정현수의원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 계획과 문제점?	〃	도시 균형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전문가및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 보다 장기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천을공단 조성시 민자유치 가능성은?	〃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규정에 3인 이상의 기업이 계열화, 집단화 등을 목적으로 공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공업단지 지정개발을 군수 경유,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3기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도지사로부터 공업단지 지정을 받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허병문의원	천내강의 교량이 수개월동안 착공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	건 설 과 장 최 정 우	금년도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 하부는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상부를 개량해 현재 T빔에서 철재빔으로 상하중을 감소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하부구조의 안정성 결과는 양호한 상태이고 도급자가 결정되면 12월중에 가도공사가 설치되어 통행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됨.
	비포장 도로의 장비 현황?	〃	장비는 포크레인과 같이 작업을 하려면 5대 정도의 덤프가 딸려 있으면 적정 수준대로 일이 진행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길부섭의원	'92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지구 하자발생 현황과 대책은?	건 설 과 장 최 정 우	'92년도 11월에 가을 착수를 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끝난 경지정리 지구는 8개 지구 185ha로 현재 특별한 하자 발생은 없는것으로 판단됨.
	금년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 현황은?	〃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 공무원을 즉시 현장에 파견해 도급자로 하여금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 주민편익 위주로 해결되도록 하고 있음.

5. 제5차 본회의

가. 군정에 관한 질문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정현수의원	금산군 정화사업 추진 현황?	환경보호과장 김 종 인	총사업비 16억3백만원을 투입하여 금산농고앞 용머리 다리에서 중도리 국제인삼시장 앞 금천대교까지 연장 1.8㎞에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관로매설과 호안블럭설치, 하천 옹벽및 주차장 조성, 잔디식재 등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계획은 미완료된 부대공정의 조속한 마무리와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허병문의원	한데 솥걸기 추진 상황은?	〃	쓰레기 줄이기 일환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주민의 호응도가 낮았을 뿐만아니라 예산 지원의 미흡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허병문의원	제원 훨공장 폐수 점검 상태는?	환경보호과장 김 종 인	자체단속 3회, 총 6회를 실시하고 폐수를 3회 채수하여 검사의뢰한 바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93년 3월 16일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 명령과 배출부과금 350만원을 부과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하겠음.
	식수오염 예방 대책은?	〃	구억2리 평촌부락 간이급수 시설은 하천과 10여미터 거리에 위치하여 하천수 유입이 우려되는 바 수시로 간이급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 식수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음.
한규용의원	농산물 직판장 설치 문제는?	산업과장 이 홍 용	농민의 상행위로 인한 문제점이 있고, 계절 농산물 위주의 판매로 년중 판매가 어려운 실정임. 대책은 소형 원두막으로 관광휴양지 노선의 도로변에 설치하고 계절 농산물 판매 위주를 운영토록 하겠음.
	유기농업 시범사업 추진결과및 성과와 계획은?	〃	금년도에 발효퇴비장 시설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설치. 추진한 바 있으며 장소는 제원면 제원리, 명곡리, 복수면 목소리이고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에 준한 사업규모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임.
	돈. 축사 집산단지 오물처리 대책은?	〃	축산진흥자금과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14억이 지원되는데 읍. 면에 환경정화시설 사업을 위주로 신청을 하도록 읍. 면에 조치했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길부섭의원	농어촌 구조 대책은?	산업과장 이 홍 용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한 대응책으로 U.R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 개선사업은 시급하다 하겠음.
	이농현상에 따른 휴경농지 관리 대책은?	〃	부동산 투기로 인한 외지인의 농지구입 현상으로 휴경농지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책으로는 농업이용가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특수작목농장 조성으로 해서 유망작목단지 개발을 하도록 하겠음.
	본군의 축산 실태 문제점은?	〃	단지조성을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지만 공동 참여의식이 부족하여 단지조성에 어려운 실정임.
정현수의원	천연가스 통과 공사시 발생된 민원과 처리 결과는?	건설과장 최 정 우	천연가스 통과로 발생된 민원은 군에서 문서로 접수한 사항은 없으며, 시행청인 한국가스공사에서 처리한 민원이 5건이 발생되었는데 전부 처리되었음.
	도로표지판 설치허가 규정의 추진현황은?	〃	관내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표지판의 설치규정은 없음.
한규용의원	경지정리지구 미환지 소유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이유?	〃	농지개량연합회 충남지부에 지적측량을 송부해서 현재 환지중에 있는데 환지인가는 도지사의 인가후에 공고해서 6월까지 해당 읍.면에 송부해 정산금 처리는 읍.면장이 하고 있음. 2~3년전에 미환지 지정이 되어 수령을 못하는 필지가 몇필지가 있는데 조속 처리되도록 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한규용의원	군도 13호선 도로의 확.포장 사업이 부진한 사유?	건설과장 최정우	국도에 진입되는 600m정도 입구 중간에 대지가 있는데 입구는 논이고, 토지대금이 적다고 토지주가 불응하고 있음.
박찬헌의원	기사천, 봉황천, 상곡천 등 관내 하천의 땅버들 제거 계획은?	〃	재해예방 측면과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전 하천에 대해 하상정리 사업을 실시함이 타당하지마는 군 예산형편상 내년도에 예산 3천만원을 요구하였음.
박천보의원	각종 도로 확.포장시 주민 여론 수렴은?	〃	공사착수와 동시에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 현지주민및 토지소유자와 긴밀하게 협의해 시행하고 있고 대형공사시에는 토지소유자를 현장 사무실에 모이게 하여 현장 설명을 하고 있음.
	건설사업, 새마을사업, 소규모사업 등을 많이 실시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적은 예산으로 현지 실정에 맞도록 편입 토지 보상도 없이 시행해서 시설기준에 맞추어 하다보니 예산낭비가 되었는데 앞으로 타과나 읍.면에서 시행하는 농촌도로는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행하겠음.
오규영의원	각 읍.면시행 사업장에 전문성및 경험이 부족한 하청업자가 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하청업자 사례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고 재무부령 업체는 기술자 보유도 없이도 업체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자가 보유 안된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토목직 공무원이 내년도부터는 읍.면 토목직하고 합동 설계를 해서 10개 읍.면이 통일성있게 설계가 되도록 지도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오규영의원	재해 위험성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실태와 사고예방 대책은?	건설과장 최정우	교량3개소, 건물 2개소, 소류지 2개소가 있는데 본 예산에 2천만원을 전문기관 안전진단비로 요구한 바 있으며 건설분야 재해예방 수습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을 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박승우의원	농촌도로의 인도 설치 계획은?	건설과장 최정우	우선 차량통행이 극심한 지방도 635호선인 진산 대전선중 신대국교 통학길 등을 대상으로 '94년도에 시행이 되도록 충남 도로관리사무소에 건의하겠음.
	소류지 내의 개인 유지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	최근에 축조하는 소류지는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개인소유지에 대한 보상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으로 검토 연구하겠음.
태진수의원	가로등 유지관리는?	도시과장 전영식	전구 안정기등 크게 수선해야 할 부분은 군에서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수선을 하고 스위치등 자체 가능한 부분은 군에서 부품및 예산을 일부 배부해서 수선할 계획. 또 내년도 예산에 가로등 수선용 굴절식 고가 사다리차를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음.
	농촌지역의 100호 이상 마을의 집단시설 마을조성시 취락지역으로 개발하여 쾌적한 지역개발 방안은?	〃	앞으로 인구증가 추세, 또는 개발계획, 수요 등을 감안해서 4개년 계획으로 잔여 11개 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이홍만의원	도시계획세 납부에 따른 지역개발은?	도시과장 전영식	도시계획세가 미미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로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현재 국.도비및 지방세의 지원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이홍만의원	택지조성의 문제점 및 대책은?	도 시 과 장 전 영 식	보상금에 불만을 갖고있는 9가구가 보상금 수령을 기피하고 있고 또 건물만 소유한 가구들이 대부분 영세민들로서 택지매입 대금을 분할상환 요구하고 있음. 대책은 보상금미수령자에 대해서는 금산읍 택지조성 추진위원회와 함께 설득독려해서 해결하고 환지관계도 해결될 전망임.
정현수의원	주거, 상업, 녹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도 시 과 장 전 영 식	건축법 제8조에 따라서 규모에 관계없이 미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건축조례 시행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처리대책은?	〃	4월8일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부업체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워야 할 거리 즉 이격거리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일은 있음.
	관내 공사에 공사 금액이 일부 체불되어서 민원이 발생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체불관계는 건축주와 시공회사 그리고 하도급자간의 계약관계로써 직접적인 개입은 곤란하지만 노임에 대해서는 체불액이 없도록 촉구하고 기타 자재대등도 체불이 없도록 준공이전에 일소토록 촉구하겠음.
허병문의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주민의 피해 대책은?	도 시 과 장 전 영 식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주민불편 해소대책으로 중앙집중식 생활하수 배출시설과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년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길부섭의원	농촌공가의 발생 현황과 이에 따른 대책은?	도시과장 전 영 식	11월 25일 현재 총 608동으로서 농촌지역은 공가발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공가를 사용가능 공가와 불능공가로 구분해 사용가능한 공가는 영세민 무주택자 이주, 마을회관, 경로당, 유아시설등으로 활용하겠으며 불능공가는 건물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철거하고 마을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 하겠음.
태진수의원	읍면의 보건의사들에 대한 근무상태는?	보건소장 길 승 환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박찬헌의원	U.R에 대응한 기술지도 대책은?	지도소장 유 성 렬	작목구조 개선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지도가 필요하고 생산에 대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생산만해서 파는것 보다 1차 가공을 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음.
	보광리 산간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은?	〃	두충, 옻나무등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작목을 심어 수확만 할 수 있게 지도하겠으며 수리안전 청정지역은 청정지역에서만 가능한 와사비, 미나리등을 권장해 도시근교로써의 특수농업을 권장하겠음.
정현수의원	'93년도 성공적사업 현황은?	지도소장 유 성 렬	벼농사 건답직파 재배, 딸기억제재배, 배수출단지 조성, 과실품질향상 시범사업, 고품질 생산을 위한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 시범사업, 하우스자동화 시범사업등이 있음.

나. 휴회의 건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3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내용이었다.

6. 제6차 본회의

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천보의원이 보고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감사일정 및 감사내용, 감사결과 건의사항등 감사의 주요내용을 보고 하였다.

나.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김희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금년도 목표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증감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의존재정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신규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부서별 인건비의 과부족을 판단 정리하고 불용예상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업중 년내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9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월절차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요지이다. 규모는 5억 6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800만원, 특별회계가 4억 7,200만원이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하였다.

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규모가 적어 실효성이 없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공유임야 관리 업무 추진체제를 정비함으로써 공유림의 보존, 확대등 관련업무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기하고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체계는 현행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개정코자 함이었다. 본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라. 금산군 지방 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 조례안

김희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 계획에 따라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금산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자는 내용이었다. 골자는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94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통합 예산편성 운영토록하고, '93년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도록

함이었다. 심의결과 본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마. 휴회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내용이었다.

7. 제7차 본회의

가. '92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두건이 일괄되어 상정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위원장인 한규용의원이 보고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예결위 심사결과,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요지,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결산검사요지 질의응답 요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하였으며 소수의견과 기타사항은 없었다. 심의결과 두건모두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나.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규용의원이 보고한 내용으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본안건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다. '9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공유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실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된 추부 구청사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군세수 증대 및 금산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함이었다.
심의결과 본 안건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라. '94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규용 의원이 보고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본 안건을 의결하자는 내용이었다. 의결에 앞서 '94년도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출부분의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은 의원들이 발의한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한 취지와 같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의결과 본 안건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마. 금산군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금산군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두건이 일괄 상정이 되었으며 최정우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도로법시행령 및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금산군 수방단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금산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재해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재해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이었다. 주요내용은 금산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군의장"을 "군수"로 "리동 또는 자연부락"을 "리 또는 자연부락"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이었다.
심의결과 두건 모두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8. 제8차 본회의

가. 금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두건이 일괄상정 되었으며 정정학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먼저 금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군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었다. 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능에서는 보호기간, 입원기간 연장승인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심의결과 두건 모두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나. 금산군 노인 복지기금 조성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정육지 가정복지과장의 교육으로 이영희 가정복지계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였다.
제안이유는 우리고장의 경로효친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노인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 재원은 출연금, 개인및 단체 출연금, 수익금 등으로 하며 설치및 기능을 정함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9. 제9차 본회의

가. 금산군 농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오정환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우리고유의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육성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수 욕구에 부응하고 새롭고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한규용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 발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수정이유는 전통음악과 군민참여의식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행정위주로 구성이 되어 수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제4조 제3항 "위원장은 군수로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를 "위원장은 부군수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으로 한다 이었다.
심의결과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나. 금산군 체육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최윤현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금산군 체육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의 함양과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 하고자 함이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허병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유는 위원회의 구성이 행정위주로 되어 있어 이의 수정과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수정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홍용산업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금산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소득 작물개발 육성등 농촌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농촌지도자 육성 및 농촌소득증대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었다.

길부섭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발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이유는 본조례 위원회 구성이 행정위주로 되어 있어 이의 수정과 회의구분과 소집사항을 명시 하고자 함이었다.

본 조례안은 또 수정발의 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졌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라. 휴회의 건

12월 2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가정을 찾아보기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10. 제10차 본회의

가. 금산군 군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최용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지난 제3회 금산군 군민대상 심사시 도출된 수상부문 확대와 추천권 범위 확대 및 수상자 결정방법 개선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한규용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는데 이유는 군민대상 수상부문의 대상자를 조정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수정 주요골자는 금산군 군민대상 수상범위를 4개부문에서 제4호의 "인삼진흥부문"을 삭제하고 제2호의 "지역개발부문"을 "산업진흥부문"으로 수정하고자 함이었다.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나. 금산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최윤현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금산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조례와 금산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업무처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금산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를 금산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통폐합하는 내용이었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1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가. 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본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토록 되어 있어 위원장에 박천보 위원, 간사에 박찬헌 위원이 선출 되었다.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본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감사계획서는 박귀전 전문위원이 낭독하였다. 감사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3행정 사무감사 계획

□ 감사의 목적

군정 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습득하고, 나아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등을 통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감사기간 : '93. 12. 2 ~ '93. 12. 4 (3일간)

□ 감사대상기관

○ 금산군(본청)

○ 보건소, 농촌 지도소

○ 읍. 면(필요시)

□ 감사반 편성

가. 감사 위원(9인)

— 위원장 : 박천보. 간사 : 박찬헌. 위원 : 정현수. 한규용. 허병문. 길부섭. 오규영. 박승우. 태진수

나. 사무 보조자 (4명)

○ 전문위원 : 박 귀 전
○ 의사계장 : 노 상 영
○ 사무직원 : 김 필 식
○ 속 기 사 : 인 창 식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정	대 상 기 관 (부 서)	감사장소
12. 2 (목) 10 : 00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읍면 현지확인 (필요시)	위원회회의실
12. 3 (금) 10 : 00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도소 읍면 현지확인 (필요시)	〃
12. 4 (토) 10 : 00	산림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읍면 현지확인 (필요시)	〃

□ 감사 요령

○ 보고 청취
○ 질의 답변
○ 필요시 현지확인

□ 기타필요사항

○ 현장확인 요구시 차량 지원

○ 보고,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지방자치 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발언, 의견진술 요구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확인하여 의장경유 통보

출석 대상자 명부

출석일	출석장소	출석대상공무원		비고
		직위	성명	
12. 2 (목) 10 : 00	위원회 회의실	기획실장	김희철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내무과장	최용준	
		사회진흥과장	최윤현	
		재무과장	강병순	
		지적과장	김홍규	
12. 3 (금) 10 : 00	〃	사회과장	정정학	
		환경보호과장	김종인	
		가정복지과장	정육지	
		산업과장	이홍용	
		지역경제과장	육순우	
		건설과장	최정우	
		지도소장	류성열	
12. 4 (토) 10 : 00	〃	산림과장	정지석	
		도시과장	전영식	
		민방위과장	박래훈	
		보건소장	길승환	

나. 제2차 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93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총 145건에 대한 질의를 1문1답식으로 하였다.

1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본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토록 되어 있어 위원장에 한규용위원, 간사에 길부섭위원이 선임되었다.

2) 결산 및 예산안 심사일정 확정의 건

박귀전 전문위원의 설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심의결과 본건에 대해서는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나. 제2차 위원회

1) '92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산군 '92년도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후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문1답식의 질의 답변도 있었다.

세입, 세출결산 총괄표 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세 입 결 산 총 괄 표

구 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미수납액 (나)-(마)	미수납액처리	
				수입총액 (다)	과오납 반환액(라)	실제수납액 (마)		결손처분	이월액
합 계		48,018,485,000	52,983,861,636	52,796,805,502	926,460	52,795,879,042	187,982,594	6,156,330	181,826,264
일반회계	계	34,421,840,000	39,227,874,866	39,179,113,954	926,460	39,178,187,494	49,687,372	6,003,590	43,683,782
	지방세	4,207,146,000	4,229,120,017	4,195,070,475	117,870	4,194,952,605	34,167,412	5,618,450	28,548,962
	보통세	3,751,740,000	3,906,856,370	3,883,876,570	117,870	3,883,758,700	23,097,670	2,095,230	21,002,440
	목적세	266,406,000	281,647,710	280,067,170	0	280,067,170	1,580,000	0	1,580,540
	과년도수입	9,000,000	40,615,937	31,126,735	0	31,126,735	9,489,202	3,523,220	5,965,982
	세외수입	3,742,244,000	8,325,901,479	8,325,901,479	808,590	8,325,092,889	15,519,960	385,140	15,348,820
	경상적수입	1,456,392,000	1,586,360,577	1,580,574,187	766,590	1,579,817,597	6,542,980	209,100	6,333,880
	임시적수입	2,285,852,000	6,754,252,272	6,745,317,292	42,000	6,745,275,292	8,976,980	176,040	8,800,940
	지방교부세	19,075,001,000	19,075,000,000	19,075,000,000	0	19,075,000,000	0	0	0
	법정교부세	19,075,000,000	19,075,000,000	19,075,000,000	0	19,075,000,000	0	0	0
	중액교부세	1,000	0	0	0	0	0	0	0
	보조금	7,577,449,000	7,583,142,000	7,583,142,000	0	7,583,142,000	0	0	0
	국고보조	3,399,951,000	3,400,851,000	3,400,851,000	0	3,400,851,000	0	0	0
	도비보조	4,177,498,000	4,182,291,000	4,182,291,000	0	482,291,000	0	0	0

세 입 결 산 총 괄 표

구 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미수납액 (나)-(마)	미수납액처리	
				수입총액 (다)	과오납 반환액(라)	실제수납액 (마)		결손처분	이월액
특별회계	계	13,596,645,000	13,755,986,770	13,617,691,548	0	13,617,691,548	138,296,222	152,740	138,142,482
	상수도사업	1,665,235,000	1,650,838,740	1,650,838,740	0	1,649,185,879	1,652,861	0	1,652,861
	주택관리	270,249,000	288,524,229	247,286,311	0	247,286,311	41,237,918	0	41,237,918
	의료보호기금	3,207,372,000	3,209,661,395	3,205,534,325	0	3,205,554,325	4,107,070	152,740	3,954,330
	소득금고	18,848,000	25,885,714	25,885,714	0	25,885,714	0	0	0
	구획정리사업	36,130,000	39,096,335	12,674,617	0	12,674,617	26,421,718	0	26,421,718
	생활안정기금	160,796,000	170,229,385	163,233,445	0	163,233,445	6,995,940	0	6,995,940
	새마을소득지원	115,784,000	121,466,317	120,866,317	0	120,866,317	600,000	0	600,000
	농공지구조성	1,446,618,000	1,574,707,825	1,517,784,510	0	1,517,784,510	56,923,315	0	56,923,315
	공유임야	1,490,000	1,846,460	1,480,460	0	1,490,460	356,400	0	356,400
	골재판매	135,055,000	134,662,970	134,662,970	0	134,662,970	0	0	0
	지방양여금	6,539,068,000	6,539,067,000	6,539,067,000	0	6,539,067,000	0	0	0

세 출 결 산 총 괄 표

구 분		예산액 (가)	예산성립후 증감액 (나)	예산현액 (다) 가+나	지출원인행위액 (라)	지출액 (마)	익년도이월액 (바)	불용액 (다-마-바)
합계		48,018,485,000	4,728,423,940	52,746,908,940	48,985,222,788	44,786,392,218	5,977,080,570	1,983,436,152
일반회계	계	34,421,840,000	4,405,372,940	38,827,212,940	36,534,710,500	34,511,246,840	3,124,713,660	1,191,252,440
	의회비	329,436,000	0	329,436,000	291,174,310	291,174,310	0	38,261,690
	일반행정비	10,290,199,000	769,758,740	11,059,957,740	10,738,092,600	10,702,179,600	35,913,000	321,865,140
	사회복지비	4,904,287,000	1,016,444,640	5,920,731,640	5,615,749,650	5,147,002,490	528,747,160	244,891,990
	산업경제비	4,930,441,000	615,551,070	5,545,992,070	5,197,190,170	5,036,170,170	276,820,000	233,001,900
	지역개발비	11,953,743,000	1,231,678,490	13,185,421,490	12,752,063,630	11,537,900,130	1,405,313,500	242,207,860
	문화및체육비	1,127,128,000	756,365,000	1,883,493,000	1,121,653,640	978,033,640	877,920,000	27,539,360
	민방위비	264,923,000	60,643,000	325,566,000	273,721,470	273,721,470	0	51,844,530
	지원및기타경비	621,683,000	△45,068,000	576,615,000	545,065,030	545,065,030	0	31,549,970
특별회계	계	13,596,645,000	323,051,000	13,919,696,000	12,450,512,288	10,275,145,378	2,852,366,000	792,183,712
	상수도사업	1,665,235,000	0	1,665,235,000	941,004,470	941,004,470	677,000,000	47,230,530
	주택관리	270,249,000	0	270,249,000	207,673,620	207,673,620	0	62,575,380
	의료보호기금	3,207,372,000	0	3,207,372,000	3,084,834,048	3,084,834,048	0	122,537,952
	새마을소득금고	17,848,000	0	18,848,000	10,000,000	10,000,000	0	8,848,000
	구획정리	36,130,000	0	36,130,000	0	0	0	36,130,000
	영세민생활안정	160,796,000	0	160,796,000	133,990,000	133,990,000	0	26,806,000
	새마을특별지원	115,784,000	0	115,784,000	89,000,000	89,000,000	0	26,784,000
	농공지구	1,446,618,000	323,051,000	1,769,669,000	1,347,842,240	1,072,371,950	275,470,290	421,826,760
	공유임야	1,490,000	0	1,490,000	0	0	0	1,490,000
	골재판매	135,055,000	0	135,055,000	123,691,180	123,691,180	0	11,363,820
	지방양여금	6,539,068,000	0	6,539,068,000	6,512,476,730	4,612,580,110	1,899,896,620	26,591,270

예 비 비 지 출 현 황

19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5,285,000원으로 일용인부 퇴직금외 3건에 45,062,920원을 지출하고 5,080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액은 다음과 같고 예비비 사용잔액 222,08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처리일자			예비비
세항	세세항	사업명	(가)	(나)	(다)	나-다	가-나	결정일자	지출일자	승인일자	지출사유
계		(4건)	45,068,000	45,062,920	45,062,920	0	5,080				
2212 서무관리	2212-3-311	일용인부퇴직금	13,838,000	13,838,000	13,838,000	0	0	92. 3.13	92. 3.13		일용인부임 특별임용으로 인한 퇴직금
4133 농업용수개발	4133-5-412	소형관정개발사업	4,200,000	4,200,000	4,200,000	0	0	92. 6.19	92.11.24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모내기 미완료 지역에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지원
〃	〃	양수장보수및소형관정개발	20,000,000	19,995,140	19,995,140	0	4,860	92. 7.13	92. 7.27 92. 8.13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본답고갈 및 균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양수장 보수 및 소형관정개발 사업비 지원
2212 서무관리	2213-3-311	일용인부퇴직금	7,030,000	7,029,780	7,029,780	0	220	92.10.26	92.10.26		일용인부 퇴직자에 대하여 예산부족으로 퇴직금 지급

다. 제3차 위원회

1) '92년도 금산군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92년도 금산군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길부섭 간사의 낭독으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3년 10월 22일 금산군수이며 회부일자 제1차 예결특위는 '93년 11월 26일이고, 상정일자 제2차 예결특위는 '93년 12월 8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하였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은 세입예산액 480억 1,848만 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7억 2,842만 3,940원을 포함하여 세입총액 527억 4,690만 8,940원에 대하여 수납액 527억 9,587만 9,042원이었다. 세출예산액은 480억 1,848만 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7억 2,842만 3,9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27억 4,690만 8,940원에 지출액 447억 8,639만 2,218원이며 차인잔액 80억 948만 6,824원은 회계별로 '9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17억 7,825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는 41억 9,883만 5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054만 320원, 순세계잉여금 18억 7,186만 5,934원이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예비비 3억 204만 6천원중 지출액는 4,528만 5천원이고 차인잔액 2억 5,676만 1천원은 '93년도로 이월했고 예산이용, 전용, 이체는 없으며 계속비도 없다는 요지이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차질없이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본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이 되었다.

라. 제4차 위원회

1) '94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사의 건

1993년 12월 13일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일정에 따라 실.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다. 심사방법은 실.과장으로부터 소관에 해당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후에는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였다. 19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 산 총 칙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 계	51,498,479	1,504,951
일 반 회 계	45,914,862	1,337,445
특 별 회 계	5,583,617	167,50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03,404	33,102
주택관리특별회계	204,545	6,13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347,407	70,422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48,274	7,428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86,104	5,583
농공지구특별회계	1,150,592	34,517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270,002	8,10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73,289	2,198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9,353천원으로 한다.

마. 제5차 위원회

1) '94년도 금산군 예산안 심사의 건

바. 제6차 위원회

1) '94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 산 총 칙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계	51,652,853	1,549,583
일반회계	46,069,236	1,382,077
특별회계	5,583,617	167,50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03,404	33,102
주택관리특별회계	204,545	6,13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347,407	70,422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48,274	7,448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86,104	5,583
농공지구특별회계	1,150,592	34,517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270,002	8,10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73,289	2,198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3,749천원으로 한다.

2) '9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의건

세입예산 정리와 보조금의 변경 및 인건비 정리를 위해 마무리 추경안이 제출되어 졌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총 예산규모는 588억 9,612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56억 9,294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2억 317만 9천원이라고 밝혔다. 보고가 끝난후 1문1답식의 질의 답변이 있었다.

사. 제7차 위원회

1)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길부섭 간사의 설명으로 '93년 12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본안이 제출되었으며 '93년 12월 11일 회부되었고 상정 및 심사일자는 '93년 12월 1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심사는 '93년 12월 17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였다. 제3회 추경안은 5억 6,020만 9천원이며 기정예산은 583억 3,591만 7천원으로 총 규모는 588억 9,612만 6천원으로 0.9%가 증액이 되었다고 밝혔다. 심사결과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요구한 원안대로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심의채택 하였다. 소수, 기타 의견도 없었다고 밝혔다.

2) '94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길부섭 간사의 설명으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3년 11월 24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93년 11월 25일이었다. 상정은 '93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때 상정을 하여 제안설명을 하였다.

심사는 '93년 12월 13일 제4차 예결특위에서 검토보고, 주요사업보고, 질의 답변을 하였고 '93년 12월 14일 제5차 예결특위에서 사업보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93년 12월 17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수정안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하였다. '9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14억 9,9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582억 4,800만원보다 67억 4,900만원이 줄어 12%가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 기타사항은 없었다.

제 28 절 제2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홍만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동법 제39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4년 1월 27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본회에서는 '94년도 금산군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1월 27일부터 1월 2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94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는 회기이었다.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2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4.1.27(목) 10 : 00			○ 개 회 식	
	1	본회의	1. 제28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4 군정보고	
'94.1.28(금) 10 : 00	2	본회의	1. '94 군정보고	

나. 군정보고의 건

'94년도 실과별 주요업무보고로 제1차 본회의에는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산업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분야의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후 각 실과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1문1답식의 질의.답변도 있었다.

2. 제2차 본회의

가. 군정보고의 건

어제의 이어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 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의장의 당부 말씀에 개방화 물결에 따른 UR협상의 타결 등으로 공직자들의 사명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올해의 주요계획들이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 29 절 제29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2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규용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4년 3월 17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이번 회기에는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 조례안외 9건이 상정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부의안건 심의를 위해 '94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제29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29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4. 3. 17 (목) 10 : 00			○ 개 회 식	
	1	본회의	1. 제29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 조례안 3.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 지급 조례안 4.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5. 금산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 6. 금산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 7. 금산군 오수.분뇨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의장 제의 금산군수 제출 〃 〃 〃 〃 〃
'94. 3. 18 (금) 10 : 00	2	본회의	1. 금산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금산군 징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3. 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4. 금산군 건설종합계획 결과보고의 건	금산군수제출 〃 〃 〃 〃

나.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 조례안

최용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화장장, 납골당,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분뇨처리장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이 령에서 정하는 것을(방범수당 안 제3조와 장려수당 안 제4조) 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개정및 제정지급으로 열악한 환경위생 근무부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함에

있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 지급 조례안

길승환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보건사회부령 제666호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 시행으로 보건지소 예산을 금산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관리케하고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추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주요골자는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활동장려금을 보건지소 근무자는 월1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는 월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라.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금산군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
금산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오수.분뇨 수집수수료 징수 조례안

내용상 같은 것으로 김종인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으로 4건이 일괄 상정되었다. 심의중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2시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였다. 심의결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2. 제2차 본회의

가. 금산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2건이 일괄 상정되었는데 먼저 금산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타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인데 골자는 주민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방법을 보통징수방법에서 법인세의 세액신고 기간만료일 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고 재산세에서는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금산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과한 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즉 차등있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의결과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나. 금산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안

김희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금산군 건설종합계획 결과보고의 건

김희철 기획실장의 보고로 지난 1992년 2월 13일 군의회에 보관한 제1차 군건설종합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법정계획으로 확정되었다는 보고이었다.

제 30 절 제30회 금산군의회(정기회)

제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규용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동법 제39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4년 5월 25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본 회기에는 두건의 조례안과 제1회 추경안이 상정되어졌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부의안건 및 제1회 추경 심의를 위해 '94년 5월 25일부터 6월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가결이 되었다.

제3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3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94. 5. 25 (수) 14 : 00	1	본회의	1. 제3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4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 5. 휴회의 건	
'94. 5. 31 (화) 14 : 00	1	본회의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2.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94. 6. 2 (목) 15 : 30	2	본회의	1.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94. 6. 4 (토) 10 : 00	2	본회의	1. '94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2. 금산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3. 금산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나. '94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김희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군의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정리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의 절감운영등의 재원을 UR관련 농어촌 대책 사업과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본 안은 예결특위를 운영해 심의하기로 하였다.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협의에 의해 정현수 의원, 한규용 의원, 허병문 의원, 길부섭 의원, 박찬헌 의원, 박천보 의원, 오규영 의원, 박승우 의원, 태진수 의원이 선임되었다.

라. 주요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

의장의 제의로 UR에 대한 대응작목 육성지구와 전년도 이월된 주요사업지구 15개소를 시찰하여 지역균형 개발도모 및 사업 시공의 사전 점검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 휴회의 건

주요사업장 시찰 및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94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 휴회하자는 내용이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본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및 제6조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토록 되어 있어 사전협의에 의해 위원장에 태진수 위원, 간사에 허병문 위원이 선임되었다.

2)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후 세입분야는 강병순 재무과장, 세출분야는 김희철 기획실장이 설명하였다.

제안설명이 있은후 본 추경안에 대하여 해당 실. 과사업소별에 대해서는 1문1답의 질의. 답변이 있었다.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다음과 같다.

'94년도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예 산 총 칙

제1조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 계		55,348,903	1,660,463
일반회계		49,196,452	1,475,893
특별회계		6,152,451	184,57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20,995	51,629
	주택관리특별회계	228,338	6,85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051,784	61,553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34,769	10,043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9,582	6,587
	농공지구특별회계	1,179,990	35,399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282,911	8,487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34,082	4,022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1994년도 사고이월비는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2,095천원으로 한다.

나. 제2차 위원회

1)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허병문 간사의 낭독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였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94년 5월 22일 금산군수

나. 회부일자 : '94년 5월 25일

다. 상정및 심의일자 :

· 상정 : 제30회 본의회 : '94년 5월 25일 제안설명

· 심의 : 제1차 예결특위 : '94년 5월 31일.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의, 계수조정
제2차 예결특위 : '94.6.2 보고서 채택

□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1회추경안	기정예산	예산규모	비 고
합 계		3,696,050	51,652,853	55,348,903	
일반회계		3,127,216	46,069,236	49,196,452	
특별회계		568,834	5,583,617	6,152,451	
	상수도	617,591	1,103,404	1,720,995	
	주택관리	23,793	204,545	228,338	
	의료보호기금	△295,623	2,347,407	2,051,784	
	새마을소득상업운영관리	86,495	248,274	334,769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3,478	186,104	219,582	
	농공지구	29,398	1,150,592	1,179,990	
	골재판매	12,909	270,002	282,911	
	주차장관리	60,793	73,289	134,082	

□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희철)

○ 이번 추경예산안은 군의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경상경비의 절감운영등의 재원을 UR관련 농어촌대상 사업과 주민편익 증대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음.

○ 당초 목표했던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신규지원으로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고,

○ 특정 재원인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자금이월된 제원면 평촌교 가설사업을 계상하였으며,

○ 당면한 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경상사업비와 법적 의무경비를 최소한으로 하여 건전재정유지와 합리적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요지임.

□ 검토보고서요지(전문위원 박귀전)

○ 세입예산은 자금이월된 특별교부세 3억은 특기할 만한 수입이며, 순세계 잉여금 16억 3,683만원은 절감된 계획 재정운영의 성과라 할 수 있으며

○ 기정예산까지 포함한 재정자립도가 23.2%에 불과하여 지방화시대에 자체재원확보가 절실한 과제인데도 경영사업등 자체세수확보 노력이 부족하며

○ 세출예산은 복지금산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열악한 예산인데도 건전재정과 합리적

예산운용을 바탕으로 1억 5천만원의 채무부담행위 사업까지 시행하게 하였으며, UR 대체작목 육성 추가지원사업은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이며

○ 이월사업은 전년도 19건에 41억 9,800만원에 비하여 금년은 35건에 57억 8,1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가 있겠으나 아쉬움이 있으며

○ 세출에 특기할 만한 사업은 영재교육관신축 지원이라는 요지임.

□ 심사결과

○ 농촌지도소 소관 우량농지 조성, 관상수 식재는 노변에 위치하여 관리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아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1,000만원 삭감하고(붙임 : 수정내역 참고)

○ 기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

□ 소수의견 : 없 음

□ 기타사항 : 없 음

심의결과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며 태진수 위원장은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3. 제2차 본회의

가. '94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결특위 위원장인 태진수 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제2차 예결위에서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낭독하였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나. 금산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호준환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분뇨및 오.폐수, 축산폐수, 위생매립장의 침.출수등 위생적 종말처리로 자연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의 보건향상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심의결과 박천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다음 의안을 심의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본 안은 부결되었다.

다.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안 개정 조례안

전영식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현행 조례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의 상수도요금 조정은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요금현실화로 상수도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 31 절 제3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길부섭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동법 제39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7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4년 7월 21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이번 회기에서는 금산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외 10건이 상정되었으며 '94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사업 보고가 있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10건의 조례와 '94상반기, 하반기 추진실적 및 업무보고로 '94년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하자는 내용이었다.

제3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3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4.7.21 (목) 10 : 00			○ 개 회 식	
	1	본회의	1. 제3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인사 3. 금산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4.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5.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7.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8. 금산군 인삼진흥기금조성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9. 금산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10. 금산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 금산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2.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3. '93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금산군수 제출 〃 〃 〃 〃 〃 〃 〃 허병문의원외 2인 허병문의원외 2인 의장 제의
'94.7.22 (금) 10 : 00	2	본회의	'94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및 '94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94.7.23 (토) 10 : 00	3	본회의	'94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및 '94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94.7.25 (월) 10 : 00	4	본회의	'94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및 '94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94.7.26 (화) 10 : 00	5	본회의	'94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및 '94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나. 군수인사

'94년 7월 9일자로 부임한 김동완 금산군수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인사말에서 금산발전을 위해 금산군정사상 최연소 군수로서 패기와 젊음을 바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다. 금산군 환경사업 설치 조례안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호준환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두 건이 일괄 상정 되었는데, 먼저 금산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30회 임시회시 상정이 되었는데 부결되어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 안건이다.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국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심의결과 두 건 모두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라.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호준환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일괄상정이 되었는데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3년도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확정측량결과 리간의 경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경지정리 지구 리간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금성면 파초리와 하류리간 경계구역의 조정, 부리면 선원리와 창평리, 창평리와 양곡리, 양곡리와 예미리, 리간 경계구역을 조정하고자 함이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해외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 함이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심의결과 두 건 모두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마.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UR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 또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19%에서 연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바. 금산군 인삼진흥기금조성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홍용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으로 '93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개정에 따라서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의 관직 변경과 직급조정을 하려고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회계관리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데 있고 또 기금운용관을 부군수에서 산업과장으로 또 기금출납원을 산업과장에서 인삼계장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었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사. 금산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금산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이 일괄 상정되었으며 전영식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금산군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분쟁발생시 신속.공정하게 조정.처리하여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이었다. 주요골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조정.심사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한 7인이내의 인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금산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개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어 금산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왔으나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으로서 금산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는 불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심의결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아. 금산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김진해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금산군 의회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94년 7월 6일 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 제15조 4.5.6호에 의거 금산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시행하고자 함에 있었다. 주요골자는 의원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원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대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94년 7월 6일 개정공포된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개정 운영하고자 함에 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로 3인 이내를 3인이상 5인이하로 개정을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심의결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자. '93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장의 제의로 지방자치법 제125조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본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사전협의 결과 의회 박천보 의원, 금산축협 이재봉 전무, 금산신협 김종훈 감사 3명이 선임되었다.

2. 제2차 본회의

가. '94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94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의 추진과정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의 순으로 보고가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1문1답식의 질의 답변이 있었다.

3. 제3차 본회의

가. '94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94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에 대한 보고가 있은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1문1답식의 질의.답변이 있었다.

4. 제4차 본회의

가. '94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94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에 대한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1문1답식의 질의. 답변이 있었다.

5. 제5차 본회의

가. '94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94하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보고 마지막 날로써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의 보고를 들은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1문1답식의 질의. 답변이 있었다.

제 32 절 제3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1994년 8월 18일 박찬헌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32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994년 8월 20일 소집공고를하여 1994년 8월 27일 제32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2회 추경과 군정질문이 상정되어졌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 결정의 건

박찬헌 의원외 3인으로부터 본의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것으로 기간은 1994년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32회 금산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4.8.27 (토) 10 : 00			○ 개회식	
	1	본회의	1. 제32회 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94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장 제 의 금 산 군 수 제 출 의 장 제 의 길부섭의원외2인발의
94.8.29(월) 10 : 00	2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94.8.30(화) 10 : 00	3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94.8.31(수) 10 : 00	4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94.9.1(목) 10 : 00	5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94.9.2(금) 10 : 00	6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94.9.5(월) 10 : 00	1	예결위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94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건 3. 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4.9.6(화) 10 : 00	7	본회의	1. 94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 금산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금산군수제출 〃

나. 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김희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의존 재원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일부변경 및 신규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중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재원인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금산읍 중도리 주거밀집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 사업과 군북면 천을리와 내부리를 연결하는 일월이재 도로개설사업 일부를 추진토록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로 증액교부금을 지원받아 농촌도로정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되었고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고 인건비의 과부족을 판단 정리하였으며 인삼발전 부분에 큰 관심과 공공요금등 필수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의 규모는 11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억 6,800만원, 특별회계 2억 1,700만원이었다.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회의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 협의에 따라 정현수 의원, 한규용 의원, 허병문 의원, 길부섭 의원, 박찬헌 의원, 박천보 의원, 오규영 의원, 박승우 의원, 태진수 의원이 선출되었다.

라.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해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길부섭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2. 제2차 본회의

가. 군정 질문의 건

질 문		답 변	
질문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정현수의원	대형양수시설 방치 이유?	건설과장 최 정 우	농수산부에서 당시 추진한 사업으로 사실상 광활한 평야지대에서만 유효해 사실상 쓰지 못했는데 면밀히 판단해 폐기 여부를 결정 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한규용의원	군도 13호 확포장 공사에 따른 미승락 토지 문제점과 미해결 이유?	건설과장 최정우	소유자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해결이 안될 때에는 법적 대응을 취하겠음.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용지 사용승락 징취계획?	〃	하천과 산이 불분명해 지적측량 의뢰를해 처리하겠음.
	국도. 지방도 관리는?	〃	국도는 논산 국도유지 사무소, 지방도는 충남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하고 있으며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음.
허병문의원	'93년도 이월사업 준공상태와 문제점?	건설과장 최정우	'93년도 사업 15건중에서 13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2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리에서 묵산리까지 도로포장공사가 도로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
	기사천 정비에 이어 타 하천에도 추진할 용의는?	〃	하상정리 차원에서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부산물 발생시 포장용 골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음.
길부섭의원	소류지 관리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은?	건설과장 최정우	총 86개소로 63개소를 준설해야하고 일부는 수로 및 여수로를 보수해야할 형편이며 보수비는 총 69억원으로 군비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금년도 경지정리 계획 위치?	〃	금성면 마수리 44ha, 남일면 마장리 38ha, 부리면 어재리 27ha, 군북면 호티리 24ha, 진산면 만악리 20ha로 총 5개지구 153ha임.
박찬헌의원	소하천 골재채취 현황은?	건설과장 최정우	골재 채취법에 의한 골재 허가는 불가능한 형편이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상정리는 가능하다고 판단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승우의원	진산 부암과 곡남간 군도 18호선 추진상황?	건설과장 최정우	지난 4월말 착공되어 공정은 55%이며 편입토지 기공승락이 31필지를 해야 되는데 20필지가 완료되었고 12필지가 보상가 저렴으로 불응하는 형편이지만 협의 보상되도록 노력하겠음.
	정주권 개발사업과 초미 경지정리 추진계획?	〃	당디선 도로포장 공사는 60%공정이고 초미 경지정리 사업은 20ha 계획인데 실시 설계중에 있음.
태진수의원	폐도이용과 이해연고자 활용권 부여?	건설과장 최정우	공공용지로써 가치가 없는 폐도는 이해 연고자에게 점용 허가토록 하겠으며 이해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현지조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될때는 용도 폐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이홍만의원	읍.면 직원의 퇴직에 따른 문제?	내무과장 호준환	읍.면 직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보충을 하도록 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열악한 교육환경과 생활권이 대전권이라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차적옮기기등 애향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음.
정현수의원	진정서, 탄원서 접수 건수는?	내무과장 호준환	91년도 21건, 92년도 45건, 93년도 22건, 94년도 29건해서 총 117건이 접수됨.
한규용의원	공직 풍토 쇄신책은?	내무과장 호준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공무원사기 앙양을 위한 각종 시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민원1회 방문제 추진 현황?	〃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고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허병문의원	친절 365일 전개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내역과 전화민원 신청의 불친절 사례?	내무과장 호준환	민원안내양, 음성 사서함. 친절 봉사 우수사례 발표회등이 있으며 전화 응대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나가겠음.
	농촌고령화로 70세 정도의 이장 자격 여부는?	〃	규칙대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발생시 규칙을 개정 한다던가 고려해 보겠음.
박 천 보	기능직, 일용직 공무원들의 문제점?	내무과장 호준환	일반직 특채가 있을시 기능직 공무원을 우선 하겠으며 기능직 특채가 있을시는 관내 근무하는 일용직 공무원중에서 특채하겠음.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 중단시 부작용 대책은?	〃	민간단체 활성화 방안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자각이 절실히 요구되고 민간 단체 중심의 내실있고 실천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3. 제3차 본회의

가. 군정질문의 건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길부섭의원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환경보호과장 김 종 인	쓰레기량 증가로 기존 매립장의 조기매립이 예상되며 제원면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 및 군북면 쓰레기 매립장 임대료가 예산에 미계상 되었으며 대책으로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속정착 되도록 유도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찬헌의원	오.폐수 처리에 대한 설치 내역과 가동실태 및 점검사항은?	환경보호과장 김 종 인	4개 처리시설에 18억 1천만원으로 시운전에서 부터 현재까지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중이며 방류수 확인결과 기준치 이하로 처리되고 있음.
	우리지역의 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과 대처방안?	〃	대청호 특별대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기초시설 환경분담금의 특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환경처에 건의할 경우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의 제한등을 받게 되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겠음.
박천보의원	환경보호운동 활성화 방안?	환경보호과장 김 종 인	1사 1직장 1하천가꾸기 운동등을 추진하고 지역언론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음.
	한국타이어 환경영향 평가 현황은?	〃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한 제도로 군민의견 수렴을 위해 '91년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군청 환경보호과와 제원면사무소에 공람을 실시 하였음.
태진수의원	배출가스차량 단속에서 대형차량 단속 여부?	환경보호과장 김 종 인	면소재지나 대형차량이 많은곳에 우선적으로 단속하겠음.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문제점?	〃	쓰레기 처리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무단투기 또는 규격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불법 배출할시에는 감시에 여러움이 있음.
이홍만의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	환경보호과장 김 종 인	소30두, 돼지 200두 이상은 농가수가 67농가이며 소가 30농가, 돼지가 37농가인데 전 농가가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한규용의원	공해배출 지도 단속 처리사항?	환경보호과장 김 종 인	합동단속 1회, 자체단속 9회를 실시하였으며 대기배출업소 10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 경고, 사용금지 및 고발 2개소를 행정조치한바 있음.
	승진산업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대책?	〃	소각금지와 무연소각로로 바꾸어 소각하도록 현지지도
허병문의원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상황 및 문제점?	환경보호과장 김 종 인	재활용품함 공동주택 27개소, 공공시설 100개소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1대, 재활용품 간이 보관장소 247개를 활용하고 있으며 계기교육, 홍보교육을 실시하였고 문제점은 주민의 참여의식 미흡과 미화원의 인식 결여로 수거체계가 미흡한 실정
	군의 국공유재산 임대료 현황과 재무부령업자 보호대책은?	재 무 과 장 강 병 순	2,634필지중 임대계약된 토지는 1,228필지이며 임대율은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한 보호대책은 없으며 현실적으로 배려하겠음.
태진수의원	국.공유재산 찾기 현황은?	재 무 과 장 강 병 순	76필지에 재산가액은 2억 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고 세수증대에 적정을 기하려함.
	국공유재산 활용계획과 영세민 보유현황은?	〃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누락된 국.공유지는 발본색원하여 재산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고 영세민 임대 국.공유지는 164필지임.
한규용의원	세수확충 방안?	재 무 과 장 강 병 순	체납액을 사전 예방하고 세원발굴과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한규용의원	유원지 허가 조건을 완화해 취락시설을 민자유치할 의향은?	재 무 과 장 강 병 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남이면 자연휴양림개발, 추부면 서대산 종합개발이 완료되는대로 민자유치 계획과 연계해 세원개발에 노력 하겠음.
	새마을 소득금고와 관련해서 지원마을과 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진흥과장 육 순 우	자금의 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확대 하겠음.
길부섭의원	부리면 지역에 행락지를 개발하여 군세수 증대 계획은?	사회진흥과장 육 순 우	본과 소관이 아니지만 담당부서와 협의 하겠음.
정현수의원	금산읍 소도읍 가꾸기 소요예산은?	사회진흥과장 육 순 우	총15억이 소요되며 재원비율은 국비 8,600만원, 도비 3억 6,400만원, 군비 10억 5,000만원으로 현재 확보예산은 도비가 2억 1,090만원, 군비 9억 6,090만원을 확보하였음.
한규용의원	노인정 무료순회 진료의 세부적인 진료방법은?	보 건 소 장 길 승 환	건강관리협회에서 이동검진 차량을 제작해서 오.벽지를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허병문의원	예방업무는 보건소, 보건지소, 방역업무는 읍.면직원이 하는데 이의 개선책은?	보 건 소 장 길 승 환	방역소독등 업무추진 내용은 읍.면장에게 계획 입안된다는 것을 수립했고 위임 조례안은 현재진행중에 있음.
오규영의원	물리치료실의 확대 운영계획은?	보 건 소 장 길 승 환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군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제4차 본회의

가. 군정 질문의 건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찬헌의원	공가 현황은?	도시과장 전영식	'91년도 이전 538동, '91년도 73동, '92년도 61동 '93년도 39동으로, 현재 711동으로 군 전체 3.6%에 이르고 있음.
박천보의원	상수원 보호 대책은?	도시과장 전영식	홍보전단을 3회에 걸쳐서 배부 하였고 인삼골 소식지에도 5회에 게재하여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박승우의원	대둔산 개발경과는?	도시과장 전영식	1.5㎞에 폭 8m로 10억 3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등산로 개발공사는 1억 2천만원을 투자해 3.7㎞를 완료한바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1억5천7백만원을 투자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발주 시행중에 있음.
태진수의원	금산읍, 진산면, 추부면을 제외한 7개면에 대한 도시사업 관계는?	도시과장 전영식	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준도시 지역에 준하도록 개발할 계획임.
정현수의원	건축 조례안 수정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금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문제점?	도시과장 전영식	대형판매 건축물일 경우 가시적인 침해와 일조권 침해로의 문제, 교통혼잡, 통행불편등 주거생활에 곤란하다는 민원이 있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6m이상을 이격하여야 된다고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미달되어 사직당국에 고발상태에 있음.
허병문의원	농촌 가로등 수선의 문제점 및 대책은?	도시과장 전영식	수선요원 및 장비부족으로 제때 수선이 안되고 하루에 6개소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책은 가로등 보수용 작업차량을 2천 6백여만원에 1대를 구입하면 수리 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임.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길부섭의원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계획은?	도 시 과 장 전 영 식	주택개량이 52동에 12억4천8백만원을 지원해 동당 1천6백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 변소개량은 205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을 보조해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부엌개량은 210가구에 100만원씩 보조토록 되어있음.
	주거개량에 있어서 문제점은?	〃	실제 건축비의 60%밖에 지원되지 않아 영세 주민들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규용의원	농촌주택 추진 현황은?	도 시 과 장 전 영 식	재정 형편상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줄 수는 없고 년차적으로 수량을 확대할 계획임.
	장애인 등록 현황은?	사 회 과 장 정 정 학	163세대 784명이며 지체부자유 468명, 시각장애자 50명, 청각언어장애 134명, 정신지체 131명임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실적은?	〃	시간외 영업위반 업소 3개소, 미성년자 주류판매 업소 5개소, 허가증, 보건증 위반업소 54개 업소가 적발 되었음.
길부섭의원	간이급수 시설 현황은?	사 회 과 장 정 정 학	총 150개로 5,815가구에 23,009명이 이용하고 있음.
박천보의원	경영 수익 사업 현황?	기 획 실 장 김 희 철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인삼과 관련이 있는 공장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채권 발행등 3섹타 방식으로 기획실과 산업과와 검토하고 있음.
한규용의원	경영수익 사업의 제안공모와 성과는?	기 획 실 장 김 희 철	경영수익 사업분야 114건, 이외의 분야 73건이 공모가 되어 실시가능한 1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연구를 검토하고 있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이홍만의원	금산군의 '94년도 GRDP는?	기 획 실 장 김 희 철	가구당 790만원, 1인당 180만원이고 금산군 전체적인 GRDP는 1,542억 7,900만원임.
정현수의원	군의 재정 및 중앙부처의 재원 확보 방안은?	기 획 실 장 김 희 철	총 553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1억 9,700만원, 특별회계 61억 5,200만원이며 군수를 단장으로 15명을 구성해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5. 제5차 본회의

가. 군정질문의 건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태진수의원	농촌활력화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문제점?	산 업 과 장 이 홍 용	총 8,807억이라는 예산으로 계획을 수집한 바 있지만 군 자체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됨.
이홍만의원	70ha의 배단지 조성으로 과잉 출하시 대책은? 배단지 특산작목 선정 배경은?	산 업 과 장 이 홍 용 〃	국내소비와 수출증가 추세에 있으며 소비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고지대의 일교차의 기후조건으로 당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과잉출하시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음.
정현수의원	농약빈병 수집결과?	산 업 과 장 이 홍 용	한국재생공사에서 개당 50원씩 보상금을 주고 수집하고 있으며 부녀회, 노인회, 학생단체에서 수집하고 있음.
오규영의원	인삼과 신설용의는?	산 업 과 장 이 홍 용	행정기관에서 폭넓게 관여해 기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오규영의원	고속도로변 휴게소에 인삼가공식품 취급 추진용의는?	산 업 과 장 이 홍 용	3개소에 인삼제품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고속도로에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중임.
한규용의원	농특산단지 운영실태와 문제점?	산 업 과 장 이 홍 용	단지내에 다수 농가가 취업 및 출자형태로 조성 운영함으로써 참여농가의 농외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으며 융자받기의 어려움으로 융자사업 지원이 특산단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길부섭의원	축산농가지원 자금실태와 문제점?	산 업 과 장 이 홍 용	13억 8,700만원으로 70%융자, 30%자부담이며 축사 신증축 및 자동화 시설 사업비로 투자되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담보문제로 해서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있음.
	축산폐수 처리시설 상황?	〃	139개소를 정화조 내지 간이정화조를 설치한바 있음.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 계획은?	〃	가축 사육 규모가 영세해 바람직하지 않는 계획으로 판단함.
박찬헌의원	농기계 공급의 한정 지원으로 농민 불만은?	산 업 과 장 이 홍 용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으며 한정지원과 소형 농기계의 순으로 다소 몰려 탈락농가가 발생하고 있음.
박천보의원	약초발전의 중장기 계획은?	산 업 과 장 이 홍 용	관계실. 과와 협의해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해 보겠음.
태진수의원	농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병역특례자 현황은?	사회지도과장 이 희 철	1년차로 24명을 확정하였으며 농업계 고졸 17명, 인문계 고졸 17명이 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한규용의원	농기계순회 수리지도시 부품부족에 따른 문제?	사회지도과장 이 희 철	현재 30,360점을 보유해 고장이 잦은 부품을 우선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어 부품에 따른 수리상의 문제점은 없음
	읍.면상담소 간이 부품센타 확대운영 계획은?	〃	금번 하반기부터 남이, 복수, 군북등 3개소에 먼저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전 읍.면에 확대할 계획임.
	금산관광개발 연구 용역비?	문화공보실장 윤 중 현	'94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중앙대학교 건설산업기술연구소와 4,920만원으로 7월 31일 계약을 체결함.
	물페기 농요 전승 보존 대책은?	〃	인삼제 및 백제문화제등에 시연토록하고 백중날을 전후해 주민 단합겸 전승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허병문의원	인삼타운 활성화 대책?	문화공보실장 윤 중 현	금산관광개발 용역을 중앙대학교 산업기술 연구소가 개발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6. 제6차 본회의

가. 군정질문의 건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허병문의원	민방위 장비 현황은?	민방위과장 오 정 환	앰프 50대, 메가톤 110대, 방독면 31개, 손전등 437개, 로프 128조, 구명환 60조, 들것 50개등 현재 읍.면장이 보관책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허병문의원	이장집에 보관되고 있는 민방위 장비의 보관함 보관상태는?	민방위과장 오 정 환	민방위 사태 발생시 지역 민방위 대장의 지휘아래 신속하게 장비를 동원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정현수의원	가출 소년, 소녀 현황 및 조치 상황?	가정복지과장 정 육 지	경찰서 방범과 소년계에서 취급하는 업무로써 현재까지 1건이 발생되어 귀가 조치 하였으며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한 사항은 없음.
한규용의원	금년도 퇴소아동 자립정책은?	가정복지과장 정 육 지	퇴소자 5명에게 자립정착금으로 110만원과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진흥과에서 100만원등 1인당 총2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문대학에 입학한 2명의 학생들에게는 별도로 도에서 지원을 받았음.
	무의탁 노인 가정생활 상태와 월동비 지원은?	〃	관내 무의탁 노인은 89명이며 난방비 24만4천원과 월동비 특별지원금 8만원으로 총32만4천원이 지급될것으로 보임.
허병문의원	여성단체 현황은?	가정복지과장 정 육 지	적십자 걸스카웃 연맹, 대한어머니회, 한국부인회, 새마을 부녀회, 적십자 부녀회, 주부교실, 전몰군경 미망인회등 7개단체에 5,65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박승우의원	무절제한 묘지정책 대책은?	가정복지과장 정 육 지	160필지의 공동묘지를 소규모 공원묘지화로 조성하여 양질의 묘지를 실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음.
태진수의원	노인여가시설 현황은?	가정복지과장 정 육 지	171개소에 5,190명으로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질 문		답 변	
질 문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박찬헌의원	관광휴양지 가로수 식재 상황은?	산 림 과 장 이 동 택	서대선 대롱나무 223, 무주선 삼각단풍 780, 영동선 벗나무 1100, 연산선 단풍나무 556그루를 식재했음.
한규용의원	임도 추진상의 문제점?	산 림 과 장 이 동 택	산주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겠고 또 산주가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음.
박천보의원	남이면 자연 휴양림 주차장의 이전은?	산 림 과 장 이 동 택	반드시 옮겨야 될것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하겠음.
오규영의원	UR에 대응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밭농사용 전기료의 인하 여부는?	지역경제과장 최 윤 현	도 관계과와 한전 금산지점을 통해서 즉시 시정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태진수의원	오지노선 결행에 대한 대책은?	지역경제과장 최 윤 현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행정 단속에도 힘써 나가겠음.
정현수의원	렉카 업체의 견인에 따른 문제점은? 금년도 중소기업 유치 목표는?	지역경제과장 최 윤 현 〃	부당요금을 요구한다던가 징수하는 사례가 적발 될시에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음. 30개 업체로 현재 상황으로는 무난하게 달성될것으로 보임.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본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정하게 되어있어 사전 협의에 따라 위원장에 박천헌위원, 간사에 길부섭 위원이 선임되었다.

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94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예산안의 규모는 아래와 같으며 보고후 세입.세출에 대한 1문1답식의 질의.답변이 있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 추경 예산(안)규모

○ '94년도 제2회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9억 6,851만 1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억 1,656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백 65억 3,398만원으로 2.1%가 증액되었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2회추경(안)	기 정 예 산	총 규 모	비 고
일 반 회 계	968,511	49,196,452	50,164,963	2.0%
특 별 회 계	216,566	6,152,451	6,369,017	3.5%
계	1,185,077	55,348,903	56,533,980	2.1%

□ 세입세출 예산(안)내용

가. 세 입

(1) 일반회계 세입

○ 지 방 세 : 없음

○ 세외수입 : 9,800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 : 9,800만원으로 이자수입

○ 지방교부세 : 9억 8,801만 4천원

○ 보조금 : △4,499만 8천원 감

- 국고 보조금 : △ 12억 3,605만 5천원 감
- 도비 보조금 : 11억 9,105만 7천원

(2) 특별회계세입

○ 지방세 : 없음

○ 세외수입 : 1억 4,406만 1천원

- 경상적 세외수입 : 1억 13만 4천원
- 임시적 세외수입 : 4,392만 7천원

○ 보 조 금 : 7,250만 5천원

— 국고 보조금 : 9,691만원

— 도비 보조금 : △1,440만 5천원 감

나. 세 출

(1) 일반회계세출 : 9억 6,851만 1천원

○ 의 회 비 : 2천 75만원

○ 일반행정비 : △6,803만 9천원

○ 사회복지비 : 2억 1,058만 5천원

○ 산업경제비 : △ 10억 8,131만 4천원 감

※ 경지정리 사업비 감이 주

○ 지 역 개 발 비 : 18억 9,411만 3천원

○ 문화 및 체육비 : △1,506만원 감

○ 민 방 위 비 : 560만원

○ 지원및기타경비 : 187만 6천원

(2) 특별회계세출 : 2억 1,656만 6천원

○ 상 수 도 특 별 회 계 : △ 6,259만 9천원 감

○ 의료보호 특별회계 : 2억 950만 5천원

○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 △260만 7천원 감

○ 농 공 지 구 특 별 회 계 : 1,288만원

○ 골 재 판 매 특별회계 : 2,040만원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3,898만 7천원

□ 특별교부세 사업

○ 일월이재 도로 개설사업비(성립전) : 3억원

○ 중도리 소방 도로 개설비(성립전) : 3억원

□ 교부금사업

○ 농어촌도로정비사업(2개소) : 3억 8,801만원

□ 국고보조 사업

○ 국토이용계획도면작성용역(150부) : 1,031만원

□ 도비보조사업

○ 쓰레기재활용 선별 창고 건립 기계 구입비(성립전) : 3,000만원
○ 가정복지 회관 건립비 : 1억원
○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 1억 918만원
○ 인삼단지육성저온창고설치비(1동) : 5,000만원
○ 임업 협동조합 유통 시설 지원비 : 5,000만원
○ 추부 신평 소교량 가설비 : 1억원
○ 복수 백암 교량 가설비 : 1억원
○ 복수 목소리 도로 개설비 : 3,000만원
○ 소도읍 개발 사업비 : 2억 3,910만원
○ 추부 복개도로 개설비 : 2억원
○ 금산읍 하옥 시장 교량 가설비 : 1억 1천만원
○ 금산읍 음지.계진리간도로 포장비 : 1억원

□ 자체사업

○ UR대응 금산인삼경영진단과 국제화 방안 용역비 : 1,000만원
○ 제원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비 : 3,678만원
○ 군북면 쓰레기장 임대 및 옹벽 설치비 : 2,500만원
○ 택지조성사업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 용역 : 4,000만원

□ 특별회계사업

○ 금산읍 취수장 전기 보강 공사비 : 1,5000만원
○ 추부면 취.정수장 유량계 설치비 : 1,900만원
○ 의료보호 진료비(국.도.군비) : 2억 850만 5천원

□ 채무부담행위 사업

○ 금산읍 소도읍가꾸기 총 소요사업비 15억원으로 도비 4억 5천만원과 군비 10억 5천만원 중 7억5천만원은 기히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미부담금 3억원은 본군 재정형편상 부담이 어려워 '95년도에 상환할 것을 전제로 채무부담예산(안)으로 편성하였음.

□ 제2회 추경(안)의 특징

○ 본 추경안의 특징은 자체수입 없이 의존재원의 보조변경과 특별교부세의 추가지원에 의한 추경(안)이 편성 되었음이 특징임.

□ 검토의견

○ 세입은 특별교부세 6억원의 지원은 특기할 만한 수입이며 국고보조금의 감액과 도비보조금 증액보조로 숙원사업에 투자하게 됨은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겠으나 자체 수입은 유휴자금의 이자증액 9,800만원에 불과한 세입은 아쉬운 생각이 들며 자체재원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며

○ 세출은, 인건비의 조정과 적은 세입금으로 현장개선사업과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효과적 계상이며 금산인삼의 선양과 인삼시장경영진단 및 국제화방안 용역등은 UR에 대응하는 금산군의 의지가 담긴 발전적인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 산 총 칙

제1조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 계	56,533,980	1,696,015
일 반 회 계	50,164,963	1,504,948
특 별 회 계	6,369,017	191,06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58,396	49,751
주택관리특별회계	228,338	6,85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261,289	67,838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32,162	9,964
영세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219,582	6,587
농공지구특별회계	1,192,870	35,786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303,311	9,099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73,069	5,192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1,763천원으로 한다.

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간사인 길부섭 의원이 보고를 하였으며 의결한 본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박찬헌위원장이 밝혔다. 심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4년 8월 26일 금산군수
나. 회 부 일 자 : 94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심의일자
○ 상정 : 제32회 본회의 : '94.8.27 제안설명
○ 심의 : 제1차예결특위 : '94.9.5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의, 심사보고서 채택

□ 제2회 추경예산(안)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회추경안	기정예산	예산규모	비 고
합 계	1,185,077	55,348,903	56,533,980	
일반회계	968,511	49,196,452	50,164,963	
특별회계	216,566	6,152,451	6,369,017	
상 수 도	△62,599	1,720,995	1,658,396	
주택관리	0	228,338	228,338	
의료보호기금	209,505	2,051,784	2,261,289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2,607	334,769	332,162	
영세민생활안정기금	0	219,582	219,582	
농 공 지 구	12,880	1,179,990	1,192,870	
골재판매	20,400	282,911	303,311	
주차장관리	38,987	134,082	173,069	

□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희철)

○ 의존 재원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일부 변경 및 신규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 특정재원인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금산읍 중도리 주거밀집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군북 천을리와 내부리를 연결하는 일월이재 도로개설사업 일부를 추진토록 계상 했으며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증액교부금을 지원받아 농촌도로정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정의 원할한 업무 추진을 뒷받침하고 인건비의 과부족을 판단 정리하였으며 인삼발전부분에 큰 관심과 공공요금등 필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요지입니다.

□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박귀전)

○ 세입은 특별교부세 6억원의 지원은 특기할 만한 수입이며, 국고보조금의 감액과 도비보조금 증액보조로 숙원사업에 투자하게 됨은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겠으나

자체수입은 유휴자금의 이자증액
9,800만원에 부과한 세입은 아쉬운 생각이 들며 자체재원 확충에 적극적인 노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요지이며

○ 세출은 인건비의 조정과 적은 세입금으로 현장개선 사업과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투자되었음은 효과적인 계상이며 금산인삼의 선양과 인삼시장 경영진단 및 국제화방안용역 등은 UR에 대응하는 금산군의 의지가 담긴 발전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요지입니다.

□ 심사결과

○ 금산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재석위원 9인)

□ 소수의견 : 없 음

□ 기타사항 : 없 음

8. 제7차 본회의

가. '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박찬헌의원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낭독하였다. 심사결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나. 금산군 폐기물 관련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안

김종인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으로 폐기물 관리법 개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깨끗한 금산의 이미지 부각 및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범칙금과 과태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었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제 33 절 제33회 금산군 의회(임시회)

'94년 10월 13일 박천보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10월 13일 소집공고를 하여 '94년 10월 19일 제33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박천보 의원외 3인으로부터 본의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기간은 '94년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제3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33회 금산군 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94. 10. 19 (수) 10 : 50	1	본회의	1. 제3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주요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 3.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정현수의원외 2인발의 금산군수제출 박천보의원외 2인 발의 의장제의
'94. 10. 28 (금) 10 : 00	1	조례위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2. 금산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수제출 박천보의원외 2인 발의
'94. 10. 29 (토) 10 : 00	2	조례위	1.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금산군수제출 박천보의원외 2인 발의 위원장 제출
'94. 10. 31 (월) 14 : 00	2	본회의	1.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4.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금산군수제출 박천보의원외 2인발의 금산군수제출 정현수의원외 2인발의

나. 주요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

정현수의원외 2인의 발의로 그간 추진해 온 주요사업장을 시찰하여 사업의 현황과 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효과적이고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주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95주요사업구상 등에 반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구현코자 사업장을 시찰한다고 밝혔다.

주요일정은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1일차 금성면.진산면, 2일차 복수면, 3일차 부리면, 4일차 금성면.추부면, 5일차 제원면.군북면, 6일차 남일면.남이면, 7일차 금산읍으로 짜여졌다. 본 건은 정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김희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조례특위를 운영하여 심사를 하였다.

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박천보 의원외 2인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적법하게 개정하여 운영코자 함이었다.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연장, 감사대상사무의 추가, 출석거부및 허위증언에 대한 벌칙규정, 증인의 보호및 실비보상이 주 내용이었다.

본 조례안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조례특위를 운영하여 심사를 하였다.

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특위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자는 내용이었다.

본 특위 의원으로서는 정현수 의원, 한규용 의원, 허병문 의원, 길부섭 의원, 박찬헌 의원, 박천보 의원, 오규영 의원, 박승우 의원, 태진수 의원으로 구성되어 졌다.

바. 휴회의 건

조례특위 활동을 위해 '94년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내용이었다.

2.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가.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본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어 위원장에 길부섭 위원, 간사에 허병문 위원이 선임되었다.

나.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2건이 일괄상정이 되었으며 10월 19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다.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제안이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저 '94년 10월 4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임

□ 주요골자

가. 보상금 지급 기준(안 제4조)

- ㅇ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
- ㅇ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 ㅇ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단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이내)

나. 보상심의회 구성(안 제9조)

- ㅇ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
- ㅇ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원 1인, 관련 실과장 1인, 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임.

다. 보상심의회 회의(안 제13조)

- ㅇ 보상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의결정

□ 검토 의견

가. 지방자치법 개정('94.3.16 법률 제4741호)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94.7.6 대통령령 제14317호)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공무로 인한 사망, 상해,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의원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케 됨은 극히 다행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나. 다만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년간 총 회의 일수를 시.도의회는 120일과 시군및 자치구 의회는 80일로 제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시.도의회 의원만 의정보조활동비를 지급할 뿐 아니라 회기중 일비를 시.도의회 의원은 일당 6만원과 시.군및 자치구의회의원은 5만원의 차등지급은 지방자치법의 모순이 있으며

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 취지는 시.도의회의원과 시.군 및 자치구 의회 의원간의 보상금지급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보상금지급 기준을 시.도의회의원의 일비를 기초로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결여된 점이 아쉽다고 사료됨.

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 발의사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제17조의 3, 제17조의 4, 제17조의 5, 제17조의 9, 제17조의 10의 전문개정 및 신설로 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법하게 개정 운영하고저 박천보 의원외 2명의 의원발의로 '94.10.13 접수되었다.

□ 주요골자

가.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연장(안 제2조)

○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나. 감사대상사무의 추가(안 제6조)

○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 출석거부및 허위증언에 대한 벌칙규정(안 제9조)

○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증언자의 선서요구 및 허위증언시 고발조치

라. 증인의 보호및 실비보상(안 제9조의 3)

○ 증인의 요구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회의 진행

○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여비등 필요경비 지급

□ 검토의견

가. 행정사무감사및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전문개정하여 감사기간을 7일간으로 연장했으며 감사사무 중 국가나 도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까지 확대 실시키로 되었으며

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있어 출석거부나 허위증언한 자에 대한 주민의 권리제한으로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며

다.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언자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합니다」라고 사전 선서케 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 허위증언을 방지함으로써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되도록 그 권한을 대폭 강화 하였음.

3. 제2차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가. 금산군 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채택의 건
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채택의 건

2건이 일괄상정이 되었으며 간사인 허병문 위원이 낭독하였다.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산군 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 제출자 : '94.10.4 금산군수

나. 회부일자 : '94.10.19.

다. 상정일자 : '94.10.28. 제1차 조례안 심사특위 검토보고.질의
'94.10.28. 제2차 조례안 심사특위 보고서 채택

□ 제안설명요지(기획실장 김희철)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저 함.

나. 주요골자

(1) 보상금지급기준(안 제4조)

-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
-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다만 시.도의회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음)

(2) 지방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심의회 구성(안 제9조)

-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회 의원중 1인, 관련실과장 1인, 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3) 지방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회의(안 제13조)

○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박귀전)

가. 지방자치법 개정('94.3.16 법률 제4741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94.7.6 대통령령 제14317호)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로 인한 사망. 상해.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의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케 됨은 극히 다행한 일이며

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년간 총 회의 일수를 시.도는 120일과 시.군 및 자치구 의회는 80일로 제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시.도의회 의정 보조활동비를 지급할 뿐 아니라 회기중 일비를 시.도의회 의원은 일당 6만원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은 5만원의 차등 지급은 지방자치법의 모순이 있으며

다. 본 조례제정 취지는 시.도의회 의원과 시.군및 자치구 의회 의원간의 보상금지급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보상금지급 기준을 시.도의회 의원의 일비를 기초로한 조례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결여된 점이 아쉽다는 검토요지입니다.

□ 질의및 답변요지

○ 질의(박천보 의원)

시.도의회 의원과 일비의 차등 지급으로 지방자치법의 모순을 알고 있으나 타 시.군의회의 본 조례제정 상황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기획계장 김영목)

기획실장의 유고로 대리로 답변드립니다.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대부분 본 안대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몇개 시.군이 제정되었는지 확실한 현황은 알 수 없습니다.

□ 토론요지

없 음

□ 수정안요지

없 음

□ 심사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 채택되었음(참석위원 7명)

□ 소수의견

없 음

□ 기타사항

없 음

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및 발의자 : '94.10.13 박천보 의원외 2인

나. 회부일자 : '94.10.19.

다. 상정일자 : '94.10.28. 제1차 조례안 심사특위 검토보고.질의
'94.10.28. 제2차 조례안 심사특위 보고서 채택

□ 발의(안)설명요지(발의자 박천보 의원)

가. 발의이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제17조의 3, 제17조의 4, 제17조의 5, 제17조의 9, 제17조의 10의 전문개정 및 신설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법하게 개정 운영하고저 의원이 발의케 되었음.

나. 주요골자

(1)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연장(안 제2조)

○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연장

(2) 감사대상사무의 추가(안 제6조)

○ 국가및 도의 위임사무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추가

(3) 출석거부및 허위증언에 대한 벌칙규정(안 제9조)

○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발언자의 선서요구 및 허위증언시 고발조치

(4)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안 제9조의 3)

○ 증인의 요구시 본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의회진행

○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 여비등 필요경비 지급

□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박귀전)

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전문개정하여 감사기간을 7일간으로 연장하였으며 감사사무중 국가나 도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까지 확대 실시키로 되었으며

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있어 출석거부나 허위증언한 자에 대한 주민의 권리제한으로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며

다.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언자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를 받기로 합니다」라고 사전 선서케 함으로써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되도록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는

검토요지입니다.

□ 질의및 답변요지

없 음

□ 토론요지

없 음

□ 수정안요지

없 음

□ 심사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 채택 되었음(참석위원 7명)

□ 소수의견

없 음

□ 기타사항

없 음

4. 제2차 본회의

가.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2건이 일괄하여 상정이 되었으며 조례특위 위원장이었던 길부섭 의원의 보고로 조례 특위때 채택한 심사보고서를 보고하였다.
심의결과 금산군 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서와 같이 박천보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나.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제원면 대체재산 조성에 따른 수당리 23-4번지 등 2필지 1,990㎡는 금산지방공단 조성계획에 의거 당초 군유보존재산이 지방공단내 편입에 따라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재산을 취득하여 제사답으로서의 목적수행및 마을주민의 자치적 활동을 보호하고 제원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및 비호산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환경보호및 공원활성화로 주민휴식공간 조성과 행정목적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유를 밝혔다.

심의결과 본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다.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정현수의원외 2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사업장 57개소, 민간기업체 7개소 현지 시찰로 군 발주사업이 41개소, 읍.면 발주사업이 16개소, 민간기업체 7개소를 시찰하였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장 시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

□ 시찰개요

○ 시찰목적

주요사업의 현황과 성과.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효과적이고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95 예산안 심의시 활용 등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주요내용

— '94 금산군 주요사업장 57개소 및 민간기업체 7개소 현지 시찰 —

· 군 발주 사업 : 41개소
· 읍면 발주 사업 : 16개소
· 민 간 기 업 체 : 7개소

○ 시찰일정

일 정	1 일 차 (목) (10.20)	2 일 차 (금) (10.21)	3 일 차 (토) (10.22)	4 일 차 (월) (10.24)	5 일 차 (화) (10.25)	6 일 차 (수) (10.26)
읍 면	금 성 면 진 산 면	복 수 면	부 리 면	금 성 면 추 부 면	제 원 면 군 북 면	남 일 면 남 이 면 금 산 읍

□ 총 평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공기에 따라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일부사업은 공사의 특수성으로 이월이 검토되었고, 사업추진 및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곳도 있었으며 남일면 상동리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구 설치 공사에 있어 배수불량과 상동교 교량가설 공사는 예산 5억중 3억 7천 3백만원을 들여 공사를 실시하여 잔액으로 교량폭 확대와 주변공사 실시가 아쉬웠음

이번 시찰의 성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인식을 같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도로포장(시멘트)에 있어, 전년도 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었고, 사업추진시 사전에 위치선정 등 심사숙고 하여야 겠다는 교훈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음.

□ 미담사례

금성면 대암선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마을 총의로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전체에 대하여 무상 사용승락(싯가 약3억원 정도)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도모함으로 타지역의 귀감이 되었음

□ 첨부 : 읍면별 측정 현황

읍면별 측정 현황

읍 면 별	사 업 장 명	측정일시	설계상	측 정	비 고
금 산 읍	한진아파트앞포장	10. 26	20㎝	17㎝, 23㎝ 24㎝	
금 성 면	하류리진입로포장	10. 20	20㎝	24㎝	
제 원 면	수당리진입로포장	10. 25	20㎝	23㎝	
부 리 면	창평리진입로포장	10. 22	20㎝	25㎝	
군 북 면	조정리진입로포장	10. 25	20㎝	23㎝	
남 일 면	신동리진입로포장	10. 26	20㎝	23㎝ 25㎝	
남 이 면	대양리진입로포장	10. 26	20㎝	17㎝ 18㎝	
진 산 면	읍내리마을안길	10. 20	20㎝	27㎝	
복 수 면	지량리농촌도로	10. 21	20㎝	22㎝	
추 부 면	신평리진입로포장	10. 24	20㎝	23㎝	

제 34 절 제34회 금산군 의회(정기회)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19일 소집공고를 하여 '94년 11월 25일 제34회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서명의원은 오규영 의원과 박승우 의원 선임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지방자치법 제38조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결정했다.

제34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34회 금산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94. 11. 25 (금) 10 : 00	1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95년도 금산군 예산안에 대한 군정연설의 건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제의 〃 〃
'94. 11. 26 (토) 10 : 00	1	감 사 특 위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2. 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94. 11. 26 (토) 10 : 00	1	예 결 특 위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결정의 건	
'94. 11. 28 (월) 10 : 00	2	본회의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93년도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9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허병문의원외 2인 발의 금산군수 제출 〃
'94. 11. 29 (화) 10 : 00	3	본회의	1. '9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94. 11. 30 (수) 10 : 00	4	본회의	1. '9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94. 12. 1 (목) 10 : 00	5	본회의	1. '9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4. 12. 2 (금) 10 : 00	2	감 사 특 위	1. 행정사무 감사	
'94. 12. 3 (토) 10 : 00	3	감 사 특 위	1. 행정사무 감사	
'94. 12. 5 (월) 10 : 00	4	감 사 특 위	1. 행정사무 감사	
'94. 12. 6 (화) 10 : 00	5	감 사 특 위	1. 행정사무 감사	
'94. 12. 7 (수) 10 : 00	6	감 사 특 위	1. 행정사무 감사	
'94. 12. 8 (목) 10 : 00	7	감 사 특 위	1.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94. 12. 9 (금) 10 : 00	2	예 결 특 위	1. '93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금산군수 제출 〃
'94. 12. 10 (토) 10 : 00	3	예 결 특 위	1. '93년도 금산군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94. 12. 12 (월) 10 : 00	6	본회의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3. 휴회의 건	허병문의원외 8인제출 금산군수 제출 의장 제의
'94. 12. 13 (화) 10 : 00	4	예 결 특 위	1. '95년도 금산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94. 12. 14 (수) 10 : 00	5	예 결 특 위	1. '95년도 금산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94. 12. 15 (목) 10 : 00	6	예 결 특 위	1. '95년도 금산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94. 12. 19 (월) 10 : 00	7	예 결 특 위	1.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95년도 금산군 세입세출수정 예산안 심의의 건	금산군수 제출 〃
'94. 12. 20 (화) 10 : 00	8	예 결 특 위	1.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95년도 금산군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
'94. 12. 21 (수) 10 : 00	7	본회의	1.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 2.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4. '95년도 금산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금산군수 제출 〃 〃 〃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4.12.26 (월) 10 : 00	8	본회의	1. 금산군세 감면 조례안 심의의 건 2. 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금산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금산군수제출 〃 〃 〃
'94.12.29 (목) 10 : 00	9	본회의	1. '95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 2. 금산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액화 석유가스 용기 계량기 부착 건의안 채택의 건	금산군수 제출 〃 오규영의원외2인 발의

나. '95년도 금산군 예산안에 대한 군정연설의 건

김동완 금산군수의 설명으로 U.R대응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제고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사회복지증진, 환경보존부문 등에 중점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본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및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현수 의원, 한규용 의원, 허병문 의원, 길부섭 의원, 박찬헌 의원, 박천보 의원, 오규영 의원, 박승우 의원, 태진수 의원등 이상 9명으로 구성되어 졌다.

라. 휴회의 건

행정사무감사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4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허병문 의원의 설명으로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특위운영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것이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9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감사의 목적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감사기간 : '94. 12. 2~12. 8(7일간)

□ 감사 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의 사무중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사무.

□ 감사 대상기관

○ 금산군(군청)

○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 읍.면

□ 감사반 편성

○ 감사위원(9인)

위원장 : 허병문 간사 : 한규용

위 원 : 정현수, 길부섭, 박찬헌, 박천보, 오규영, 박승우, 태진수

○ 사무보조자(4인) : 전문위원 박귀전, 의사계장 노상영, 길성용, 오광택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정	대 상 기 관 (부 서)	감 사 장 소
12. 2. (금) 10 : 00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 읍면 현지확인(필요시)	위원회회의실
12. 3. (토) 10 : 00	○ 재무과, 지적과 ○ 읍면 현지확인(필요시)	위원회회의실
12. 5. (월) 10 : 00	○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 읍면 현지확인(필요시)	위원회회의실
12. 6. (화) 10 : 00	○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보건소 ○ 읍면 현지확인(필요시)	위원회회의실
12. 7. (수) 10 : 00	○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 읍면 현지확인(필요시)	위원회회의실
12. 8. (목) 14 : 00	○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위원회회의실

□ 감사요령

○ 관계공무원 선서

○ 보고 청취

○ 질의 답변(1문 1답식, 필요시 증인 또는 참고인 진술 요구)

○ 필요시 현지 확인

□ 기타 필요사항

○ 현지확인 요구시 차량 지원

○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발언,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의장경유 통보

출석 대상자 명단

출석일	출석장소	출석대상공무원		비고
		직위	성명	
12. 2. (금) 10 : 00	위원회회의실	기획실장	김희철	
		문화공보실장	윤중현	
		내무과장	호준환	
		사회진흥과장	육순우	
12. 3. (토) 10 : 00	위원회회의실	재무과장	강병순	
		지적과장	김홍규	
12. 5. (월) 10 : 00	위원회회의실	사회과장	정정학	
		환경보호과장	김종인	
		가정복지과장	정육지	
		산업과장	이홍용	
		환경사업소장	최병기	
12. 6. (화) 10 : 00	위원회회의실	지역경제과장	최윤현	
		산림과장	이동택	
		건설과장	최정우	
		보건소장	길승환	
12. 7. (수) 10 : 00	위원회회의실	도시과장	전영식	
		민방위과장	오정환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첨부 :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1부

나. '93년도 회계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

다. '9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및 '95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금산군수의 제출로 '9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11월 28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11월 29일에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11월 30일에는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12월 1일에는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였다.

3. 제3차 본회의

가. '9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4. 제4차 본회의

가. '9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및 '95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5. 제5차 본회의

가. '9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및 '95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6. 제6차 본회의

가. '9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허병문 의원의 보고로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금산군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사무,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일정별 주요감사 내용등의 순서로 보고를 하였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나.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

다. 휴회의 건

'95년도 예산안 심의및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하였다.

7. 제7차 본회의

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이 일괄상정 되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현수 의원이 보고를 하였다.
주요 보고사항은 심사경과,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요지,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결산검사요지 순으로 보고를 하였으며 질의및 소수의견과 기타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2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나.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현수 의원의 보고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를 보고하였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다. '95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현수 의원이 보고를 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본 안건을 의결하자는 내용이었다. 의결에 앞서 '95년도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출부분의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에서 전영식 기획실장은 의원들이 발의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95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8. 제8차 본회의

가. 금산군세 감면 조례안 심의의 건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현행 금산군세의 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4개의 감면 조례를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농어촌주택개량, 대중교통, 지역발전지원등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개정코자 함에 있었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나. 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정정학 사회과장의 설명으로 본 조례의 융자한도액이 낮고 상환방법상 기간이 짧아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뒤따라 이를 해소시켜 신속한 자금회전으로 수혜자를 확대하며 적정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는등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었다. 주요골자는 융자한도액이 5백만원 이었던 것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융자기간을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융자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함이었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다.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금산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김종인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9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가 됨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안한다고 하였다.

또 금산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안이유를 밝혔다.

심의결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9. 제9차 본회의

가. '95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인삼에 대한 역사의 산교육장및 품위있는 휴식공간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및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금산인삼민속촌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를 취득코자 제안설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나. 금산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오정환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93년 8월 9일및 '94년 5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금산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다. 액화 석유가스 용기 계량기 부착건의안 채택의 건

오규영 의원외 2인 발의로 충전소에서 적량의 가스충전을 유도하고 잔량을 손쉽게 확인하여 용기의 교체시기를 파악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코자 건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액화 석유가스용기 계량기 부착 건의(안)

액화 석유가스(가정용 푸로판)는 거의 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로 그 구입방법은 판매소의 배달에 의한 용기구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량을 표시하는 증지를 붙여야하는 용기의 종류는 액화 석유가스를 질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의 내용적 10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용기가 상기법에 해당되는 용기이어서 질량단위로 판매가 되어 일반가정에서는 충전량의 확인을 증지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는 잔량을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충전소에서의 적량을 충전하였는지 의심이 되는 사항임.

따라서, 금산군의회 의원 전원은 석유가스 용기에 계량기를 부착 제작하게 하여 일반가정에서 손쉽게 충전량 및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994. 12. .

금 산 군 의 회 의 원 일 동

10.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가. 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본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및 제6조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토록 되어 있어 위원장에 허병문 의원, 간사에 한규용 의원이 선출되었다.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해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감사계획서는 박귀전 전문위원이 낭독하였다.

감사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4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 감사의 목적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감사기간 : '94. 12. 2~12. 8(7일간)

□ 감사 대상사무

-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
-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의 사무중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사무

□ 감사 대상기관

- ○ 금산군(본청)
- ○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 ○ 읍.면

□ 감사반 편성

- ○ 감사위원(9인)

  위원장 : 허병문　　간 사 : 한규용

  위 원 : 정현수, 길부섭, 박찬헌, 박천보, 오규영, 박승우, 태진수
- ○ 사무보조자(4인) : 전문위원 박귀전, 의사계장 노상영, 길성용, 오광택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정	대 상 기 관 (부 서)	감 사 장 소
12. 2. (금) 10 : 00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 읍면 현지확인(필요시)	위원회회의실
12. 3. (토) 10 : 00	○ 재무과, 지적과 ○ 읍면 현지확인(필요시)	위원회회의실
12. 5. (월) 10 : 00	○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 읍면 현지확인(필요시)	위원회회의실
12. 6. (화) 10 : 00	○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보건소 ○ 읍면 현지확인(필요시)	위원회회의실
12. 7. (수) 10 : 00	○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 읍면 현지확인(필요시)	위원회회의실
12. 8. (목) 14 : 00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위원회회의실

□ 감사요령

○ 관계공무원 선서

○ 보고 청취

○ 질의 답변(1문 1답식, 필요시 증인 또는 참고인 진술 요구)

○ 필요시 현지 확인

□ 기타 필요사항

○ 현지확인 요구시 차량 지원

○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발언,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의장경유 통보

출석 대상자 명단

출석일	출석장소	출석대상공무원		비고
		직위	성명	
12. 2. (금) 10 : 00	위원회회의실	기획실장	김희철	
		문화공보실장	윤중현	
		내무과장	호준환	
		사회진흥과장	육순우	
12. 3. (토) 10 : 00	위원회회의실	재무과장	강병순	
		지적과장	김홍규	
12. 5. (월) 10 : 00	위원회회의실	사회과장	정정학	
		환경보호과장	김종인	
		가정복지과장	정육지	
		산업과장	이홍용	
		환경사업소장	최병기	
12. 6. (화) 10 : 00	위원회회의실	지역경제과장	최윤현	
		산림과장	이동택	
		건설과장	최정우	
		보건소장	길승환	
12. 7. (수) 10 : 00	위원회회의실	도시과장	전영식	
		민방위과장	오정환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첨부 :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1부

나. 제2차 위원회

1) '9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집행기관의 감시기능으로 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으며 본 감사계획은 '94년도 11월 26일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본 계획의 일정및 내용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실.과 사업소별로 1문1답식의 질의.답변도 있었다.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첫째날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18시00분에 산회를 하였다.

다. 제3차 위원회

1) '9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재무과, 지적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으며 12시 20분에 산회를 하였다.

라. 제4차 위원회

1) '9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으며 17시13분에 산회를 하였다.

마. 제5차 위원회

1) '9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보건소,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하였으며 16시37분에 산회를 하였다.

바. 제6차 위원회

1) '9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도시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하였으며 11시55분에 산회를 하였다.

사. 제7차 위원회

1) '9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한규용 위원의 보고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4 행정사무감사 결과

□ 감사의 목적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감사기간 : '94. 12. 2~12. 8(7일간)

□ 감사 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의 사무중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사무.

□ 감사 대상기관

○ 금산군(군청)

○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 읍. 면

□ 감사반 편성

○ 감사위원(9인)

위원장 : 허병문 간사 : 한규용

위 원 : 정현수, 길부섭, 박찬헌, 박천보, 오규영, 박승우, 태진수

○ 사무보조자(4인) : 전문위원 박귀전, 의사계장 노상영, 길성용, 오광택

□ 일정별 주요 감사 내용

월 일	대상부서	방 법	주요감사내용
12. 2	기 획 실	질의. 답변	1. 군정 설문조사 현황 2.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 3. 무료법률 상담 현황 4. 행정소송 업무 현황
〃	문화공보실	〃	1. 중요사업 추진 현황 2.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3. 문화재 현황 4. 금산관광 개발 계획 5. 금산인삼제 행사 결산 현황
〃	내 무 과	〃	1. 직원 결원 보충 현황 2. 여름군청 운영 현황 3. 4대질서 지키기 운동 현황 4. 오지마을 이동관서제 운영 현황 5. 읍면 종합감사 조치현황

월 일	대상부서	방 법	주 요 감 사 내 용
12. 2	사회진흥과	질의. 답변	1. 중요사업 추진 현황 2.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3. 협동권 도로개설 사업 현황 4. 금산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현황 5. 비지정 관광지 관리 현황 6. 오지 종합개발 사업 현황 7. 공설운동장 건립 현황
12. 3	재 무 과	〃	1.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2. 지방세 징수 현황 3. 고액 체납자 현황 4. 시설공사 집행 현황 5. 국.공유 재산 현황 6. 군유재산 매각 현황 7. 누락 국.공유재산 찾기 현황
〃	지 적 과	〃	1. 지적민원 처리 현황 2.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처리 현황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추진
12. 5	사 회 과	〃	1.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2.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현황 3. 장애인 보호사업 현황 4.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 지원사업 현황 5. 간이급수 시설 현황 6. 의료기관별 진료비 지급 현황
〃	가정복지과	〃	1. 경로당 신.개축 현황 2. 사회복지 및 육아시설 지원 현황 3. 여성단체 현황 4. 여성 기술교육 실시 현황 5. 알뜰시장 운영 현황 6. 공동묘지 운영 관리 현황 7. 모자가정 지원 현황
〃	산 업 과	〃	1. 중요사업 추진 현황 2.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3. 농지전용 허가 현황 4. 영농기계화 사업 추진 현황 5.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현황 6. 위탁영농회사 운영 현황 7. 토종인삼 상품화 추진 현황

월 일	대상부서	방 법	주 요 감 사 내 용
12. 5	환경보호과	질의. 답변	1.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 2.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 3. 쓰레기 매립부지 확보 대책 4.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현황
〃	환경사업소	〃	1. 분뇨종말 처리장 현황 2.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장 현황
12. 6	지역경제과	〃	1. 기업체 현황 2. 기업체별 군민 취업알선 현황 3. 노동조합 육성 현황 4. 유망 중소기업체 유치 현황 5. 금산 지방공단 조성 현황 6. 노상 유료 주차장 운영 현황
〃	산 림 과	〃	1. 산림 훼손허가 현황 2.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 현황 3. 산림사범 발생 현황
〃	건 설 과	〃	1. 중요사업 추진 현황 2. 도로 포장공사 추진 현황 3. 관정 현황 4. 경지정리 사업 현황 5.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현황
〃	보 건 소	〃	1.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현황 2. 전염병 예방접종 현황 3. 약국 및 약종상 현황 4. 가족계획 및 가정간호사업 현황
〃	〃	〃	1.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현황 2. 전염병 예방접종 현황 3. 약국 및 약종상 현황 4. 가족계획 및 가정간호사업 현황
〃	민 방 위 과	〃	1. 민간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2. 민방위대 편성 현황 3. 민방위 장비 현황 4. 의용소방대 편성 및 지원 현황
12. 7	도 시 과	〃	1. 이월사업 현황 2.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계획 3. 택지조성 사업 현황 4.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 5.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6. 금산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현황

월 일	대상부서	방 법	주 요 감 사 내 용
12. 7	농촌지도소	질의. 답변	1. U.R대비 소득작목 지도 현황 2. 농기계 순회 수리 현황 3. 인삼관련 가공식품 개발 현황

□ 행정사무감사결과 현황

실 과 명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비 고
계	49	19	25	5	
기 획 실	3	3			
문화공보실	3	2	1		
내 무 과	2	1	1		
사회진흥과	4	2	2		
재 무 과	4	1	2	1	
지 적 과	1	1			
사 회 과	3	1	1	1	
환경보호과	4		4		
가정복지과	2	2			
산 업 과	4		4		
지역경제과	4	1	3		
산 림 과	4	1	2	1	
건 설 과	2	1	1		
도 시 과	4	3		1	
민방위과	1		1		
보 건 소	3		2	1	
농촌지도소	1		1		

1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본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및 제6조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토록 되어있어 위원장에 정현수 위원, 간사에 박찬헌 위원이 선출되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확정의 건

박귀전 전문위원의 설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심의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작성한 원안대로 확정이 되었다.

나. 제2차 위원회

1) '93년도 금산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금산군 '93년도 회계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설명을 청취한후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세 입 결 산 총 괄 표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미수납액 (나)-(마)	미수납액처리	
					수입총액 (다)	과오납반환액 (라)	실제수납액 (마)		결손처분	이월액
합 계			64,873,206,570	65,451,463,702	64,999,181,330	71,598,700	64,927,582,630	523,881,072	23,349,440	500,531,632
일반회계	계		48,817,660,660	49,430,271,477	49,304,528,961	10,308,700	49,294,220,261	136,051,216	23,002,970	113,048,246
	지방세		4,552,000,000	4,724,514,975	4,640,614,639	4,450,410	4,636,164,229	88,350,746	22,716,110	65,634,636
		보통세	4,217,000,000	4,356,893,073	4,293,397,999	3,454,040	4,289,943,959	66,949,114	9,977,410	56,971,704
		목적세	324,000,000	338,579,600	335,084,040	996,370	334,087,670	4,491,930	12,890	4,479,040
		과년도수입	11,000,000	29,042,302	12,132,600	0	12,132,600	16,909,702	12,725,810	4,183,892
	세외수입		7,818,135,660	8,024,883,502	7,977,291,322	108,290	7,977,183,032	47,700,470	286,860	47,413,610
		경상적수입	1,514,766,000	1,641,534,907	1,638,222,057	0	1,638,222,057	3,312,850	0	3,312,850
		임시적수입	6,303,369,660	6,383,348,595	6,339,069,265	108,290	6,338,960,975	44,387,620	286,860	44,100,760
	지방교부세		20,210,001,000	20,510,000,000	20,510,000,000	0	20,510,000,000	0	0	0
		법정교부세	20,210,000,000	20,510,000,000	20,510,000,000	0	20,510,000,000	0	0	0
		증액교부세	1,000			0	0	0	0	0
	보조금		12,237,524,000	12,170,873,000	12,176,623,000	5,750,000	12,170,873,000	0	0	0
		국고보조	6,686,431,000	6,635,877,000	6,641,627,000	5,750,000	6,635,877,000	0	0	0
		도비보조	5,551,093,000	5,534,996,000	5,534,996,000	0	5,534,996,000	0	0	0
	지방채		4,000,000,000	4,000,000,000	4,000,000,000	0	4,000,000,000	0	0	0

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미수납액 (나)-(라)	미수납액처리	
				수입총액 (다)	과오납반환액 (라)	실제수납액 (마)		결손처분	이월액
특별회계	계	16,055,545,910	16,021,192,225	15,694,652,369	61,290,000	15,633,362,369	387,829,856	346,470	387,483,386
	상수도사업	2,591,018,000	2,623,195,430	2,616,765,818	0	2,616,765,818	6,429,612	0	6,429,612
	주택관리	279,289,000	252,071,412	206,723,721	0	206,723,721	45,347,691	0	45,347,691
	새마을소득금고	53,808,000	61,757,304	60,727,304	0	60,727,304	1,030,000	0	1,030,000
	새마을소득지원	112,218,000	173,802,557	173,402,557	0	173,402,557	400,000	0	400,000
	영세민생활안정	167,798,000	176,355,955	166,478,115	0	166,478,115	9,877,840	0	9,877,840
	의료보호	2,654,126,000	2,654,987,257	2,654,008,587	0	2,654,008,587	978,670	346,470	632,200
	공유임야	2,161,000	2,518,410	2,518,410	0	2,518,410	0	0	0
	농공지구	1,700,366,290	1,505,387,065	1,199,916,670	0	1,199,916,670	305,470,395	0	305,470,395
	양여금	7,927,420,620	7,954,006,890	8,015,296,890	61,290,000	7,954,006,890	0	0	0
	구획정리	46,815,000	39,096,335	27,282,687	0	27,282,687	11,813,648	0	11,813,648
	골재판매	423,407,000	428,179,090	428,179,090	0	428,179,090	0	0	0
	주차장	97,119,000	149,834,520	143,352,520	0	143,352,520	6,482,000	0	6,482,000

세출결산총괄표

구분		예산액 (가)	예산성립후 증감액 (나)	예산현액 (다) 가+나	지출원인행위액 (라)	지출액 (마)	익년도이월액 (바)	불용액 (다-마-바)
합계		58,896,126,000	5,977,080,570	64,873,206,570	60,604,353,717	54,822,556,937	7,829,796,780	2,220,852,853
일반회계	계	45,692,947,000	3,124,713,660	48,817,660,660	45,745,474,050	42,079,026,140	5,714,447,910	1,024,186,610
	의회비	379,614,000	0	379,614,000	372,348,400	372,348,400	0	7,265,600
	일반행정비	11,465,253,000	59,763,000	11,525,016,000	11,302,095,790	11,244,347,190	57,748,600	222,920,210
	사회복지비	5,121,530,000	528,747,160	5,650,277,160	5,516,129,540	5,249,010,090	267,119,450	134,147,620
	산업경제비	9,537,399,000	293,915,000	9,831,314,000	9,746,321,730	9,168,823,660	577,498,070	84,992,270
	지역개발비	14,595,670,000	1,405,313,500	16,000,983,500	15,737,303,600	13,481,992,000	2,263,311,600	255,679,900
	문화및체육비	3,533,258,000	877,920,000	4,461,178,000	2,276,253,940	1,767,483,750	2,548,770,190	144,924,060
	민방위비	298,053,000	0	298,053,000	266,513,840	266,513,840	0	31,539,160
		712,170,000	△40,945,000	671,225,000	528,507,210	528,507,210	0	142,717,790
특별회계	계	13,203,179,000	2,852,366,910	16,055,545,910	14,858,879,667	12,743,530,797	2,115,348,870	1,196,666,243
	상수도사업	1,914,018,000	677,000,000	2,591,018,000	2,290,315,430	1,346,832,430	943,483,000	300,702,570
	주택관리	279,289,000	0	279,289,000	178,599,820	178,599,820	0	100,689,180
	새마을소득금고	53,808,000	0	53,808,000	50,315,080	50,315,080	0	3,492,920
	새마을소득지원	112,218,000	0	112,218,000	103,318,760	103,318,760	0	8,899,240
	영세민생활안정	167,798,000	0	167,798,000	133,000,000	133,000,000	0	34,798,000
	의료보호	2,654,126,000	0	2,654,126,000	2,653,266,067	2,653,266,067	0	859,933
	공유임야	2,161,000	0	2,161,000	0	0	0	2,161,000
	농공지구	1,424,896,000	275,470,290	1,700,366,290	1,195,618,770	1,195,618,770	0	504,747,520
	양여금	6,027,524,000	1,899,896,620	7,927,420,620	7,756,617,810	6,665,875,940	1,090,741,870	170,802,810
	구획정리	46,815,000	0	46,815,000	0	0	0	46,815,000
	골재판매	423,407,000	0	423,407,000	415,269,000	371,745,000	43,524,000	8,138,000
	주차장	97,119,000	0	97,119,000	82,558,930	44,958,930	37,600,000	14,560,070

예 비 비 지 출 현 황

19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3,517,000원으로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외 2건에 40,94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으며 그 지출액은 다음과 같고, 예비비 사용잔액 142,572,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행위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나-다	불용액 가-나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세항	세세항	사업명						결정일자	지출일자	승인일자	
계		(3건)	40,945,000	40,945,000	40,945,000	0	0				
2212 서무관리	2212-3-104 기본경상비-기타수당	명예퇴직수당	23,850,000	23,850,000	23,850,000	0	0	93. 6.18	93. 6.26		'93상반기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지급
4131 농산관리	4131-5-431 주요사업비-민간자본보조	병충해방제용 농약대지원	7,995,000	7,995,000	7,995,000	0	0	93. 8.23	93. 11.		계속되는 장마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이삭도열병 발생 우려 지역에 긴급 공동방제용 농약대 지원
"	4131-4-229 경상사업비-재료비 기타	병충해방제용 농약대지원	9,100,000	9,100,000	9,100,000	0	0	93. 8.25	93. 9. 2		계속되는 장마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냉해 피해 및 목도열병 다발 지역에 긴급 공동방제용 농약대 지원

다. 제3차 위원회

1) '93년도 금산군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박찬헌 간사의 낭독으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4년 10월 24일 금산군수이며 회부일자 제1차 예결특위는 '94년 11월 26일 상정일자 제2차 예결특위는 '94년 12월 9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하였다.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요지는 세입예산액 588억 9,612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9억 7,708만 57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648억 7,320만 570원중 수납액은 649억 2,758만 2,630원이었다. 세출예산액은 588억 9,612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9억 7,708만 5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48억 7,320만

570원에 지출액은 548억 2,255만 6,937원이며 차인잔액 101억 502만 5,693원은 회계별로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20억 4,800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57억 8,179만 6,7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190만 4,770원, 세계잉여금 21억 9,332만 4,143원 이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예비비 사용잔액 1억 9,720만 4천원 중 일반회계 지출승인 요구액은 4,094만 5천원이며 예비비 사용잔액 1억 5,625만 9천원은 회계별로 '94년도로 이월하였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는 없고 계속비도 없다는 요지이었다.

심의결과 본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며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라. 제4차 위원회

1) '95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김회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요지와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정에 따라 실. 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다. 심사방법은 실. 과장으로 부터 소관에 해당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심사를 모두 마친후에는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였다.

1995년도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5년도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 산 총 칙

제1조 19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 계	59,648,428	1,789,449
일 반 회 계	53,219,508	1,596,585
특 별 회 계	6,428,920	192,86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71,351	62,140
주택관리특별회계	168,411	5,05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199,436	65,983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30,747	6,922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22,564	6,676
농공지구특별회계	1,244,263	37,327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162,000	4,86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30,148	3,904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4,935천원으로 한다.

마. 제5차 위원회

1) '95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계속)

바. 제6차 위원회

1) '95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계속)

사. 제7차 위원회

1)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김희철 기획실장의 설명으로 의존재원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일부 변경및 신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아니라 인건비의 과부족을 판단 정리하고 불용예상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업중 년내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9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월절차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94년도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어졌다.

예 산 총 칙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계	57,520,894	1,725,662
일반회계	51,885,561	1,556,566
특별회계	5,635,333	169,05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66,896	50,006
주택관리특별회계	177,948	5,33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281,689	68,45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32,162	9,964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9,582	6,587
농공지구특별회계	498,344	14,950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275,143	8,254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83,569	5,507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3,733천원으로 한다.

199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수정발의 예산(안)

예 산 총 칙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계	57,532,427	1,725,968
일반회계	51,897,094	1,556,912
특별회계	5,635,333	169,05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66,896	50,006
주택관리특별회계	177,948	5,33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281,689	68,45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32,162	9,964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9,582	6,587
농공지구특별회계	498,344	14,950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275,143	8,254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83,569	5,507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9,329천원으로 한다.

2) '95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최낙칠 예산계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해당 실.과 사업소에 대해서 1문1답식의 간단한 질의.답변도 있었다.
199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수정발의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예 산 총 칙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 계	59,124,543	1,773,732
일 반 회 계	52,695,623	1,580,868
특 별 회 계	6,428,920	192,86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71,351	62,140
주택관리특별회계	168,411	5,05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199,436	65,983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30,747	6,922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22,564	6,676
농공지구특별회계	1,244,263	37,327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162,000	4,86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30,148	3,904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199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7,135천원으로 한다.

아. 제8차 위원회

1)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박찬헌 간사의 보고로 '94년 12월 10일 금산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12일에 회부되었고 상정 및 심의일자는 '94년 12월 19일 제7차 예결특위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수정안 제출, 질의답변과 8차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7억 2,059만 8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7억 3,368만 4천원이 감되어 추경안의 규모는 9억 8,691만 4천원으로 1.7%가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75억 2,089만 4천원이고 소수 기타 의견도 없었다.

심의결과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2) '95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박찬헌 간사의 보고로 '94년 11월 21일 금산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94년 11월 25일 회부되었다. 상정은 '94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고 심사는 '94년 12월 13일 제4차 예결특위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주요사업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94년 12월 14일 제5차 예결특위에서는 주요사업보고와

'94년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는 주요사업보고, 질의답변, '94년 12월 19일 제7차 예결특위에서는 수정안 제출과 계수조정을 하였다.
김희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도 보고하였다.
수정발의안은 기획실의 동의를 얻었으며 군수 수정제출안은 원안대로 심의 채택하였다. 의원발의 예산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에서 전영식 기획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심의결과 본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며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 35 절 제3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35회 임시회는 95년 2월 2일 박승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였다.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5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의 보고 청취를 위하여 길부섭의원외 2인발의로 금산군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각 실과사업소로부터 95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회기는 92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며 제3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태진수의원, 이홍만의원이 서명하게 되었다. 제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3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5. 2. 9 (목요일) 10 : 00		○ 개회식	
	1	1. 회기결정의 건 2. 금산군수 인사의 건 3.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금산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95. 2. 10 (금요일) 10 : 00	2	1. 9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95. 2. 11 (토요일) 10 : 00	3	1. 9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95. 2. 13 (월요일) 10 : 00	4	1. 9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95. 2. 14 (화요일) 10 : 00	5	1. 9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95. 2. 15 (수요일) 10 : 00	6	1. 9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금산군수 인사의 건

95년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김행기 금산군수로부터 인사가 있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밝은 금산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착실한 준비가 절실하게 요청됨에 따라서 새로이 열리는 21세기를 지혜롭게 대비하면서 밖으로는 세계화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안으로는 지방화시대를 슬기롭게 열어가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올해의 군정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군정목표는 21세기 금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서 자립번영의 길을 찾아가는 비젼이 있고 경영이 보이는 행정에 군정의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 금산군수 인사의 건

길부섭의원외 2인이 발의한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길부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 안건은 95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주민대표 기관의 입장에서 보고를 청취하여 의정활동 자료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뜻이 담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17인을 95년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다.

다. 금산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95년 2월 7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금산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강병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이유는 관서당 경비에서 비품적 성격의 물품구입을 억제하고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물품출납장부 중 소모품 대장의 비치를 생략하도록 하여 물품관리 제도를 능률적이고 현실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금산군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관과장이 관서당경비로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시 경리관에게 품의요구를 하여야 하며, 불용품 매각시 감정기관의 평가 대상 범위를 물품의 종전 장부상 취득가격을 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물품 출납원의 비치장부중 소모품대장 삭제로 업무 간소화 물품의 종류 구분시 비품에 속하는 물품중 내용년수

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 제2차 본회의

가. 9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업무보고 첫번째 날로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진흥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1개 실과의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강병순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군정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95년도 군정의지 순으로 하였으며 이중 95년도 군정의지 보고 내용은

- 민원혁신 구상
- 변화하는 금산
- 주요업무 계획
- 자체특수시책 등이 보고 되었다.

3. 제3차 본회의

가. 9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업무보고 두번째날로 문화공보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는 윤중현 문화공보실장과 김홍규 지적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 결산, 95업무여건과 중점과제, 그리고 95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11시 40분에 산회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가. 9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업무보고 3일째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보건소 순으로 각 소관업무에 대하여 94년도 주요업무결산, 95업무여건과 중점과제, 그리고 95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특수시책과 현안사업등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17시에 산회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가. 95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업무보고 4일째로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각 소관업무에 대하여 94년도 주요업무결산, 95업무여건과 중점과제,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특수시책과 현안사업등의 보고가 있었다.

6. 제6차 본회의

가. 95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민방위과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는 김정원 민방위과장과 박대규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94년도 주요업무 결산 95업무여건과 중점과제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당면 현안사업등의 보고가 있었다.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11시 5분에 산회하였다.

제 36 절 제3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3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1995년 4월 26일 태진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3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995년 4월 10일 소집공고를 하여 1995년 4월 14일 제36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최윤현 사무과장의 보고에서 박천보 의원으로부터 95년 3월 23일 사직원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금산군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여 95년 3월 27일 사직 허가하였고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기관에 궐원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동안의 서명의원은 정현수의원, 한규용의원이 선임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 결정의 건

태진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 것으로 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었다.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36회 금산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5. 4.14 (금) 10 : 00			○ 개회식	
	1	본회의	1. 제36회 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2.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
			4. 금산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
			5. 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	〃
			6.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
			7. 금산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
			8.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
			9.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10. 금산군 상수도 설치확장 사업 추진에 따른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상수도 설치 건의 안	(정현수의원외 2인 발의)
			11. 의장단 선임의 건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95.4.15 (토) 10 : 00	2	본회의	1. 군수인사의 건	

나.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김진해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에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가 되어 동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주요골자로는 각 실·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여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되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의 정원을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별로 정하여 본청은 213명, 직속기관 92명, 사업소 17명, 읍·면 257명으로 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심의결과 2건 모두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다. 금산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무과장의 병가로 김영목 세정계장이 제안설명을 하였다.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주요골자는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문화로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징수 유예 규정을 적용토록 함이었고 1979년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건설기계(중기)에 재산세를 과세하던 것을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라. 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

길승환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읍·면 소속으로 되어 있던 읍·면 보건요원이 93년 8월 28일 금산군 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의 개정으로 보건소 소속으로 됨에 따라서 읍·면 방역소독에 있어서 적기성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하게 추진해 오던것을 행정의 말단 현장의 지도가 용이한 읍·면장에게 방역소독 업무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있었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보건소 분야 업무중 방역소독 약품 수급을 한다던지 방역소독 즉 잔류소독이나 연막소독, 우물소독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마.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김종인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으로 4건이 일괄상정 되었다.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이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시 청문절차를 정하고 과태료처분 통지등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다. 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이었다.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부,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준칙안에 의거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계획에 따라서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계획에 따라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4조 공중변소의 설치 제5조 개방변소의 설치 제6조 유료변소의 승인이 삭제되고 제4장 보칙 제16조중 또는 공중변소가 삭제되는 내용이었다.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내무부,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불결하고 시설장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행정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군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 및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소규모 규격봉투를 제작 활용케 함으로써 종량제 시행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함이었다. 심의결과 4건 모두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바. 금산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용담댐을 취수원으로하는 상수도설치 건의안

정현수의원외 2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금산군의 상수도시설은 금산상수도 계통과 마전 상수도 계통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금산 상수도의 취수원인 봉황천은 하상 퇴적 및 수원이 부족하여 하절기에는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전 상수도의 취수원인 금강 본류는 강변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교통사고시 공해물질 유입이 우려되고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갈수기시 전주권 용수 우선 배분으로 인한 하류부의 물 부족 현상으로 상시 유하량 감소로 인한 하천 자정능력 저하와 함께 하천 생태계 변화로 인한 수질의 악화가 예상됨으로 금산군의 상수도를 계획시설용량 1일당 50,000㎥상수도 시설 계획을 수원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한 용담댐으로 취수원을 설정하여 상수도 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수자원 공사에 건의코자 함이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산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용담댐을 취수원으로하는 상수도 설치건의문

우리 금산군은 금강상류에 위치한 군으로 우리군의 상류에는 무주군의 남대천이 흐르며 진안군에서 흐르는 금강수계에 용담댐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산군 상수도는 금산계통 7,600㎥/일과 마전계통 1,500㎥일인 9,100㎥/일 규모의 상수도시설로 용수를 공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상수도이용의 증가로 인하여 용수 부족으로 '94년에는 제한급수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산군에서는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2001년을 목표년도로 금산계통 12,000㎥/일과 마전계통 6,500㎥/일인 18,500㎥/일의 규모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상수도 취수원인 봉황천은 수질이 오염되고 하상퇴적이 심하여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마전상수도 취수원 상류에 용담댐이 건설 됨으로 인하여 댐 하류의 수량 및 수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군에서 장기계획으로 추진중인 취수원 일원화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산군의회 의원 전원은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추진되어 깨끗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조치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아 래

1.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상수도시설 확장
   댐 건설로 인하여 수량 및 수질의 악영향이 예측되어 용담댐 용수 배분계획에 금산군을 포함.
2. 댐 건설로 인한 군민들의 정서 반영
   용담댐의 근접지역에 위치한 금산군은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안개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등)금강본류의 수리권에 대한 기득권 차원에서 급수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
3. 전 군민이 이용하는 취수원 확보

댐 하류에 위치하여 댐 건설로 인한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될 금산군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종합적인 물관리로 양질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용담댐에서 금산군의 소요 용수(50,000㎥/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요망.

1995. 4

금산군의회 의원일동

사. 의장, 부의장 선임의 건

금산군의회 초대의원의 임기가 95년 4월 14일 종료됨으로 제2대 의원의 임기 개시일인 95년 7월1일까지는 77일간의 공백이 발생이 되어 94년 12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95년 6월 30일까지로 임기를

연장 하였으나 의장단 임기 문제는 달리 명문 규정이 없어서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라는 내무부의 공문이 있었다.

태진수 의원의 발언에서 간담회시에 의원간에 의사를 타진했고 해서 나머지 기간을 계속해서 수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본 건에 대하여는 95년 4월 15일 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의 임기가 연장이 되었다.

2. 제2차 본회의

가. 군수인사의 건

신임군수의 부임이 늦어져서 다음기회로 미루도록 하였다. 본회의를 마친 후에는 11시부터 청산회관 1층에서 금산군의회 개원 제4주년 기념식이 거행 되었다.

제 37 절 제3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1995년 5월 4일 이홍만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5월 6일 소집공고하여 '95년 5월 13일 제37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제출된 안건은 금산군수로 부터 '95년 5월 11일 금산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로는 '95년 5월 11일 한규용 의원외 2인으로 부터 주요사업장 시찰계획의 건이 접수되었다.

1. 제1차 본회의

가. 회기결정의 건

이홍만의원외 3인으로 부터 본의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개최하게 된 것으로 1995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었다.

제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3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개의일시	차수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95. 5. 13 (토) 10 : 00	1	본회의	1. 제3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수 인사의 건 3. 주요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 4.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한규용의원외 2인 발의 금산군수 제출 의장 제의 의장 제의
'95. 5. 15 (월) 10 : 00	1	예결위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2.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금산군수 제출
'95. 5. 17 (화) 10 : 00	2	예결위	1.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95. 5. 23 (화) 10 : 00	2	본회의	1.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9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3. 금산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4.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한규용의원외 2인 발의 금산군수 제출 〃 〃 〃

나. 군수 인사의 건

새로 부임한 곽영석 금산군수의 인사말에 이번 임시회 기간중 제1회 추경을 비롯하여 사업현장 시찰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는바 군의회의 뜻을 군민의 의사로 소중하게 받들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신뢰와 협조 기반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 주요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

한규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95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된 주요사업장을 시찰하여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그 뜻을 의정에 반영해 주민과 동참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사업장을 시찰한다고 밝혔다.
시찰기간은 '95년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되며 사업장은 '95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된 13개 사업장이고 시찰인원은 총 12인으로 의원 10인과 보조직원 2인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본건은 한규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정현수 의원, 한규용 의원, 허병문 의원, 길부섭 의원, 박찬헌 의원, 오규영 의원, 박승우 의원, 태진수 의원, 이홍만 의원 등 9명으로 구성이 되었다.

바. 휴회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이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및 주요사업장 시찰을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어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내용이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본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출토록 되어 위원장에 길부섭 위원, 간사에 허병문 위원이 선임이 되었다.

2)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전영식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당초 예산편성후 의존 재원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양여금의 일부 변경 및 신규지원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고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일용인부단가 인상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소요액이 필요 불가결함에 따라 군정의 올바른 업무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52억 7,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억 2,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 5,200만원이라고 밝혔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예 산 총 칙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합계	64,370,976	1,931,125
일반회계	56,990,204	1,709,706
특별회계	7,380,772	221,41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69,079	74,072
주택관리특별회계	200,687	6,02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416,818	72,504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26,166	9,784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13,031	9,390
농공지구특별회계	1,256,015	37,683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165,211	4,956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33,675	7,01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1995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2,963천원으로 한다.

예 산 규 모

(단위 : 천원)

구분 /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합계	64,370,976	59,094,543	5,276,433	
일반회계	56,990,204	52,665,623	4,324,581	
특별회계	7,380,772	6,428,920	951,852	
상수도	2,469,079	2,071,351	397,728	
주택관리	200,687	168,411	32,276	
의료보호기금	2,416,818	2,199,436	217,382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326,166	230,747	95,419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13,031	222,564	90,467	
농공지구	1,256,105	1,244,263	11,842	
골재판매	165,211	162,000	3,211	
주차장관리	233,675	130,148	103,527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검 토 보 고

□ 총 괄

□ 추경 예산(안) 규모

○ '95년 제1회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43억 2,458만 1천원으로 8.2%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9억 5,158만 2천원으로 14.8% 증가로 총예산 규모는 52억 7,643만 3천원이 증가된 643억 7,09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8.2%가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1회추경(안)	기 정 예 산	총 규 모	비 고
일 반 회 계	4,324,581	52,665,623	56,990,204	8.2%
특 별 회 계	951,582	6,428,920	7,380,772	14.8%
계	5,276,433	59,094,543	64,370,976	8.9%

□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

□ 세 입

□ 일반회계 : 43억 2,458만 1천원

○ 지 방 세 : 없 음

○ 세외수입 : 16억 2,281만 8천원

경상적 세외수입 : 1억 2,739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 14억 9,542만 4천원

○ 지방교부세 : 3억원

○ 지방양여금 : 2억 308만 6천원

보 조 금 : 5억 8,176만 9천원

국고보조금 : 1억 3,767만 2천원

도비보조금 : 4억 4,409만 7천원

○ 지정재원 : 16억 1,690만 8천원

□ 특별회계 : 9억 5,185만 2천원

○ 세외수입 : 5억 8,131만 9천원

○ 보 조 금 : 3억 7,053만 3천원

□ 세 출

□ 일반회계

○ 의 회 비 : △407만원

○ 일반행정비 : 7억 9,088만원

○ 사회복지비 : 4억 373만원

- ㅇ 산업경제비 : 11억 8,967만원
- ㅇ 지역개발비 : 16억 1,663만원
- ㅇ 문화및체육비 : 2억 4,324만원
- ㅇ 민 방 위 비 : 6,374만원
- ㅇ 지원및기타경비 : 2,075만원

□ 특별회계

- ㅇ 상수도특별회계 : 3억 9,772만원
- ㅇ 주택관리특별회계 : 3,227만원
- ㅇ 의료보호특별회계 : 2억 1,738만원
- ㅇ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 9,541만원
- ㅇ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 9,046만원
- ㅇ 농공지구특별회계 : 1,184만원
- ㅇ 골재판매특별회계 : 321만원
- ㅇ 주차장관리특별회계 : 1억 352만원

□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

□ 특별교부세사업

- ㅇ 일월이재 도로개설(성립전) : 3억원

□ 국고보조사업

- ㅇ 보육시설운영비 : 3,200만원
- ㅇ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10부, 성립전) : 2억 8,468만원
- ㅇ 기계화경작도로확포장 : 1억 920만원
- ㅇ 화림지구배수로정비공사(양) : 1,000만원
- ㅇ 군도포장공사(양) : 5,726만원

□ 도비보조사업

- ㅇ 도비 시범마을 지원 육성 : 1,200만원
- ㅇ 남일 신천1리 경노당신축 : 3,900만원
- ㅇ 남일 신천2리 경노당신축 : 3,400만원
- ㅇ 간이상수도수원개발관정(성립전) : 1억 2천만원
- ㅇ 폐농기계 수집소설치(1개소) : 3,347만원
- ㅇ 마을농기계간이소설치(3개소) : 1,440만원
- ㅇ 가뭄대비대형관정개발사업(17공 성립전) : 2억 5,500만원
- ㅇ 권율장군이치대첩비 : 4,600만원
- ㅇ 보석사보수 : 2,000만원
- ㅇ 귀암사보수 : 4,000만원

○ 상수도시설확장공사(도) : 1억 3,110만원
○ 급수관로 갱생 공사(융) : 4,200만원
○ 아인1리 용두교 앞 상수도관 매설공사(융) : 1,400만원
○ 아인1리 교육청 뒤 상수도관 매설공사(융) : 1,200만원
○ 상옥4리 한국타이어 기숙사 뒤 상수도관 매설(융) : 1,750만원
○ 신대2리 여사.상영체 상수도관 매설공사(융) : 3,000만원
○ 도수관로 제수변 설치 : 1,500만원
○ 마전1.6리 급수관 매설공사 : 2,000만원
○ 도수관로이음관 보수 : 1,700만원
○ 소득 금고 자금 융자 : 2,341만원
○ 소득특별지원자금 융자 : 7,000만원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 8,943만원
○ 공용주차장 조성 : 9,632만원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 1,180만원

※ 읍.면에 편성된 사업은 예산안 참고

□ 채무부담행위사업

○ '95군도 포장 공사 : 9,000만원
○ 창평교보수 : 2억 5천만원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 2억 4천만원
○ 복수농공지구오수관로보수 : 5,000만원

총 4건에 6억 3천만원은 당초예산에 군비로 부담해야함에도 본군의 재정형편상 미확보로 '95년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게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96년에 일시 상환한다는 사업임.

□ '95년도사고이월사업

'94년도 세출예산사업중 완공치 못하고 '95년도로 이월한 사고이월사업은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총 28건에 46억 6,254만원으로, 토지보상지연, 공기부족, 보조결정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었음.

사 고 이 월 사 업 조 서

(단위 : 천원)

회 계 별	건 수	지출원인액	지 출 액	이 월 액	비 고
계	28	11,533,268	6,870,725	4,662,543	'94 35건
일 반 회 계	27	11,485,757	6,846,064	4,639,693	5,781,797 이월
특 별 회 계	1	47,511	24,661	22,850	

○ 대원정사이전개축 : 2,000만원
○ 유곡사번와및 담장보수 : 2,500만원
○ 충효시설물(효자비각) : 1,000만원
○ 의용 소방대 출근수당 : 4,845만원

□ 자체사업
○ 생활민원사업비 : 3,000만원
○ 청사 보일러 교체 : 5,500만원
○ 도로순찰차량구입 : 900만원
○ 가정복지회관건립비 : 3억원
○ 진산 만악3리 경로당 신축 : 1,000만원
○ 에이즈항체검사장비구입(추가) : 2,880만원
○ 환경사업소신축 : 2,989만원
○ 폐기물종합단지타당성조사계획 : 3,000만원
○ 제원면 쓰레기매립장 설치 : 1,500만원
○ 농기계 공작실 신축 : 6,530만원
○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 3억원
○ 자연휴양림조성 : 3,000만원
○ 복수 농공단지 오수관로 보수 : 4,334만원
○ 택지조성사업지구지적측량수수료 : 1,123만원
○ 택지조성사업지구정화사업 : 1억원
○ 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 보상 : 3,200만원
○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 : 3,630만원
○ 상옥리 소방도로 개설 : 1억 2,495만원
○ 대원연립앞 소방도로 개설 : 5,100만원
○ 택지조성사업청산금지급 : 2억 1천만원
○ 과적차량단속 적중계구입 : 2,500만원
○ 하천 기성제 긴급 유지 보수 : 1,500만원
○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 6억 400만원
○ 경보등설치(2개소) : 1,000만원
○ 문화원 자랑스런 금산책자발간지원 : 3,000만원
○ 금산향교보수 : 1,500만원
○ 부리 청풍사 화장실 신축 : 1,500만원
○ 홍관정 정비 : 2,000만원

□ 특별회계사업
○ 의료 보호 진료비(국) : 1억 4,290만원

□ '95년도 제1회 추경(안)의 특징

○ 본 추경(안)의 특징은 '94년도 예산집행의 결산적인 성격이 있으며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증액 및 특별교부세와 지정재원증액으로 자본지출에 중점투자하였고 인건비 조정등으로 편성되었음이 특징임.

□ 검 토 의 견

○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3억원은 특기할 만한 수입이며 순세계잉여금 13억 4,842만원은 세입전망으로 볼때 극히 염려한바도 있었으나 절감과 계획재정 운영의 성과라 할 수 있으며

○ 본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기정예산까지 포함하여 재정자립도가 22.1%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자체재원확보가 절실한 과제인데도 경영사업등 자체세수증대 의지가 부족함.

○ 세출예산(안)은 자랑스런 금산건설을 위하여 지역 균형투자와 아울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주력하였고 '95년도계획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4건에 6억 3천만원의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됨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며

○ 사고이월사업은 전년도에 비하여 20%가 감소되었으나 토지보상지연과 사업확정지연 등 7건 사업은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했더라면 사고이월되지 않았으리라 믿어지며 아쉬움이 있음.

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간사인 허병문의원의 보고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 제출자 : '95년 5월 11일 금산군수

나. 회부일자 : '95년 5월 13일

다. 상정 및 심의일자

○ 상정 : 제1차예결특위 : '95. 5. 15 제안설명, 검토보고

○ 심의 : '95. 5. 16 심의, 계수조정

제2차예결특위 : '95. 5. 17 심사보고서 채택

□ 제1차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추 경 안	기 정 예 산	예 산 규 모	비 고
합 계	5,276,433	59,094,543	64,370,976	
일 반 회 계	4,324,581	52,665,623	56,990,204	
특 별 회 계	951,852	6,428,920	7,380,772	
상 수 도	397,728	2,071,351	2,469,079	
주 택 관 리	32,276	168,411	200,687	
의 료 보 호 기 금	217,382	2,199,436	2,416,818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95,419	230,747	326,166	
영 세 민 생 활 안 정 기 금	90,467	222,564	313,031	
농 공 지 구	11,842	1,244,263	1,256,105	
골 재 판 매	3,211	162,000	165,211	
주 차 장 관 리	103,527	130,148	233,675	

□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전영식)

○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양여금의 일부 변경 및 신규재원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고

○ '94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 일용인부의 단가 인상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추가 소요액이 필요 불가결하고

○ 그동안 미부담 군비확보와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여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

□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박귀전)

○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3억은 특기할 만한 수입이며 순세계잉여금 13억 4,842만원은 세입전망으로 볼때 극히 염려한 바도 있으나 절감과 계획재정 운영의 성과라 할 수 있으며

○ 본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기정예산까지 포함하여 재정자립도가 22.1%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자체재원 확보가 절실한 과제인데도 경영사업 등 자체세수증대 의지가 부족함.

○ 세출예산(안)은 자랑스런 금산건설을 위하여 지역균형투자와 아울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주력하였고, '95년도 계획사업을 년내에 마무리 하기 위하여 4건에 6억 3천만원의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됨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며

○ 사고이월사업은 전년도에 비하여 20%가 감소되었으나 토지보상 지연과 사업확정 지연 등 7건의 사업은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했더라면 사고이월 되지 않았으리라

밀어지어 아쉬움이 남는다는 요지임.

□ 심사 보고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

□ 소수 의견

업 음

□ 기타 특기사항

업 음

3. 제2차 본회의

가.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발의한 한규용 의원의 설명으로 '95년도 사고및 명시 이월된 주요사업장을 시찰하여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그 뜻을 의정에 반영해 주민과 동참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사업장을 시찰하였으며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95년도 명시및 사고이월된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원 10인과 보조직원 2인 총 12명의 인원으로 사업장을 시찰하였다.

시찰결과 총평은 사업장 시찰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정부의 부실공사 추방에 동참하여 공사 시행청이나 업자 모두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고및 명시 이월된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토지보상가 등 제반문제점을 현지 주민여론 수렴및 지속적인 대화설득으로 원만히 해결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졸속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개발현장에서 나타나는 개인및 지역이기주의는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나. '95년도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예결특위 위원장인 길부섭 의원의 보고로 제2차 예결특위시 채택한 심사보고서를 낭독하였다.

심의결과 본건은 예결특위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다. 금산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전영식 기획실장의 교육출장으로 허덕용 예산계장이 제안설명을 하였다.

'94년 8월 3일 제정공포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및 '94년 11월 30일 제정 공포된 같은법 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자유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추진과 민자유치와 관련한 주요사안의 객관성 있는 심의를 위해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이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제3조에 위원장의 위원회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라.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김진해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에 따른 군수 직급의 지방직화 계획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정원책정과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조례에 규정하고 보건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에 설치 운영중인 모자보건계의 기구정원을 조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골자는 군 본청의 정원중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중 의회사무과를 추가해 정원 11명을 책정 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중 보건소 기구및 정원조정 3명을 감하였다.

심의결과 본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마.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

강병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편입용지 취득은 금산읍의 공중보건향상과 주거환경 개선및 금산천과 봉황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금강 상류에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산읍 신대리에 소재하고 있는 36필지 6,864평을 취득하고자 하며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은 대상 필지중 35필지 4,484평은 농민에게 대부해서 농사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경작농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상기 토지를 실경작 농민에게 매각함으로써 영농조건을 조성해 주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추부면 마전리 754-2번지 118평은 중부산업대학이 학교 부지로 사용중에 있음으로 학교법인에게 매각해야 학교건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옥리 제1지구 택지조성 사업지구내의 토지교환은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편입토지 소유자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해당토지에 대하여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고 푸른어린이집 매각은 금산읍 상리 187-12번지에 있는 280평 및 같은 부지상에 시멘트 벽돌 스라브로 건립되어 있는 64.7평은 81년도부터 새마을회관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90년 3월 27일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95년 5월 19일 푸른어린이집이 용도폐지됨에 따라서 잡종재산이 된 바 본 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조성 점차 증가되는 수탁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여성의 취미. 교양 교육장을 마련해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금산읍 하옥리 393-3번지는 금산읍 복지회관 부지내에 다목적 가정복지회관을 건립함에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변 경 서

1995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단위 : ㎡/ 원)

구분			계			상반기			하반기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38	23,098	224,676,170	2	408	47,397,000	36	22,690	208,860,170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36	22,690	208,860,170				36	22,690	208,860,170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2	408	47,397,000	2	408	47,397,000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41	16,510	216,081,000	4	390	42,900,000	37	16,120	173,181,000	
		건물										
		기타	1	213.75	20,000,000				1	213.75	20,000,000	
	4. 매각	토지	37	16,120	173,181,000				37	16,120	173,181,000	
		건물										
		기타	1	213.75	20,000,000				1	213.75	20,000,000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4	390	42,900,000	4	390	42,900,000				
		건물										
		기타										

부 록

제1절 의회 주요일지

제2절 년도별 의정활동 모습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1. 3. 9	○ 의원 가족 초청 간단회(11 : 00) · 장소 : 군청회의실 · 주최 : 금산군 · 대상 : 50명(의원부인11, 기관장 부인, 군.경찰서간부 부인, 읍.면장 부인) · 오찬 : 금호식당	
'91. 4. 24	○ 인삼홍보 전시관 설치 추진 위원회 (10 : 30) · 장소 : 금산군청 회의실 · 주최 : 금산군수 · 대상 : 의원 11명, 실.과장 · 내용 : 인삼 홍보관 설치건	
'91. 4. 26	○ 의장단 간담회 (11 : 00) · 장소 : 도청 제1회의실 · 주최 : 도지사 · 안건 : 도정 발전 방향 · 참석 : 의장, 부의장	
'91. 5. 3	○ 의원초청 간담회 (18 : 00) · 주최 : 농협 금산군지부 · 장소 : 읍농협 2층 회의실 · 참석 : 의원 11명 · 만찬 : 금호식당	
'91. 5. 9	○ 의원초청 간담회 (11 : 00) · 주최 : 금산축협 · 장소 : 축협 회의실 · 참석 : 의원 10명, 조합 임원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1. 5. 9	○ 대금농조 업무 보고회 (14 : 30) · 장소 : 대금농조 회의실 · 참석 : 의원 10명	
'91. 5. 17	○ 의원 간담회 (15 : 00) · 장소 : 의원사무실 · 안건 : 안건 협의 및 실.과업무 분단 기획, 문공, 내무 : 길부섭, 박천보 새마을, 건설, 도시, 민방위 : 태진수, 박승우 재무, 지역경제, 지적 : 박찬헌, 이홍만 사회, 가정복지, 보건 : 정현수, 오규영 산업, 산림, 지도소 : 허병문, 한규용	
'91. 5. 27	○ 의원 간담회 (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안건 : 임시회의 안건 설명 · 참석 : 의원 11명	
'91. 5. 31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인삼쇼핑센타 건립 반대 진정의 건 · 참석 : 의원 11명, 인삼관련 단체장 10명	
'91. 6. 25	○ 알로이 휠 공장 기공식 참석 · 장소 : 제원면 구억리 공사장 · 참석 : 의원 11명	
'91. 6. 26	○ 의원 간담회 (14 : 00) · 장소 : 의원사무실 · 안건 : 제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안 협의 · 참석 : 의원 11명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1. 6. 27	○ 의원 간담회 (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안건 : 상정의안 협의 · 참석 : 의원 11명	
'91. 7. 23	○ 의원 간담회 개최 (14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안건 — 교육위원 후보 선출의 건 — 조례안 3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TV난시청지역해소 건의문 채택의 건	
'91. 7. 25	○ 해병 기동순찰대 발대식 참석 (12 : 00) · 장소 : 청산회관 · 참석 : 11명 전의원	
'91. 8. 6	○ 농촌지도자 여름 대강좌 개최장소 방문 (11 : 00) · 장소 : 제원면 천내2리 원골 · 참석 : 의장외 의원 4인	
'91. 8. 8	○ 업무보고 청취 (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안건 : 새마을과 업무 상반기 결산보고 · 참석 : 의장, 부의장, 의원 2인	
'91. 8. 8	○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협의회 (14 : 00) · 장소 : 청산회관 · 참석 : 부의장, 의원3인 · 내용 :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협의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1. 8. 9	○ 도시과 업무보고 청취 · 장소 : 의원사무실 · 내용 :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 · 참석 : 의장, 부의장, 의원 2인	
'91. 8. 14	○ 의원 간담회 개최 (14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안건 : 실과 사업소 업무보고 일정 협의 의정업무 협의 결산검사 일정협의 (8.19~9.7) ○ 결산검사 협의 · 기 간 : 8.14~8.15 · 출장지 : 충북 옥천군의회 · 출장자 : 박찬헌 의원	
'91. 8. 19	○ 의원 간담회 개최 (10 : 00) · 장소 : 의원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제5회 임시회 안건협의 중국인삼 유통대책 협의	
'91. 8. 19	○ '90결산 검사 · 기간 : '91.8.19~9.7(20일4간) · 위원 : 박찬헌의원외 2인 · 장소 : 자료실 · 내용 : '90세입. 세출 결산검사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1. 8. 26	○ 평통 자문회의 참석 (11 : 00) · 장소 : 평통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91. 8. 28	○ 관내 기관장 및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12 : 00) · 장소 : 금정가든 · 참석 : 의원 10인, 군수, 경찰서장, 군교육장, 농협지부장, 도의원 3인, 교육위원 · 내용 : 군정 발전 협의 ○ 인삼보호위원회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15 : 00) · 장소 : 의회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10인, 심환교외 1인 · 내용 : 인삼보호 위원회 업무추진내역 보고 ○ 인삼협동조합 업무 보고회 (17 : 30) · 장소 : 금산인삼조합 회의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인삼조합 업무 보고	
'91. 9. 6	○ 의원 간담회 (15 : 00) · 참석 : 의원 11인 · 안건 : 의원 세미나 및 국회방청 협의 제6회 임시회 개최 협의 '90결산검사 진행상황 보고	
'91. 9. 10	○ 지방자치 세미나 참석 (10 : 00) · 기간 : 9.10~9.11 · 장소 : 세종문화 회관 · 주제 :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전개 방안 · 참석 : 의원 11인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1. 9. 10	○ 경동시장 시찰 · 진열인삼 관찰 (중국인삼) · 시장조합 임원과 대화 — 금산, 경동시장 입장 및 의견교환	
'91. 9. 11	○ 전국인삼협동조합 중앙회 방문 (14 : 00) · 면담자 : 회장, 전무 · 내 용 : 중앙회의 중국인삼 반입 저지 촉구 인삼법개정(홍삼제조 조합도 가능토록) 인삼포장의 호칭 부여 개선 (금산인삼 명명 토록) ○ 관세청 방문 (17 : 00) · 면담자 : 통관 관리국장 (최규범) · 내 용 : 해외여행자 인삼반입 소량으로 규제 경동시장 인삼취급(중국인삼) 단속 각 세관의 인삼반입 단속 철저 건의	
'91. 9. 12	○ 국회 방문 (10 : 00) · 주요내용 — 국회운영 현황 청취, 내부 관람 — 동자위원장 방문 ※ 지역현안문제 협의(대전선확장, 인삼문제 등)	
'91. 9. 13	○ 의정활동보고 간담회 (18 : 30) · 장소 : 금정가든 · 참석 : 군수, 부군수, 서장, 내무과장, 인삼보호위원 3명(전동호, 박천우, 강재하) 기자4(중도, 중부매일, 진악, 금산신문) 의원 8명 · 내용 : 서울 의정활동 보고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1. 10. 10	○ 의원 간담회 (14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11명 전의원 · 안건 : 중국인삼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 협의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	
'91. 10. 17	○ 의원 간담회 (14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11명 전의원 · 안건 : 지역발전을 위한 종교인초청 간담회 일정 협의 및 10월 임시회의 대비	
'91. 10. 22	○ 의원 간담회 개최 (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11명 전의원 · 안건 : 제7회 임시회 일정 협의 도민체전 참가 선수단 위문 협의	
'91.10.24	○ 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 · 출 전 : 10개종목 133명 · 위문품 : 음료수 15상자 · 참 석 : 의원 6명 ※ 10.23 결단식 참석 의원 10명	
'91. 10. 26	○ 종교인초청 간담회 (10 : 00) · 장소 : 군청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종교인 18인 · 내용 : 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환경 공해 예방 청소년의 탈선예방 및 선도문제 사회복지문제 농촌 애향심 갖기 노력 소비성업체의 지나친 발생 우려 및 대책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1. 11. 5	○ 공주시의회 방문 (10 : 00) · 장 소 : 공주시의회 · 방문자 : 의원 11인 · 내 용 : 의회 운영 현황 청취 의정업무 협의	
'91. 11. 6	○ 세미나 참석 (10 : 00) · 장소 : 공주시 문예회관 · 참석 : 11명 전의원 · 강사 : 서우선 · 내용 : 지방의회 운영 방안	
'91. 11. 7	○ 공주군의회 방문 (10 : 00) · 장 소 : 공주군의회 · 방문자 : 의원 11인 · 내 용 : 의회 운영 현황 청취 의정업무 협의	
'91. 11. 8	○ 의정활동 보고회 (10 : 00) · 장소 : 제원농협 회의실 · 내용 : 의정보고 및 간담회 개최 · 참석 : 100명 ○ 의정활동 보고회 (14 : 00) · 장소 : 군북농협 회의실 · 내용 : 의정 보고 및 간담회 개최 · 참석 : 102명	
'91. 11. 11	○ 의정활동 보고회 (10 : 00) · 장소 : 금성면사무소 회의실 · 내용 : 의정보고 및 간담회 개최 · 참석 : 127명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1. 11. 11	○ 의정활동 보고회(14 : 00) · 장소 : 진산면사무소 회의실 · 내용 : 의정보고 및 간담회 개최 · 참석 : 74명	
'91. 11. 13	○ 의정활동 보고회(10 : 00) · 장소 : 복수면사무소 회의실 · 내용 : 의정보고 및 간담회 개최 · 참석 : 75명 ○ 의정활동 보고회(14 : 00) · 장소 : 추부농협 회의실 · 내용 : 의정보고 및 간담회 개최 · 참석 : 87명	
'91. 11. 14	○ 의정활동 보고회(10 : 00) · 장소 : 남일면사무소 회의실 · 내용 : 의정보고 및 간담회 개최 · 참석 : 156명 ○ 의정활동 보고회(14 : 00) · 장소 : 남이면사무소 회의실 · 내용 : 의정보고 및 간담회 개최 · 참석 : 97명	
'91. 11. 15	○ 의정활동 보고회(10 : 00) · 장소 : 부리면사무소 회의실 · 내용 : 의정보고 및 간담회 개최 · 참석 : 110명 ○ 의정활동 보고회(14 : 00) · 장소 : 금산읍사무소 회의실 · 내용 : 의정보고 및 간담회 개최 · 참석 : 207명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1. 11. 26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 지역발전대책 협의	
'91. 11. 27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정기회 대비 각종자료 취합 정리 정기회 운영 협의	
'91. 12. 30	○ 사회복지시설 위문(15 : 00) · 장소 : 추부면 마전리 향림원 · 참석 : 의원 11인, 의원부인 9인 · 위문내역 : 군 상조은행 기탁분 300천원 상당 생활필수품	
'92. 1. 1	○ 충령사. 칠백의총 참배(10 : 00) · 참석 : 의원 11인	
'92. 1. 4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안건 : '92 의정업무 협의 지역·발전대책 협의 ○ 신년 교례회 참석(11 : 00) · 장소 : 청산회관 · 참석 : 의원 11인, 관내 기관단체장 및 유지	
'92. 1. 10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안건 : '92년 본청 실과 업무분담 협의 · '92년 주요업무 구상 협의	
'92. 1. 20	○ 의원 간담회 개최(11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안건 : 제10회 임시회 개최일정 협의 '92년 의정 방향 협의 의회방청 활성화 협의 ○ 도지사 초도 순시 참석(17 : 00) · 장소 : 청산회관(만찬)	
'92. 2. 18	○ 의원 간담회(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제1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의정업무 협의	
'92. 2. 24	○ 의회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 개최(18 : 3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기자 7명 · 안건 : 의정업무 협의 지역 발전대책 협의	
'92. 3. 6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92 실과 사업소 업무분담 결정 의정업무 협의	
'92. 3. 11	○ 의원 간담회(14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참석 : 의원 11인 · 안건 : 공명선거 실시 주민계도 대책 협의 당면 의정업무 협의 ○ 제14대 국회의원 후보등록자 방문(13 : 00) · 장소 : 유한열, 송준빈, 정태영, 박은영, 박천우 후보 등록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공명선거 실시 난 1점 전달(5점)	
'92. 3. 17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8인 · 안건 : 의정 업무 협의	
'92. 4. 6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8인 · 안건 : 의정 업무 협의	
'92. 4. 15	○ 개원 1주년 기념행사(11 : 00) · 장소 : 군청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초청인사 57 · 내용 : 기념행사 및 오찬제공(금호식당) 기념품 배부(타올)	
'92. 4. 16	○ 복숭아 단지 방문(12 : 00) · 장소 : 금성면 도곡리(알미)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복숭아단지 관람 격려금(100,000원)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2. 4. 29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소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 안건 : '92 군정 업무계획 청취(4개 실과) ○ 사과 재배단지 방문 격려(18 : 30) · 장소 : 제원면 명곡리(바리실) · 내용 : 재배단지 주민 격려(100,000원)	
'92. 4. 30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의회 소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군정업무계획 청취 6개실과	
'92. 5. 7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의회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안건 : 의정 업무 협의 의원 연수계획 일정 협의	
'92. 5. 13	○ 의원 연수 개최 · 기간 : 5. 13 ~ 5. 14 · 장소 : 의회 소회의실 · 강사 : 국회사무처 입법심의관 전해성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지방의회의 권한 및 의무, 자치법 해설 의정활동 유의사항, 의사진행 요령, 군정질문 등	
'92. 5. 14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군청 회의실 · 참석 : 의원 11, 부군수, 실과장 4, 문화원 6 · 안건 : 문화원 건립을 위한 간담회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2. 5. 14	○ 주재기자 초청 간담회(18 : 30) · 장소 : 대지회관 · 참석 : 의원 11인, 기자 8인 · 내용 : 의정 홍보방안 및 지역발전대책 협의	
'92. 5. 25	○ 관내 선도 농업지구 방문(17 : 30) · 장소 : 제원, 수당지구 — 묘재배 하우스 제원 제원리 — 건묘 파종 지구 군북면 동편 — 오이하우스 재배지구 추부면 비례 — 양어장, 고추하우스 재배	
'92. 5. 27	○ 의원 간담회 개최(10 : 30) · 장소 : 의회 소회의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92 군정업무계획 청취 4개과	
'92. 5. 28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의회 소회의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92 군정업무계획 청취 3개과	
'92. 6. 1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회 사무실 · 참석 : 의원 7인 · 안건 : 의정 업무 협의 의원 연수계획 일정 협의	
'92. 6. 8	○ 의원 간담회(16 : 00) · 장소 : 군청 회의실 · 참석 : 의원 9인, 인삼관련 초청자 23인 · 내용 : 인삼의 문제점, 대처방안, 세미나 개최 ※ 간담회 후 만찬 솔밭회관(19 : 00)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2. 6. 15	○ 의원 간담회(10 : 00) · 장소 : 의회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의정업무 협의 의원 연수 계획 제13회 임시회 운영 계획 ○ 전경 위문(16 : 00) · 장소 : 금산경찰서 · 내용 : 위문품 전달 격려(110,000원 상당)	
'92. 6. 18	○ 의원 간담회(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제13회 임시회 운영 계획 의회 방청 활성화 대책 협의	
'92. 6. 22	○ 금산읍 리장 초청 간담회(12 : 00) · 장소 : 금정가든 · 참석 : 의원 10인, 리장 32인 · 내용 : 지역현안문제 협의 건의사항 수렴	
'92. 6. 23	○ 기자와의 간담회 개최(19 : 00) · 장소 : 금호식당 · 참석 : 의원 10인, 기자 8인 · 내용 : 지역현안문제 협의	
'92. 6. 29	○ 지역주민초청 간담회(11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주민 12인 · 내용 : 지역주민 진정에 따른 간담회 주민의사 반영, 진정서 처리내역 통지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2. 7. 3	○ 의원 해외 연수 · 기간 : 7. 3. ~ 7. 10(8일간) · 연수국 :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 연수인원 : 의원 7인 · 내용 : 방문국가 의회 견학 주요 행정기관 방문 견학 인삼홍보 등	
'92. 7. 14	○ 청주시 의회 방문(14 : 00) · 참석 : 의원 11인, 공무원 6인 · 내용 : 간담회 개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 및 운영 방안 의정활동 방향 등 협의 기타사항	
'92. 7. 15	○ 청주시 쓰레기 고체연료 처리장 시찰(10 : 00) · 장소 : 청주시 쓰레기 처리장 · 참석 : 의원 11인, 공무원 7인 · 내용 : 현황청취 및 고체연료 단계별 견학	
'92. 7. 21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내용 : '91 예산결산 검사일정 협의 진안군 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리장 사기앙양대책 건의 기타 의정활동 협의	
'92. 7. 28	○ 지역현안문제 해결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군청 회의실 · 참석 : 35명(의원10, 진안군의원10, 운수대표2, 기자6)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내용 : 교통문제 협의(완행버스 운행 중단) 의정업무 협의 ○ 간담회 참석자 오찬(14 : 00) · 장소 : 제원 강변가든 · 참석 : 간담회 참석자 35명	
'92. 8. 4	○ 의원 간담회 개최(10 : 3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의원 7인 · 안건 : 간담회 운영시간 변경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 결산검사 일정 확정 의장단회의 협의사항 설명 의회보 발간 협의(창간호 문제점) 인삼 선양위원회 회의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문제점 의원경비 집행내역 보고 지역 농업종합개발사업추진과정 보고	
'92. 8. 11	○ 무농약 농원 견학(09 : 30) · 장소 : 전북 임실 예가원, 전북 순창 고추장마을 · 참석 : 의원 8인, 농가 7인, 공무원 5인	
'92. 8. 12	○ 의원 간담회 개최(11 : 0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10인 · 안건 : 의정업무 협의 금산군 광역상수도 실시 설치 용역중간보고 청취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2. 8. 18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91 금산군 결산검사 위원 위촉 실과 당면업무 보고 청취 남이면민 화합 체육대회 격려 협의 금산 소방파출소 개소식 참여 기타 의정업무 협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건의 사항 협의 인삼사업법 개정을 위한 건의문 협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일정 협의 리장 모곡제도 개선방향 협의	
'92. 8. 25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소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제12회 인삼제행사계획설명 청취 도시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 당면 의정업무 협의 ○ 주요 기관장 초청 간담회 · 장소 : 솔밭회관 · 참석 : 20명(의원 11인, 주요기관장 9인) · 내용 : 지역발전 및 현안문제 협의	
'92. 9. 1	○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09 : 00) · 장소 : 공주시 종목별 경기장 방문 · 참석 : 의원 8인 · 내용 : 음료수(78,000원 상당)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2. 9. 1	○ 의원 간담회 개최(19 : 30) · 장소 : 추부면 마전리 이홍만의원댁 · 참석 : 의원 9인 · 내용 : 의정업무 협의	
'92. 9. 3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의원 7인 · 안건 : 진정서 현지조사 협의 의정업무 협의 ○ 진정서처리 현지조사(14 : 30) · 장소 : 남이면 혹암리, 구석리 · 참석 : 의원 8인 · 내용 :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92. 9. 8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회 소회의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92 추석절 종합대책 보고 청취 지방세 홍보자료 보고 청취 중추절 위문 계획 협의 제12회 인삼제성금 전달(300,000원) 기타 의정업무 협의	
'92. 9. 9	○ 불우주민 위문(16 : 00) · 장소 : 금산읍 중도리 403-1 신명식외 31명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중추절 관내 농아 32명 격려 위문품 절달(싯가 320,000원 상당)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2. 9. 15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소 회의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실과 당면업무 보고 청취 제12회 인삼제행사 참석 협의 제14회 임시회 일정 협의 회기중 리장단 초청 협의 기타 의정업무 협의	
'92. 9. 28	○ 금성면 리장단 초청 간담회(12 : 00) · 장소 : 의회 소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리장 22인 · 내용 : 건의사항 청취 15건	
'92. 9. 29	○ 제원면 리장단 초청 간담회(12 : 00) · 장소 : 의회 소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리장 28인 · 내용 : 건의사항 청취 8건	
'92. 9. 30	○ 부리면 리장단 초청 간담회(12 : 20) · 장소 : 의회 소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리장 28인 · 내용 : 건의사항 청취 9건	
'92. 10. 1	○ 군북면 리장단 초청 간담회(12 : 00) · 장소 : 의회 소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리장 20인 · 내용 : 건의사항 청취 5건	
'92. 10. 6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소회의실 · 참석 : 의원 6인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내용 : 금강직강 공사계획 추진현황 설명 청취 특별보충역제도 업무설명 청취 군정보고(도지사 보고사항)설명 청취 당면업무 협의	
'92. 10. 13	○ 도지사 및 언론기관 방문(10 : 00) · 방문자 : 의장, 부의장 · 방문기관 : 도지사, 대전, 중도, 대전매일 · 건의사항 : 3건 대전선 4차선 확장사업 대전선(본군구간) 조기 착공 인삼사업법 제도 개선	
'92. 10. 20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소회의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당면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전통인삼 고유상품화 시험사업 추진현황 공설운동장 건립 현황 제15회 임시회 일정 협의 주요 의정업무 협의	
'92. 11. 17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의원 11인 · 안건 : '92 정기회 운영 계획 제4회 전사.순직 경찰관 합동 추모제	
'92. 11. 25	○ 남일면 리장초청 간담회(12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리장 16인 · 내용 : 지역 현안문제 협의 및 건의사항 수렴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2. 11. 27	○ 남이면 리장초청 간담회(12 : 2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리장 14인 · 내용 : 지역 현안문제 협의 및 건의사항 수렴	
'92. 11. 28	○ 진산면 리장초청 간담회(12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리장 14인 · 내용 : 지역 현안문제 협의 및 건의사항 수렴	
'92. 12. 7	○ 복수면 리장초청 간담회(15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리장 17인 · 내용 : 지역 현안문제 협의 및 건의사항 수렴	
'92. 12. 21	○ 추부면 리장초청 간담회(12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리장 13인 · 내용 : 지역 현안문제 협의 및 건의사항 수렴	
'92. 12. 22	○ 관내 경로당 위문 · 기간 : 12. 22 ~ 12. 23(2일간) · 장소 : 관내 경로당 12개소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읍 3개소, 면당 1개소 경로당 위문 개소당 100,000원	
'93. 1. 11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군정보고회 개최 협의 상임위원회 구성(검토)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설날위문계획 및 전경위문계획 협의 주민진정처리 관계기관 건의 지방지, 향토신문 구독 특정폐기물 소각장 설치 추진상황 청취	
'93. 1. 21	○ 전경 위문(10 : 00) · 장소 : 금산경찰서 · 참석 : 의원 7인 · 내용 : 전경(23명) 위문금 전달(100, 000원)	
'93. 1. 26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7인 · 안건 : 복수면 진정건 협지답사 계획 군북면 진정서 접수건 처리 협의 '93 업무보고 청취 시기 협의 언론 중재위원회 중재신청 대책 협의 ○ 진정서 처리 현지 조사(14 : 00) · 장소 : 복수면 지량2리 · 참석 : 의원 6인, 727대대장, 2162부대 실무담당 복수면장, 주민 30여명	
'93. 2. 2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제18회 임시회 일정협의 의정보고 결산 '93 의정운영계획 협의 · 진정서 처리 · 시. 군 의장단 회의결과 설명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대회의실 방송장비 확충 북한인삼 수입반대 결의문 협의	
'93. 2. 9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건축조례안 설명 청취 광역상수도계획 설명 청취 군수 읍면 순방 대화 참석 협의 용담댐 건설에 따른 설명회 참석 임시회 방청객 초청문제 협의	
'93. 2. 16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제18회 임시회 개최 북한산인삼 수입반대 건의문 채택 협의 공설운동장건립 변경 계획안 청취 건축 조례안 의견 청취 군정설문조사 계획안 관내 국교 졸업식 의장 표창 실시	
'93. 3. 2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택지조성 사업계획 설명 의정화보 제작 협의 군정설문 조사 실시 부리면 광역상수도 위치변경 진정서 접수 인삼협동조합장 이. 취임식 금산신문 창간 3주년 기념식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3. 3. 9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농촌지도소 청사이전 계획 설명 인삼계란 생산시설 추진현황 설명 군정질문서 검토 의정화보 내용 검토 한국 농촌연구원과 결연 협의 치안행정 협력단체와의 간담회 협의 진정민원 처리에 따른 현지답사 의견수렴 ○ 진정에 따른 현지조사 및 의견수렴(13 : 30) · 장소 : 부리면 신촌리(취수장 예정지 및 부락) · 참석 : 31명(의원 10, 주민 17, 공무원 4) · 내용 : 광역상수도 취수장 예정지 현지답사 후 주민의견 수렴 · 결과 : 향후 추진위원, 의회, 집행부서, 용역 사업자 간 협의	
'93. 3. 16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 광역상수도 설치에 관한 진정서 처리 협의 농지구입자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 치안행정 간담회 참석 협의 의장단 선출시기 협의 인삼가격 안정을 위한 간담회 계획 협의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3. 3. 23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치안행정 간담회 참석 협의 의원 상조회 운영 충남일보 지국 현판식 도지사 방문 의장단 면담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 인삼문제 간담회 개최 협의	
'93. 3. 30	○ 의원 간담회 개최 (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안건 : 군수 인사발령 약초시장에 관한 진정서 처리 의장단 회의결과 설명 복수면 지량리 과적차량 고정 측정기 설치 여론 개원 2주년 기념행사 계획 협의 ○ 인삼문제 협의를 위한 간담회(16 : 2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21명(의원 10, 초청인사 10, 국회의원 정태영) · 내용 : 인삼 가격하락 원인 및 대책협의 인삼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협의	
'93. 4. 6	○ 의원 간담회 개최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안건 : 농촌지도소 청사이전계획 추진상황 설명 공유재산취득 처분계획 설명 행정쇄신 기획단 구성 운영계획 설명 기자와의 간담회 협의 '93 지방예산 절감 운용계획 설명 개원 2주년 기념행사계획 협의 제19회 임시회 일정 협의 도 종합감사 위문 협의 ○ 기자와의 간담회(16 : 30) · 장소 : 금호식당 · 참석 : 의원 9인, 기자 4인 · 안건 :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	
'93. 4. 9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행정쇄신기획단 자문위원 추천 협의 개원2주년 기념행사 초청대상 협의 군수와의 만찬 계획 협의 도 종합감사 위문 계획	
'93. 4. 13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도 종합감사반 위문 제19회 임시회 운영 협의 개원2주년 기념행사 충남소년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 군수 및 기관단체장 초청 간담회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3. 4. 15	○ 개원 2주년 기념행사 · 장소 : 청산회관 · 참석 : 의원 9인, 초청인사 70명 · 내용 : 기념행사 표창장 수여(최병숙, 오광택) 다과회	
'93. 4. 20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8인 · 안건 : 새마을지회 업무 설명 청취 영지버섯재배작목반 지원에 따른 진정처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초청 농정 간담회 개최 협의 육백고지 전승탑 제막식 참석 의정설문조사 결과 보고	
'93. 4. 23	○ 농정 간담회 개최(17 : 00) · 장소 : 위원회 사무실 · 참석 : 18인(농촌연구원 4인, 의원 7인, 공무원 4인, 농민 3) · 내용 : 인삼관련제도 및 재배상의 문제점 U.R대비 수출 전략작목반에 관한 전망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상의 문제점	
'93. 4. 2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 시찰(10 : 00) · 장소 : 남일면 마장리 박지원(농가 및 인삼포) · 참석 : 의원 3인, 초청인사 4인, 공무원 2인 · 내용 : 인삼포 시찰 및 농가 재배과정 청취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3. 4. 29	○ 충남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개최(11 : 00) · 장소 : 군청 회의실 · 참석 : 충남시.군의회 의장 17인 · 내용 : 의장단 선출 의 장 심재호 (천안군) 부의장 라상규 (금산군) 이근수 (청양군) 총 무 박종관 (공주시) 당면 사항 협의	
'93. 5. 4	○ 인삼대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15 : 00) · 장소 : 군청 회의실 · 참석 : 41명(의원 9인, 자문위원 33인) · 내용 : 위촉장 전달 임원 선출 위 원 장 라정규 부위원장 김영근, 조신영 간 사 지보경 공청회준비 및 활동계획 협의	
'93. 5. 6	○ 인삼문제 공청회 운영 협의(11 : 0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6인(의장, 부의장, 라정규, 김영근, 박성용, 지보경) · 내용 : 자문위원회 운영 협의 인삼문제 공청회 토론대상자 선정 협의	
'93. 5. 10	○ 인삼문제 공청회 운영 협의(11 : 0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7인(의장, 부의장, 라정규, 김영근, 박성용, 김병기, 지보경) · 내용 : 토론자 및 토론순서 확정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3. 5. 11	○ 인삼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14 : 30) · 장소 : 청산회관(2층) · 참석 : 의원 9인, 토론자 5인, 초청자 230인 · 내용 : 주제발표 및 토론 주제발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종혁 박사 토론(김병기) 전매제도가 홍삼위주로 시행되어 백삼의 보상적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인삼업무를 농수산부로 이관하며 민영화 추진과 인삼사업법 폐지 요망 토론(박천우) 전매공사가 인삼조합을 관장함은 부당하며 금산인삼으로 산지를 표시하여 품질보증노력과 유통의 활성화가 필요 토론(박성용) 산지유통시장에 관한 보호법 제정 요망 토론(정현수) 인삼가격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비축자금 확보가 필요 인삼성가 제고를 위해 유통관계자 및 인삼관계인의 노력이 필요 토론(라상규) 인삼사업법을 폐지하고 인삼산업 진흥법 제정 ※ 참석자 의견 청취 박은영 : U.R로 인한 인삼수입 개방시 국내 시장 잠식우려 검사제도의 미비로 검사품의 품질 불량에 대한 대비책 강구 장석순 : 인삼사업법 폐지 및 민영화 촉구 김시중 : 농어촌발전기금 지원 농산물 품목에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인삼이 제외되어 있으며 자금지원단체의 인삼조합 추가삽입 요망, 유통질서 확립의 자성기회 촉구 박재문 : 관내 인삼관계자 및 전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93. 5. 14	○ 인삼대책 자문위원회 개최(15 : 20) · 장소 : 군청 회의실 · 참석 : 의원 7인, 위원 23인 · 내용 : 인삼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 내역 소개 인삼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서안 작성 협의 위원장에 건의안 작성 위임 전국민 서명 운동	
'93. 5. 18	○ 도시계획(진산면) 업무보고 청취(14 : 00) · 장소 : 소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국도 17호선 도로와 지방도 690호선과의 접속도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 요소제거 및 주민 편익 제고	
'93. 5. 25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8인 · 안건 : 인삼대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협의 보안사격대회 및 단합의밤 행사 참석 협의 석가탄신 봉축행사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참석 협의 건의서 발송 협의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일정 해외연수 준비 제21회 임시회 일정 협의 ○ 인삼대책 자문위원회 개최(16 : 3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8인, 위원 9인 · 내용 : 건의서 및 진정서 문안 검토	
'93. 6. 2	○ 경우회 초청 간담회 · 참석 : 의원 11인, 경우회 18인 · 내용 : 경우회 운영 지원 및 군북 내부출장소 구간 포장 건의	
'93. 6. 3	○ 대한노인회 금산군지부 회원 초청 간담회 · 참석 : 의원 11인, 노인회원 17인 · 내용 : 건의사항 수렴 3건	
'93. 6. 8	○ 의원 해외연수 및 견학 실시 · 기간 : '93. 6. 9 ~ 6. 19 · 방문국가 : 이탈리아, 이집트, 스위스, 영국, 프랑스 · 인원 : 의원 8인	
'93. 6. 22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제22회 임시회 일정 협의 공직자 정년퇴임식 참석 '9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을지연습 '93상황실 위문 나라사랑 기념비 제막식 참석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민원상담제 운영 협의 진산도시계획 용도변경 진정서 접수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안 설명 정수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 버스터미날 앞 포장계획 설명	
'93. 6. 23	○ 인삼대책 자문위원회 개최(14 : 30) · 장소 : 송호 연수원(충북 영동 소재) · 참석 : 21명(전국인삼조합장 13, 조합중앙회 부회장. 전무 2, 의장. 라정규. 박성용. 김병기. 지보경. 김원배 6) · 내용 : 인삼법및 제도개선에 관한 활동 협의 13개 조합 의견 중앙회 의사에 일임 ※ 금산의 전국적인 활동에 감사 내용에 있어서는 적극 찬동 절차상은 향후 인삼조합 중앙회와 사전 협의 행동통일 요망	
'93. 7. 6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문 의회 민원 상담실 운영 협의 결산검사 위원 위촉 ○ 인삼대책 자문위원 간담회(16 : 2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6인(의장, 라정규, 김영근, 박성용, 김병기, 지보경) · 안건 : 향후 활동계획 협의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3. 7. 13	○ 의원 간담회 개최(14 : 00) · 장소 : 대전(평통 출범식 참석후)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인삼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문 회신 결과 설명 재향군인회 간담회 참석 인삼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정활동 협의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협의	
'93. 7. 15	○ 인삼대책 자문위원회 활동 · 장소 :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 참석 : 5인(의장, 정현수, 라정규, 김병기, 박성용) · 내용 :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원의 자문 정태영의원 면담	
'93. 7. 19	○ 인삼대책 자문위원회 활동(15 : 00) · 장소 : MBC 방송국, 중도일보사 · 참석 : 의장 · 내용 : 인삼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진정 취지설명 언론 협조 요청(자료제공)	
'93. 7. 20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전달 '92회계년도 결산개요 및 상수도확장사업계획안 업무설명 청취 인삼협동조합 중앙회 전무 방문 인삼법 제도개선 대화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3. 7. 20	○ 인삼문제 협의를 위한 간담회(16 : 00) · 장소 : 군청 회의실 · 참석 : 의원 9인, 정태영, 유한열, 김현근, 최원식, 군 수, 반인충, 손의곤, 박은영, 배영신, 김광배, 강호일, 박천우, 라정규, 김영근, 박성용, 김병기, 지보경, 김현복 등 18인 · 내용 : 인삼법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점 및 향후 활동방향 토의	
'93. 7. 26	○ 인삼문제 협의를 위한 간담회(17 : 3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3인등 17인 · 내용 : 인삼법 및 제도개선에 관한 활동내역 소개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및 문제점 협의	
'93. 7. 27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9인 · 내용 : 군정보고 계획 도시가스설치 사업 설명회 의원재산등록 및 공개에 따른 자료 제출 지역총화 협의회 참석 협의 금산읍 부녀소방대 발대식 민원상담실 운영 홍보 제13회 인삼제행사 기본계획 보고 청취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관련 서식)	
'93. 7. 30	○ 의원 간담회 개최(14 : 5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의원 8인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안건 : 제23회 임시회 일정협의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 폐기물수집 처리에 관한 건의 공직자 재산등록 설명 의장 이동부녀교실 특강 금산군 실과규칙 개정내역 설명	
'93. 8. 3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 금산군 비지정관광지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운영 현황 설명 제13회 인삼제행사계획 추진현황 설명 (주)금산수삼센타 업무현황 보고	
'93. 8. 17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7인 · 안건 : 천연가스 공급용배관 매설현황 설명 (주)수삼센타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 의원 재산등록 관련 업무 협의 인삼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언론사 출장 홍보계획 설명 부군수와의 만찬 대화 부리면민 체육대회 격려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3. 8. 17	○ 인삼법 및 제도개선 홍보활동 · 기간 : '93. 8. 17 ~ 8. 18 · 참석 : 의장, 지보경 · 내용 : 국회방문(정태영, 곽영달, 민주당 정책위원장) 언론사 방문 : 조선일보사외 2개사	
'93. 8. 24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가스판매사업 영업소 설치신고 사항 설명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설명 재활용품 수집처리에 관한 건의서 회신 내용 설명 신한국창조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설명회 참석 인삼아가씨 선발에 따른 심사위원 추천 ○ 인삼법 및 제도개선 활동 · 대상 : 전국 인삼관련인사 1,500명 · 내용 : 전매제도 폐지와 인삼경작자 보호를 위한 인삼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호소문 발송	
'93. 8. 27	○ 신한국창조와 금융실명제 설명회 참석(15 : 00) · 장소 : 천안 시민회관 · 참석 : 의원 9인 · 내용 : 주재 국무총리 질의답변 장. 차관	
'93. 8. 31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참석 : 의원 7인 · 안건 : 제13회 인삼제 추진계획 설명 제24회 임시회 일정 협의 제45회 도민체전 400릴레이 선수 선발 의원 재산등록사항 협의 ○ 인삼법 제도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 기간 : '93. 8. 31 ~ 9. 1 · 장소 : 국회 · 내용 : 재무분과위원 면담	
'93. 9. 7	○ 인삼대책 문제 협의(18 : 0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의장, 부의장, 군수, 서장, 안기부금산담당 · 내용 : 인삼법 관련 현안문제 협의	
'93. 9. 8	○ 인삼대책 소위원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의장 등 8인 · 내용 : 국회청원 및 헌법 제소문제 협의	
'93. 9. 14	○ 의원 간담회 개최(10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추경 성립전예산편성 현황 설명 제13회 인삼제행사 의장 표창대상자 선발 제25회 임시회 일정 협의 ○ 인삼대책자문위원 회의 개최(11 : 00) · 장소 : 소회의실 · 참석 : 의장, 위원 27명 · 내용 : 인삼사업법 및 제도개선 추진 경과보고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국회청원 및 헌법재판소 제소문제 협의 청원서 문안 검토 협의	
'93. 9. 21	○ 의원 간담회 개최(14 : 3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금산인삼 장기발전계획안 설명 금산농악 육성계획안 설명 후곤천정비사업실시 설계 결과 설명 금산군폐기물관리 조례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	
'93. 9. 28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금성농공지구 민원발생 조치결과 설명 금성농공지구 오.폐수 유출에 따른 조치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중개정안 및 인삼진흥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안 설명 의정 연수계획 협의 주요사업장 시찰계획 협의 공장부지 매입에 따른 진정서	
'93. 10. 5	○ 금산신문사 주최 공청회 참석(15 : 00) · 장소 : 금산읍농협 3층 회의실 · 참석 : 의원 4인 · 내용 : 10일장(외지상인 개설) 퇴치방안 토의 민간단체 주관하에 진행하되 필요시 행정 지원사항 협조방안 강구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3. 10. 6	○ 의원 연수 · 기간 : 10. 6 ~ 10. 9 · 장소 : 설악산 · 주관 : 한국산업기술원 · 참석 : 의원 8인 · 내용 : 정기회 운영대비 의원 연수회 참석 ○ 화재발생 가정 위문(09 : 00) · 대상 : 금산읍 상리 진호빌라 박용성(추부지서) · 내용 : 10월4일 화재발생으로 일가족 3명 사망 경찰서 방문 대상자 위문	
'93. 10. 22	○ 의원 간담회 개최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종합운동장 건설공사 설명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 의정보고회 개최계획 협의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협의 제45회 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 제13회 반공합동 위령제 참석 군 합동결혼식 참석 대전 엑스포장 견학	
'93. 10. 26	○ 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 · 장소 : 천안시 오룡경기장 · 참석 : 의원 8인 · 내용 : 경기장 방문 선수단 격려	
'93. 10. 27	○ 대전 엑스포장 견학 · 장소 : 대전시 엑스포장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참석 : 의원 8인	
'93. 10. 28	○ 군민 합동결혼식 격려(11 : 00) · 장소 : 청산회관 · 내용 : 합동결혼식 주례(의장) 10쌍 결혼가정에 격려품 전달	
'93. 11. 6	○ 인삼대책자문위원회 개최(11 : 0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5인(의장, 라정규, 지보경, 김병기, 김현복) · 내용 : 재무부 전매기획과 방문 협의 — 일시 : 11.10 16 : 00~11.11 — 방문 : 과장, 담당관 — 참석 : 의장, 정현수, 인삼조합장 — 안건 : 인삼사업법(홍삼전매제도) 폐지 인삼산업진흥법 제정 요구 — 기타 : 청원에 따른 국회 방문(지역의원과 협의) 변호사 선임건 협의	
'93. 11. 10	○ 방청인 초청 간담회(11 : 00) · 장소 : 소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 대상 : 게이트볼 김병득 회장외 12인 · 내용 : 노인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을 위해 인삼제 행사 종목 채택 요망 ○ 의원 간담회 개최(13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의정보고회 개최계획 협의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정기회 운영자료 제출 남이면 휴양림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93. 11. 16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의원 11인 · 안건 : 금산대전간 4차선 노선변경에 관한 설명 천을 농공단지조성 경영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설명 정기회 운영일정 협의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자료 취합 4H 경진대회 개최	
'93. 11. 22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의원 10인 · 안건 : 의원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협의 군정질문 자료 조정 농림수산물 밀수 특별단속계획 설명	
'93. 11. 25	○ 초청 방청인과 간담회 개최(11 : 2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6명 · 내용 : 의정현황 설명 간담회 및 건의사항(9건)	
'93. 11. 27	○ 초청 방청인과 간담회 개최(12 : 30) · 장소 : 금정가든 · 참석 : 의원 11인, 농민단체지도자회 회원 13명 · 내용 : 의정현황 설명 간담회 및 건의사항(2건)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3. 12. 1	○ 초청 방청인과 간담회 개최(12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727대대장외 면대장 13명 · 내용 : 의정현황 설명 간담회 및 건의사항(1건)	
'93. 12. 21	○ 년말 위문 · 대상 : 농아자협회, 금산경찰서 전경대, 정심회 향림원	
'93. 12. 22	○ 각 읍면 노인정 방문 · 내용 : 12개소(금산읍 3, 면 9) 120만원 전달	
'94. 1. 11	○ 의원 간담회 개최(14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94 겨울농민교육 설명 도지사 초도순방 의정현황 설명 '94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요령 설명 ※ 기자와의 간담회 17 : 30	
'94. 1. 18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자료 및 U.R 대비 소득작목 육성계획 설명 기타 당면 의정업무 협의	
'94. 1. 25	○ 의원 간담회 개최(13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참석 : 의원 7인 · 안건 : 제28회 임시회개최 안내 '94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제출 금산 서울간 고속버스 운행노선 경유지 변경의 건 설명 내무부장관 방문일정 설명	
'94. 2. 1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분뇨수집 운반허가에 따른 설명 '93 냉해피해 지원내역 설명 사전 선거운동 방지 협조 요청	
'94. 2. 2	○ 인삼발전협의회 개최(18 : 00) · 장소 : 삼정 · 참석 : 의장 등 10명 · 내용 : 인삼홍보 관련사항 협의 중국 미삼 밀반입 단속 협의	
'94. 2. 15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원 10명 · 내용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상황 설명 금산군의료보험조합 현황 설명 고속버스 노선변경 운행 및 요금인상내역 설명	
'94. 3. 3	○ 의원 간담회 개최(14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안건 : 가스 배관공사시 피해 가로수 식재계획 제29회 임시회 일정 협의 간담회 일정 변경	
'94. 3. 10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명 · 안건 : 금산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및 금산군 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 제29회 임시회 일정 협의	
'94. 3. 24	○ 의원 간담회 개최(14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설명 남원시 의회의원 방문계획 협의 '94년도 부분감사 실시일정 설명	
'94. 3. 25	○ 남원시 의회의원 방문 · 인 원 : 김율 의장외 8인 · 방문지 : 의회, 약초시장 · 목 적 : 의정업무 협의 약초시장 견학 및 현황 청취 · 참석 : 의장, 정현수, 길부섭	
'94. 3. 25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설명 포장마차 관리 및 무허가 업소 단속사항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의회개원 3주년 행사계획 협의 진악신문사장배 족구대회 격려 식목일행사 참석	
'94. 4. 2	○ 직장대항 족구대회 격려 · 장소 : 금산국교 교정 · 참석 : 이홍만 부의장 · 내용 : 행사관계자 격려	
'94. 4. 7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안건 :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선거운동 기준설명 신문의날 주재 기자단 격려 건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협의 지역 현안문제 협의(군수)	
'94. 4. 14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건축조례 개정 요구에 관한 설명 개원3주년 기념행사 협의	
'94. 4. 15	○ 개원 3주년 기념행사(11 : 00) · 참석 : 48명(기관장 4, 실과사업소장 17, 읍면 8, 주재기자 7) · 내용 : 기념행사후 오찬(솔밭회관)	
'94. 4. 28	○ 의원 간담회 개최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명 · 안건 :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사항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제46회 도민체전 행사 참가 제1회 인삼골 어린이큰잔치 행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구성위원 1인 추천 제30대 도지사 초도 순방 농어민후계자 가족 화합대회 의원 해외연수비 삭감하여 U.R대응 작목 개발 사업비로 전환	
'94. 4. 29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16명(의원 4, 공무원 2, 기자 2, 건의자 8) · 내용 : 건축조례개정 건의내용에 대한 토의 건축조례 제67조, 68조 71조의 띠워야 할 거리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보완 건의	
'94. 5. 2	○ 도민체전 개막식 참석(10 : 00) · 장소 : 공주 종합운동장 · 참석 : 의원 5인 · 내용 : 개막식 참석 출전 선수단 방문 격려	
'94. 5. 6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제22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노인 위안잔치 참석 안보정세 설명회 및 창설 제14주년 기념식 참석 공동체 의식개혁 국민운동 충남협의회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창립대회 참석	
'94. 5. 12	○ 인삼발전 협의회 개최(11 : 00) · 장소 : 군청 상황실 · 내용 : 인삼관련 현안사항 협의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8인 · 안건 : 건축조례 개정 건의사항에 관한 협의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30회 임시회 개최 일정 협의 박중배 도지사 초도순방 계획	
'94. 5. 16	○ 스승의 날 장한 스승 기념품 전달 · 장소 : 금산교육청 · 내용 : 기념품 세트 전달	
'94. 5. 20	○ 의원 간담회 개최(15 : 3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8인 · 안건 : 사전선거운동 사례예시 및 사전선거운동의 구분 기준책자 배부 곡남교 교량가설에 따른 추진사항 설명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현황 설명 제30회 임시회 운영일정 협의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의원연수계획	
'94. 6. 4	○ 광산개발에 따른 현지 확인(12 : 00) · 장소 : 금산읍 양지리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현지 주민의견 청취 및 실태 파악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4. 6. 9	○ 의원 간담회 개최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직할시 편입에 따른 주민설문조사 결과 금산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 설명 지방자치 연수 일정 협의 '94 평통 지역회의 참석 제1회 소방인의 날 행사 참석	
'94. 6. 15	○ 의원 연수 · 기간 : 6. 15 ~ 6. 20 · 장소 : 제주도 서귀포시 · 참석 : 의원 9인 · 내용 : 지방자치 제도 정착을 위한 의원 연수	
'94. 7. 6	○ 인삼발전 협의회(18 : 30) · 장소 : 금호식당 · 참석 : 의장 등 13명 · 내용 : 밀수인삼 향후 추진대책 인삼사업법 제도 개선	
'94. 7. 7	○ 시.군의회 사무 국.과장 회의 · 장소 : 인삼호텔 8층 · 참석 : 16명 · 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토의 기타 당면업무 협의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내용 : 무주군 분뇨처리장 실태조사 결과 설명 기타 의정업무 협의	
'94. 7. 13	○ 무주군 분뇨처리장 현지 확인 · 장소 :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781(분뇨처리장) · 참석 : 22명(의원11, 공무원10, 기자1) · 내용 : 현장확인 무주군청 방문 무주 부군수와 토론식 간담회 · 결과 : 무단방류 사실 없으며 금후 철저한 위생처리를 실시하겠음. 96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완벽한 시설 설치 계획임	
'94. 7. 13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금산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금산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금산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결산건사위원 선임 협의 제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 협의 시내버스 종점변경 및 운행 진정서 접수	
'94. 7. 19	○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시도대표 협의회(11 : 00) · 기간 : 7. 18 ~ 7. 19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장소 : 인삼호텔 8층 · 참석 : 13명 · 주요행사 7.18. 19 : 00～20 : 30 만찬 7.19. 08 : 00～09 : 00 조찬 09 : 00～10 : 50 예비회의 11 : 00～12 : 10 본회의 12 : 10～13 : 20 오찬 · 주요토의사항 제17차 협의회 일정 협의 전국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장 수첩 제작 토지초과 이득세법 폐지 건의 의회 사무과 직원 근무성적평정 규칙 개정 건의 결산검사 선임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 건의 인삼사업법 제도개선 촉구 건의	
'94. 7. 25	○ 가뭄 피해지역 현지시찰(15 : 20) · 장소 : 군북면 산안 보광지구 추부면 서대지구 · 참석 : 의원 11인	
'94. 7. 28	○ 의원 간담회 개최(16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위촉 가뭄대책 추진상황 설명(군수) 행락질서 세부 추진사항 설명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용역처리장 위치선정 검토서 설명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금산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중앙국교옆 횡단보도설치 진정서 접수	
'94. 8. 2	○ 인삼발전 심의위원회 개최(17 : 00) · 장소 : 군청 상황실 · 참석 : 의장 · 안건 : 인삼발전협의회 활성화 방안 인삼발전협의회 회원확충문제 토의	
'94. 8. 4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안건 : 제14회 인삼제행사 기본계획 설명 인삼관련 동향 설명 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 제32회 임시회 일정 협의 군정질문자료 제출	
'94. 8. 5	○ 행정쇄신위원회 방문(08 : 00) · 참석 : 의장, 라정규, 지보경 · 내용 : 인삼발전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 4-H 야영대회 격려(10 : 00) · 장소 : 남이면 석동리 중앙국교 석동분교 · 참석 : 부의장, 허병문, 박찬헌, 오규영 ○ 물폐기 농요 전승 격려(11 : 00) · 장소 : 부리면 평촌리 부동국교 · 참석 : 이홍만, 허병문, 박찬헌, 길부섭	
'94. 8. 9	○ 인삼발전협의회 개최(16 : 00) · 장소 : 군청 상황실 · 참석 : 의장 등 8인 · 내용 : 행정쇄신위원회 방문결과 보고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4. 8. 11	○ 의원 간담회 개최(15 : 4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제6회 충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계획 제49주년 광복절 행사 참석(의장) 제32회 임시회 일정 협의 청와대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94. 8. 16	○ 인삼대책 자문위원회 개최(10 : 30) · 장소 : 군청 회의실 · 참석 : 의원 등 자문위원 52명 · 내용 : 행정쇄신실무위원회 참석 토의 금산인삼발전협의회 활성화방안 및 홍보 인삼제도 개선관련 향후대책 협의	
'94. 8. 17	○ 제6회 충청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격려 · 장소 : 금산중앙국민학교 · 참석 : 의원 4인 ○ 행정쇄신실무위원회 참석 · 장소 :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의장등 9인 · 내용 : 홍삼전매제도폐지 등 인삼법 개선 토론	
'94. 8. 18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신청현황 설명 을지 포커스렌즈 '94연습계획 설명 군정질문요지 제출 제32회 임시회 운영 협의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4. 8. 25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제14회 인삼제 인삼아가씨 심사위원 추천 제32회 임시회 일정 협의 군정질문자료 조정 인삼선양위원회 개최 금산축협 전이용대회 및 체육대회 을지 포커스렌즈 '94연습 위문	
'94. 9. 2	○ 인삼대책 자문위원회 개최 · 장소 : 군청 회의실 · 참석 : 의원 등 자문위원 17명(군수 참석) · 내용 : 추진상황 경과 보고 인삼사업법 폐지 대책에 따른 논의	
'94. 9. 5	○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설명(14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보고자 : 도시과장	
'94. 9. 7	○ U.R 시대의 한국인삼 발전 결의대회(14 : 00) · 장소 : 청산회관 · 참석 : 120명(의원 4인 참석) · 내용 : 인삼사업 활성화 방안 설명 결의문 채택	
'94. 9. 8	○ 시.군의회 사무과장회의(11 : 00) · 장소 : 공주시 비둘기회관 · 내용 : 상임위원회 운영 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94하반기 평통자문위원회 연찬회 · 기간 : '94. 9. 8. 13 : 00 ~ 9. 9. 13 : 00 · 장소 : 유성관광호텔 · 참석 : 3인(정현수, 길부섭, 박찬헌)	
'94. 9. 9	○ 진악신문 창간3주년 기념행사(10 : 30) · 장소 : 청산회관 2층 · 참석 : 부의장등 의원 5인	
'94. 9. 12	○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현장 시찰(11 : 00) · 장소 : 수삼센타, 국제인삼시장, 쇼핑센타 방문 · 인원 : 10명(농림수산위원8, 사무처 직원2)	
'94. 9. 15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95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안 설명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설명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설명 양지광산 주요시설물 철거명령 철회요구에 대한 탄원서 설명 ○ 인삼초롱 점등식 및 홍보탑 제막(20 : 00) · 장소 : 금삼교 사거리 · 참석 : 의장 · 점등구간 : 우체국 ― 인삼쇼핑센타 금산교후문 ― 상옥교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4. 9. 16	○ 제14회 금산군 군민대상 위원회 개최 · 장소 : 군청 상황실 · 참석 : 위원 24인(박천보, 태진수, 박승우) · 내용 : 수상자 결정	
'94. 9. 22	○ 제14회 금산인삼제 행사 참석 · 장소 : 금산군 일원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개막식, 가장행렬시연, 인삼솜씨자랑, 인삼골농악 경연대회, 향우회 민속놀이	
'94. 9. 23	○ 제14회 금산인삼제 행사 참석 · 장소 : 금산군 일원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인삼세미나, 인삼생산경진대회, 인삼왕선발대회, 금산인삼인의 한마당잔치 ○ 칠백의사 순의 제향(15 : 00) · 장소 : 칠백의총 종용사 · 참석 : 의원 11인 등 600여명 ○ 인삼골 궁도대회 · 기간 : 9. 23 ~ 9. 25 · 장소 : 남산 홍관정 · 참석 : 1,000여명(의장 참석)	
'94. 9. 26	○ 중국 길림성 안도현 방문 · 기간 : '94. 9. 26 ~ 10. 4 · 인원 : 의장, 부의장 등 6인 · 내용 : 자매결연사업 추진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4. 9. 29	○ 충남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개최(11 : 00) · 장소 : 예산군의회 · 내용 : 시.군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건의 의회사무과 직제변경 건의 전국의회의장 수첩 배부	
'94. 10. 1	○ 행정쇄신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개최(09 : 00) · 내용 : 인삼관련 제도개선 협의	
'94. 10. 11	○ 인삼발전협의회 개최(17 : 00) · 장소 : 군청 상황실 · 대상 : 인삼기획단 및 인삼발전협의회 회원 · 내용 : 인삼제도 개선 관련 보충자료 협의	
'94. 10. 13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 제3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 협의 '94 주요사업장 조서 현황 '94 의정 마무리 운영계획 '94 의정보고회 개최 협의	
'94. 10. 15	○ 제15회 군내 직장배구대회 격려(13 : 00) · 장소 : 금산중앙국교 교정 · 참석 : 의장 등 의원 5인	
'94. 10. 22	○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군민결의대회 참석(13 : 30) · 장소 : 금산국교 교정 및 시내일원 · 참석 : 의원 11인 등 700여명 · 내용 : 결의문 채택, 시가행진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4. 10. 27	○ 민주평통 통일정세 보고회 참석(10 : 00) · 장소 : 공주시 문예회관 소강당 · 참석 : 의원 11인	
'94. 10. 28	○ 금산군 관광개발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9인 ○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시도대표 협의회(11 : 00) · 장소 : 동대구 관광호텔 · 내용 : 기초의회 운영에 관한 당면 현안사항	
'94. 10. 31	○ 반공호국 희생자 합동위령제 참석(10 : 00) · 장소 : 청산회관 · 참석 : 의원 8인	
'94. 11. 3	○ 농민의 날 화합대회 격려(10 : 30) · 장소 : 농촌지도소 · 참석 : 의원 11인 등 500여명	
'94. 11. 6	○ 제1회 협회장기쟁탈 족구대회 격려(09 : 00) · 장소 : 금산국교 교정 · 참석 : 의장 등 8인	
'94. 11. 7	○ 인삼발전협의회 개최(14 : 00) · 장소 : 군청 상황실 · 참석 : 12인(의장 참석) · 내용 : 인삼제도개선 관련 행정쇄신위원회 동향 U.R대응 금산인삼시장 경영진단 및 국제화방안 연구용역 인삼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촉대상자 선정 소형 홍보인삼 포장재 활용 인삼검사용 지함 확보문제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국외여행자 인삼관련 의견 소개 산업고등학교 인삼학과 설치 방안	
'94. 11. 9	○ 선진의회 및 선진농업지구 견학(09 : 00) · 장소 : 부여군, 서천군 · 참석 : 의원 9인 · 내용 : 부여, 서천군 의회 및 농촌지도소 방문 부여 세도 도마도재배단지 견학 서천 한산 모시타운 견학	
'94. 11. 10	○ 주요사업장 재확인(10 : 00) · 장소 : 남이면 대양리 진입로 · 참석 : 한규영, 허병문, 오규영 · 내용 : 현장 실측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94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 기타 의정활동 협의	
'94. 11. 12	○ 금산고 영재관 준공식 참석(11 : 30) · 장소 : 금산고등학교 · 참석 : 의장등 의원 8인	
'94. 11. 13	○ 제32회 소방의 날 행사 격려(10 : 30) · 장소 : 중앙국교 교정 · 참석 : 의장 등 의원 7인	
'94. 11. 15	○ 의원 간담회 개최(14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94 세입.세출예산 전망 설명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중.소농 지원사업 개요 설명 백삼검사 지함부족에 따른 검사중단 설명 금산군 폐기물관련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 금산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 '94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	
'94. 11. 21	○ 의장단과 집행기관과의 대화(15 : 3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5인(의장, 부의장, 도기획관리실장, 도 발전담당관, 군수) · 내용 :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계획 협의	
'94. 11. 22	○ 충남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개최(11 : 00) · 장소 : 당진군 회의실 · 내용 : 통합시군 구성원 및 의장선거문제 통합시군 특별 지원자금 문제 기초의회의원 임기연장 문제 충남발전연구원 기본계획 가점평정개선 및 징계양정 감면규정 개선 건의 추곡수매에 따른 건의 시.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 인하 건의 농정시책 추진지침 완화 건의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4. 11. 28	○ 기자와의 간담회(17 : 30) · 장소 : 삼정식당 · 참석 : 의원 10인, 기자 6인 · 내용 : 의정활동 홍보 협조, 기타사항 협의	
'94. 12. 6	○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격려(09 : 30) · 장소 : 청산회관 · 참석 : 의원 5인	
'94. 12. 9	○ 인삼발전 협의회 개최 (11 : 00) · 장소 : 군청 상황실 · 내용 :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 상정보고안 설명 인삼의 수입창구 확보방안(유통공사)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인삼홍보대 설치 금산약초시장 주변 정비계획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94. 12. 14	○ 인삼선양위원회 참석(14 : 00) · 장소 : 청산회관 1층 · 참석 : 의원 11인 등 164명 · 내용 : 제15회 금산인삼제 기본계획안 설명 행사에 대한 제반사항 협의	
'94. 12. 16	○ 인삼활성화방안 행정쇄신위원회 의결 · 내용 : 인삼(홍삼) 전매제도 전면 폐지 인삼업무 농림수산부로 이관 자금지원문제, 가격안정대책, 검사제도 개선 등 보완대책을 농림수산부가 주관 96년도부터 시행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4. 12. 16	○ 그린스카우트 발대식 참석(10 : 00) · 장소 : 청산회관 · 참석 : 의원 11인 등 300여명	
'94. 12. 28	○ 금산JC창립제22주년 기념행사및 회장 이.취임식(11 : 00) · 장소 : 청산회관 2층 · 참석 : 의원 4인 등 200여명 ※ 중국JC회원 의회 견학	
'94. 12. 23	○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11 : 00) · 장소 : 태안군 송도회관 · 내용 : 12월6일 도지사 간담회시 건의사항 통보 ○ 시.군의회 사무과장 회의(11 : 00) · 장소 : 논산군 백제가든 · 내용 : 당면사항 협의	
'94. 12. 29	○ '94 정기회 폐회연(12 : 00) · 장소 : 솔밭회관 · 참석 : 의원 11인, 군수, 교육장, 농협지부장, 727대대장, 부군수, 실과사업소장, 언론인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5. 1. 3	○ 신년 교례회 (11 : 00) · 장소 : 청산회관 · 주관 : 금산군 개발위원회 ○ 신임 부군수 의회 방문 (16 : 10) · 김풍원 부군수 (전 보령 부군수)	
'95. 1. 5	○ 의원 간담회 (13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정기 재산변동사항 등록신고 요령 기타 의정업무 협의	
'95. 1. 13	○ 의원 간담회 (11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평통위원 판문점 견학 '95의정현황 보고 기타 의정업무 협의 ○ 도지사 의회 방문 (10 : 35) · 장소 : 의장실방문 · 내용 : 의원과의 대화	
'95. 1. 25	○ 충남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참석 (11 : 00) · 장소 : 천안군청 회의실 · 내용 : 도축장 운영에 관한 건의 회신 지방공무원 포상가점제도 건의 회신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 인하 건의 회신	
'95. 1. 26	○ 민주 평통협의회 판문점 견학 (05 : 00) · 참석 : 의원 4명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5. 1. 27	○ 의원 간담회 (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금산군 반회보 발간규정 개정 설명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및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설명 겨울철 가뭄대책 추진계획 설명 제35회 임시회 일정 협의 금산음료공장 철회 진정 병설유치원 교사 해임 철회요구 진정 기타 의정업무 협의 ○ 군수와의 간담회 (18 : 30) · 장소 : 잔치타운 · 참석 : 의장등 의원 11인 · 내용 : 군정업무 협의	
'95. 2. 9	○ 제35회 금산군의회 제1차 본회의 (10 : 00) · 장소 : 본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회기결정의 건 군수 인사의 건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금산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95. 2. 10	○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 : 00) · 장소 : 본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9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기획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5. 2. 11	○ 제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0 : 00) · 장소 : 본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9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문화공보실, 지적과)	
'95. 2. 12	○ 제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10 : 00) · 장소 : 본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9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보건소)	
'95. 2. 14	○ 제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10 : 00) · 장소 : 본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9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 도의회 농림수산위 래군 (11 : 00) · 내용 : 가뭄지역 시찰 (의장 참석 대화) ○ 부군수와의 간담회 (17 : 30) · 장소 : 잔치타운 · 참석 : 의장등 의원 11인	
'95. 2. 15	○ 제3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10 : 00) · 장소 : 본 회의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9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5. 2. 16	○ 금산인삼 발전을 생각하는 모임 (11 : 00) · 장소 : 군청 상황실 · 참석 : 20명 (의장 참석) · 내용 : 인삼사업 자율화에 따른 농림수산부 현지방문 인삼제도 여론 수렴	
'95. 2. 23	○ 민주평통 월례회의 (11 : 00) · 장소 : 군청 상황실 · 참석 : 의회 의원 등 22명	
'95. 2. 27	○ 충남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11 : 00) · 장소 : 공주시청 회의실 · 내용 : 지방행정조직 개편관리 결의문 채택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위한 건의문 ○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발기인 총회 · 장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석 : 의장 참석 (의장 발기인)	
'95. 3. 3	○ 시·군의회 사무국(과)장 회의 (11 : 00) · 장소 : 부여 백제가든 · 내용 : 당면사항 협의	
'95. 3. 15	○ 의원 간담회 (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선거법 설명회 참석 충남도 여성대회 개최 기타 의정업무 협의 ○ 선거법 설명회 참석 (13 : 00) · 장소 : 논산 군민회관 · 참석 : 의원 10인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5. 3. 23	○ 의원 간담회 (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1인 · 내용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개최 중국 안도현과의 자매결연 출국 용담다목적댐 용역 설명회 기타 의정업무 협의	
'95. 3. 24	○ 민주평통 통일정책 보고회 참석 (14 : 00) · 장소 : 공주시청 회의실 · 참석 : 의원 7명등 30명 · 내용 : 민족 공동체의식 함양과 북한실정 보고	
'95. 3. 27	○ 중국 길림성 안동햐과의 자매결연 출국 (06 : 00) · 기간 : 3. 27~3. 31 · 방문단 : 10명 (허병문의원, 태진수의원) · 내용 : 자매결연 조인식 투자설명회, 인삼, 약초, 축산단지 방문	
'95. 3. 27	○ 충남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11 : 00) · 장소 : 보령시청 회의실 · 내용 : 의회사무처 직원의 처우개선 건의문 기타 의정업무 협의 ○ 의원 사직허가 · 일시 : 95. 3.27 · 대상 : 박천보 의원 · 내용 :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사직허가 ※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궐원 통지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5. 3. 30	○ 의원 간담회 (11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명 · 내용 : 제41대 금산군수(김행기) 퇴임 군수 이임식	
'95. 4. 4	○ 의원 간담회 (17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제36회 임시회 일정 협의 개원 4주년 기념행사 협의 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 방침	
'95. 4. 12	○ 의원 간담회 (10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명 · 내용 : 금산군 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설명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설명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설명 금산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따른 용담댐을 상수원으로 하는 상수도설치 건의안 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5. 4. 14	○ 제3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0 : 00) · 장소 : 본 회의실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회기 결정의 건 금산군 해정기구 설치 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금산군 세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금산군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추진에 따른 용담댐을 상수원으로 하는 상수도설치 건의안 의장, 부의장 선임의 건	
'95. 4. 15	○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 : 00) · 장소 : 본 회의실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군수 인사의 건 ○ 금산군의회 개원 제4주년 기념식 (11 : 00) · 장소 : 청산회관 (1층) · 참석 : 의원 등 100여명 · 내용 : 표창패 수여 (안선희, 최훈) 기념사 (의장) 축사 (부군수)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다과회 기념촬영	
'95. 4. 17	○ 신임군수 의회 방문 (15 : 14) · 장소 : 의장실 · 참석 : 의원 10인	
'95. 4. 20	○ 의원 간담회 (17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당면 의정업무 협의 ○ 군수와의 간담회 (18 : 00) · 장소 : 용궁식당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신임 곽영석 군수와의 대화	
'95. 4. 24	○ 충남 시·군의회 사무국(과)장 회의 · 장소 : 서천군청 회의실 · 내용 : 당면 업무 협의	
'95. 4. 25	○ 충남지사 의회 방문 (11 : 0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의원 7인 · 방문 : 충남지사 김한곤외 2인 · 내용 : 금산군 초도순시후 의회 방문 의원과의 대화 인삼사업제도 개선에 따른 직원 파견	
'95. 4. 26	○ 충남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11 : 00) · 장소 : 서산시청 회의실 · 내용 : 당면 사항 협의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인삼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협의 (17 : 00) · 장소 : 의장실 · 참석 : 의장 등 9인	
'95. 4. 27	○ 의원 간담회 개최 (11 : 3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당면 의정업무 협의 ○ 인삼대책 자문위원회 (15 : 00) · 장소 : 군청회의실 · 참석 : 67명(의원 6인 참석)	
'95. 5. 13	○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0 : 00) · 장소 : 본 회의실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개회식 회기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 '95 금산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95. 5. 15	○ 제37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 (10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위원 9인 · 내용 : 위원장, 간사 선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95. 5. 17	○ 제37회 임시회 제2차 예결특위 (11 : 00) · 장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 : 위원 9인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내용 : 심사보고서 채택 ○ 의원 간담회 개최 (11 : 3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금산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금산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기타 의정업무 협의	
'95. 5. 18	○ 주요 사업장 시찰 (10 : 00) · 장소 : 금성, 진산, 복수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공사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백암교 가설 공사	
'95. 5. 19	○ 주요 사업장 시찰 (10 : 000 · 장소 : 추부, 군북, 제원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추부 복개도로 개설공사 일월이재 도로개설 소하천정비 및 농촌도로 개설 구억교 가설 공사	
'95. 5. 20	○ 주요 사업장 시찰 (10 : 00) · 장소 : 금산읍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아인리 침수지역 소방도로 개설 '94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 종합운동장 조성 공사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95. 5. 22	○ 주요 사업장 시찰(10 : 00) · 장소 : 부리, 남일, 남이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창평교 보수 공사 농촌도로 정비 사업 인삼 민속촌 조성 공사 ○ 시.군 사무국(과)장 회의(11 : 00) · 장소 : 청양군청 회의실 · 내용 : 당면업무 협의	
'95. 5. 23	○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0 : 00) · 장소 : 본 회의실 · 참석 : 의원 10인 · 안건 :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 보고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금산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5. 5. 30	○ 충남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11 : 00) · 장소 : 아산시청 회의실 · 내용 : 당면 의정업무 협의	
'95. 6. 1	○ 의원 간담회 개최(11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당면 의정업무 협의	
'95. 6. 8	○ 의원 간담회 개최(15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년 월 일	주 요 의 정 활 동	비 고
	· 내용 : 지방선거 사무일정 의정백서 발간 집기 수리 기타 의정업무 협의	
'95. 6. 14	○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11 : 00) · 장소 : 천안시의회 회의실 · 내용 : 당면 의정업무 협의	
'95. 6. 15	○ 의원 간담회 개최(17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감사원 감사 결과 전문위원 정년퇴임 기타 의정업무 협의	
'95. 6. 16	○ 충남 시.군의회 사무국(과)장 회의 · 장소 : 홍성군청 회의실 · 내용 : 당면업무 협의	
'95. 6. 22	○ 의원 간담회 개최(11 : 00) · 장소 : 의원 사무실 · 참석 : 의원 10인 · 내용 : 의정업무 협의	

제2절 년도별 의정활동모습

【1991년도】



〈제 1 대의원 개원식후 기념촬영('91. 4 . 15)〉



〈제 4 회 임시회 충남도교육위원 선출
('91. 7 . 25~26)〉



〈제 5 회 임시회 골재채취특위 현장(제원천내)
조사활동('91. 8 . 22~28)〉



〈지역 종교인 초청 간담회(군청회의실)
('91. 10. 26)〉



〈제 9 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활동
('91. 12. 2 ~31)〉



〈제 9 회 정기회 군정질문('91. 12. 2 ~31)〉

議會 의정

錦山郡

大田-금산 國道확장에 총력
人蔘보호위해 特委활동 전개

9관 금산군의 대변자로 위치를 굳히고 있는 錦山郡議會(의장 羅相奎)는 원년 초기의 부정적 시각을 전국최초로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통해 금복, 우명민정서는 평을 받고있다.



〈'91년도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장면〉

의 정기회의를 거치는동안 64건의 각종 의안을 무리없이 소화하고 11명의 의원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 자신의 전문분야를 꿈꿈없는 노력과 연찬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금산군의회의 최대관심사는 대전-금산간 국도선의 확포장. 그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금산지역은 국도 장이 뭡 전혀 이들 는 지난 데 이어 민과의 부각이라는 기치로 주민 전체의 마음과 소리를 의정에 반영시키고 있다.

기울여와 또한 1 원23일부 일간 십 특별위원 장 8개 며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 주민의사의 우월적 가치보장과 지역특성의 행기관으로 다가 숙원사업

주민福祉 증진 힘써


〈사회복지시설 향림원(추부 마전)위문 ('91. 12. 30)〉

錦山郡의회 1년 決算
案件 70여건 처리

역사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개원된 금산군의회(의장 라상규)는 그동안 9회에 걸친 임시회 및 정기회를 통하여 총70건의 안건을 처리하는등 의욕적인 활동을 해왔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보면 13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여론 수렴및 원활한 회의 또 지난11월에는 관내 10개 邑·面을 순회하면서 지방의회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의회가 하는일과 그동안 의회가 한일을 주민에게 보고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원지식함양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또한 지역현안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지난 9월에는 전의원이 국회및 관세청등을 방문해 중국인삼등의 밀반입으로인한 금산인삼시장의 침체등을 설명하고 외국



〈제11회 임시회 청원재심사특위 현지조사활동(남일 상동) ('92. 2.19~25)〉



〈국회 전해성 부이사관초청 의원 연수 ('92. 5.13~14)〉

人蔘사업제 개선 요구

금산郡의회 공청회거쳐 관계기관에 건의서

금산군의회가 인삼사업 및 제도개선에 따른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하데 이어 법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산군 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의 주민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인삼법 정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 관계부처 등 60여곳에 제출했다.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현행 재무부 소관의 각종 인삼사업법을 농수산부로 이관시켜 인삼도 농산물로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과 국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홍삼전매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7%에 불과하고 전국의 수삼생산량(91년도 기준) 1만4천2백92t중 8분의 1도 못미치는 1천7백89t에 불과한 홍삼만을 육성지원하는 현 장하에 「人蔘産業振興法」 심의회를 구성하고 ▲인삼산업의 구조혁신 지원 ▲6년근 홍삼과 저년근 홍삼의 역할 분담 마련 ▲선발농업보험 단일화 하기 위한 인삼검사소 재편 ▲인삼공사 자산 협동조합으로 이양 ▲인삼수입에 대비 수입 인삼류의 검사기준 통관절차 원산지증명과 녹색신고제 및 위장 불법수입 처벌규정 설정 ▲인삼제품 개발연구와 제품생산 지원자금 등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錦山=任寬彬기자〉



〈지역현안문제(인삼)협의를 위한 간담회 ('92. 6. 8)〉



〈제13회 임시회 방청 모습('92. 6.22~26)〉



〈리장단 초청 간담회 ('92. 6.22)〉



〈청주 쓰레기매립장 및 처리시설 견학 ('92. 7.14)〉

道界 지역간의 현안문제 숙의 지역개발 상호협조 체제 구축

錦山-全北鎭安군의원 간담회

금산군의회 의원(의장 羅상규)들과 전북진안군의회 의원(의장 朴병열) 22명이 모두 참석한가운데 지역간 현안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간담회를개최 화제가 되고있다.

28일오전 11시 30분 금산 군청 회의실에서 금산군의회 의원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접도계 의원상호간교류는 물론 협력체제유지를 도모해나가기로했다.

한편 금산군의회 羅의장은 인사말을통해 『지방화시대를 맞아 인접도계 의원들간의 만남이 전국에서 첫즙실시된 만큼 타지역의 모범이되고 양측 군민들간의 화합차원에서도 큰몫을 할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더욱이 이들은 이날 지난 91년 5월 13일부터 국도 795호선인 금산↔진안 구간에 완행버스(전북여객) 운행이 중단돼 양측주민들이 교통난에 시달려 크나큰 불편을 겪고있는 문제점을 토론, 하루빨리 해결할수 있도록 양측모두 함께 노력할것을 합의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특히 지역개발문제도 다각적으로 협의 상호협조체제를 지속 유지시켜 나가기로 했다.

〈錦山=金炯秀기자〉



〈금산.진안군의회 의원 간담회('92. 7.28)〉
(완행버스 운행 등 지역현안문제 협의)

무농약 유기 농작 견학



〈무농약 농원(전북 임실 예가원)견학 ('92. 8. 11)〉

여 비옥한 농토를 만들기 위한 현대식 발효퇴비장 시설을 견학하고 진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지역 특산품인 순창 전통고추장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순창읍 남계리 소재 전통고추장 보존협의회 변정옥할머니의 첨포를 방문하여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규모 공장도 견학하였으며, 답례품으로 금산 인삼을 선물하였다.

금산군의회(議長 羅相奎)는 노동 집약적이면서 농촌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무농약 유기 농사방법을 견학하기 위하여, 군의원, 독농가, 농사계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등 22명으로 견학팀을 구성하여 '92. 8. 11 전북 임실군 임실읍 화성리에 있는 "예가원"(자생조직 농촌모임, 대표 이진하)을 방문하고 고추재배 및 벼농사 포장, 땅심을 높



〈돈사신축 반대 진정에 따른 현지의견 수렴(남이 구석)('92. 9. 3)〉



〈관내 U.R대비 고소득작목 단지 견학 ('92. 10. 29)〉

錦山郡의회 행정·郡民 동반자

住民의 대변기관 '자리매김'

민원해결·바른郡政 견인차
새 錦山건설 면모쇄신 앞장

지방화시대가 정착돼가면서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의 대변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금산군 의회(의장 羅相奎)는 지난달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새해예산심의등 행정당국이 바른 군정을 펼칠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수렴, 대변역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출범당시 여러가지 서툴렀던 의정활동이 2년여세월속에 갈고닦은 실력으로 주민과 행정의 교량역할을 다하면서 한단계 성숙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화시대가 정착되었다는 평을 받고있다. 특히 의원들은 93년도가 년이되는 쇄신하단 는 군정과 하는 돌입 에앞장서 룹게 하고 그러나 원과 지역 이 발생, 고있는것 이에따 한 의원11 체속에 발 지역민들 으로 수렴 고 군민들 정이 바르 할수 있은 의정활동 특히지 면 오학리 을에 산업 이 조성된



〈제15회 임시회 주요사업장(추부청사 신축)시찰 ('92. 10. 26~11. 2)〉

금산군의회 제15회 임시회의 개최

학생들의방청으로 풀뿌리민주주의실현노력

금산군의회(의장 라상규)는 10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제15회 임시회를 갖고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첫날인 26일에는 금산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정수물품취득 승인건등 3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27일부터 3일간 92군정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30일부터 11월2일까지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장을 시찰하여 사업의 진척상황과 93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산군의회는 이번 15회 임시회의에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느끼는 생동감 있는 의원상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제15회 임시회의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운영과정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학생들을 초청,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등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회기에는 리장들을 초청하였으며 이번 회기중 학생들의 방청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노력을 하고 있다.

금산군 의회는 앞으로 회기중 각계각층을 초청하여 방청과 함께 간담회를 갖을 예정이다.



〈제15회 임시회 주요사업장(배단지 조성사업)시찰 ('92. 10. 26~11. 2)〉



〈제16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군수 보고) ('92. 11. 11~14)〉



〈제16회 임시회 본회의 (여고생 방청) ('92. 11. 11~14)〉

【1993년도】



〈군용시설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진정 현지주민 여론 수렴(복수 지량) ('93. 1. 23)〉



〈취수장설치 반대 진정에 따른 현지 의견 수렴 (부리 신촌) ('93. 3. 9)

홍삼 專賣制 폐지 초

錦山郡의회·농가 청원준비 독점 폐해… 民間제

【서울=權在洪기자】금산군의회와 금산지역인삼농가들이 홍삼의 국가전매를 규정한 인삼사업법폐지를 비롯한 금산인삼농가대여를 골자로 하는 가칭 「인삼산업진흥법」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제출을 위해 주민 5천3백여명의 일체권리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李홍만금산군의회부의장 등 85명이 연명한 청원은 12일 국회를 방문, 현행 인삼사업법을 폐지하고 민간의 홍삼제조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에 착수했다.

따르면 현행 인삼에 대한 제



〈제19회 임시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93. 4. 14)〉



〈금산군의회 인삼대책자문위원회 회의모습 ('93. 5. 4)〉

「홍삼전매법 폐지」 움직임 활발

錦山郡의회등 國會에 청원서 제출키로

民間주도 인삼정책 촉구

인삼산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돼온 「인삼사업법」을 완전 폐지하고 「인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인삼경작 농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민간주도형의 인삼정책을 마련키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금산군의회(의장 羅相準) 충남도 시·군의회 의장단, 풍기조합인삼대책위원회를 비롯, 한국삼업인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또 청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인삼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삼사업법은 지난 72년 12월 법률 제2427호로 제정된이후 개정 3차례 부분개정 2차례 등 5회에 걸쳐 개정됐다.

인삼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자체가 紅蔘만이 마련됐는가 하면 紅蔘의 專賣제도를 이용, 농민은 홍삼생산만하고 있을뿐 홍삼제조는 물론 판매권까지 국가(한국담배인삼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삼경작농민은 물론 금산군의회등은 이는 당연히 시정돼야 마땅하며 자유시장 경제원칙에도 위배되는 악법이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인삼사업법 제3조 1항에는 「홍삼류는 국가가 전매한다. 홍삼류는 쇼정은 정부가 홍삼전매권을 있다. 이같은 각종 벌칙규秘만이 이를 제조할 수 있다」 또 14조 1항은 「홍삼류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만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3~28조의 제반규정을 위반했을때는 최고 징역 3년, 벌금 3백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물을 수미수법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한편 금산군의회는 그동안 인삼문제 협의간담회 5회, 대주민공청회 3회 등 인삼사업법에 따른 제도개선, 인삼사업법개정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錦山=任寬彬기자〉



〈임삼법 및 제도에 관한 공청회(청산회관) ('93. 5. 11)〉

홍삼 전매폐지 請願

금산議會·농가 "인삼公社독점… 생존권위협"

【錦山=全成雨기자】 금산군의회와 이 지역 5천3백84가구의 인삼재배 농가는 19일 홍삼의 독가 전매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삼사업법을 폐지하고 민간의 홍삼전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인삼산업진흥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삼재배 농가에 의하면 금산군의 홍삼생산량은 전체 인삼생산량의 12%에 그치는 홍삼의 제조·수출·판매를 인삼공사가 독점하도록 하는 전매제도는 나머지 88%의 인삼은 백삼으로 만들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대다수 인삼재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등 인삼을 생산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농민 스스로 가공해 수출까지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기술과 품질을 이유로 홍삼전매를 고집하는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금산군의회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홍삼전매령을 그대로 답습, 국민의 기본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인삼사업법을 전부가 폐지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현안문제(인삼) 간담회(군청회의실) ('93. 6. 28)〉



〈정기회 대비 의원 특별교육 ('9 3. 10. 7 ~ 8)〉



〈제27회 정기회 특위 활동 ('9 3. 11. 25~12. 24)〉

【1994년도】



〈의원 정례 간담회(지역문제 협의) ('94. 4. 7)〉



〈채석광산 개발에 따른 현지의견 수렴 (금산 양지) ('94. 6. 4)〉

미처리 汚水방류 진상파악
錦山郡의회 茂朱현장 방문

【錦山】錦山郡의회(의장 羅相燮)는 13일 본보에 보도되었던 全北 茂朱郡분뇨처리장의 미처리오수 방류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 吳운현茂朱부군수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한편 茂朱郡은 하루 15㎘처리용량의 분뇨처리장을 가동중인데 반입용량초과로 완전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방류하다가 본보에 보도되자 현재는 분뇨반입을 중단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吳부군수는 『여러가지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姜용찬기자〉



〈무주군 분뇨처리 실태 현지 조사활동 (무주읍 내도리) ('94. 7. 13)〉



〈제31회 임시회 가뭄대책 보고(군수) ('94. 7. 21)〉

부실공사 豫防 한몫

錦山郡의회 주요 사업장 시찰 과감한 是正지시

【錦山】錦山郡의회(의장 羅相奎)가 제33회 임시회(10월 19일~30일)동안 실시한 관내 주요사업장 시찰이 부실공사를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錦山郡의회는 지난해부터 관내의 관발주공사 현장을 돌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지시를 내린데 이어 전년도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姜용찬기자〉



〈제33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시찰(제원 천내 세월교 공사) ('94. 10. 19~31)〉

錦山郡의회 주요사업장 시찰

성과·문제점파악 동분서주 의정활동 새변신 도모다져

금산군의회(의장 羅相奎)에서는 94년도 주요사업장을 시찰, 사업의 현황과 성과문제점을 파악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다 더 효과적이고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함과 동시 95년도 예산심의 자료및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새롭게 면모를 다져 지역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제33회 임시회의는 관내 57개 주요사업장(군발주 4·읍면발주 16과 민간기업체 7개소를 현장시찰과 함께 군의회의원상호간의 보상지급에 대한 조례안등 2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대부분의 사업장이 공기에 따라 완벽하게 추진되었으며 일부 사업은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월이 검토되거나 시공상의 의견들의 의견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번현장시찰로 인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하나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사업추진시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위치선정등 주민들에 편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 의회 행정이 삼위일체가 돼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것을 다짐했다.

한편 현장시찰과정에서 금성면 대암리(대암선)도로확·포장공사에서는 이마을 주민들이 총회를 갖고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전체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승낙(사가 3억원상당)을 해줘 사업추진의 원활을 도모, 타지역의 귀감이돼 칭송을 받았다.

〈錦山=金현수기자〉



〈제33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시찰(진산 행정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 ('94. 10. 19~31)〉



〈가뭄 극복현장 방문 격려(추부 서대) ('94. 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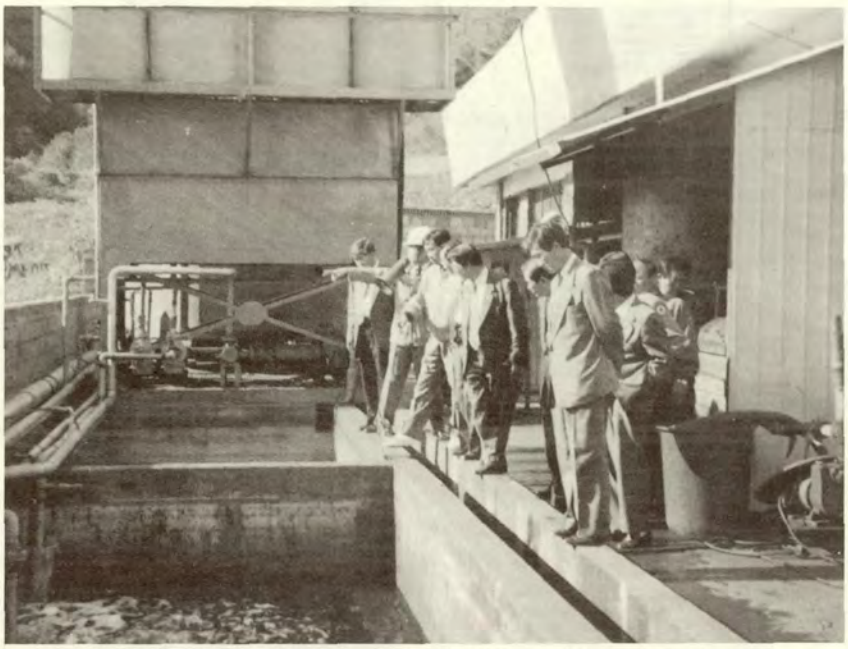

〈삼양산업 폐수 처리시설 현지 확인(추부 신평) ('94. 10. 24)〉

議 政 白 書

1995年 6月 日 印刷
1995年 6月 日 發行

發 行 : 錦 山 郡 議 會
編 輯 : 錦山郡議會事務課
印 刷 : 合 同 印 刷 社

(非賣品)

CHUNG CHEONG NAM – DO
AM002841